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82호

2021.6.3.(목)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421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	4
제4422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
제442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
제4424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0
제4425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
제4426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4
제4427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5
제4428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0

[입법예고]

제2021-1569호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1
제2021-1596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입법예고	32
제2021-1597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제2021-1598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34
제2021-161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5
제2021-161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6

◆ 고 시

제2021-248호	천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7
제2021-2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58
제2021-251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1
제2021-252호	2020년도 제2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74
제2021-253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미한 사항)	77
제2021-254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장위1구역)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94
제2021-255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24

◆ 공 고

제2021-1531호	공인 등록 공고	169
제2021-1539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170
제2021-15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171
제2021-1555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73
제2021-1561호	「전기공사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81
제2021-1564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82
제2021-15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84
제2021-1567호	『2021년도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공고	191
제2021-1570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220
제2021-1571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221
제2021-1572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222
제2021-1573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223
제2021-157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24
제2021-1587호	신정 도시개발구역 공사완료 공고	250
제2021-1594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 열람 공고	252

◆ 구 고 시

제2021-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삼청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종로구)	258
제2021-100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성북구)	263
제2021-101호	도시계획시설(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성북구)	265
제2021-99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성북구)	270
제2021-83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노원구) ...	272
제2021-121호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275
제2021-107호	영등포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영등포구)	277
제2021-1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282
제2021-11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고시(동작구)	288
제2021-98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292

◆ 구 공 고

제2021-644호	평창동 113-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중로구)	297
제2021-67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용산구)	301
제2021-6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광진구)	302
제2021-806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성북구)	303
제2021-790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도봉구)	306
제2021-8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도봉구)	307
제2021-788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서대문구)	308
제2021-833호	금나래중앙공원 조성계획 변경 열람 공고(금천구)	318
제2021-972호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재열람공고(양재동 224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서초구)	325
제2021-98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서초구)	326
제2021-1212호	허브체험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을 위한 열람공고(추가)(강동구) ..	327

◆ 사업소고시

제2021-1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31
제2021-1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31
제2021-1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32
제2021-1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33
제2021-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33
제2021-1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34
제2021-1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35
제2021-1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35
제2021-163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336

◆ 기 타

제2021-18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337

◆ 정 정

제2021-1549호	제3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모집 정정 공고	338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421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6월 3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에게 위임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자치경찰위원회,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 행사에 적용한다.

1. 시장의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권 행사
2.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 파견, 휴직, 복직, 직위해제 임용권 행사
3. 자치경찰위원회의 경감 이하에 대한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하 “중징계”라고 한다) 임용권 행사
4.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사 이하로의 승진 임용권 행사

②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의 사전 의결
2. 그밖에 시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

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경찰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④ 제2항과 제3항의 인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회의마다 지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보)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전보 임용권 행사 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협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보 임용권 행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전보와 관련된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치경찰사무담당 또는 담당 예정 공무원에 대한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주요경력 등 관련 인사자료를 요청한다.

제8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장은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경감·경위로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 중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경찰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사 이하로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 중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승진심사 결과 등의 요청)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권 행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 승진임용예정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주요경력 등 관련 인사자료를 요청한다.

제10조(직위해제사유의 요청) 자치경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 경정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해제의 근거가 될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제11조(징계사유의 요청) 자치경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의 근거가 될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제12조(징계요구 등의 절차)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중 경정 이하의 직위해제 또는 경감 이하의 징계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징계 요구 의결 시, 해당 경찰공무원의 직위해제도 함께 의결할 수 있다.

③ 자치경찰위원회는 징계 요구 의결을 한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징계절차 진행을 요구한다.

④ 그밖에 징계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제13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서울특별시경찰청장 임용 협의)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임용 추천을 위해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정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주요경력 등 관련 인사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

제15조(경찰서장의 평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연 1회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장 평가방식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지역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요청자료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에 대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추천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에 앞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시장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임용권한을 규정함(제2조).
- 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전보 임용권 행사에 필요한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의 협의 및 자료요청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라. 승진 임용권 행사를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찰 승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자료요청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마. 직위해제 및 중징계 임용권 행사를 위한 자료 및 절차 진행 요구 등의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바.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제13조).
- 사. 자치경찰위원회의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임용 협의 권한 및 자료 요청 사항을 규정함(제14조).
- 아. 자치경찰위원회의 서울지역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 권한 등을 규정함(제15조).
- 자. 자치경찰위원회의 서울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제출 권한 및 필요자료 요청 사항을 규정함(제16조).
- 차.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2인 추천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 카.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함(제18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422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한” 을 “협약을 체결한”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2020.12.31.)에 따라 공증이 불필요한 민간위탁 협약서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를 삭제함(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42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요시정 전반, 공보, 젠더”를 “미래전략, 정무, 정책”으로 하고, “정책특보, 공보특보, 젠더특보”를 “미래전략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대변인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사운영 변경 사항 반영 등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명칭 변경 및 직위 조정

(1) 보좌기관의 명칭 변경 (제3조제2항)

▶ 정책특보, 공보특보, 젠더특보 → 미래전략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

(2) 대변인의 개방형 직위 신규지정 (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424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명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 시 위원의 구성방식을 변경하여 전문성 있는 심리 및 신속한 사건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 시 위원의 구성방식을 정비(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425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을 “위원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국·본부장은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를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법제심사 또는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기” 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실·국·본부장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안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규제의 등록)” 을 “(규제의 등록 및 입증책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 를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로, “위원회는” 을 “법무담당관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을 “규제등록에 필요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 를 “제1항에 따른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③ 각 실·국·본부장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 중 “위원회는 제2조제3항의”를 “제12조(규제의 공표) 법무담당관은 제2조에 따른”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시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를 “시 홈페이지에”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4조) 중 “제13조”를 “제2조”로,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9조(중전의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또는 정비를 권고한 안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시의 소관부서에서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의 근거를 우리시 규칙에 명시하여 입증책임제를 정착시키고,
- 나. 규제개혁 업무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제입증책임제의 근거를 신설함(제11조).
 - 1)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 2)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시의 소관 실·본부·국장이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규제의 정비를 권고하여야 함.
 - 3) 정비 권고를 받은 소관 실·본부·국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나. 위원회에서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안건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안건을 제출하여서는 안 됨(제9조).
- 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라. 종합계획 수립 사전절차,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표 기한, 기존규제의 정비결과 제출기한 등을 삭제함(제2조).
- 마. 훈령·예규·고시·공고 등 중요문서에 대한 규제심사는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의뢰하여야 함(제5조).
- 바. 규제사무목록 및 종합계획을 공표 매체를 시보 및 컴퓨터 통신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시 홈페이지로 일원화함(제12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426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 당시(' 19. 1. 3.)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조례의 별표로 신설함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어 사문화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4427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를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로,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 안전감찰에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밋” 을 “방법으로 확인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하거나 재난 밋”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 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방 안전감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교육·훈련에 대한 업무실행을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 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6조제3항 중 “외부전문가를” 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 자료 및 정보의 수집·확인
2. 안전감찰 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9조 앞에 “제3장 감찰결과와 처리”를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4조로 하고, 제12조를 제20조로 하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안전감찰 계획)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
2. 안전감찰의 유형,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 및 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 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통지서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통보
2. 안전감찰 받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장소 설치 요구
3.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
4. 제3호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질문서 및 문답서 등 자료의 작성
5. 제4호의 자료 작성시,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에게 서울특별시의 별도의 공간에서 작성 및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 제2호 중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감찰결과와 처리” 를 삽입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호” 를 “제11조제1호” 로,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 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체 안전감찰” 을 “안전감찰” 로, “게을리한” 을 “게을리하는 등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감찰 대상자”” 를 ““안전감찰대상자””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우 제1항제2호” 를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 제1항 중 “제10조” 를 “제12조” 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2조) 중 “임직원” 을 “직원” 으로, “자에 대하여” 를 “사람에 대해서” 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 제1항 중 “결정한” 을 “결정한 별지 제3호서식의” 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안전감찰 대상기관” 이라 한다)” 을 “재난관리책임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난관리책임기관” 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으로, “결과를” 을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에 따라” 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 제1항 중 “처분” 을 “제14조에 따라 처분” 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 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 을 “별지 제7호서식” 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1항 중 “제14조” 를 “제15조” 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안전감찰 대상기관” 을 “안전감찰대상기관” 으로,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6조” 를 “안전감찰대상자가 제1항” 으로, “제13조제1항” 을 “제14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 을 “제3항” 으로, “별지 제3호서식” 을 “별지 제9호서식” 으로, “안전감찰 대상기관” 을 “안전감찰대상기관” 으로 한다.

① 재난안전법 제77조의2에 따라, 안전감찰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시장은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제10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안내해야한다.

제17조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6조” 를 “제1항” 으로, “제2항” 을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제3항 또는 제5항”으로,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이행실태) 시장은 재난안전법 제77조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의 징계 또는 경고 등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안전감찰의 독립성) ① 시장은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전문역량 강화) ①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지자체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안 전 감 찰 통 지 서

감 찰 명	
감 찰 기 간	
감 찰 대 상	
감 찰 반	

【주요 감찰내용】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라 위 감찰에 대한 사전 통지서입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1. 【제 목】

2. 【내 용】

○

○

3. 【관리기간 조서】

4. 【관계기관·확인자 의견】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기관
○○○ (인)

부서

직위

직급

확인자 : 소속기관
○○○ (인)

부서

직위

직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처 분 요 구 서

[행정상 : / 신분상 :]

【제 목】

【관계기관】

【소관부서】

【내 용】

【관계기관·확인자 의견】

【조치할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기관명 : _____]

□ 감찰명 : _____

일 련 번 호	처분요구 제목	처분요구 종류 (시행일)	처분요구 요지	처리 결과	완결 여부	관련 부서	비고

※ 첨부 :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 처분요구 이행계획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

안전감찰명 :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기관·부서명 :	처분요구서 접수일 :
작성일자 :	작성 소관 부서장 : (인)
처분요구 종류 :	본부·국장 : (인)
처분요구 제목 및 내용(요약) — —	
이행결과 : (완결, 이행 중)	
이행내용 — —	

※ 작성 요령

- 감찰결과 처분요구사항 건별로 작성하여 보고하며, 입증자료를 첨부함
- 처분요구사항의 내용대로 정리된 경우 “완결”,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 이행 중” 으로 구분
- 이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연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이행완료 예정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이행 계획서를 부서장 명의로 첨부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처분요구 이행계획서

☐ 처분요구서 일련 번호 :

☐ 향후 이행계획 (조치내용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이행완료 예정일 :

○

—

☐ 지연 사유

○

—

○

—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7호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1.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직 명	
	주 소 (기관의 소재지)			
2. 안전감찰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안전감찰결과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안전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8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안전감찰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안전감찰을 받은 자 본인
 -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안전감찰 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의 개선,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긴급구
조·구조·대피 등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절차를 거쳤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및 회피한 경우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인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인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9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면책 요건 검토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추정) 여부		
4)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 여부		
5)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 자료 및 정보의 충분한 검토 여부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준수 여부		
- 업무처리를 위한 보고 여부		
면책 대상 제외 여부 검토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고의 불이행, 지연 등 여부		
2) 금품수수 또는 편의제공을 받았는지 여부		
3)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 본질적인 사항 위배 여부		
4)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여부		
5) 기타 위에 준하는 위법 부당 행위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10호서식]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안전감찰관의 공정한 감찰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제3호).

나. 안전감찰 절차 및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5조부터 제10조까지).

(1) 안전감찰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제5조).

(2) 안전감찰 편성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함(제6조).

(3) 안전감찰관의 의무를 신설함(제7조).

(4) 안전감찰 준비,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안전감찰 처분 및 감찰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안전감찰 처분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징계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제18조).

마. 안전감찰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 및 제23조).

바. 재난관리 의무 위반처분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

◆ **서울특별시규칙 제4428호****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45제1항” 을 “제45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만원” 을 “3만원” 으로, “지급” 을 “지급하거나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된 포상금 지급 신청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중 누수신고 포상금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누수신고 포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포상금 지급방법을 확대함.

(제63조제3항제2호 및 부칙 제2조)

－ 포상금액 상향: (현행) 2만원 → (개정) 3만원

－ 지급방법 확대: (현행) 교통카드 등 물품을 등기우편으로 지급

→ (개정) 모바일상품권 지급방법 추가

나. 그 밖에 조항 내 오기를 정정함(제63조제1항).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69호****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개정('21. 6.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여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나. 기존의 도로명주소 외에 버스택시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의 사용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다.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라.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연임 등 임기, 회의 소집, 직무대행, 간사, 회의록 작성·관리,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시청 5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33-5815, FAX: 02-2133-0776, E-mail: bk0306@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96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5조의2항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부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자체조사 방법(안 제3조)

1) 실지조사 : 조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

2) 서면조사 :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조사

라. 자체조사계획 수립 및 통보(안 제4조)

1) 연간자체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함.

마. 자체조사실시 통보(안 제5조)

1) 자체조사에정일 7일전까지 자체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함.

2)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자체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에 조사계획을 통보하지 않음.

바.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범위(안 제6조)

사. 확인서 징구(안 제7조)

아. 자체조사 후 위반사항 발생 시 감사의뢰(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안전조사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조사과(전화: 02-3146-1641, FAX : 02-3146-1659, E-mail: hihyeonsu@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97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장

1. 개정이유

지역상생교류 사업 자문·심의를 위한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일부 미비된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2).
-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 위촉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 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의5).
- 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대외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담당관(전화: 02-2133-6655, FAX: 02-2133-0821, E-mail: jianlee@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98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폐지이유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지역개발에 대한 융자 등을 위해 설치한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으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 21.5.20. 시행)함에 따라, 본 규칙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전화: 02-2133-6866, FAX: 02-2133-0825, E-mail: yeon02@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폐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61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등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운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신설 및 사무 규정(안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나. 소방재난본부 부서간 소관사무 조정 및 관서 신설 등에 따른 119안전센터, 구조대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규정.

(1) 소방재난본부 사무 조정(안 제10조의2)

▶ 재난대응과 → 현장대응단(소방력 지원, 소방안전지도 구축·운영 사항)

▶ 안전지원과 → 예방과(소방재난안전 홍보 사항)

(2)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119안전센터, 구조대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규정(안 별표 2 및 별표 3)

(3) 도로명 주소 부여 등에 따라 소방관서 주소 현행화(안 별표 1 및 별표 2).

다.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와 소관업무 명확화(안 제73조 및 제74조).

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청년청(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의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함(안 제5조, 제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43조 및 제144조).

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간 업무협력 및 일반대학원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반대학원에 부원장을 두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 6732, FAX: 02-2133-0822, E-mail: kairos16@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61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자치경찰제 시행, 소방 분야별 기준인력 보강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신설에 따른 증원(36명) 및 이관(7명).

나. 화재진압·구조 등 소방 분야별 현장 부족인력 확충, 관서 신설 등 소방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193명) 및 이관(6명).

다. 의정활동 지원(5명), 생태독성 검사(1명)를 위한 증원.

라. 아리수 수질향상·공정 효율화를 위한 아리수정수센터 정원 조정.

－ 시설관리8급 △8 → 공업연구사 +8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 6732, FAX: 02-2133-0822, E-mail: kairos16@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48호

천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6호(2020.2.13.)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천왕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으로, 향골지구 내 생태숲, 책읽터, 도시농업체험장 및 천왕골지구 내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함임

2. 위 치 : 구로구 향동 148번지 및 천왕동 173번지 일대

3. 공원면적 : 61,940.4㎡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4) 및 구로구청 녹색도시과(☎860-2321)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천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지구별 총괄표

1. 총괄표 (위치 : 구로구 천왕동 173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87,860.00	13,861.12	1	335.52	335.52	90	61,940.40	18,853.18	5	1,201.95	1,201.95	105	감 525.919.6㎡
공원시설 구역	소계	31,711.00	9,600.51	1	335.52	335.52	45	61,940.40	18,853.18	5	1,201.95	1,201.95	105	증 30,229.4㎡
	천왕골 지구	4,161.00	1,585.49				14	9,908.00	1,792.00				21	증 5,747.0㎡
	항골지구	27,550.00	8,015.02	1	335.52	335.52	31	52,032.40	17,061.18	5	1,201.95	1,201.95	84	증 24,482.4㎡
시설지구 외		556,149.00	4,260.61				45							구역 전환
시설지구율 (법정20%이하)		(31,711.00 / 587,860.00) × 100% = 5.39%								(18,853.18/ 61,940.40) × 100% = 30.44%				
시설률 (법정20%이하)		(13,861.12 / 587,860.00) × 100% = 2.36%						시설률 (법정40%이하)		(18,853.18/ 61,940.40) × 100% = 30.44%				
건폐율 (법정4%이하)		(335.52 / 31,711.00) × 100% = 1.06%						건폐율 (법정15%이하)		(1,201.95 / 61,940.40) × 100% = 1.94%				증 0.88%

천왕근린공원(천왕골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구로구 천왕동 173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161.00	1,585.49				14	9,908.00	1,792.00				21	증 5,747.00㎡
기 반 시 설	소 계	418.40	418.40					1,087.10	1,087.10					증 668.70㎡
	도 로	418.40	418.40					1,087.10	1,087.10					증 668.70㎡
조 경 시 설		837.97	837.97					426.70	426.70				18	감 411.27㎡
휴 양 시 설		38.56	38.56				11	40.00	40.00				1	증 1.44㎡
유 희 시 설								89.40	89.40				2	증 89.40㎡
교 양 시 설		290.56	290.56				3	-	-					감 290.56㎡
편 익 시 설								148.80	148.80					증 148.80㎡
녹지 및 기타		2,575.51						8,116.00						증5,540.49㎡

2. 시설조서(천왕골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4,161.00	1,585.49					14			9,908.00	1,792.00					21	
기반 시설	소계			418.40	418.40								1,087.10	1,087.10						
	도로			418.40	418.40								1,087.10	1,087.10						변경
조경 시설	소계			837.97	837.97								426.70	426.70					18	
	체험텃밭-1	가-1	천왕동 173번지 일대	408.87	408.87															폐지
	체험텃밭-2	가-2	천왕동 173번지 일대	429.10	429.10															폐지
	저류습지										라		322.70	322.70						
	저류습지-1										라-1	천왕동173답	(51.10)	(51.10)						신설
	저류습지-2										라-2	천왕동174답	(58.60)	(58.60)						신설
	저류습지-3										라-3	천왕동174답	(66.00)	(66.00)						신설
	저류습지-4										라-4	천왕동174답외	(147.00)	(147.00)						신설
	계류										마	천왕동173답외	48.60	48.60						신설
	관찰데크										바	천왕동174답	55.40	55.40						신설
	돌무더기										①								2	신설
	그루터기의자										②								8	신설
휴양 시설	통나무의자										③								6	신설
	목교										④								2	신설
	소계			38.56	38.56								40.00	40.00					1	
	휴게쉼터	나	천왕동 173번지 일대	38.56	38.56															폐지
	전통정자					목재				1										폐지
	파고라					목재				1										폐지
	평의자					목재				3										폐지
	등의자					목재				6										폐지
쉼터										사	천왕동173-1외	40.00	40.00						신설	
	초정									⑤	천왕동173-1대								1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치 시설	소계			-	-								89.40	89.40					2	
	생태놀이터									아	천왕동173 답	89.40	89.40							신설
	모험놀이대									⑥	천왕동173 답								1	신설
	움집									⑦	천왕동173 답								1	신설
교양 시설	소계			290.56	290.56					3										
	숲속교실	다	천왕동 173번지 일대	290.56	290.56															폐지
	단상					화강석				1										폐지
	통석의자					화강석				2										폐지
편의 시설	소계			-	-								148.80	148.80						
	주차장									자	천왕동산25 -14	148.80	148.80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2,575.51									8,116.00							
	녹지			2,575.51									8,116.00							

천왕근린공원(항골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구로구 향동 148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7,550.00	8,015.02	1	335.52	335.52	31	52,032.40	17,061.18	5	1,201.95	1,201.95	84	증 24,482.40㎡
기 반 시 설	소 계	4,707.22	4,707.22					8,504.08	8,504.08					증 3,796.86㎡
	도 로	4,444.42	4,444.42					7,480.28	7,480.28					증 3,035.86㎡
	광 장	262.80	262.80					1,023.80	1,023.80					증 761.00㎡
조 경 시 설								2,030.90	2,030.90				26	증 2,030.90㎡
휴 양 시 설		2,403.00	2,403.00				30	2,919.90	2,919.90				53	증 516.90㎡
유 희 시 설								89.10	89.10				2	증 89.10㎡
교 양 시 설								336.60	336.60	1	290.43	290.43		증 366.60㎡
편 익 시 설		177.60	177.60					711.10	711.10	1	216.00	216.00		증 533.50㎡
관 리 시 설		727.20	727.20	1	335.52	335.52	1	742.20	742.20	1	335.52	335.52	1	증 15.00㎡
도시농업시설								1,727.30	1,727.30	2	360.00	360.00	2	증 1,727.30㎡
녹지 및 기타		19,534.98						34,971.22						증 15,436.24㎡

2. 시설조서(항공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27,550.00	8,015.02		1	335.52	335.52	31			52,032.40	17,061.18		5	1,201.95	1,201.95	84	
기반 시설	소계			4,707.22	4,707.22						소계		8,504.08	8,504.08						
	도로			4,444.42	4,444.42						도로		7,480.28	7,480.28						변경
	광장			262.80	262.80						광장		1,023.80	1,023.80						변경
	회전광장 -1	자-1	149-1공	(86.10)	(86.10)						자-1	149-1공	(86.10)	(86.10)						
	회전광장 -2	자-2	149-1공	(70.50)	(70.50)						자-2	149-1공	(78.60)	(78.60)						변경
	회전광장 -3	자-3	149-1공	(106.20)	(106.20)						자-3	149-1공	(70.80)	(70.80)						변경
	중앙광장										자-4	149잡	(152.80)	(152.80)						신설
	진입광장 -1										자-5	145-1전외	(49.00)	(49.00)						신설
	진입광장 -2										자-6	145-1전외	(586.50)	(586.50)						신설
조경 시설	소계										소계		2,030.90	2,030.90					26	
	잔디광장 -1										가-1	149잡	180.40	180.40						신설
	잔디광장 -2										가-2	산43-1	289.80	289.80						신설
	잔디광장 -3										가-3	산43-1	168.70	168.70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잔디광장 -4										가-4	산43-1	461.30	461.30						신설
	저류습지										나		524.70	524.70						
	저류습지 -1										나-1	147-1전	(48.00)	(48.00)						신설
	저류습지 -2										나-2	147-1전	(110.00)	(110.00)						신설
	저류습지 -3										나-3	147-1전	(23.60)	(23.60)						신설
	저류습지 -4										나-4	147-2전	(58.90)	(58.90)						신설
	저류습지 -5										나-5	147-2전	(86.00)	(86.00)						신설
	저류습지 -6										나-6	148전 외	(198.20)	(198.20)						신설
	계류										다	148전 외	81.40	81.40						신설
	다랭이논 체험장										라	산43-1	147.00	147.00						신설
	정화연못										마	산43-1	77.90	77.90						신설
	관찰데크 -1										바-1	147-1전	46.40	46.40						신설
	관찰데크 -2										바-2	147-2전	23.40	23.40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찰데크-3										바-3	산43-1	29.90	29.90						신설	
	돌무더기									①									4	신설	
	그루터기 의자									②									12	신설	
	통나무의 자									③									8	신설	
	목교									④	147-2전								2	신설	
휴양 시설	소계			2,403.00	2,403.00					30	소계		2,919.90	2,919.90						53	
	야영장 (오토)-1	차-1	149-1공	408.50	408.50						차-1	149-1공	415.60	415.60							변경
	야영장 (오토)-2	차-2	149-1공	404.10	404.10						차-2	149-1공	404.10	404.10							
	야영장 (오토)-3	차-3	149-1공	405.70	405.70						차-3	149-1공	405.70	405.70							
	야영장 (일반)-4	차-4	산39-4임	1,184.70	1,184.70						차-4	산39-4임	1,186.30	1,186.30							변경
	쉼터-1										사-1	149잡	113.80	113.80							신설
	쉼터-2										사-2	149잡	245.60	245.60							신설
	쉼터-3										사-3	147-1전	14.00	14.00							신설
	쉼터-4										사-4	산43-1	37.00	37.00							신설
	쉼터-5										사-5	산43-1	32.90	32.90							신설
	쉼터-6										사-6	산43-1	34.00	34.00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등)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쉼터-7										사-7	산43-1	10.80	10.80						신설
	쉼터-8										사-8	산43-1	9.80	9.80						신설
	쉼터-9										사-9	산43-1	10.30	10.30						신설
	피크닉 테이블					목재			30	㉔					목재				30	
	데크쉼터 -1										㉕	149잡							1	신설
	데크쉼터 -2										㉖	149잡							1	신설
	야외테이 블										㉗	149잡							3	신설
	앉음벽										㉘	149잡							13	신설
	스텐드										㉙	149잡							1	신설
	초정										㉚	147-1전외							4	신설
유희 시설	소계										소계		89.10	89.10					2	
	생태놀이 터										타	147-1전	89.10	89.10						신설
	숲속놀이 대										㉛	147-1전							1	신설
	움집										㉜	147-1전							1	신설
교양 시설	소계										소계		336.60	336.60		1	290.43	290.43		
	책쉼터										1	14잡	336.60	336.60	종목	1	290.43	290.43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 시설	소계			177.60	177.60						소계		711.10	711.10		1	216.00	216.00		
	주차장-1	카-1	산39-4입	38.20	38.20						카-1	산39-4입	38.20	38.20						
	주차장-2	카-2	산39-4입	63.00	63.00						카-2	산39-4입	67.20	67.20						변경
	주차장-3	카-3	산39-4입	50.70	50.70						카-3	산39-4입	50.70	50.70						
	주차장-4	카-4	산39-4입	25.70	25.70						카-4	산39-4입	25.70	25.70						
	주차장-5										카-5	149잡외	55.30	55.30						신설
	주차장-6										카-6	146전	175.00	175.00						신설
	주차장-7										카-7	146전 외	83.00	83.00						신설
	카페및공 용공간										4	145-1전	216.00	216.00	철골조	1	216.00	216.00		신설
관리 시설	소계			727.20	727.20		1	335.52	335.52	1	소계		742.20	742.20		1	335.52	335.52	1	
	관리사무 소	아	산39-4입	683.20	683.20	철골조	1	335.52	335.52		아	산39-4입	690.00	690.00	철골조	1	335.52	335.52		변경
	분리배출 장	파	산39-4입	44.00	44.00					1	파	산39-4입	52.20	52.20					1	변경
도시 농업 시설	소계										소계		1,727.30	1,727.30		1	360.00	360.00	2	
	버티컬팜										2	145-1전	216.00	216.00	철골조	1	216.00	216.00		신설
	스마트온 실										3	145-1전	144.00	144.00	철골조	1	144.00	144.00		신설
	도시텃밭 -1										하-1	산43-1입	502.50	502.50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도시텃밭 -2										하-2	산43-1임	462.80	462.80						신설
	도시텃밭 -3										하-3	산43-1임	402.00	402.00						신설
	농기구보 관함										⑭	산43-1임							2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19,534.98									34,971.22							
	녹지			19,534.98									34,971.22							

3-1. 도로조서(천왕골지구)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165.5	418.4				
변경					476.9	1,087.10				
당초	산책로	소계			109.0	327.0				
변경					237.1	727.4				
당초		3류	1	3.0	109.0	327.0	진입로	부지경계	체험텃밭-1	
변경					221.0	663.0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7	
신설		3류	2	4.0	16.1	64.4	연결도로	소로3-1	주차장	
당초		소계			56.5	91.4				
변경					239.8	359.7				
당초		-	1	1.5	8.0	12.0	산책로	소3-1	숲속교실	
폐지										
당초		-	2	2.0	9.0	18.0	산책로	체험텃밭-1	체험텃밭-2	
폐지										
당초		-	3	2.0	6.0	12.0	산책로	숲속교실	체험텃밭-2	
폐지										
당초		-	4	2.0	11.5	23.0	산책로	체험텃밭-1	체험텃밭-2	
폐지										
당초		-	5	1.5	22.0	26.4	산책로	부지경계	체험텃밭-2	
폐지										
신설		-	6	1.5	66.4	99.6	산책로	소로3-1	생태놀이터	
신설		-	7	1.5	136.4	204.6	산책로	소로3-1	주차장	
신설		-	8	1.5	37.0	55.5	산책로	산책로-7	부지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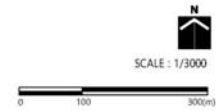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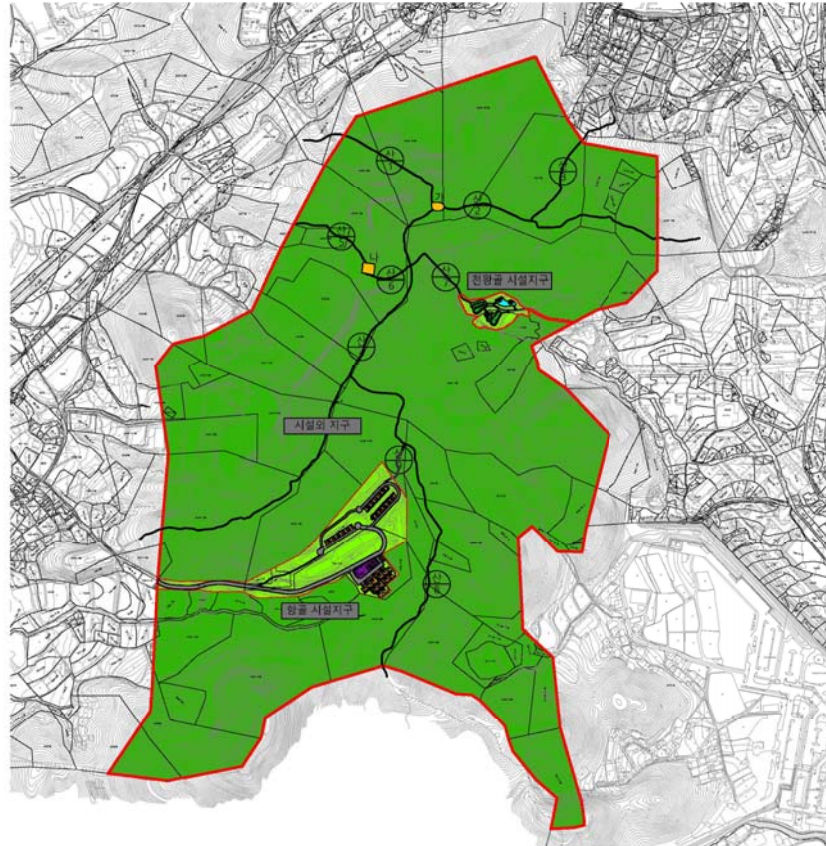
3-2. 도로조서(항공지구)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957.45	4,444.42				
변경					2,476.37	7,480.28				
당초	소로	소계			839.27	4,302.60				
변경					1,177.22	5,747.90				
당초		3류	1	6.0	442.37	2,654.20	연결도로	부지경계	회전광장 자-1	
당초		3류	7	4.0	154.95	619.80	연결도로	소로3-1	회전광장 자-2	
변경				4.0	156.95	627.80	연결도로	소로3-1	회전광장 자-2	
당초		3류	8	3.0	92.40	277.20	연결도로	회전광장 자-2	회전광장 자-3	
변경				4.0	87.20	348.80	연결도로	회전광장 자-2	회전광장 자-3	
당초		3류	9	4.0	59.25	237.00	연결도로	회전광장 자-1	회전광장 자-3	
변경				4.0	57.40	229.60	연결도로	회전광장 자-1	회전광장 자-3	
당초		3류	10	6.0	76.60	459.60	연결도로	소로3-1	관리사무소	
변경				6.0	75.60	453.60	연결도로	소로3-1	관리사무소	
당초		3류	11	4.0	13.70	54.80	연결도로	소로3-10	소로3-1	
신설		3류	2	3.5	12.40	43.40	연결도로	소로3-1	중앙광장 자-4	
신설		3류	3	4.0	52.70	210.80	연결도로	소로3-7	야영장(오토)-3	
신설		3류	4	6.0	11.80	70.80	연결도로	소로3-1	소로3-5	
신설		3류	5	6.0	81.60	489.60	연결도로	소로3-14	소로3-6	
신설		3류	6	3.0	117.00	351.00	연결도로	소로3-1	진입광장 자-5	
신설		3류	12	3.0	58.00	174.00	연결도로	소로3-6	산책로-15	
신설		3류	13	3.0	2.50	7.50	연결도로	소로3-6	산책로-12	
신설		3류	14	4.0	4.00	16.00	연결도로	소로3-5	진입광장 자-6	
신설		3류	15	4.0	4.00	16.00	연결도로	소로3-5	진입광장 자-6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계			118.18	141.82				
변경					1,299.15	1,732.38				
당초	산책로	-	5	1.2	118.18	141.82	산책로	소로3-1	회전광장 자-3	
변경				1.2	120.50	144.60	산책로	소로3-1	회전광장 자-3	
신설		-	1	1.2	7.75	9.30	산책로	소로3-1	산책로-2	
신설		-	2	1.2	60.40	72.48	산책로	산책로-3	중앙광장 자-4	
신설		-	3	1.2	51.00	61.20	산책로	산책로-10	중앙광장 자-4	
신설		-	4	1.2	46.00	55.20	산책로	중앙광장 자-4	산책로-7	
신설		-	6	1.2	14.75	17.70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7	
신설		-	7	2.0	31.75	63.50	산책로	산책로-4	중앙광장 자-4	
신설		-	8	1.2	3.50	4.20	산책로	관찰데크 바-1	산책로-10	
신설		-	9	1.2	81.50	97.80	산책로	소로3-1	관찰데크 바-1	
신설		-	10	1.2	66.00	79.20	산책로	산책로-9	소로3-1	
신설		-	11	1.2	112.00	134.40	산책로	항등146전	산책로-9	
신설		-	12	1.2	121.00	145.20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11	
신설		-	13	2.0	35.30	70.60	산책로	소로3-1	회전광장 자-2	
신설		-	14	1.2	35.00	42.00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12	
신설		-	15	1.5	204.40	306.60	산책로	소로3-6	산책로-12	
신설		-	16	1.5	141.40	212.10	산책로	소로3-12	소로3-6	
신설		-	17	1.5	25.00	37.50	산책로	산책로-16	진입광장 자-5	
신설		-	18	1.5	23.00	34.50	산책로	소로3-12	산책로-16	
신설		-	19	2.0	9.00	18.00	산책로	소로3-6	산책로-16	
신설		-	20	1.5	16.80	25.20	산책로	산책로-16	산책로-15	
신설		-	21	1.0	23.20	23.20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신설		-	22	1.0	19.60	19.60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신설		-	23	1.0	19.70	19.70	산책로	산책로-15	쉼터-5	
신설		-	24	1.0	22.60	22.60	산책로	산책로-15	소로3-12	
신설		-	25	2.0	4.00	8.00	산책로	소로3-5	진입광장 자-6	
신설		-	26	2.0	4.00	8.00	산책로	소로3-5	진입광장 자-6	

조성계획도(변경전)

천왕근린공원



■ 부지 및 시설지구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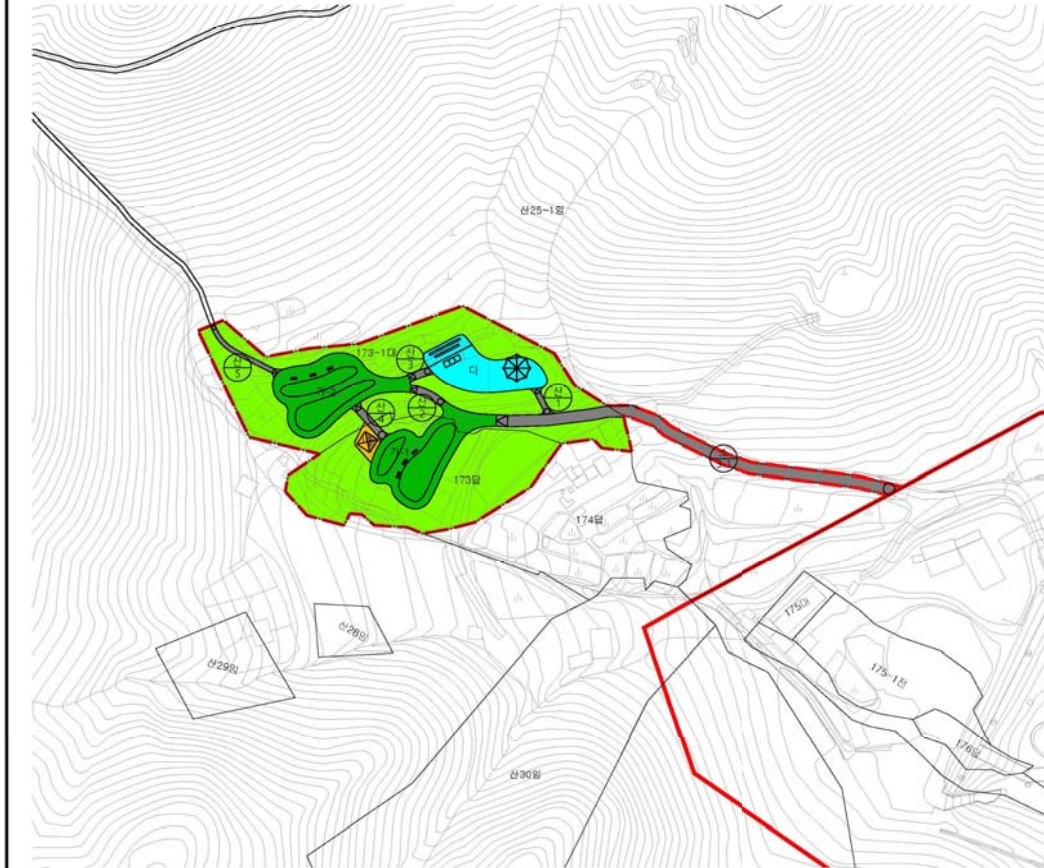
구 분	면적(m ²)	비고
부지면적	587,860.00	
왕골지구	27,550.00	4.69%
천왕골지구	4,161.00	0.71%

■ 시설지구 외 조서

구 분	기호	세 설 명	면적(m ²)	비고
부지면적	-		587,860.00	
기반시설	-	도로	3,704.60	
휴양시설	가	천왕원터	230.38	
	나	간이원터	325.63	
녹지 및 기타	-	녹지	551,888.39	

조성계획도(변경전)

천왕근린공원(천왕골지구)



KEYMAP



■시설경정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공정률(%)	건축면적(㎡)	비고
공원면적			4,161.00	14		
시설면적			1,585.49	14		시설률 38.10%
수계			4,161.00			
도로(소계)			418.40			
기-1		채형도로-1	408.87			
기-2		채형도로-1	425.10			
다		표계원화	38.56	11		
다		울리구설	290.56	3		
녹지			2,57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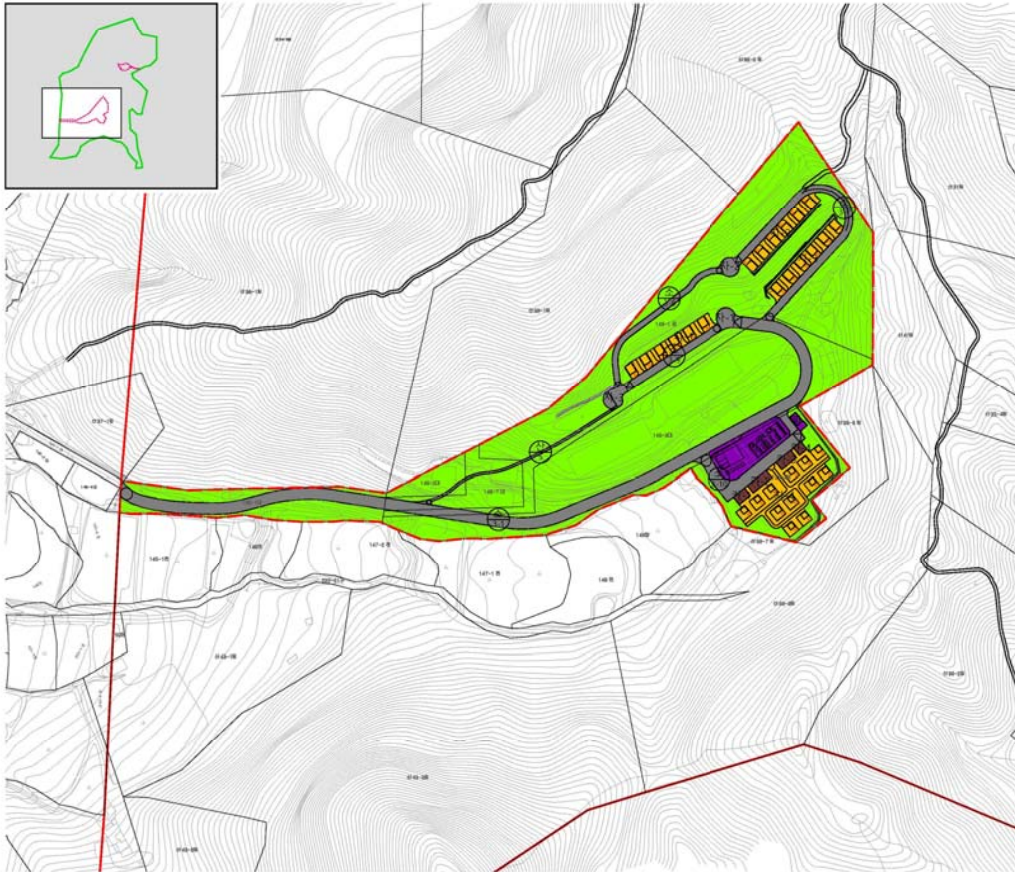
SCALE : 1/500



조성계획도(변경전)

천왕근린공원(항공지구)

KEYMAP



■시설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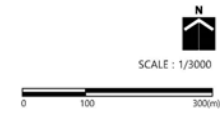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	공적용 (㎡)	건축면적(㎡)	비고
공원면적			27,550.00	31	335.52	335.52
시설면적			8,015.02	31	335.52	335.52 시설률 29.09%
도로 공용	소	계	4,707.22			
	도로(소계)		4,444.42			
	광장(소계)		262.80			
	자-1	화산광장-1	86.10			
	자-2	화산광장-2	70.50			
휴양시설	소	계	2,403.00	30		
	자-1	야영장(야영)-1	408.50			
	자-2	야영장(야영)-2	404.10			
	자-3	야영장(야영)-3	405.70			
	자-4	야영장(야영)-4	1,184.70			
변경시설	소	계	177.60			
	자-1	주차장-1	36.20			
	자-2	주차장-2	63.00			
	자-3	주차장-3	90.70			
	자-4	주차장-4	25.70			
관리시설	소	계	727.20	1	335.52	335.52
	아	관리사무소	683.20		335.52	335.52
	관리	관리사무소				
	관리	관리사무소				
	관리	관리사무소				
녹지 지	소	계	18,534.88			
	녹지(소계)		18,534.88			

SCALE : 1/500



조성계획도(변경후)

천왕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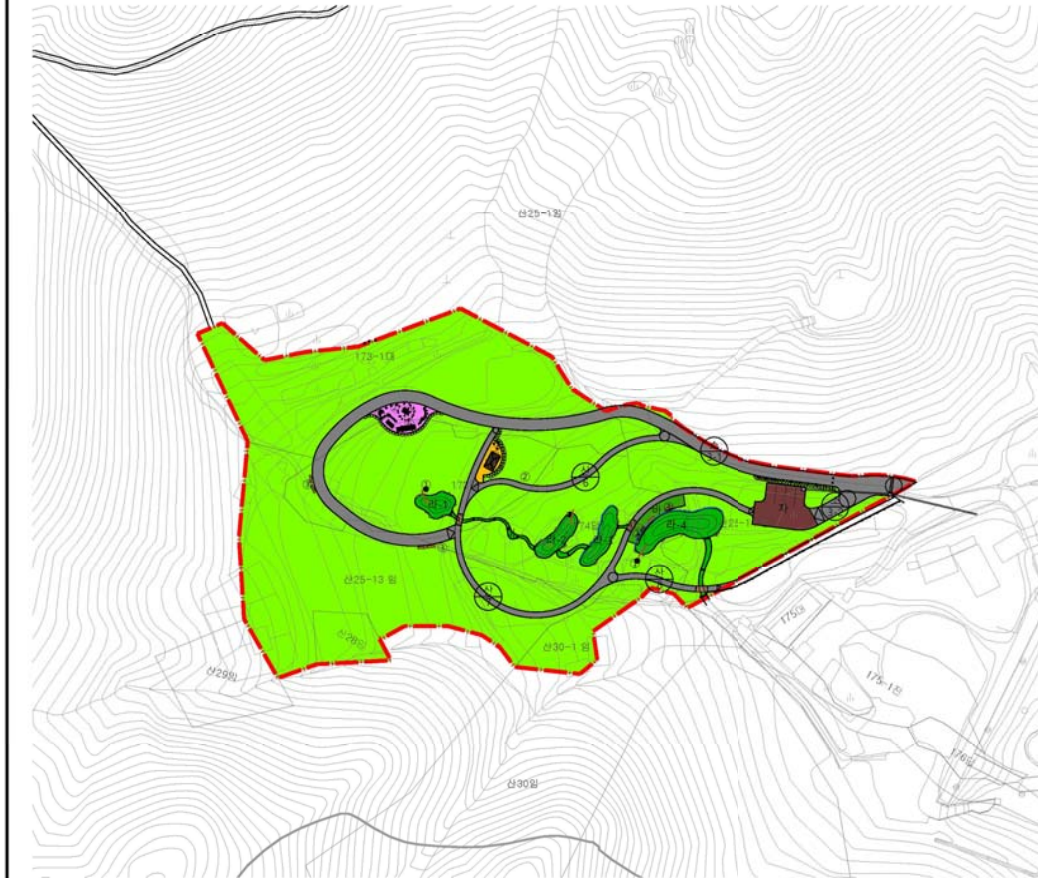


■ 부지 및 시설지구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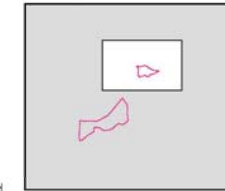
구 분	면적(m ²)	비고
부지면적	61,940.40	
천왕근린공원 시설지구	9,908.00	
천왕근린공원 용출지구	52,032.40	

조성계획도(변경후)

천왕근린공원(천왕골지구)



KEYMAP



시설결정조서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면적(㎡)	수량	단위면적(㎡)	비고
공원	공원	공원	5,908.00	21		
	시설면적	시설면적	1,792.00	21		시설률 18.08%
	소계	소계	1,087.10			
	도로(소계)	도로(소계)	1,087.10			
오류시설	소계	소계	426.70	18		
	차-1	차량승차-1	51.30			
	차-2	차량승차-2	56.00			
	차-3	차량승차-3	66.00			
	차-4	차량승차-4	147.00			
	차	차량	48.00			
	차	관찰대	55.40			
	차	물류차	2			
	차	크루즈기차	8			
	차	통나무차	6			
휴양시설	소계	소계	40.00	1		
	차	일터	40.00			
	차	조경	1			
문화시설	소계	소계	89.40	2		
	차	생태놀이대	89.40			
	차	조경놀이대	1			
편의시설	소계	소계	148.80			
	차	주식점	148.80			
	소계	소계	8,116.00			
복합시설	소계	소계	8,116.00			
	복합시설	복합시설	8,1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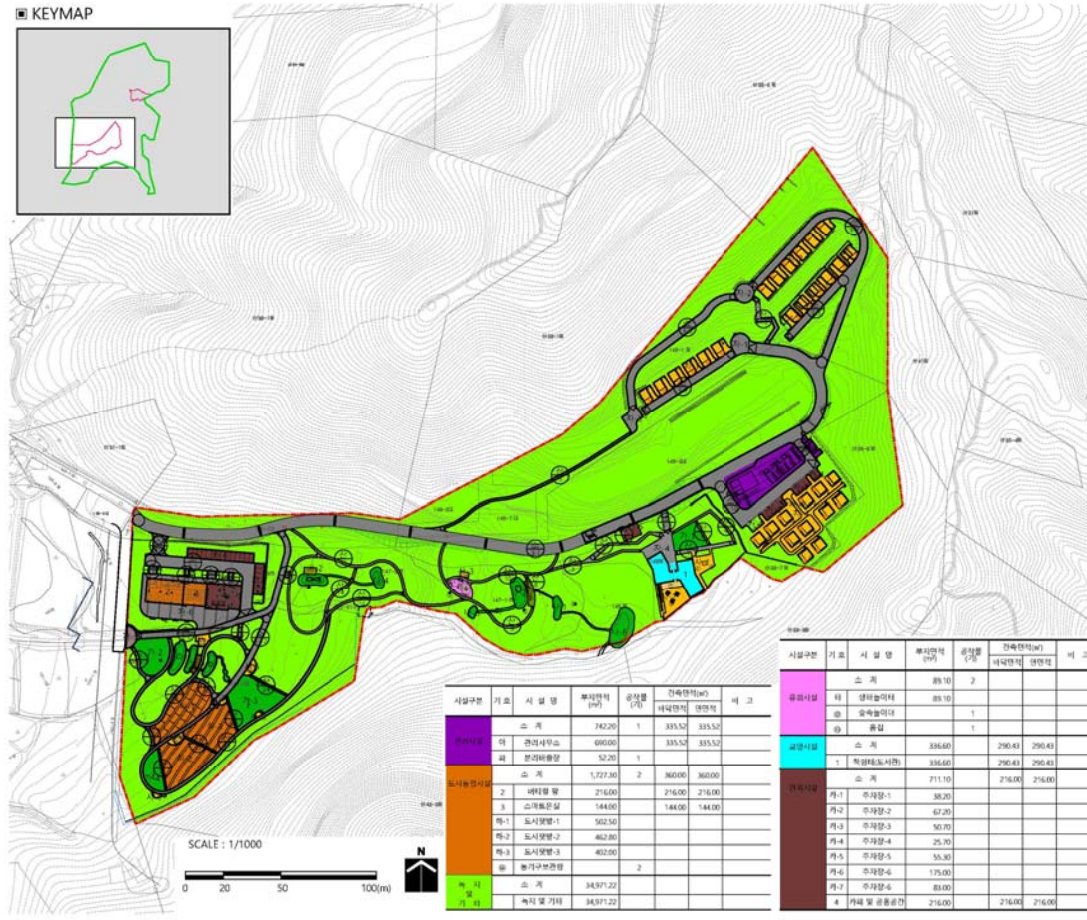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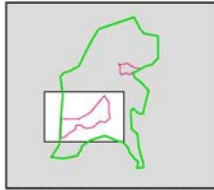
SCALE : 1/500



조성계획도(변경후)

천왕근린공원(항골지구)

KEYMAP



SCALE : 1/1000

0 20 50 100(m)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면적(㎡)	공적용(㎡)	건축면적(㎡)	비고
주거시설	소	주거	742.20	1	335.52	335.52
	대	관리사무소	600.00		335.52	335.52
노년생활공간	소	노년생활공간	52.20	1		
	소	노년생활공간	1,777.30	2	860.00	860.00
유아생활공간	소	유아생활공간	276.00		276.00	276.00
	소	유아생활공간	144.00		144.00	144.00
체육·문화·여가시설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502.50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862.80			
합계	소	합계	34,971.22	2		
	소	합계	34,971.22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면적(㎡)	공적용(㎡)	건축면적(㎡)	비고
유아생활공간	소	유아생활공간	89.10	2		
	소	유아생활공간	89.10			
노년생활공간	소	노년생활공간	336.60	290.43	290.43	
	소	노년생활공간	336.60	290.43	290.43	
주거시설	소	주거	771.10		276.00	276.00
	소	주거	88.20			
유아생활공간	소	유아생활공간	62.20			
	소	유아생활공간	50.70			
주거시설	소	주거	25.70			
	소	주거	55.30			
주거시설	소	주거	175.00			
	소	주거	81.00			
합계	소	합계	276.00		276.00	276.00
	소	합계	276.00		276.00	276.00

■시설결정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면적(㎡)	공적용(㎡)	건축면적(㎡)	비고
공공시설	소	공공시설	52,032.40	84	1,201.95	1,201.95
	소	공공시설	52,032.40	84	1,201.95	1,201.95
주거시설	소	주거	8,504.00			
	소	주거	8,504.00			
노년생활공간	소	노년생활공간	1,023.80			
	소	노년생활공간	1,023.80			
유아생활공간	소	유아생활공간	86.70			
	소	유아생활공간	86.70			
체육·문화·여가시설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75.80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75.80			
합계	소	합계	71,280.00			
	소	합계	71,280.00			
주거시설	소	주거	2,080.90	26		
	소	주거	2,080.90	26		
노년생활공간	소	노년생활공간	180.40			
	소	노년생활공간	180.40			
유아생활공간	소	유아생활공간	209.80			
	소	유아생활공간	209.80			
체육·문화·여가시설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168.70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168.70			
합계	소	합계	467.30			
	소	합계	467.30			
주거시설	소	주거	48.00			
	소	주거	48.00			
노년생활공간	소	노년생활공간	17.00			
	소	노년생활공간	17.00			
유아생활공간	소	유아생활공간	23.60			
	소	유아생활공간	23.60			
체육·문화·여가시설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58.90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58.90			
합계	소	합계	198.20			
	소	합계	198.20			
주거시설	소	주거	81.40			
	소	주거	81.40			
노년생활공간	소	노년생활공간	147.00			
	소	노년생활공간	147.00			
유아생활공간	소	유아생활공간	77.90			
	소	유아생활공간	77.90			
체육·문화·여가시설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86.40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86.40			
합계	소	합계	276.00			
	소	합계	276.00			
주거시설	소	주거	4			
	소	주거	4			
노년생활공간	소	노년생활공간	12			
	소	노년생활공간	12			
유아생활공간	소	유아생활공간	8			
	소	유아생활공간	8			
체육·문화·여가시설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2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2			
합계	소	합계	2,919.90	53		
	소	합계	2,919.90	53		
주거시설	소	주거	475.60			
	소	주거	475.60			
노년생활공간	소	노년생활공간	404.10			
	소	노년생활공간	404.10			
유아생활공간	소	유아생활공간	405.70			
	소	유아생활공간	405.70			
체육·문화·여가시설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1,186.30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1,186.30			
합계	소	합계	17,130.00			
	소	합계	17,130.00			
주거시설	소	주거	245.60			
	소	주거	245.60			
노년생활공간	소	노년생활공간	74.00			
	소	노년생활공간	74.00			
유아생활공간	소	유아생활공간	37.00			
	소	유아생활공간	37.00			
체육·문화·여가시설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32.90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32.90			
합계	소	합계	144.00			
	소	합계	144.00			
주거시설	소	주거	9.00			
	소	주거	9.00			
노년생활공간	소	노년생활공간	10.80			
	소	노년생활공간	10.80			
유아생활공간	소	유아생활공간	1			
	소	유아생활공간	1			
체육·문화·여가시설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3			
	소	체육·문화·여가시설	3			
합계	소	합계	13			
	소	합계	13			
주거시설	소	주거	1			
	소	주거	1			
노년생활공간	소	노년생활공간	4			
	소	노년생활공간	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14.3.27)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7호(‘18.6.7)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72호(2018.11.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호(2020.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287호(2021.4.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열람 공고한 “다시세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녹지)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 변경결정(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항(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	30	집산 도로	1,800 (464)	시청앞광장	을지로6가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을지로, 대림상가 ~ 삼풍상가 (을지로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6.0m~10.6m)
기정	중로	1	29	20	집산 도로	1,450 (459)	저동1가	광희동광장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3.26)	마른내길, 호텔PJ ~ 신성상가 (마른내길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3.5~44.2m)
기정	중로	2	126	4~19	집산 도로	850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삼풍상가 ~ 진양상가 서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3.0~15.0m)
기정	중로	2	127	19	집산 도로	780	종로3가 32-8	충무로4가 11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삼풍상가 ~ 진양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결정 (폭4.0~15.0m)

※ 을지로 지하보도와 대림상가 지하층 연결통로 개설

2)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지하도로)	인현동2가 57-3	2,231.9 (466.8)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중복결정
			경관녹지 (보행자전용도로)		2,231.9 (208.9)		중복결정

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녹지) 실시계획(변경)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8-34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녹지)
 - 명칭 : 다시·세운프로젝트
-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① 도시계획시설(1층 도로), 보행자전용도로(3층 보행데크) (변경없음)
 - ②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① 도시계획시설(녹지) - 지하도로(연결통로) (변경없음)
 - ② 도시계획시설(녹지) - 보행자전용도로(변경없음)
 - ③ 소유권 외의 권리(영업권)

물건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조서 : 1번~3번 변경없음

아래항 사업구간에 따른 영업권 조서 추가

4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5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57.11㎡)	제이에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5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5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6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42.26㎡)	디자인 아라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6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물건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7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24.97㎡)	진학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7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7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8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45.97㎡)	인디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8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8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0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16.51㎡)	서현미용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0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9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1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32.75㎡)	풍전토산품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1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10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5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22.74㎡)	아이콘애드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5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11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7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13.14㎡)	리빙랩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7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1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8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81.66㎡)	하로앤이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8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경미한변경) (변경없음)

8)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 해당없음

다.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신청사11층)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시세운관리팀 ☎ 02-2133-85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1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호(1996.1.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62호(2010.12.1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4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5-28호(2015.07.16.)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17호(2016.10.13.)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2호(2021.02.18.)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된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12.0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미개설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 체험시설 위주의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계동, 하계동 일원	1,431,637.7	-	1,431,637.7	서고시 제1995-394호 (1996.1.9.)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학교	중학교	하계동 252-6호 일원	14,063.6	감)14,063.6	-	건고시547 (1989.9.2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㉑	학교	감) 14,063.6㎡ (14,063.6㎡ → 0㎡)	○ 미개설 학교시설의 토지이용효율 도모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사회복지시설	하계동 252-6호 일원	-	증) 14,063.6	14,063.6	-	

□ 건축물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18m 이하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증) 14,063.6㎡ (0㎡ → 14,063.6㎡)	○ 영유아 및 청소년을 위한 체험시설 위주의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기 위함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하계동 252-6호 일원	-	증) 14,063.6	14,063.6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하계동 252-6호 일원	
면적(㎡)		○ 14,063.6㎡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획지계획	획지분할가능선	○ 하계동 252-6번지 내 획지분할가능선 계획	
건축물 용도 (A)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내 설치가능한 용도에 한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내 설치가능한 용도에 한함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m)	○ 18m 이하	
기타 사항	건축한계선	○ 도로변으로부터 3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대지내 공지	○ 대상지내 개설된 도로 보차혼용통로(1개소) 조성 ○ 주변 도로와 연결되는 공공행동로(1개소) 조성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세부개발계획	○ 대상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지역생활에 필요한 SOC등 상위계획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반영	

3. 위 변경 이외에는 변경사항 없음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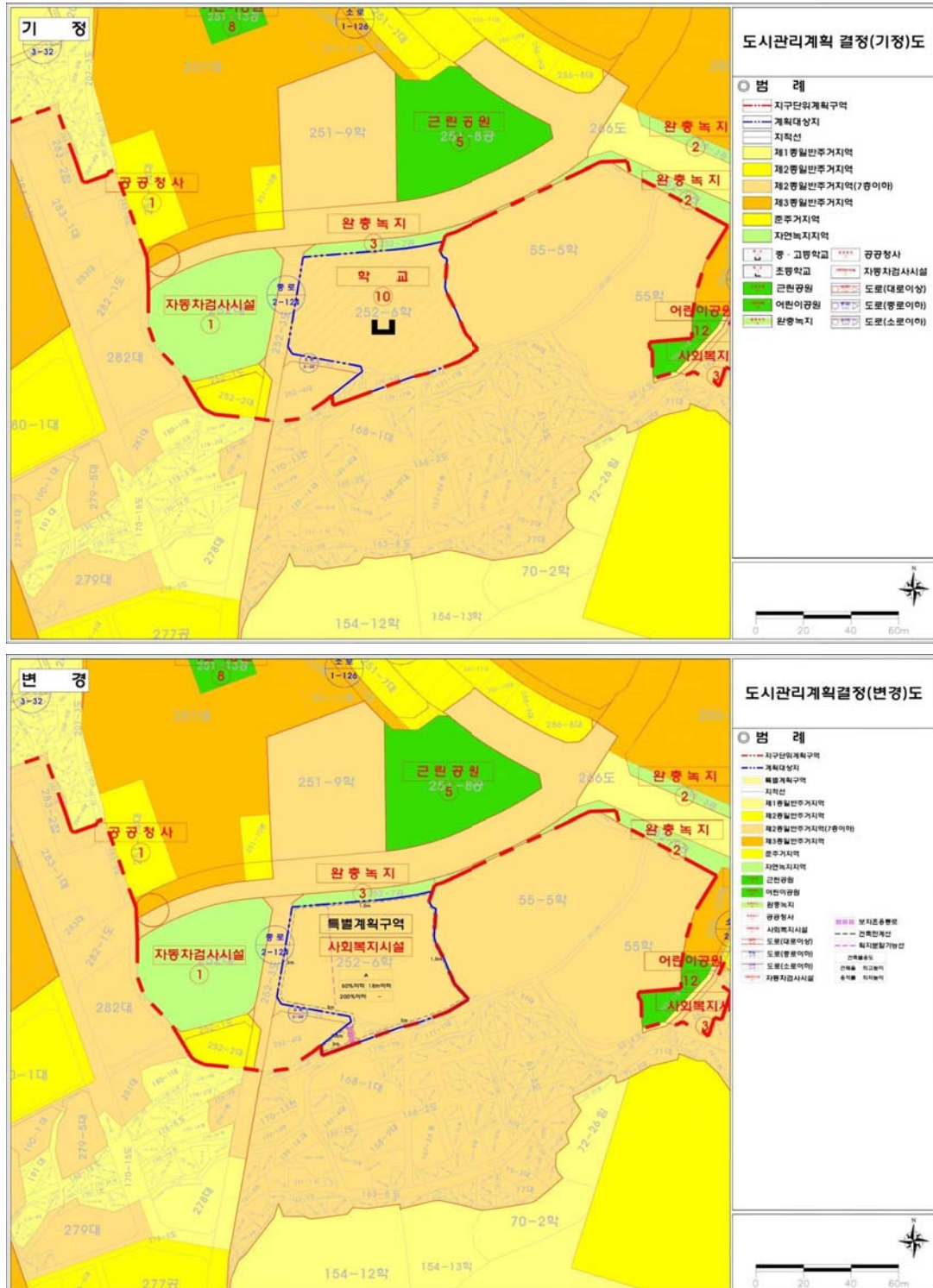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고시된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3) 및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6)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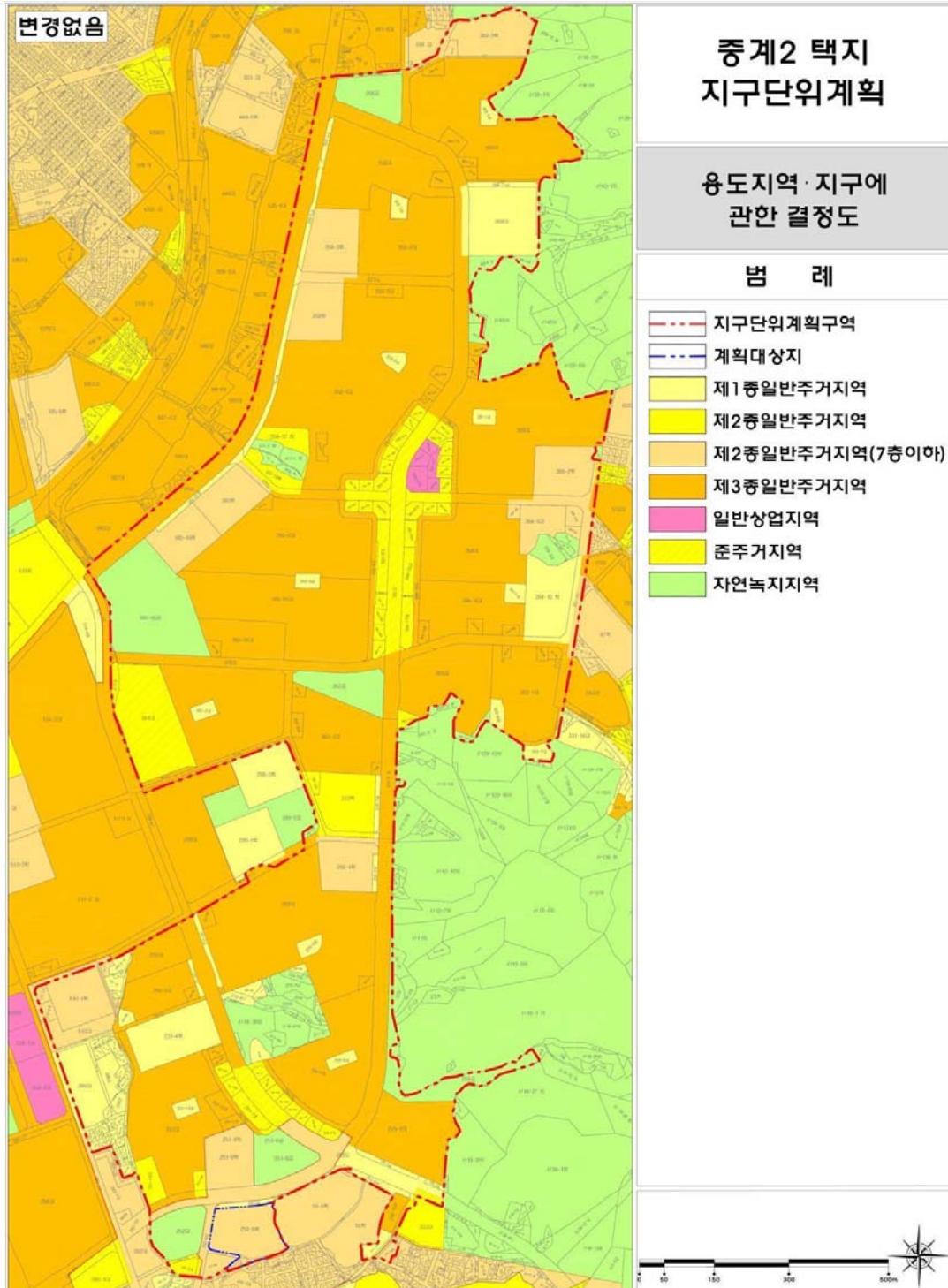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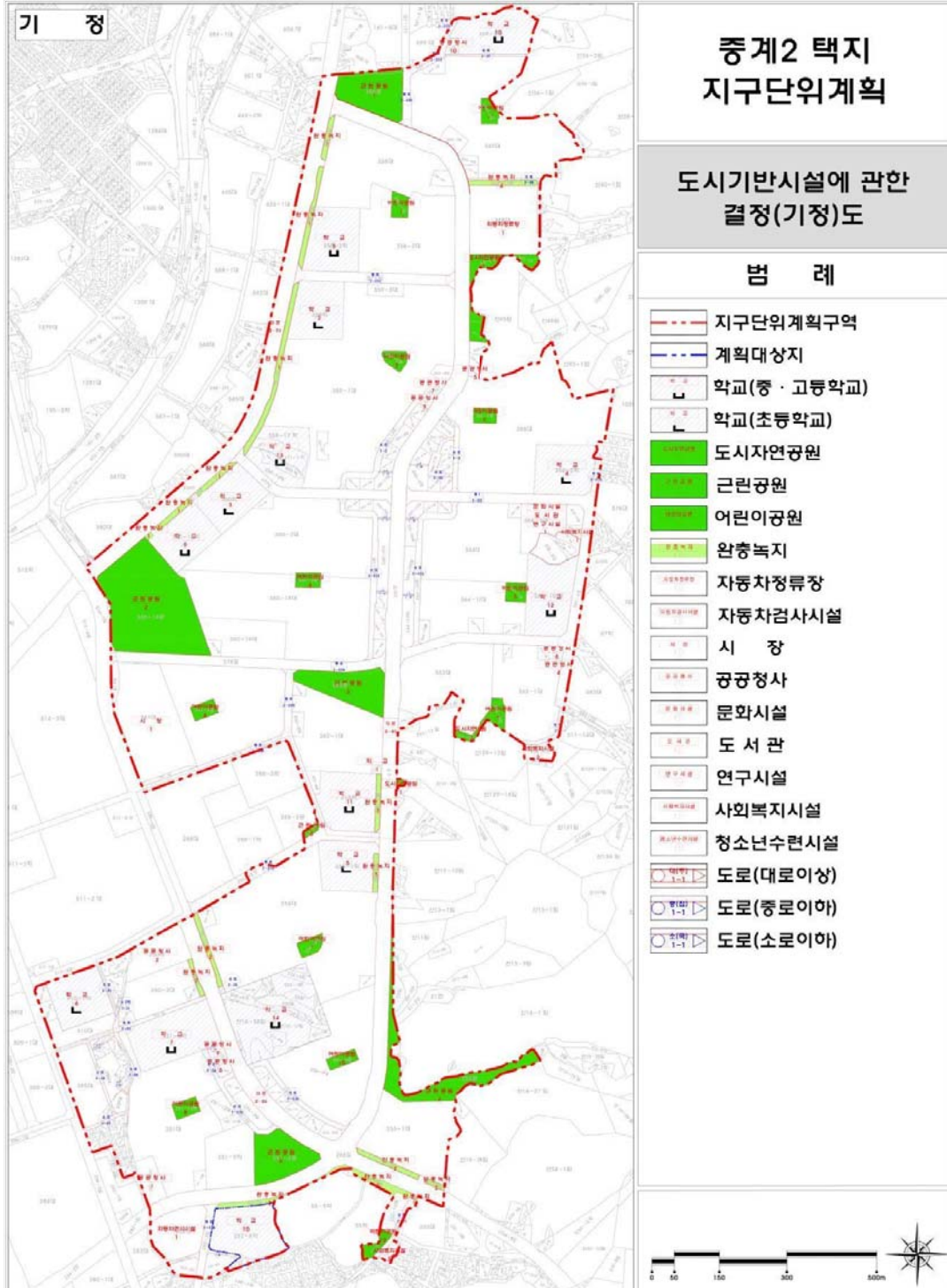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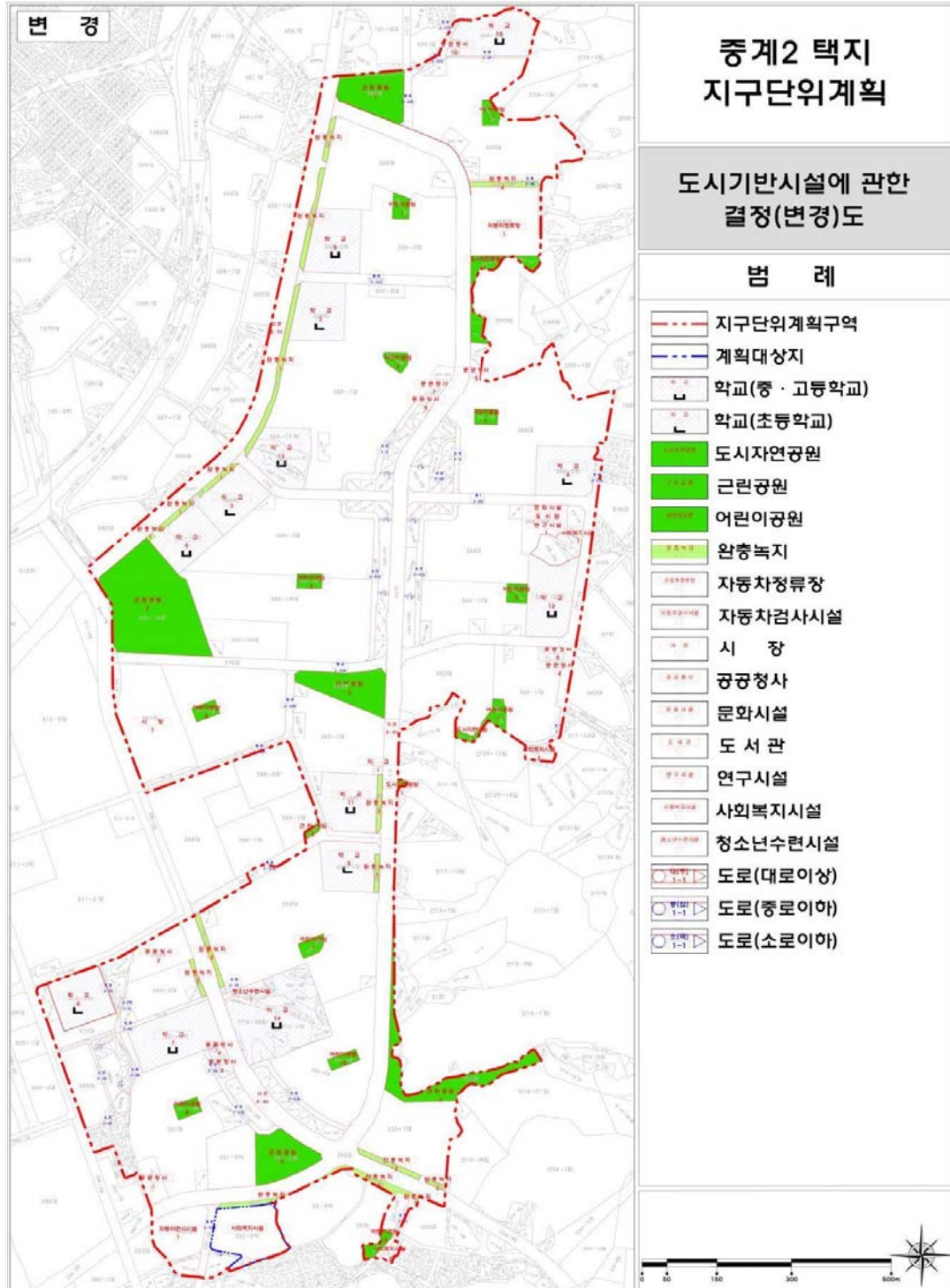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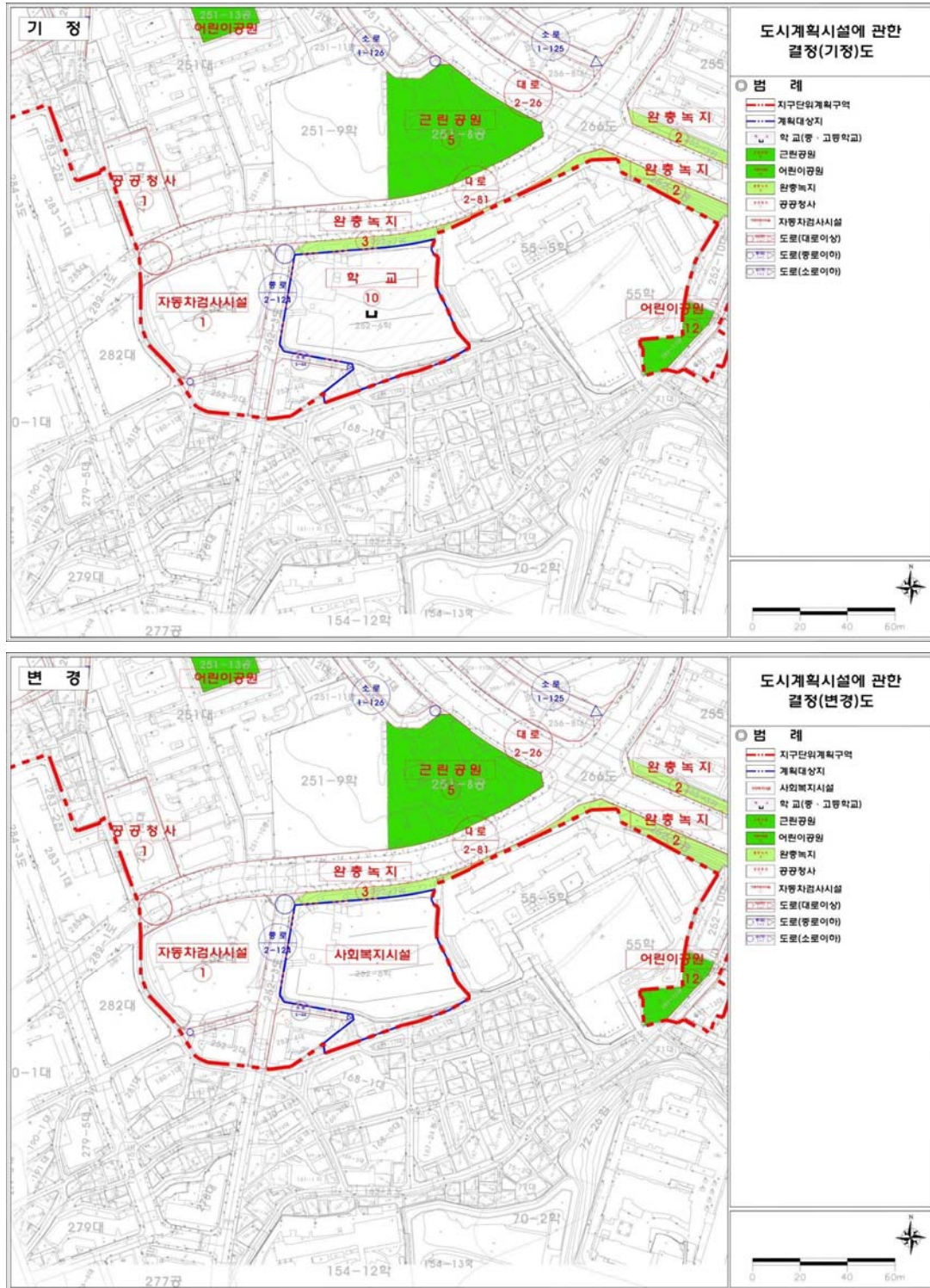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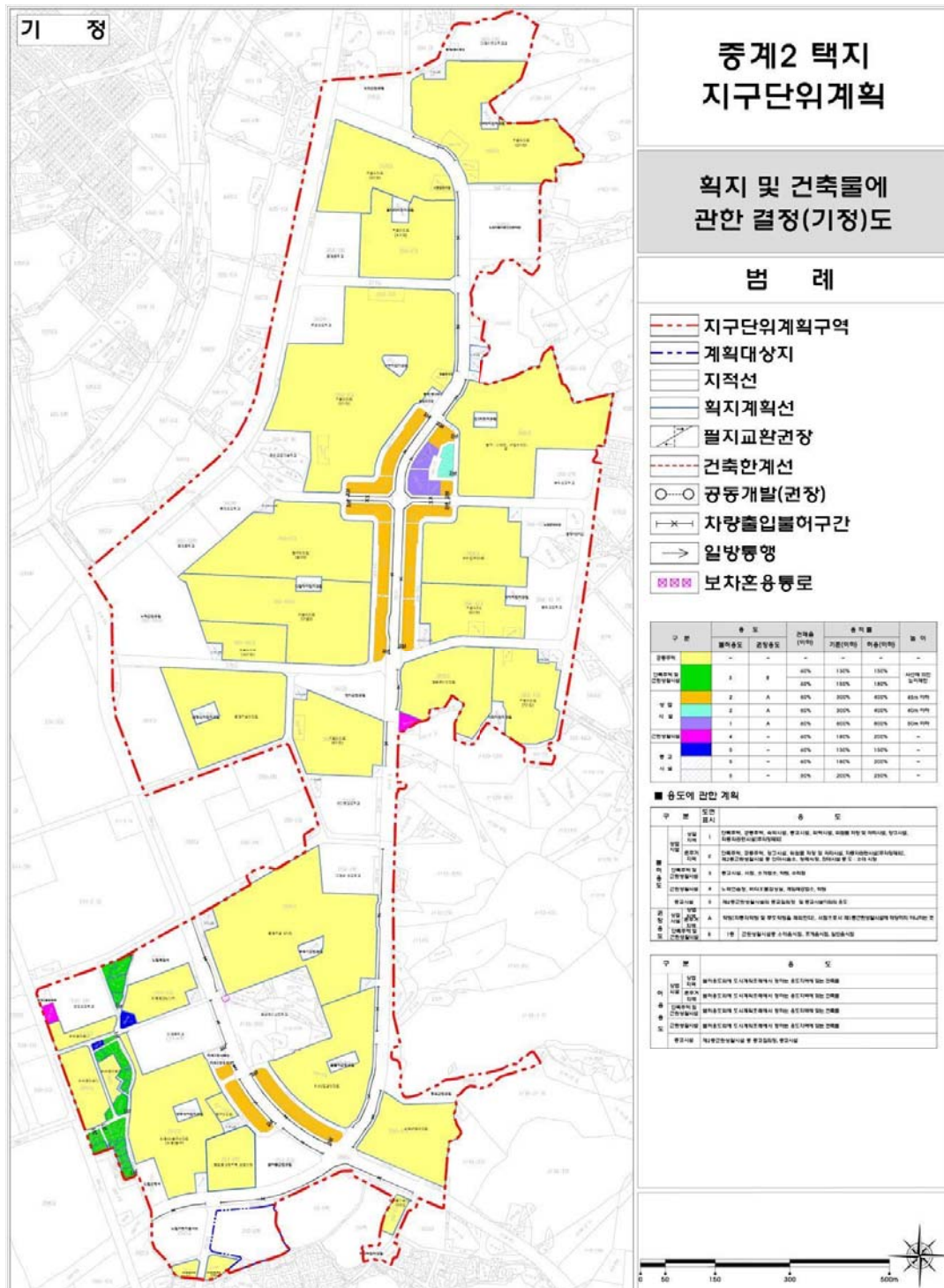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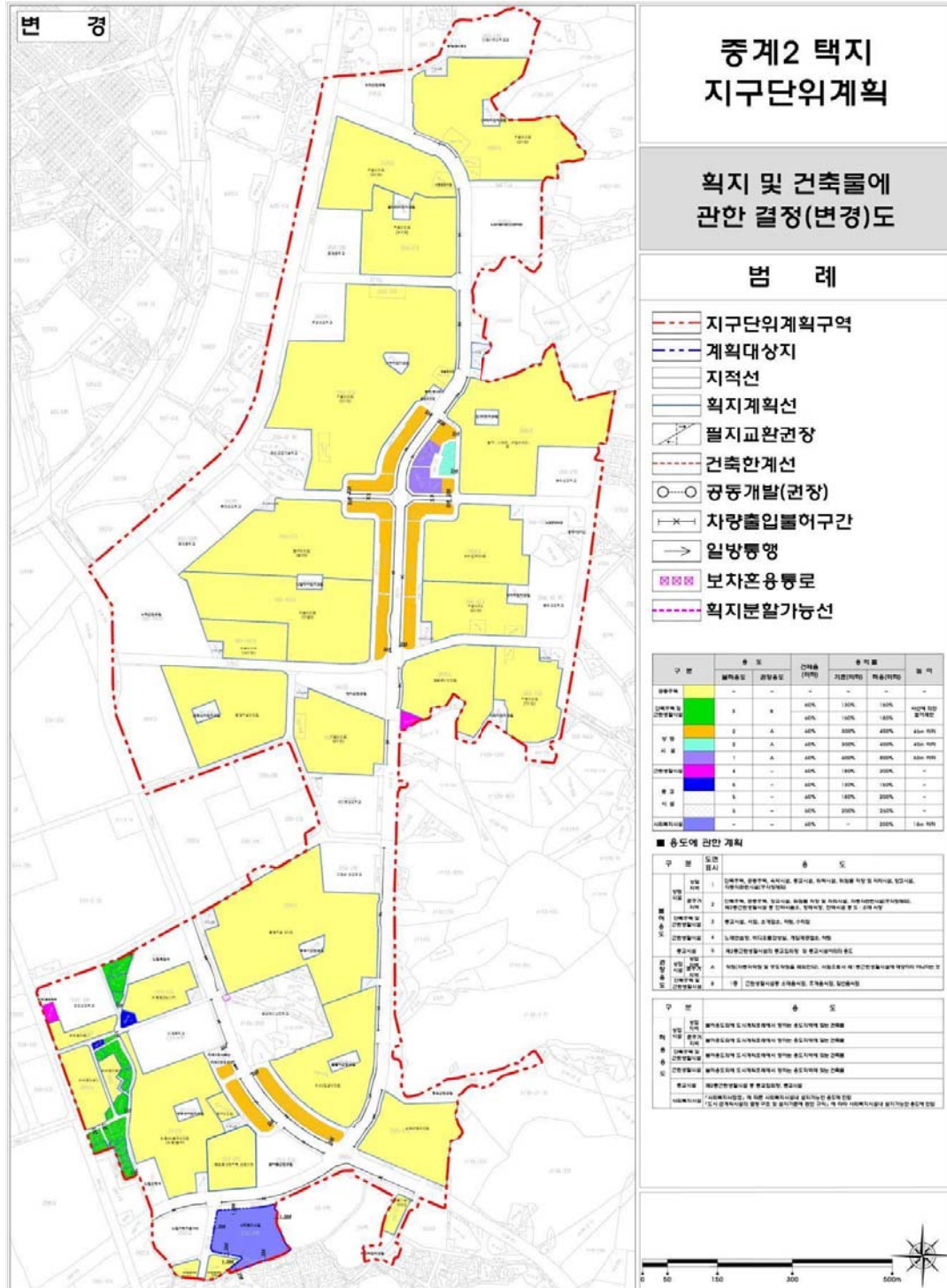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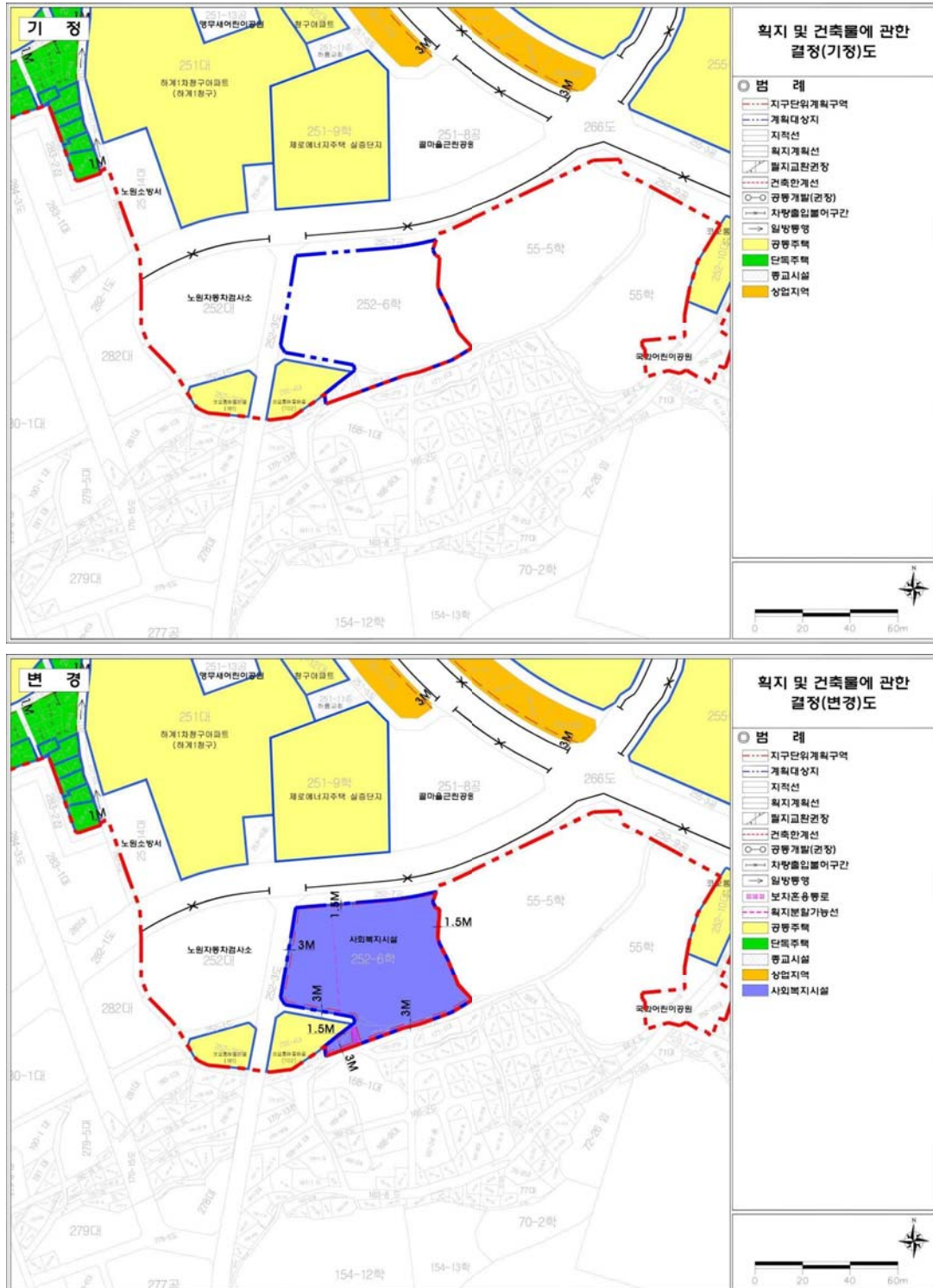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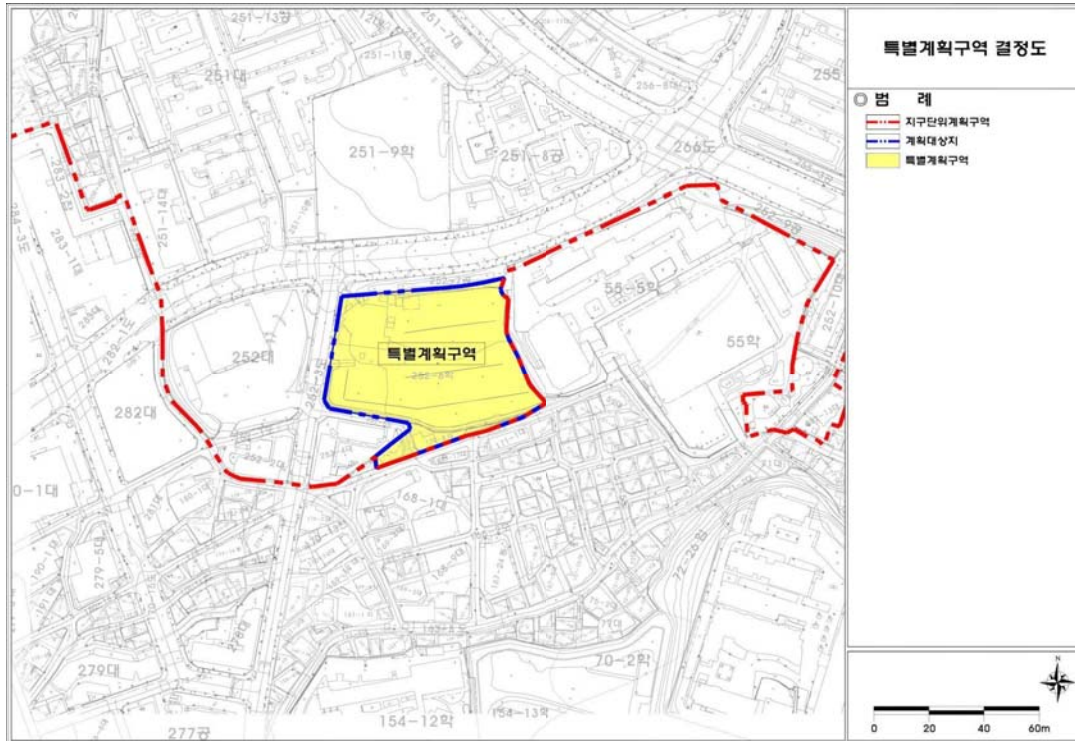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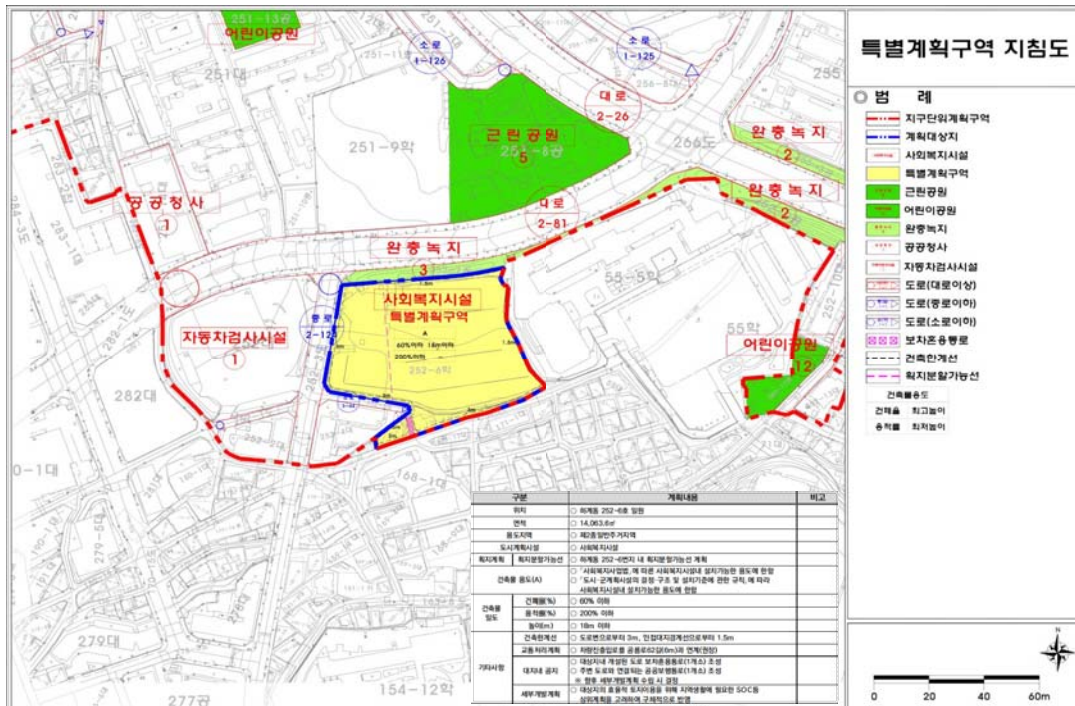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 지침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2호

2020년도 제2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2021년도 제2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 기타물건 28건
 - 기계장비 1건, 차량 16건, 항공기 1건,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0건
- 변경결정 현황

구 분		합계	수시조정 내용		
			신규	인상	인하
기 타 물 건		28	27	0	1
	기계장비	1	-	-	1
	차량	16	16	-	-
	항공기	1	1	-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0	10	-	-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세부내역 붙임

3. 변경고시 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 변경 상세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http://news.seoul.go.kr/gov/statutory_standard_price#list/1

(찾아가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자료실 ⇒ 세금 ⇒ 시가표준액표 (건물, 기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장비, 일부차량에 관한 적용례) 기계장비 및 일부차량(형식 222160)은 2021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 임 2021년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끝.

붙임	기타물건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기계장비(1건)

(단위 : 천원)

연번	제작회사	기종명	기준가격		조정액
			조정전	조정후	
91	일본기계장비 (NIPPON SHARYO)	DHP85-2	2,800,000	570,000	△2,230,000
(조정사유) 최초 산정방식 오류 및 관련 자료 부족으로 인한 기준가격 정정					

□ 차량(16건)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현행	조정
신규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산	승용	MERCEDES-BE NZ	S500L	222160	-	113,80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가. 국산	이륜	대림오토바이	CA100P	CB5	-	2,05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가. 국산	이륜	대림오토바이	CA100P	CB5	-	2,05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가. 국산	이륜	대림오토바이	CB115P	XCH	-	2,16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가. 국산	이륜	대림오토바이	VF100P	TCG	-	1,89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산	이륜	HONDA	NSC110	JK03	-	2,24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산	이륜	HONDA	CB1300D C	SC38	-	11,60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산	이륜	HONDA	CB1300D C	SC38	-	11,60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산	이륜	HONDA	CG125	WH125- 19	-	1,95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산	이륜	HONDA	CMX500 A	PC56	-	8,45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산	이륜	HONDA	WW125A	JK05E	-	3,66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산	이륜	HONDA	WW125	JK05E	-	3,66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산	이륜	YAMAHA	GPD125A	SEG5	-	3,59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산	이륜	YAMAHA	MTN320A	RH12	-	5,85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산	이륜	HAOJUE	HJ125T- 21	LC6	-	2,440
신규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산	이륜	LEXUS	GS300	JZS160L	-	62,360

□ 항공기(1건)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제작회사	기종 및 형식	정원 (명)	최대이륙중량 (kg)	내용 연수	기준가격	
							현행	조정
신규	다. 고정익	AIRBUS	A321-200 NEO	180	93,500	15	-	39,315,160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10건, 신규)

(단위 : 천원)

소재지1	소재지2	소재지3	소재지4	명칭	구분1	구분2 (분양금액)	기준가격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76	몬드리안 서울	개인	10,000	9,00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76	몬드리안 서울	법인	10,000	9,00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76	몬드리안 서울	개인2인	15,000	13,50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76	몬드리안 서울	가족3인	20,000	18,00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76	몬드리안 서울	법인 기명1인/무기명1인	20,000	18,00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76	몬드리안 서울	법인 기명1인/무기명2인	30,000	27,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페어몬트 피트	개인	20,000	18,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페어몬트 피트	가족 2인	30,000	27,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페어몬트 피트	법인 1인	20,000	18,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페어몬트 피트	법인 2인	30,000	27,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3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 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2008. 12.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2009. 3. 12.), 제2009-308호(2009. 8. 6.), 제2009-341호(2009. 9. 10.), 제2009-517호(2009. 12. 17.), 제2010-195호(2010. 5. 21.), 제2010-290호(2010. 8. 5.), 제2011-97호(2011. 4. 21.), 제2011-186호(2011. 7. 7.), 제2012-171호(2012. 7. 5.), 제2012-194호(2012. 7. 26.), 제2012-243호(2012. 9. 13.), 제2013-111호(2013. 4. 4.), 제2013-197호(2013. 6. 27.), 제2014-29호(2014. 1. 23.), 제2014-130호(2014. 4. 3.), 제2014-284호(2014. 8. 7.), 제2014-395호(2014. 11. 20.), 제2017-306호(2017. 8. 17.), 제2017-381호(2017. 10. 26.), 제2018-172호(2018. 5. 31.), 제2020-156호(2020. 4. 16.), 제2020-176호(2020. 5. 1.), 제2020-209호(2020. 5. 21.), 제2020-372호(2020. 9. 10.) 등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639,854.3	증) 0.1	639,854.4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신정2-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639,854.3	증) 0.1	639,854.4	100.0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주거 용지	소 계	455,735.4	-	455,735.4	71.2	
	공동주택(아파트)	382,699.8	-	382,699.8	59.8	
	주상복합	73,035.6	-	73,035.6	11.4	
종교·근린생활시설용지		3,915.7	-	3,915.7	0.6	
업무·상업용지		11,963.3	-	11,963.3	1.9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68,239.9	증) 0.1	168,240.0	26.3	
	공공청사	8,260.9	-	8,260.91)	1.1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문화·복지시설	6,618.9	-	6,618.9	1.0	
	학교시설	27,767.6	-	27,767.6	4.3	
	공원녹지	40,043.2	증) 0.4	40,043.6	6.3	
	공공공지	6,380.2	-	6,380.2	1.0	
	도 로	79,289.5	감) 0.5	79,289.0	12.4	
	주 차 장	1,283.1	증) 0.2	1,283.3	0.2	

※ 변경사유: 신정2-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1) : 중복결정 된 공공공지 면적(1,403.5㎡) 포함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명시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1	11	42,647.4	-	42,647.4	
교육 시설	소 계	2	2	27,767.6	-	27,767.6	
	신남초등학교	1	1	15,063.3	-	15,063.3	
	신남중학교	1	1	12,704.3	-	12,704.3	
문화·복지 시설	소 계	4	4	6,618.9	-	6,618.9	
	사회복지시설	3	3	4,137.6	-	4,137.6	
	문화시설	1	1	2,481.3	-	2,481.3	
공공청사	공공청사	5	5	8,260.9	-	8,260.91)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 1) : 중복결정 된 공공공지 면적(1,403.5㎡) 포함

라.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변경)

1) 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총괄표 (변경)

구분	명칭	개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3	13	40,043.2	증) 0.4	40,043.6	
공원시설	소공원	12	12	31,478.1	증) 0.4	31,478.5	
	어린이공원	-	-	-	-	-	
	계남근린공원 등 존치	-	-	3,627.1	-	3,627.1	
녹지시설	경관녹지	1	1	4,938.0	-	4,938.0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공원	신월6동 570-26 일원	4,862.8	-	4,862.8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6동 584-8 일대	1,298.3	-	1,298.3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2동 605 일대	1,026.1	-	1,026.1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2동 615-4일대	3,001.0	-	3,001.0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6동 568-1일대	6,035.9	-	6,035.9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소공원	신정동 1205-15 일원	788.8	증) 0.4	789.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150-53 일원	2,690.8	-	2,690.8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192-13 일대	3,196.3	-	3,196.3	신정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6동 575-1 일대	2,040.0	-	2,040.0	신정2준치관리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196-1일대	4,532.7	-	4,532.7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219-9일대	797.4	-	797.4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160-7 일대	1,208.0	-	1,208.0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경관녹지	신정동 1165-3일대	4,938.0	-	4,938.0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마. 교통계획 (변경없음)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교통계획)에 명시

바. 경관계획 (변경없음)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경관계획)에 명시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명시

아.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39,854.3	증) 0.1	639,854.4	-
재정비촉진구역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254,270.5	-	254,270.5	주택재개발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106,928.0	증) 0.1	106,928.1	주택재개발
	신정3재정비촉진구역	35,583.5	-	35,583.5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80,822.7	-	80,822.7	주택재건축
존치구역	신정1존치관리구역	5,315.0	-	5,315.0	지구단위계획
	신정2존치관리구역	35,110.4	-	35,110.4	
	신정3존치관리구역	11,135.4	-	11,135.4	
	신정4존치관리구역	21,948.2	-	21,948.2	
	신정5존치관리구역	16,285.3	-	16,285.3	
	존치구역	72,455.3	-	72,455.3	-

자.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39,854.3	증) 0.1	639,854.4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575,214.2	-	575,214.2	89.9
		제1종일반주거지역	45,160.6	-	45,160.6	7.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9,463.9	-	109,463.9	17.1
		제2종일반주거지역	349,295.8	증) 0.1	349,295.9	54.6
		제3종일반주거지역	71,293.9	-	71,293.9	11.1
	준주거지역		39,620.5	-	39,620.5	6.2
근린상업지역			23,016.6	-	23,016.6	3.6
자연녹지지역			2,003.0	-	2,003.0	0.3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주 용 도	용 적 률		건폐율(%)	높이계획 (평균층수/최고층수(높이))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7%	267.9% 이하	50% 이하	19층 이하 / 24층 72m 이하
	1-1지구		209%	300.0% 이하	50% 이하	
	1-2지구		189%	240.0% 이하	50% 이하	
	1-3지구		203%	253.9% 이하	50% 이하	
	1-4지구		189%	240.0% 이하	50% 이하	
기정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8%	254.6% 이하	60% 이하	20층 이하 / 27층
	1-1지구		208%	258.0% 이하	60% 이하	22층 이하 / 27층
	1-2지구		208%	242.0% 이하	60% 이하	18층 이하 / 24층
기정	신정3재정비촉진구역	상업, 업무, 판매시설	400%	530.0% 이하	60% 이하	- / - (80m 이하)
기정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50.0% 이하	60% 이하	18층 이하 / 21층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계획기반 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구성비(%)
기정	신정1재정비 촉진구역	254,270.5	79,460.5	43,152.5	24,126.7	-	12,181.3	4.79
기정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106,928.0	28,119.3	8,579.7	13,675.9	-	5,863.7	5.48
변경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106,928.1 (증 0.1)	28,119.4 (증 0.1)	8,579.7	13,675.9	-	5,863.8 (증 0.1)	5.48
기정	신정3재정비 촉진구역	35,583.5	12,839.8	5,502.2	681.0	-	6,656.6	18.71
기정	신정4재정비 촉진구역	80,822.7	19,780.0	5,487.5	1,928.7	-	12,363.8	15.30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대책)에 명시

파.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명시

하.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너.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특성화계획)에 명시

더.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 1)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 가) 정비계획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106,928.0	증) 0.1	106,928.1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주 택 수 (호)			인구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40㎡ 이하	115	-	115	5,027	임대주택 337세대
	40㎡ ~ 60㎡	615	-	615		
	60㎡ ~ 85㎡	1,075	-	1,075		
	85㎡ 초과	99	-	99		
	계	1,904	-	1,904		

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6,928.0	증) 0.1	106,928.1	100
택지	소 계	78,155.7	-	78,155.7	73.1
	공동주택용지	78,155.7	-	78,155.7	73.1
계획기반시설	소 계	28,119.3	증) 0.1	28,119.4	26.3
	도 로	14,608.2	감) 0.5	14,607.7	13.7
	공 원	3,479.6	증) 0.4	3,480.0	3.3
	녹 지	4,938.0	-	4,938.0	4.6
	공공공지	1,403.5	-	1,403.5	1.3
	주차장	1,283.1	증) 0.2	1,283.3	1.2
	공공청사	3,810.4	-	3,810.41	2.3
잔치지역		653.0	-	653.0	0.6

※ 1) : 중복결정 된 공공공지 면적(1,403.5㎡) 포함

(2)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 거 지 역	소 계		106,928.0	증) 0.1	106,928.1	100.0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142.5	-	13,142.5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202.6	-	9,202.6	8.6	
		제2종일반주거지역	84,582.9	증) 0.1	84,583.0	79.1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도로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A1	20	집산 도로	260	신정동 1180-24	신정동 1163-6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 (2008.12.11)	
기정	중로	3	3	13~15.5	집산 도로	519	신정동 1230	신정동 1234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A1	12	국지 도로	507	신정동 1203-1	신정동 1163-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A1	10	국지 도로	56	신정동 1163-8	신정동 1163-1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A1	8~9	국지 도로	500 (257)	신정동 1223	신정동 122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A1	6	국지 도로	255	신정동 1221	신정동 1221	일반 도로	-	"	구역외
기정	소로	3	A2	6	국지 도로	43	신정동 1233	신정동 1233	일반 도로	-	"	구역외

(나) 공원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신정동 1205-15일대	788.8	증) 0.4	789.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 (2008.12.11)	
기정	②	공원	소공원	신정동 1150-53일대	2,690.8	-	2,690.8	"	

(다) 녹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 녹지	신정동 1165-3일대	4,938.0	-	4,938.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 (2008.12.11)	

(라)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신정동 1164-4일대	1,403.5	-	1,403.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 (2008.12.11)	중복결정

(마) 주차장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신정동 1203-11일대	1,283.1	증) 0.2	1,283.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1호 (2017.10.26)	

(바)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신정동 1165-8일대	3,810.4	-	3,810.4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09호 (2020.5.21.)	중복결정

※ 1) : 중복결정 된 공공공지 면적(1,403.5㎡) 포함

(4)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의 구분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주된 용도											
	명칭		면적(㎡)				(최고층수/ 평균층수)	최고 높이													
기정	신정2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06,928.0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60%이하	254.6% 이하	27층이하/ 20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 지구	택지-1	86,085.7	신정3동 1175-28번지 일대	60%이하	258.0% 이하	27층이하/ 22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2, 3,4	1,242.8	신정3동 1175-28번지 일대	60%이하	258.0% 이하	27층이하/ 22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 지구		19,599.5	신정3동 1150-41번지 일대	60%이하	242.0% 이하	24층이하/ 15,18층이하	72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전용면적 40㎡, 40㎡~50㎡, 50㎡~60㎡, 60㎡~85㎡, 85㎡ 초과 ○ 건립비율 <table><tr><th>구분</th><th>전용면적 60㎡이하</th><th>전용면적 60㎡~85㎡</th><th>전용면적 85㎡초과</th></tr><tr><td rowspan="2">건립기준</td><td colspan="2">60% 이상</td><td rowspan="2">40% 미만</td></tr><tr><td>20% 이상</td><td>-</td></tr></table> ○ 건립예정 세대수 : 1,904세대(임대주택: 건립호수의 17% 이상)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건립기준	60% 이상		40% 미만	20% 이상	-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건립기준	60% 이상		40% 미만																		
	20% 이상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지침에 따름																	
변경	신정2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06,928.1 (증 0.1)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60%이하	254.6% 이하	27층이하/ 20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 지구	택지-1	86,086.1 (증 0.4)	신정3동 1175-28번지 일대	60%이하	258.0% 이하	27층이하/ 22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2, 3,4	1,242.5 (감 0.3)	신정3동 1175-28번지 일대	60%이하	258.0% 이하	27층이하/ 22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 지구		19,599.5	신정3동 1150-41번지 일대	60%이하	242.0% 이하	24층이하/ 15,18층이하	72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전용면적 40㎡, 40㎡~50㎡, 50㎡~60㎡, 60㎡~85㎡, 85㎡ 초과 ○ 건립비율 <table><tr><th>구분</th><th>전용면적 60㎡이하</th><th>전용면적 60㎡~85㎡</th><th>전용면적 85㎡초과</th></tr><tr><td rowspan="2">건립기준</td><td colspan="2">60% 이상</td><td rowspan="2">40% 미만</td></tr><tr><td>20% 이상</td><td>-</td></tr></table> ○ 건립예정 세대수 : 1,904세대(임대주택: 건립호수의 17% 이상)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건립기준	60% 이상		40% 미만	20% 이상	-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건립기준	60% 이상		40% 미만																		
	20% 이상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지침에 따름																	

(5) 공공청사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구분	위치	대지면적	건축건립계획			비고
			층수	연면적1)	용적률	
기정	신정동 1165-3일대	3,810.4㎡	지상3층	3,610.0㎡이하	150% 이하	-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 층수는 지상부 공공청사(2,406.9㎡) 에 한함

※ 연면적1)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2) : 중복결정 된 공공공지 면적(1,403.5㎡) 포함

(6)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변경)

(가)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 분할 (변경)

구분	촉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106,928.0	증) 0.1	106,928.1	
	2-1지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75-28번지 일대	87,328.5	증) 0.1	87,328.6	
	2-2지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50-41번지 일대	19,599.5	-	19,599.5	

(나)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분할사업 시행지구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6,928.0	증) 0.1	106,928.1	
2-1 지구	소 계		87,328.5	증) 0.1	87,328.6	
	택지	소 계	61,906.3	-	61,906.3	
		공동주택용지	61,906.3	-	61,906.3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25,422.2	증) 0.1	25,422.3	
		도 로	14,601.9	감) 0.5	14,601.4	
		공 원	788.8	증) 0.4	789.2	
		녹 지	4,938.0	-	4,938.0	
		공공공지	1,403.5	-	1,403.5	
		주차장	1,283.1	증) 0.2	1,283.3	
		공공청사	3,810.4	-	3,810.4	중복결정 된 공공공지 면적(1,403.5㎡) 포함
2-2 지구	소 계		19,599.5	-	19,599.5	
	택지	소 계	16,249.4	-	16,249.4	
		공동주택	16,249.4	-	16,249.4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2,697.1	-	2,697.1	
		도 로	6.3	-	6.3	
		공 원	2,690.8	-	2,690.8	
준치지역			653.0	-	653.0	신서교회

(다)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기반시설 면적(㎡)				순부담(①-②-③-④)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시설 ④	면적	구성비 (%)
기정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106,928.0	28,119.3	8,579.7	13,675.9	-	5,863.7	5.48
	2-1지구	87,328.5	25,422.2	8,337.8	11,424.5	-	5,659.9	6.48
	2-2지구	19,599.5	2,697.1	241.9	2,251.4	-	203.8	1.04
변경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106,928.1 (증 0.1)	28,119.4 (증 0.1)	8,579.7	13,675.9	-	5,863.8 (증 0.1)	5.48
	2-1지구	87,328.6 (증 0.1)	25,422.3 (증 0.1)	8,337.8	11,424.5	-	5,660.0 (증 0.1)	6.48
	2-2지구	19,599.5	2,697.1	241.9	2,251.4	-	203.8	1.04

(라) 사업시행지구별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전체	1지구	2지구	비고
인구수		5,027	3,952	1,075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40㎡이하	115	90	25	임대주택 337세대 1지구 : 266 2지구 : 71
	40㎡~60㎡	615	460	155	
	60㎡~85㎡	1,075	848	227	
	85㎡이상	99	99	-	
	계	1,904	1,497	407	

3) 신정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4)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변경없음)

러.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신정1~5존치관리구역) (변경없음)

5. 관계도면 및 기타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참조(아래 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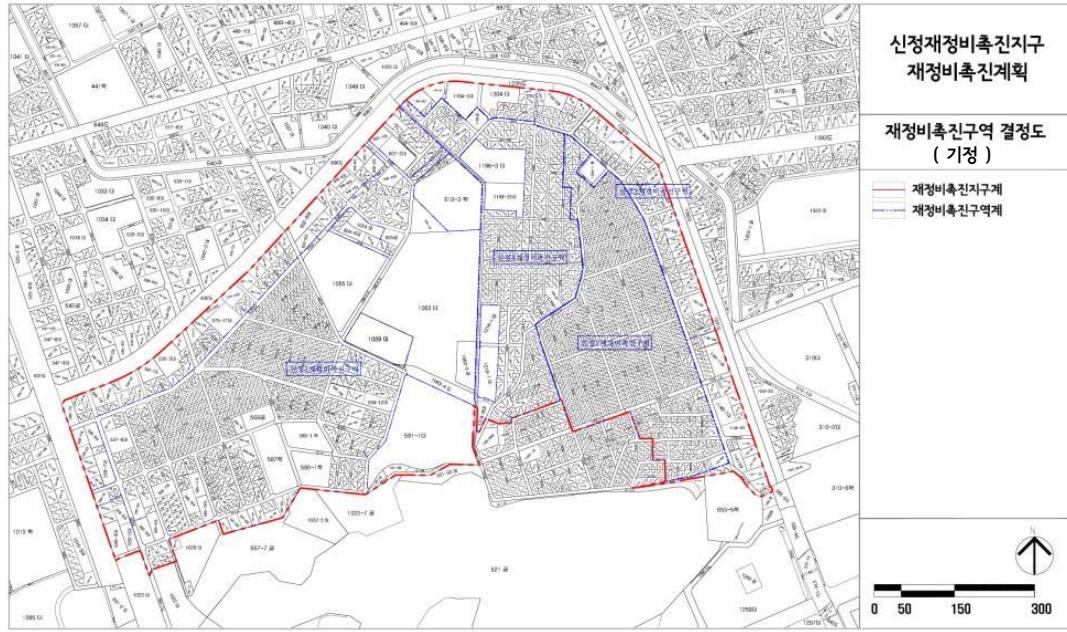
6. 고시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6) 및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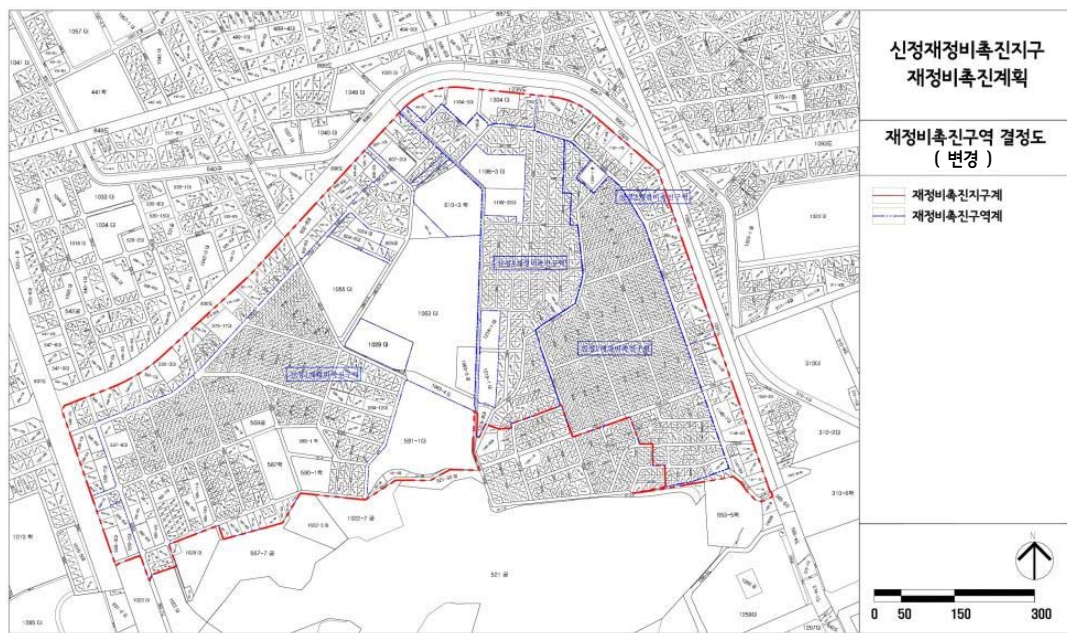
[신정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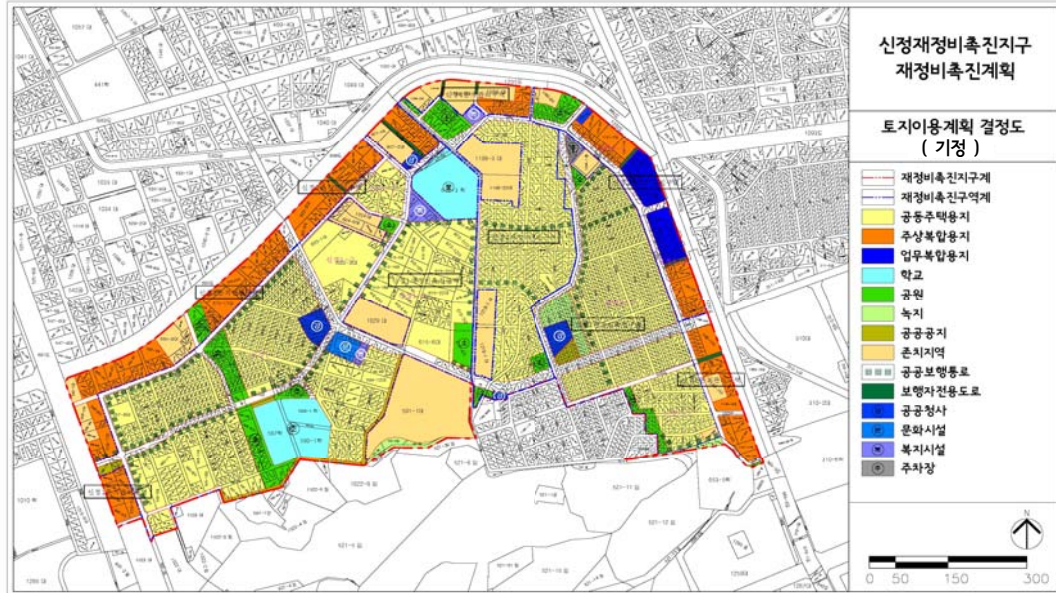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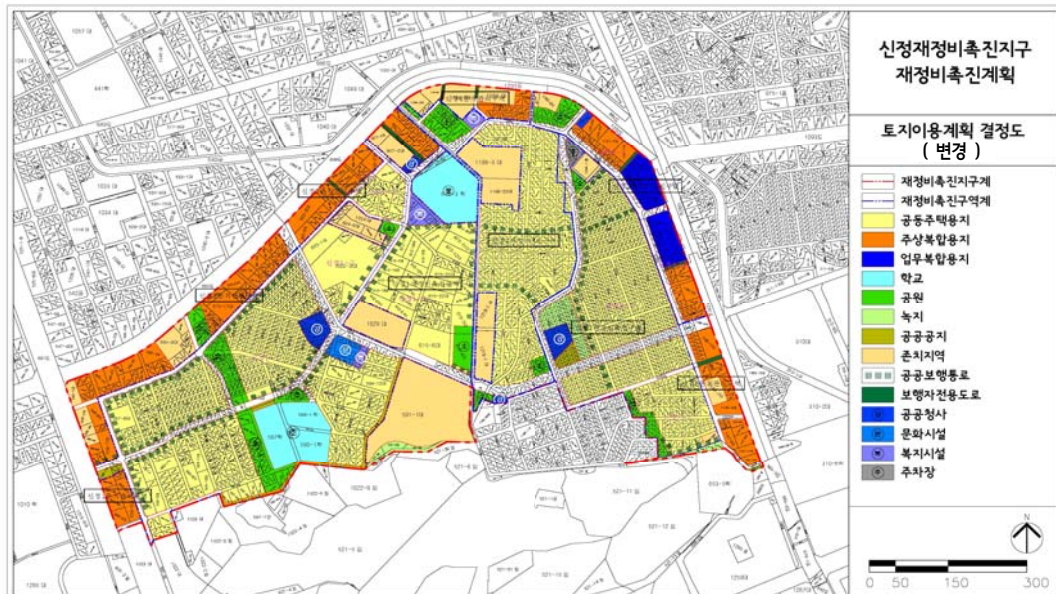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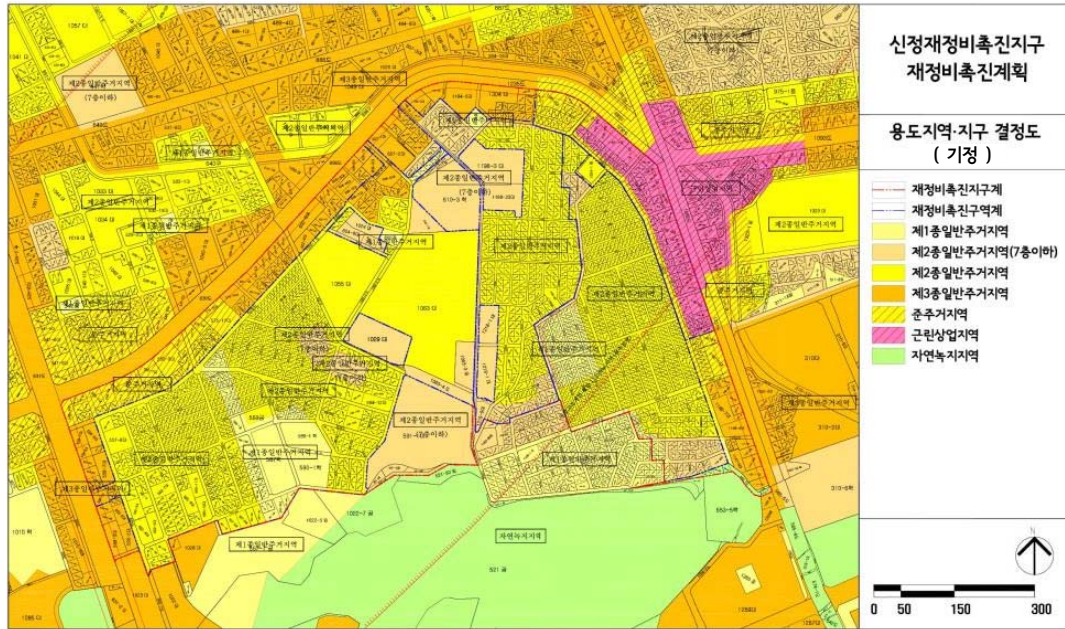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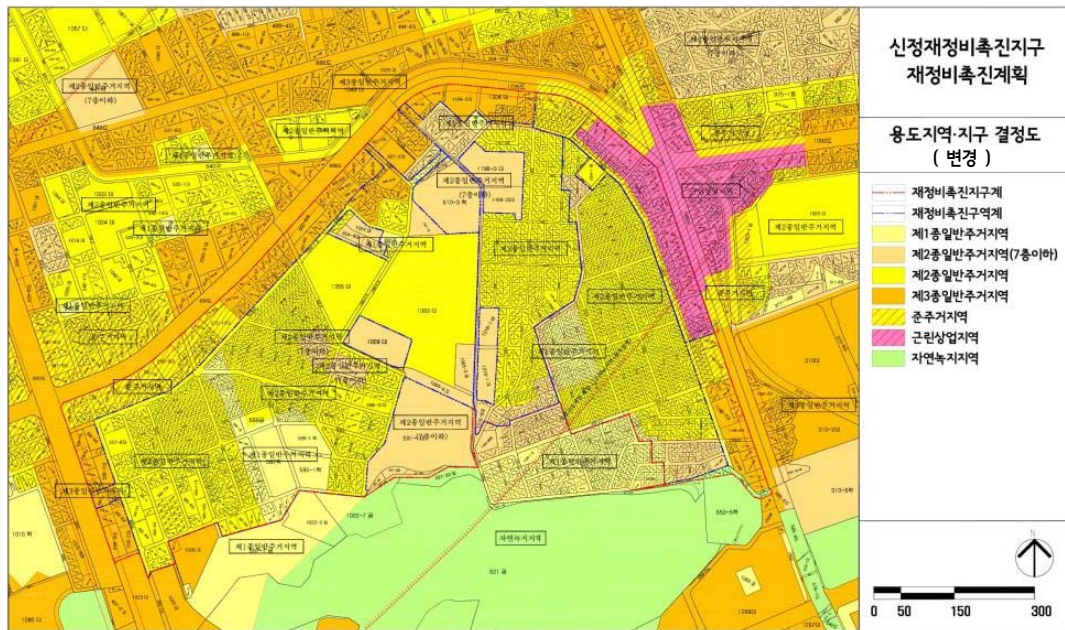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변경)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4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장위1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 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2호(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2019.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9호(2020.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9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4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3호(2020.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5호(2020.07.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6호(2020.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02호(2021.02.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장 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 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918,915.3	증)4.4	918,919.7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변경사유 : 장위1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구역면적 증가 : 80,312.2㎡ → 80,316.6㎡ (증)4.4㎡)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준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918,915.3	증) 4.4	918,919.7	-
촉진 구역	소 계 (9개 구역)		844,487.5	증) 4.4	844,491.9	-	
	장위1구역	장위동 144-24 일원	80,312.2	증) 4.4	80,316.6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장위2구역	장위동 290-9 일원	25,344.0	-	25,344.0	-	
	장위3구역	장위동 305 일원	66,011.0	-	66,011.0	-	
	장위4구역	장위동 62-1 일원	153,501.0	-	153,501.0	-	
	장위5구역	장위동 173-114 일원	88,765.7	-	88,765.7	-	
	장위6구역	장위동 25-55 일원	105,163.9	-	105,163.9	-	
	장위7구역	장위동 189-3 일원	87,151.7	-	87,151.7	-	
	장위10구역	장위동 68-37 일원	94,037.0	-	94,037.0	-	
	장위14구역	장위동 233-552 일원	144,201.0	-	144,201.0	-	
준치 지역	준치 관리구역	소 계		74,427.8	-	74,427.8	-
		준치구역	준치시설	74,427.8	-	74,427.8	-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장위1구역)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80,312.2	증) 4.4	80,316.6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38,568.7	증) 4.4	38,573.1	48.0	
	도로	16,348.5	증) 1.6	16,350.1	20.4	
	녹지	4,037.6	감) 2.9	4,034.7	5.0	
	학교	17,457.6	증) 0.4	17,458.0	21.7	
	공공공지	98.6	증) 5.3	103.9	0.1	
	공공청사	299.5	-	299.5	0.4	치안센터
	청소년수련시설	326.9	-	326.9	0.4	존치시설
택지 (획지)	소계	41,743.5	-	41,743.5	52.0	
	1-1	36,018.0	-	36,018.0	44.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4,635.4	-	4,635.4	5.8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1-3	1,090.1	-	1,090.1	1.4	근린생활시설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기정	증감	변경	
합계		80,312.2	증) 4.4	80,316.6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863.2	증) 0.4	19,863.6	24.7
	제2종일반주거지역	60,449.0	증) 4.0	60,453.0	75.3

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확정측량결과에 반영에 따른 학교 면적변경 (증0.4㎡)

제2종일반주거지역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및 녹지 면적변경 (증4.0㎡)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장위 1구역	용도지역 면적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증) 0.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0㎡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기정	중로	1	510	20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3-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	장월로
기정	중로	1	512	20	집산 도로	55	장위동 158-43	장위동 157-2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6	20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1	523	14 ~19	집산 도로	145	장위동 143-38	장위동 270-46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A	10		30	장위동 270-164	장위동 12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01	8	국지 도로	153	장위동 270-58	장위동 270-5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3	B	6		133	장위동 136-53	장위동 133	일반 도로			

※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2). 녹지(연결녹지, 경관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22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140-20일대	1,444.0	감)	3.0	1,441.0	서고시111 (08.04.03)
기정	a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134-35일대	2,232.4		-	2,232.4	
변경	b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135-1일대	378.8 (361.2)	증)	0.1	378.9 (361.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1,444.0㎡→1,441.0㎡) (감 3.0㎡)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b	녹지	경관녹지	면적변경 (361.2㎡→361.3㎡) (증 0.1㎡)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	광운초	학교	장위동124	17,457.6	증) 0.4	17,458.0	시교위고5 (87.02.17)	기존하천 359㎡ 증복결정
		남대문중	학교	장위동 124-1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광운초	학교	면적변경 (17,457.6㎡ → 17,458.0㎡) (증 0.4㎡)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남대문중	학교		

4).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7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79-16	3,387.6 (98.6)	증) 5.3	3,392.9 (103.9)	서고시111 (08.04.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공공공지	공공공지	면적변경 (98.6㎡ → 103.9㎡) (증 5.3㎡)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5).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59	치안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155-1일대	299.5	-	299.5	서고시111 (08.04.03)	

6).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성북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	장위동 135-2일대	326.9	-	326.9	서고시338 (97.10.28)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2).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평균	최고
기정	장위 1구역	80,312.2	1-1	36,018.0	장위동 144-2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65이하 (적용 259.51)	22층 이하	29층이하 (88m이하)
			1-2	4,635.4	장위동 124-3일대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에 의함	230이하	관련 법령에 의함	
			1-3	1,090.1	장위동 158-63일대	근린생활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학교	17,457.6	장위동 133일대	학교	관련 법령에 의함			
			청소년 수련시설	326.9	장위동 135-1일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변경		80,316.6	1-1	36,018.0	장위동 144-2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65이하 (적용 259.51)	22층 이하	29층이하 (88m이하)
			1-2	4,635.4	장위동 124-3일대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에 의함	230이하	관련 법령에 의함	
			1-3	1,090.1	장위동 158-63일대	근린생활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학교	17,458.0	장위동 133일대	학교	관련 법령에 의함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평균	최고
			청소년 수련시설	326.9	장위동 135-1일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			• 건립예정세대수 : 939세대 (임대주택 : 162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71세대(7.56%) [임대 : 71세대] - 전용면적 40~50㎡ : 69세대(7.35%) [임대 : 69세대] - 전용면적 50~60㎡ : 216세대(23.00%) [임대 : 22세대] - 전용면적 60~85㎡ : 556세대(59.21%) - 전용면적 85㎡이상 : 27세대(2.88%) 도시형생활주택 • 건립예정세대수 : 173세대 (임대주택:30세대) -전용면적40㎡이하 : 173세대(100%) [임대:30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한천로 : 8m, 화랑로 : 10m(단, 지하부는 6m 완화적용) •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 학교와 획지1~2 사이에 경관녹지 @ ~ 우이천 연결을 위한 공공보행통로(7m) 확보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증 4.4㎡)

— 학교(증0.4㎡), 도로(증1.6㎡), 녹지(감2.9㎡), 공공공지(증5.3㎡) 변경

• 용적률 계획(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 시설제공 (토지)면적	기부채납공공 시설(건축물) 환산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80,312.2㎡	41,743.5㎡	38,568.7㎡	7,159.7㎡	1,543.0㎡	23,782.0㎡	7,627.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8,702.7㎡ (토지7,159.7㎡+ 건축물 환산: 1,543.0㎡) • 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7,159.7㎡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8,568.7㎡ - 23,782.0㎡ - 7,627.0㎡ = 7,159.7㎡ •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 1,543.0㎡						
기반시설 부담률	• 기반시설 부담률 : $(8,702.7㎡ \div 80,312.2㎡) \times 100\% = 10.8\%$ (구역면적 대비)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대상지 • 기준용적률 210% • α 토지 = $7,159.7 / 40,200.5 = 0.1781$ • α 건물 = $1,543.0 / 40,200.5 = 0.0384$ ▶ 상한용적률 (완화가능용적률) = $210\% \times [(1 + 1.3 \times 0.1781) + (1 + 1.3 \times 0.0384)]$ = $269.1\% \geq$ 건축계획(안) 259.51%						
적용용적률	• 적용용적률 = 259.51%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 시설제공 (토지)면적	기부채납공공 시설(건축물) 환산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80,316.6㎡	41,743.5㎡	38,573.1㎡	7,164.1㎡	1,543.0㎡	23,782.0㎡	7,627.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8,707.1㎡ (토지7,164.1㎡+ 건축물 환산: 1,543.0㎡) - 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7,164.1㎡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8,573.1㎡ - 23,782.0㎡ - 7,627.0㎡ = 7,164.1㎡ -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 1,543.0㎡						
기반시설 부담률	기반시설 부담률 : $(8,707.1㎡ \div 80,316.6㎡) \times 100\% = 10.8\%$ (구역면적 대비)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210%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대상지 · 기준용적률 210% · α 토지 = $7,164.1 / 40,200.5 = 0.1782$ · α 건물 = $1,543.0 / 40,200.5 = 0.0384$ ▶ 상한용적률 (완화가능용적률) = $210\% \times [(1 + 1.3 \times 0.1782) + (1 + 1.3 \times 0.0384)]$ = $269.13\% \geq$ 건축계획(안) 259.51% α 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α 건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물)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41,743.5㎡ - 1,543.0㎡ = 40,200.5㎡$						
적용용적률	적용용적률 = 259.51%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사).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아).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장위1구역	성북구 장위동 144-24일대	80,312.2	증) 4.4	80,316.6	100.0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0,312.2	증) 4.4	80,316.6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863.2	증) 0.4	19,863.6	24.7
	제2종일반주거지역	60,449.0	증) 4.0	60,453.0	75.3

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확정측량결과에 반영에 따른 학교 면적변경 (증0.4㎡)

제2종일반주거지역 : 확정측량결과에 반영에 따른 도로, 녹지, 공공공지 면적변경(증4.0㎡)

3.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기정	중로	1	510	20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3-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	장월로
기정	중로	1	512	20	집산 도로	55	장위동 158-43	장위동 157-2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6	20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1	523	14 ~19	집산 도로	145	장위동 143-38	장위동 270-46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A	10		30	장위동 270-164	장위동 12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01	8	국지 도로	153	장위동 270-58	장위동 270-5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3	B	6		133	장위동 136-53	장위동 133	일반 도로			

※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22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140-20일대	1,444.0	감)	3.0	1,441.0	서고시111 (08.04.03)
기정	a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134-35일대	2,232.4	-		2,232.4	
변경	b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135-1일대	378.8 (361.2)	증)	0.1	378.9 (361.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	광운초	학교	장위동124	17,457.6	증)	0.4	17,458.0	시교위고5 (87.02.17)
		남대문중	학교	장위동 124-1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4)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7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79-16	3,387.6 (98.6)	증)	5.3	3,392.9 (103.9)	서고시111 (08.04.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5)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59	치안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155-1일대	299.5	-		299.5	서고시111 (08.04.03)

6)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성북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	장위동 135-2일대	326.9	-		326.9	서고시338 (97.10.28)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획지	소계	41,743.5	-	41,743.5	52.0	
	1-1	36,018.0	-	36,018.0	44.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4,635.4	-	4,635.4	5.8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1-3	1,090.1	-	1,090.1	1.4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가구	용도	비고
기정	허용용도	1-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허용용도	1-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도시형생활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허용용도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주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1-1(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30%이하	-
1-2,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령에 의함	-

3)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1-1 (공동주택)	210%이하	-	265%이하	300%이하	계획(적용)용적률 259.51%
1-2	230%이하				
1-3	관련법령에 의함				

4)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 변경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토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1-1	기정	48.62%	10.48%	59.10%
	변경	48.65%	10.48%	59.13%

5) 높이 계획 : 변경없음

구분	높이기준	비고
1-1	· 평균층수 22층/ 최고층수 29층/ 최고높이 88m이하	-
1-2, 1-3	· 관련법령에 의함	-

6)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한천로	8m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6m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1-1획지내 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조정 및 보행자 공간으로 조성 - 폭원 : 6m~8m
공공보행통로	1-2획지내	• 학교와 획지1-2 사이에 경관녹지 ㉠ ~ 우이천 연결을 위한 공공보행통로(7m) 확보

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결정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층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1구역	-	-	15,887.55	• 71세대(30세대)(7.56%)	• 40㎡이하	괄호안의 세대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임.
					• 69세대(7.35%)	• 40~50㎡이하	
					• 22세대(2.34%)	• 50~60㎡이하	
					• 전체 : 162세대(30세대)(17.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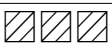
※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구역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3) 환경관리계획 : 변경없음

검토향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보전대책	비고
자 연 환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	• 현재보다 공원녹지 증가로 환경측면 유리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지하터파기에 따른 지형변화	• 발생토량은 조정토, 되메우기 등 실시 • 외부로의 토사유출입 자제	
	녹지변동 녹지체계	×	－	• 현재보다 공원녹지 증가로 환경측면 유리	
	습지보전	×	보전대상 습지 없음	－	
	비 오 톱	×	－	• 공원과 우이천을 연계하여 단지내 생물서식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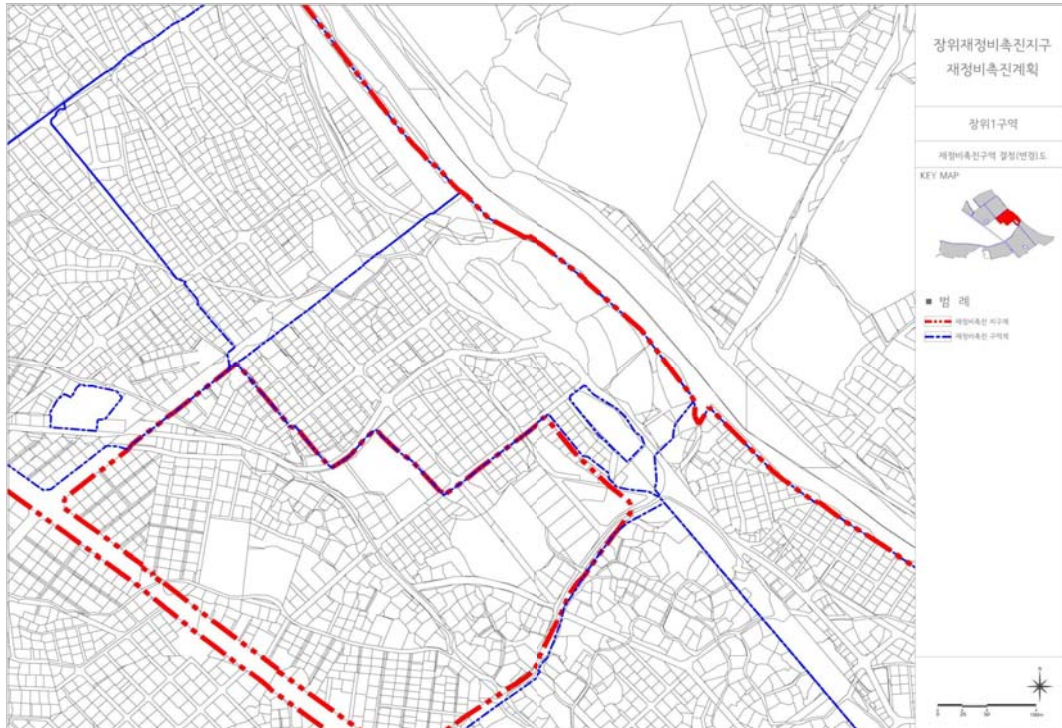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보전대책	비고
생 태 환 영 향	일 조	○ 일조침해 예상	• 공간에 도로, 조경녹지, 휴게공간 등 계획	
	바 람	○ 영향 미약	•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충분한 오픈페이스 확보	
	경 관	○ 고층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변화	•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설계	
	에 너 지	○ 건물 신축으로 에너지사용 변화 예상	• 지역특성상 도시가스를 사용할 계획으로 지상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에너지절약형 단지를 조성할 계획	
	환경오염	○ 오수량 및 생활폐기물 증가	• 중량물재생센터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	
도시재정비계획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건축폐기물의 발생, 비산먼지, 공사장 소음 문제 및 강우시 토사유출 예상	• 건축폐기물의 적법처리 및 비산먼지와 토사유출, 소음 저감 방안 수립	

라.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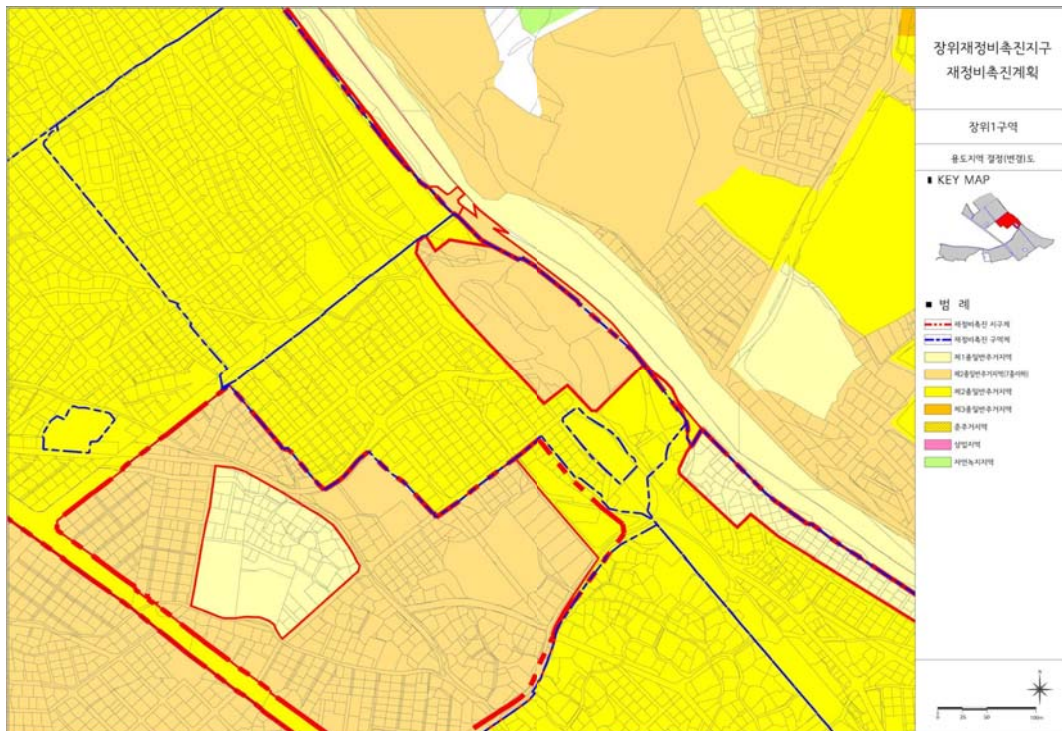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탑상형 배치구간	○ ‘탑상형 배치구간’은 탑상형아파트가 건축되는 주택용지로 정한다. ○ 탑상형아파트는 ‘탑상형 배치구간’에만 건축 가능하다. ○ ‘탑상형 배치구간’내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 29층으로 정한다. ○ 탑상형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주동을 수평 투영하였을 때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 이하 이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어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단지의 조망감 및 경관형성 등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table><tr><td>최고층수</td><td>29층</td></tr><tr><td>최저층수</td><td>13층</td></tr></table>	최고층수	29층	최저층수	13층
최고층수	29층					
최저층수	13층					
 고층배치구간	○ ‘고층 배치구간’의 주거층은 13~29층으로 정한다. ○ ‘고층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table><tr><td>최고층수</td><td>29층</td></tr><tr><td>최저층수</td><td>13층</td></tr></table>	최고층수	29층	최저층수	13층
최고층수	29층					
최저층수	13층					
 중층배치구간	○ ‘중층 배치구간’의 주거층은 8~12층으로 정한다. ○ ‘중층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table><tr><td>최고층수</td><td>12층</td></tr><tr><td>최저층수</td><td>8층</td></tr></table>	최고층수	12층	최저층수	8층
최고층수	12층					
최저층수	8층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한 통로로, 지상부 설치 또는 지하통로형, 필로티형 등으로 설치·이용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의 보도포장구간 폭원은 최소 4m이상을 확보하고, 보도포장 외 구간은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해 보행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잔디포장 등 투수성 포장을 허용한다. ○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대지 단차가 있는 경우 종단 구배를 최소화하여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table><tr><td>공공보행통로 폭원</td><td>7m</td></tr></table>	공공보행통로 폭원	7m		
공공보행통로 폭원	7m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및 지하부분이 돌출되지 못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한 전면공지는 조경 및 보행자 공간으로 조성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관련 사항은 붙임(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고시) 및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02-2133-7223) 및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2241-283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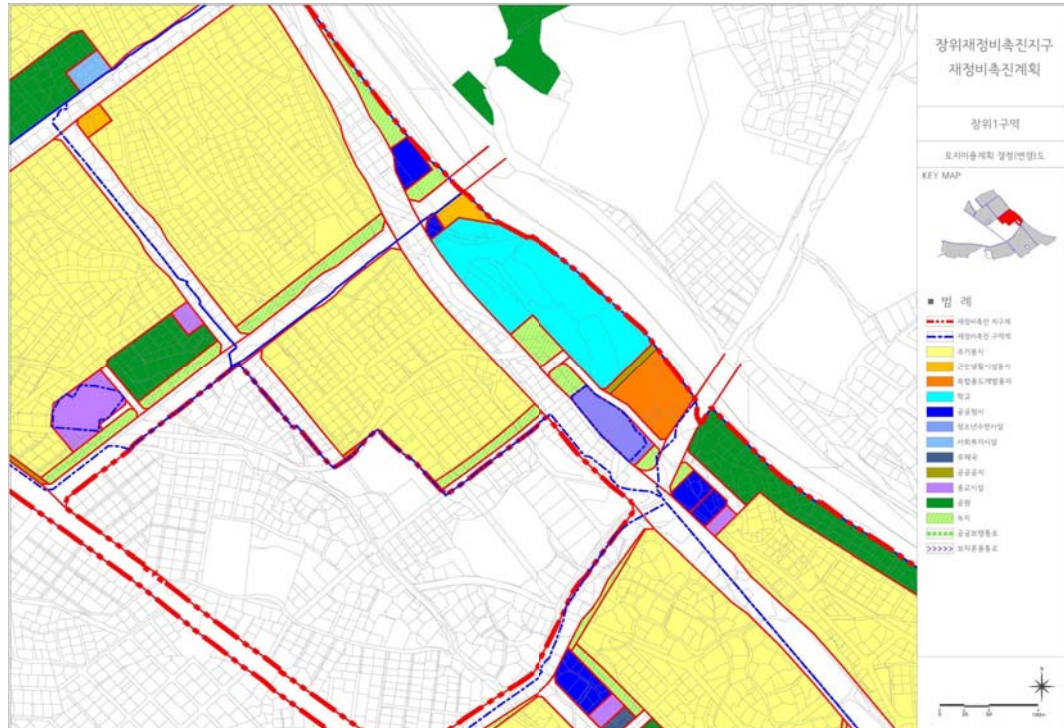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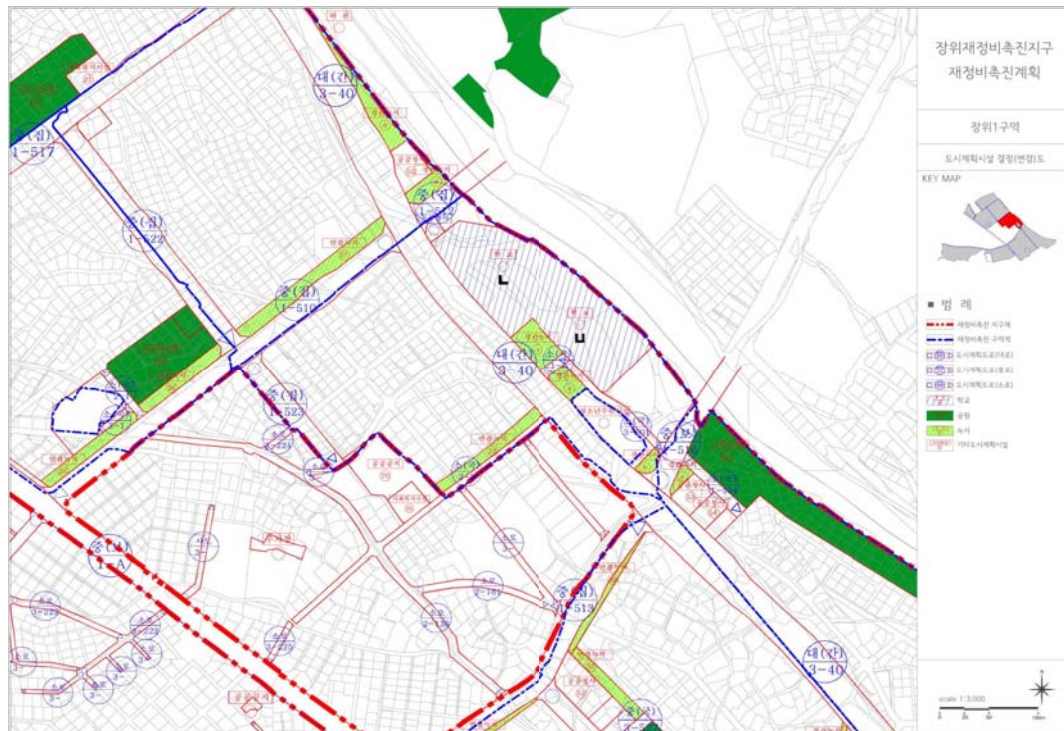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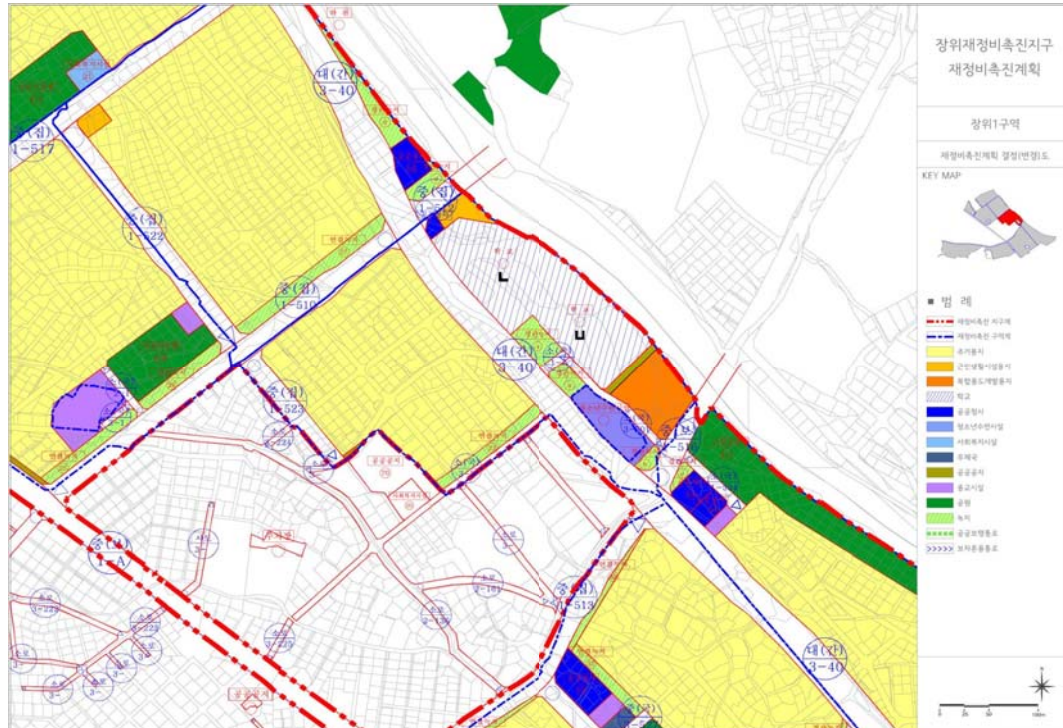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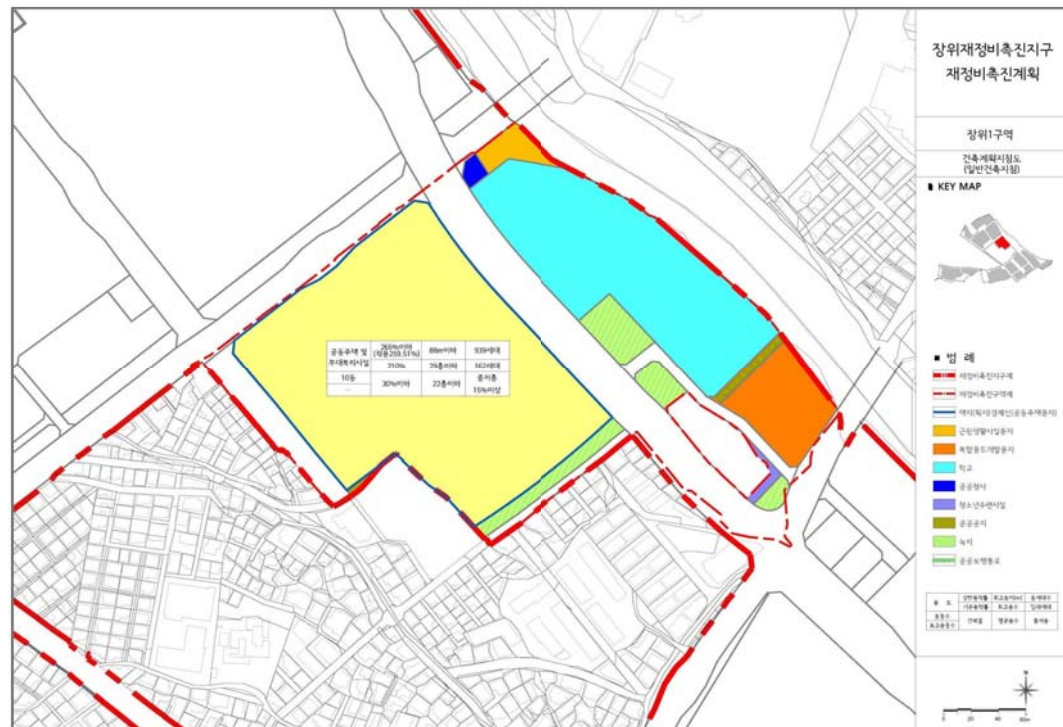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일반건축물도 (변경없음)]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붙임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 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장 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 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918,915.3	증)4.4	918,919.7	장위1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변경사유 : 장위1구역 학교경계 현황반영 및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구역면적 증가 : 80,312.2㎡ → 80,316.6㎡ (증)4.4㎡)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5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918,915.3	증) 4.4	918,919.7	100.0
주거	소 계	566,930.6	-	566,930.6	61.7
	공동주택	524,983.6	-	524,983.6	57.1
	복합용지	41,947.0	-	41,947.0	4.6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336,278.8	증) 4.4	336,283.2	36.6
	도 로	190,184.0	증) 1.6	190,185.6	20.7
	공 원	79,763.3	-	79,763.3	8.7
	녹 지	18,850.6	감) 2.9	18,847.7	2.1
	학 교	33,241.6	증) 0.4	33,242.0	3.6
	공공공지	3,633.0	증) 5.3	3,638.3	0.4
	공공청사	6,826.4	-	6,826.4	0.7
	사회복지시설	1,000.0	-	1,000.0	0.1
	청소년수련시설	2,779.9	-	2,779.9	0.3
기타	소 계	15,705.9	-	15,705.9	1.7
	종교시설	9,728.0	-	9,728.0	1.0
	근린생활시설	5,435.9	-	5,435.9	0.6
	우체국	542.0	-	542.0	0.1

※ 변경사유: 장위1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증 4.4㎡)

2).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3). 기반시설 설치계획(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 변경

가. 교육시설계획 : 변경

학교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장곡초등학교	장위동 235	7,182.0	-	7,182.0	-
장위초등학교	장위동 68-8	15,810.0	-	15,810.0	-
광운초등학교	장위동 124	17,457.6	증) 0.4	17,458.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남대문중학교	장위동 124-1				
월곡중학교	장위동 35-1	6,593.0	-	6,593.0	-

※ 변경사유: 장위1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학교면적증가 0.4㎡)

나. 공공시설계획 :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분		시설 번호	명칭	면 적(㎡)			명칭의 유래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8,613.9	감)2.9	98,611.0	
주제 공원	소 계		79,763.3	-	79,763.3		
	문화 공원	1개소	4,081.3	-	4,081.3		
		415	상길레문화공원	4,081.3	-	4,081.3	덕온공주의 하가의식인 '길레' 에서 공원명칭 부여
생태·환경 공원·녹지	도시 공원		3개소	50,784.0	-	50,784.0	
		411	아랫말공원	22,758.0	-	22,758.0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413	푸석공원	11,097.0	-	11,097.0	옛 명칭인 푸석산(푸르름)에서 유래
		140	오동근린공원	16,929.0	-	16,929.0	대상지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공원
	어린이 공원		4개소	24,898.0	-	24,898.0	
		417	석촌공원	8,321.0	-	8,321.0	석촌 윤용구 선생을 주제로 한 공원
		418	간대공원	4,916.0	-	4,916.0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419	장석공원	5,649.0	-	5,649.0	장석시장의 지역적 맥락에서 유래
		A	장위공원	6,012.0	-	6,012.0	장위초교연계
녹지	소 계		18,850.6	감)2.9	18,847.7		
	연결 녹지		9개소	12,030.9	감)3.0	12,027.9	
		20 ~23	장위산내길 (중앙연결녹지)	3,349.0	감)3.0	3,346.0	장위동 + 산 + 내 오동근린공원↔우이천 통영축확보
		25 ~27	푸른에움길 (수계연결녹지)	4,869.5	-	4,869.5	푸른 녹지와 물로 둘러싸인 길
		31 ~36	푸른에움길 (보행연결녹지)	2,758.4	-	2,758.4	보행중심의 환경생태녹지로 조성
		37	보행연결녹지	1,054.0	-	1,054.0	우이천 및 석계역 보행연결
	경관 녹지		5개소	6,819.7	증)0.1	6,819.8	
		a	경관녹지	2,232.4		2,232.4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b	경관녹지	378.8	증)0.1	378.9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구분	시설 번호	명칭	면 적(㎡)			명칭의 유래
			기 정	증 감	변 경	
	c	경관녹지	1,241.0	-	1,241.0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d	경관녹지	2,651.5		2,651.5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e	경관녹지	316.0	-	316.0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 변경사유 : 장위1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연결녹지(감3.0㎡), 경관녹지(증0.1㎡))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장위1구역)

구 분	위 치	면 적(㎡)			사업방식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918,915.3	증) 4.4	918,919.7	-	
촉진 구역	소 계 (9개 구역)		844,487.5	증) 4.4	844,491.9	-
	장위1구역	장위동 144-24 일원	80,312.2	증) 4.4	80,316.6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2구역	장위동 290-9 일원	25,344.0	-	25,344.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3구역	장위동 305 일원	66,011.0	-	66,011.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4구역	장위동 62-1 일원	153,501.0	-	153,501.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5구역	장위동 173-114 일원	88,765.7	-	88,765.7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6구역	장위동 25-55 일원	105,163.9	-	105,163.9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7구역	장위동 189-3 일원	87,151.7	-	87,151.7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10구역	장위동 68-37 일원	94,037.0	-	94,037.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14구역	장위동 233-552 일원	144,201.0	-	144,201.0	주거정비형재개발
	소 계		74,427.8	-	74,427.8	-
존치 지역	존치 관리구역	존치구역	존치시설	74,427.8	-	-

※ 변경사유 : 장위1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장위1구역외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918,915.3	증)4.4	918,919.7	100.0	
일반 주거	소계	914,037.8	증)4.4	914,042.2	99.5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3,591.0	-	63,591.0	6.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3,875.2	증)0.4	63,875.6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745,237.4	증)4.0	745,241.4	81.1	
	제3종일반주거지역	41,334.2	-	41,334.2	4.5	
자연녹지지역		4,877.5	-	4,877.5	0.5	

※ 변경사유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확정측량결과에 반영에 따른 학교 면적변경 (증0.4㎡)
제2종일반주거지역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녹지, 공공공지 면적변경(증4.0㎡)

가.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0,312.2	증) 4.4	80,316.6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863.2	증) 0.4	19,863.6	24.7
	제2종일반주거지역	60,449.0	증) 4.0	60,453.0	75.3

※ 변경사유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확정측량결과에 반영에 따른 학교 면적변경 (증0.4㎡)
제2종일반주거지역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녹지, 공공공지 면적변경(증4.0㎡)

나. 장위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자. 장위1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소계		1구역		2구역	3구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기정
촉진구역 면적(㎡)		844,487.5	844,491.9	80,312.2	80,316.6	25,344.0	66,011.0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 ①	267,442.8 (31.67%)	267,447.2 (31.67%)	38,568.7 (48.02%)	38,573.1 (48.03%)	7,481.4 (29.52%)	13,330.0 (20.19%)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79,565.3	79,565.3	23,782.0	23,782.0	627.0	607.0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69,685.2	69,685.2	7,627.0	7,627.0	787.0	5,522.0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12,865.8	12,865.8	1,543.0 (기반시설설치비 용)	1,543.0 (기반시설설치비 용)	-	1,399.0
	대지지분⑤	1,503.9	1,503.9	-	-	-	-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132,562.0	132,566.4	8,702.7	8,707.1	6,067.4	8,600.0

구 분		면 적(㎡)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10구역	14구역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촉진구역 면적(㎡)		153,501.0	88,765.7	105,163.9	87,151.7	94,037.0	144,201.0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 ①	44,302.0 (28.86%)	31,071.7 (35.0%)	43,741.3 (41.59%)	22,849.7 (26.22%)	17,823.0 (18.93%)	17,823.0 (18.93%)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5,237.0	12,382.6	19,043.0	4,613.7	2,174.0	2,174.0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7,951.0	3,981.3	13,556.0	4,227.95	5,403.0	5,403.0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2,185.6	999.0	-	-	3,932.9	3,932.9
	대지지분⑤	-	-	-	-	-	-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33,299.6	15,706.8	11,142.3	14,008.1	14,178.9	14,178.9

※ 변경사유 : 장위1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 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장위1구역외 변경없음)

가. 장위1구역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장위1구역	성북구 장위동 144-24일대	80,312.2	증) 4.4	80,316.6	-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재정비 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80,312.2	증) 4.4	80,316.6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38,568.7	증) 4.4	38,573.1	48.0	
	도로	16,348.5	증) 1.6	16,350.1	20.4	
	녹지	4,037.6	감) 2.9	4,034.7	5.0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학교	17,457.6	증) 0.4	17,458.0	21.7	
	공공공지	98.6	증) 5.3	103.9	0.1	
	공공청사	299.5	-	299.5	0.4	치안센터
	청소년수련시설	326.9	-	326.9	0.4	존치시설
택지 (획지)	소계	41,743.5	-	41,743.5	52.0	
	1-1	36,018.0	-	36,018.0	44.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4,635.4	-	4,635.4	5.8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1-3	1,090.1	-	1,090.1	1.4	근린생활시설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계획 생략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계획 생략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타) 건축계획(변경없음)

나. 장위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자. 장위1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후	
변경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성북구 장위동 일원	918,915.3	증)4.4	918,919.7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918,915.3	증)4.4	918,919.7	100.0	
일반 주거 지역	소계	914,037.8	증)4.4	914,042.2	99.5	
	제1종일반주거지역	63,591.0	-	63,591.0	6.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3,875.2	증)0.4	63,875.6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745,237.4	증)4.0	745,241.4	81.1	
	제3종일반주거지역	41,334.2	-	41,334.2	4.5	
자연녹지지역		4,877.5	-	4,877.5	0.5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나). 주차장(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나).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20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233-86일대	1,905.0	-	1,905.0	서고시111 (08.04.03)	
변경	22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40-20일대	1,444.0	감)	3.0	1,441.0	서고시111 (08.04.03)
기정	25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237-88일대	1,133.0	-	1,133.0	서고시111 (08.04.03)	
기정	26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203-14일대	1,113.0	-	1,113.0	서고시111 (08.04.03)	
기정	27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53-21일대	2,623.5	-	2,623.5	서고시111 (08.04.03)	
기정	31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72-2일대	831.0	-	831.0	서고시111 (08.04.03)	
기정	32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05-9일대	720.0	-	720.0	서고시111 (08.04.03)	
기정	34	녹지	연결 녹지	월계동 51-9일대	1,207.4	-	1,207.4	서고시111 (08.04.03)	
기정	37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00-2번지일대	1,054.0	-	1,054.0	서고시111 (08.04.03)	
기정	a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135-35일대	2,232.4	-	2,232.4	서고시240 (19.07.25)	
변경	b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135-1일대	378.8 (361.2)	증)	0.1	378.9 (361.3)	서고시240 (19.07.25)
기정	c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62-42일대	1,241.0	-	1,241.0	서고시240 (19.07.25)	
기정	d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156일대	2,654.5	-	2,654.5	서고시240 (19.07.25)	
기정	e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287일대	316.0	-	316.0	서고시240 (19.07.25)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구역에 포함된 면적을 의미함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1,444.0㎡→1,441.0㎡) (감 3.0㎡)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b	녹지	경관녹지	면적변경 (361.2㎡→361.3㎡) (증 0.1㎡)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다).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7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77-79	3,387.6 (98.6)	증) 5.3	3,392.9 (103.9)	서고시111 (08.04.03)	
기정	72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319-1	572.4	-	572.4	서고시111 (08.04.03)	
기정	74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13-6일대	1,336.0	-	1,336.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9-18일대	750.0	-	750.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2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36일대	282.0	-	282.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4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75일대	48.0	-	48.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6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2-72일대	440.0	-	440.0	서고시231 (11.08.11)	
기정	87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59일대	106.0	-	106.0	서고시231 (11.08.11)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구역에 포함된 면적을 의미함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공공공지	공공공지	면적변경 (98.6㎡→103.9㎡) (증 5.3㎡)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나). 학교(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장위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68-8	15,784.0	-	15,784.0	시교위고시5 (87.02.17)	
변경	-	광운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124	17,457.6	증) 0.4	17,458.0	시교위고시5 (87.02.17)	
		남대문 중학교	학교	장위동 1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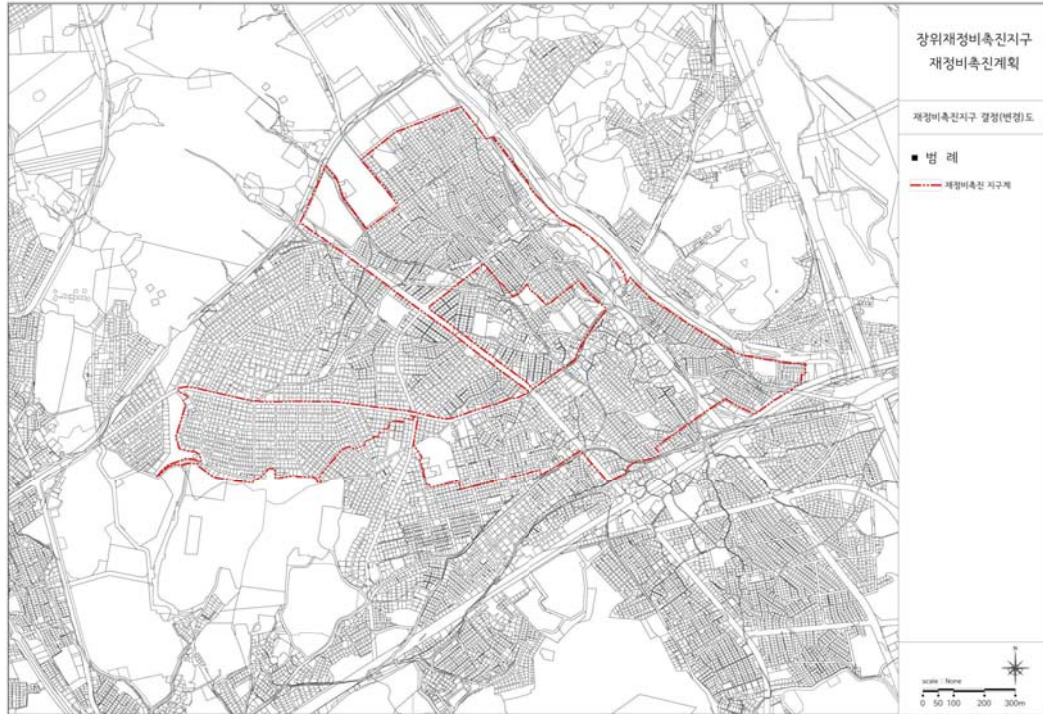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광운초	학교	면적변경 (17,457.6㎡ → 17,458.0㎡) (증 0.4㎡)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남대문중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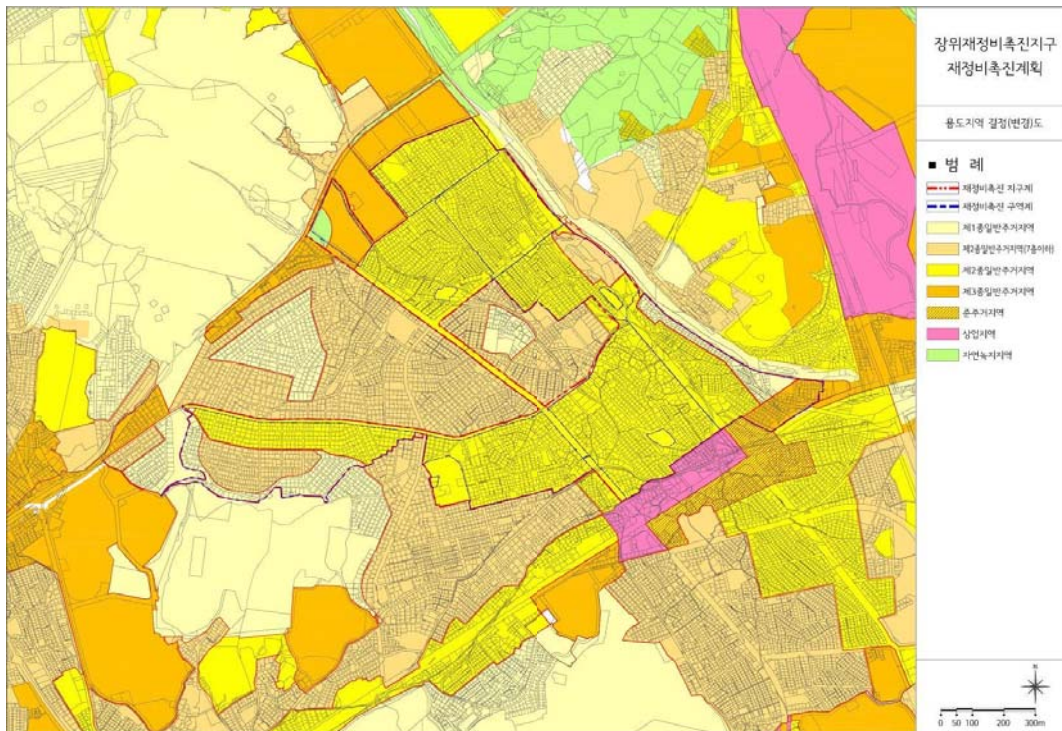
다).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라).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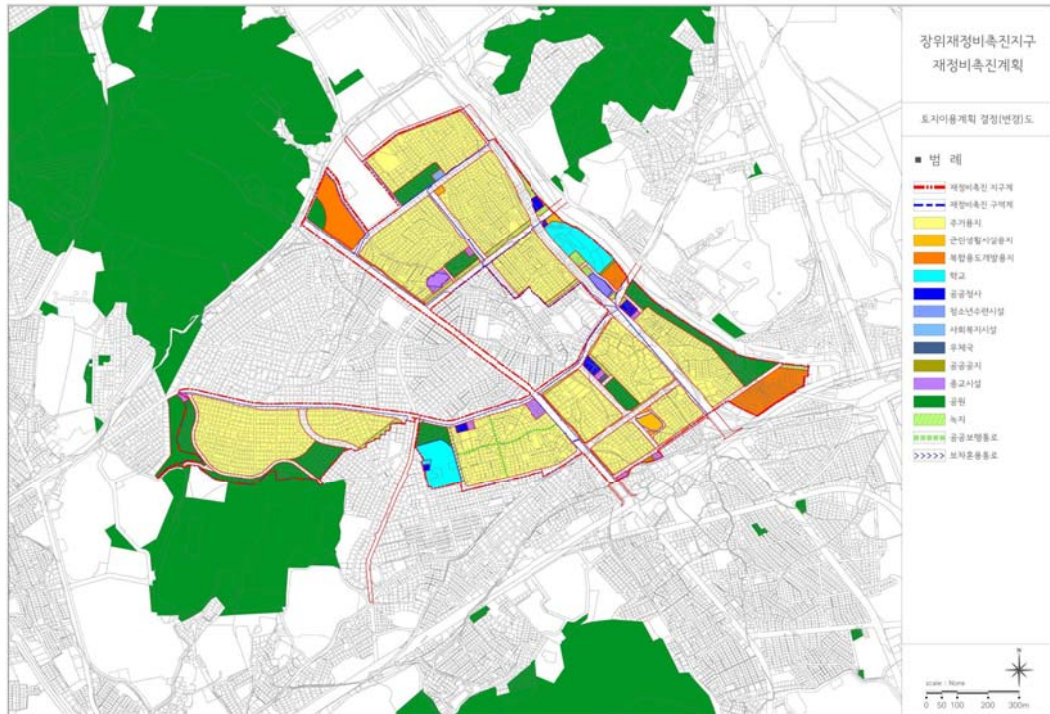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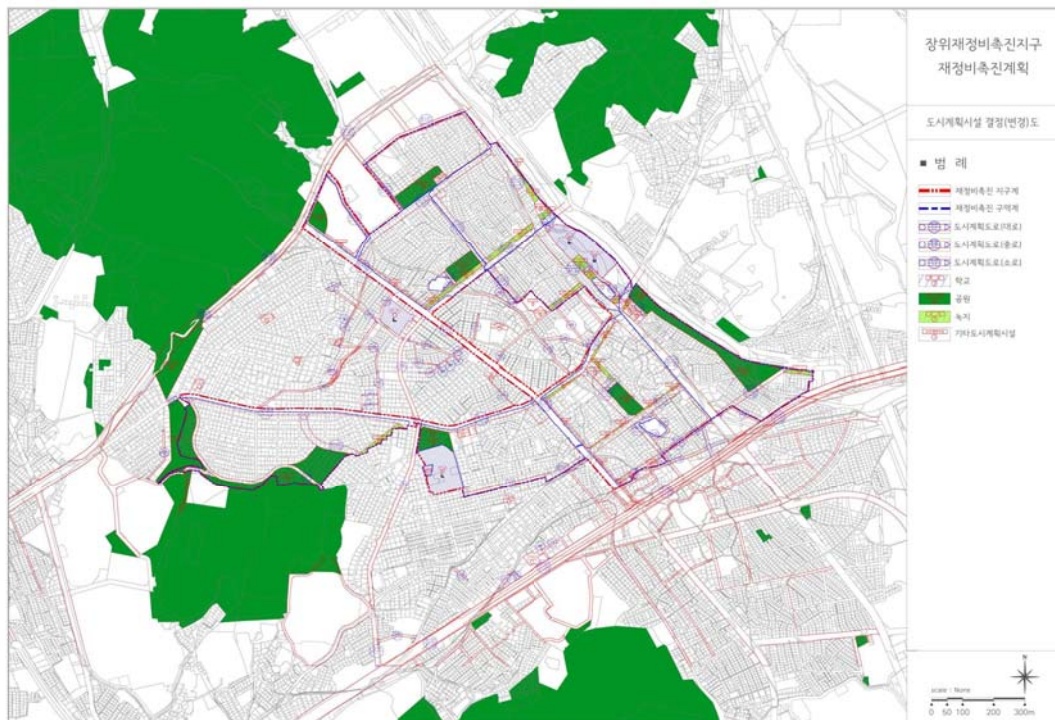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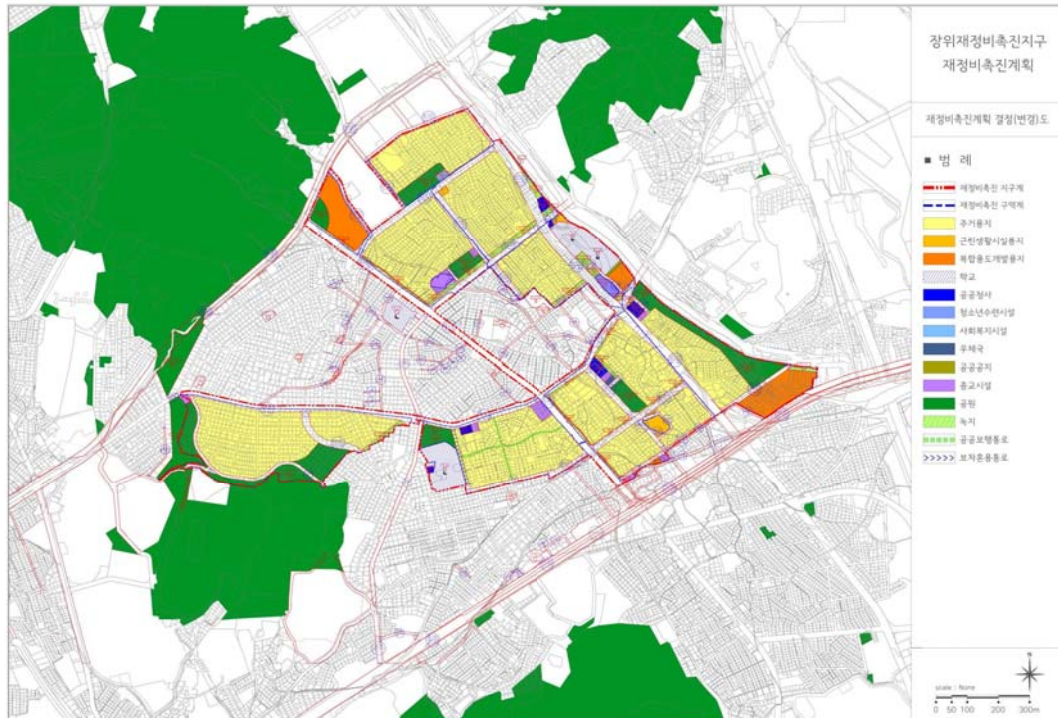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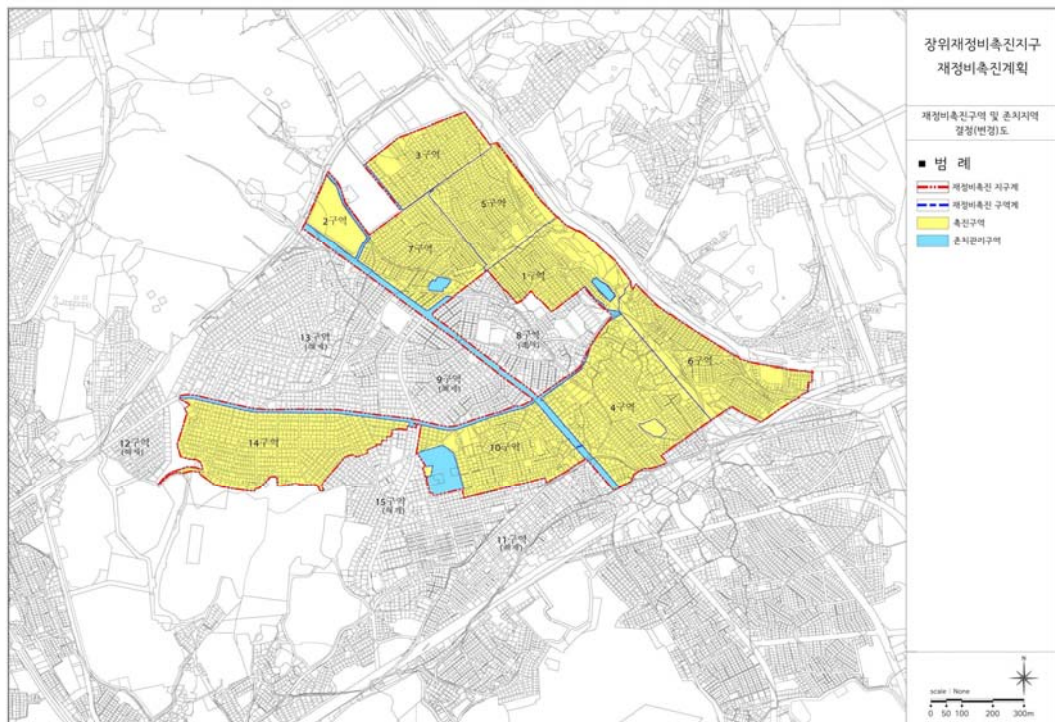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5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2004.4.2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48(2011.6.9.)로 변경(재정비)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2011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부암동 내 거주 특성 및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149,509	증) 43,246.6	192,755.6	2004.4.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 증) 43,246.6㎡	[지구단위계획 편입] 증) 43,246.6㎡ ① 기정 지구단위계획 인근 토지 일부 편입 - 부암동 일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도시자연공원과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관리 - 증) 8,506.7㎡ ②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백악마을) 편입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99호 (‘17.07.20.)) - 현재 추진 중인 성곽마을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부문 경관관리를 위해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중 (백악마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관리 - 증) 34,726.9㎡ ④ 개발제한구역 인근 자연녹지지역 편입 - 증) 13㎡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49,509	증) 43,246.6	192,755.6	100.0	-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139,930	-	139,930	72.6	-
	제1종일반주거지역	4,797	증) 35,381.8	40,178.8	20.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31	증) 7,729.8	8,160.8	4.2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351	증) 135	4,486	2.4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증) 35,381.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증) 7,729.8㎡ - 자연녹지지역 증) 135㎡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가	-

나. 용도지구

□ 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평창 지구	자연 경관지구	종로구 부암동, 구기동, 평창동	2,037,507 (31,879.5)	1977.12.3 (건설부고시제235호)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구기·평창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20m이하	480,290 (13,386.6)	1993.4.30. (서울특별시 고시 제122호)	※관련 고시문에 따른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 탑은 제외)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	1,128	14,191	-	-	-	1	88	868	4	1,040	13,427
광로	-	-	-	-	-	-	-	-	-	-	-	-
대로	1	188	6,407	-	-	-	-	-	-	1	188	6,407
중로	1	667	5,837	-	-	-	-	-	-	1	667	5,837
소로	4	299	2,201	-	-	-	1	88	862	3	211	1,339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56	25~29	주 간선 도로	2,046 (188)	청운초교	세검정 삼거리	일반 도로	-	1984.4.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42호)	자하문로
변경	대로	3	156	25~29	주 간선 도로	2,046 (188)	청운초교	세검정 삼거리	일반 도로	-	1984.4.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42호)	자하문로 ※ 자하문로 중 일부 공간적 범위 결정 L = 72m 결정조서 별도
기정	중로	3	65-1	8~28	보조 간선 도로	8,960 (667)	미아리 고개	자하문	일반 도로	-	1968.6.19. (서울특별시 고시 제46호)	창의문로 북악산로
기정	소로	2	A	8~10	집산 도로	5,866 (88)	연희동	자하문	일반 도로	-	1969.3.12. (서울특별시 고시 제18호)	인왕산로
기정	소로	3	1	6	집산 도로	55	부암동 270-3	부암동 329-11	일반 도로	-	2011.6.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8호)	창의문로5길
기정	소로	3	A	4	국지 도로	130	부암동 236	부암동 237-26	보행자 우선 도로	-	2013.3.28. (종로구 고시 제2013-27)	창의문로10길
신설	소로	3	B	6	국지 도로	26	부암동 281-6	부암동 281-13	일반 도로	-	-	창의문로11길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대로 3-156	대로 3-156	• 공간적 범위 결정 : 대로 3-156 (지하)	• 현황 상 지하를 지나고 있는 부암동 265-21번지 일대에 대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일부 공간적 범위 결정	변경
-	소로 3-B	• 신설 - B=6m, L=26m	• 대상지 내부 도로 진입구간에 대해 원활한 차량통행 및 보행안전에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신설

□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비고
신설	-	일반 도로	부암동 261-9번지 일대	길이	72m	※ 공간적 범위는 지표면 3m 이하부터 하부 전체로 하며, 현황도로로 조성된 부분은 제외함
				폭	31m	
				높이	지표면 3m 이하부터 하부 전체	
				면적	-	

※ 구체적인 면적 및 범위는 결정도에 따름

□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공간적 범위) 신설 - 길이 : 72m - 폭 : 31m - 높이 : 지표면 3m 이하부터 하부 전체	• 도시계획도로 상부 공간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공간적 범위 결정	신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암동 251-7 일대	471	-	471	2004.4.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	-
변경	①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암동 251-7 일대	471	감) 94	377	2004.4.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	-
기정	②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암동 278-16일대	323	-	323	2004.4.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	-
폐지	②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암동 278-16일대	330	감) 330	-	2004.4.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	기정 308-7 누락정정 포함
기정	③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암동 370-12일대	598	-	598	2009.04.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68호)	-
기정	④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암동 328-2 일대	545.3	-	545.3	2020.5.21.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20-54호)	-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①	주차장	• 면적 감소 - 위치 : 부암동 251-7일대 - 면적 : 감) 94㎡	• 지형차에 의해 조성이 불가능한 민간소유 대지 제척	-
②	주차장	• 폐지 - 위치 : 부암동 278-16일대 - 면적 : 감) 330㎡	• 창익문로 변 주차장 조성 시 토지 보상비 · 공사비 등 사업 효율 저하 •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구의회사무국-6612호)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원안 가결된 바 있으며, 존치 필요성 저하	-

□ 주차장 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축물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주차장	90%이하	90%이하	지상1층이하	-
기정	②	주차장	90%이하	180%이하	지상2층이하	-
폐지	②	주차장	-	-	-	-
기정	③	주차장	90%이하	90%이하	지상1층이하	-
기정	④	주차장	90%이하	200%이하	지상2층이하	-

☐ 주차장 규모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②	주차장	• 건축물 규모 폐지 - 부암동 278-16일대	• 창의문로 변 주차장 폐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결정 삭제	-

3)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철도	일반 철도	은평구 갈현동 산131-1	강남구 삼성동 111-8	연신내역 서울역	20,515.0	318,995.0	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	-

나. 공간시설

1) 공원

☐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4	6,639	4	6,639	4	6,639	4	6,639
소공원	3	5,469	3	5,469	3	5,469	3	5,469
어린이공원	1	1,190	1	1,170	1	5,469	1	5,469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부암동 251-8일대	1,448	-	1,448	2004.4.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	-
기정	②	공원	소공원	부암동 336-2일대	2,763	-	2,763	2004.4.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	-
기정	③	공원	어린이공원	부암동 303-1일대	1,170	-	1,170	2004.4.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	-
기정	④	공원	소공원	부암동 262-1일대	1,258	-	1,258	2011.6.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8호)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설	-	부암동 327	2,063.4	-	2,063.4	2011.6.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8호)	무계원
신설	②	문화시설	미술관	부암동 261-9	-	3,193	3,193	-	학교재 미술관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②	문화시설	미술관	- 문화시설 신설 - 위치: 부암동 261-9일대 - 면적: 증) 3,193㎡ ※특별계획구역 폐지	- 장기간 내대지로 방치된 「부암3-1특별 계획구역」에 대해, 「평창아트밸리조성 기본계획(2014)」과 연계하여 문화거점 조성 유도를 위한 문화 시설 결정 (민간조성)	문화시설 조성 지침에 따라 조성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건축물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문화시설	-	50%이하	100%이하	지상 2층이하	-
변경	①	문화시설	-	50%이하	100%이하	지상 2층(11m)이하	-
신설	②	문화시설	미술관	50%이하	100%이하	지상 2층(11m)이하	-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①	문화시설	-	- 높이 변경 - 기정: 지상 2층이하 - 변경: 지상 2층(11m)이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 제1호 기준 준용	-
②	문화시설	미술관	-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 건폐율: 50%이하 - 용적률: 100%이하 - 높이: 지상 2층(11m)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①항 제1호, 제55조 제①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 제1호 기준 준용	-

☐ 문화시설 조성지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부암동 261-9번지	-
면적	3,193㎡	-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 민간조성)	-
규모	-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2층(11m) 이하 - 지형여건상 지하층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층의 노출부분은 1개층(4m)이하 (기타, 지하층 높이 기준은 민간부문시행지침 제21조(지하층 높이 기준)에 따름)	-

구분	계획내용	비고
배치	• 창의문로 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한계선 2~3m이상 후퇴 • 창의문로 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고층부 벽면한계선 10m이상 후퇴 (전면도로 최저점을 기준으로 15m 이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고층부 벽면한계선 적용)	-
형태	• 지역 고유의 지형과 인접 대지의 표고를 고려한 건축물 형태 계획 • 가로경관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가로변 건축물 스케일을 유지 • 전면부 입면 조성 시 형태 분절, 섯백 등 가로변에서의 과도한 수평 길이 형성 지양 • 인접 공원시설을 고려한 연결성 있는 공간 조성 • 인접 대지 및 도로와의 경계부 등 대지 본래의 지형을 최대한 유지(절·성토 최소화)	-
대지 내 공지	• 창의문로와 배후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건축계획(안)에 따라 세부적인 위치 변경 가능) • 대지 내 조경은 도로에 면한 전면부와 소공원 연결부를 중심으로 기존 수목의 위치를 고려하여 계획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필지내 이식)	-
교통처리	• 창의문로 변 차량진출입구 폭원 6m이하 조성 •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한 차량진출입구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
기타	• 배후 주거지의 조망을 차폐하지 않고, 소음·빛 공해 등 인접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해당 문화시설 조성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해당 문화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시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처도록 함	-
공공성 확보 I	• 부지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 따른 건축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주차장 시설 조성 •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건축계획 수립 후 구체화된 설정 대상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차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종로구에 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지상권설정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완료 시점에 지상권 설정등기 이행 (지상권자 : 종로구)	-
공공성 확보 II	• 주차장과 연계한 화장실 개방 • 옥상공원 조성 시 주변 조망, 야외미술관, 주민 이용마당 등 지역 주민이 활용(주거)가능하도록 함 • 배후 주거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보행통로 등과 연계 • 공공보행통로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지상권설정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완료 시점에 지상권설정등기 이행 (지상권자 : 종로구)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최대개발규모	인왕 구역	A (대상지 내부)	660㎡이하	평균대지면적: 250㎡	(좌동)	(좌동)	-
		B (창의문로, 자하문로 변)	800㎡이하	평균대지면적: 400㎡	(좌동)	(좌동)	-
		C (제1종 일반주거지역)	800㎡이하	평균대지면적: 400㎡	(좌동)	(좌동)	-
	백악 구역	D (대상지 내부)	-	-	660㎡이하	-	신설
		E (창의문로 변)	-	-	660㎡이하	-	신설

기정	변경
주)	주)
1. 최대개발규모이하인 필지는 분할을 금지한다. - 단, 필지의 정형화 및 지형여건에 따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필지 상호간 분할·교환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 필지분할가능선이 표시된 경우 대지의 분할은 필지분할가능선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삭제)
2.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대지의 분할 시 평균 대지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2. 대지 분할 시 평균대지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정형(요철형, 세장형, 삼각형) 필지의 정형화 2) 필지 상호간의 분할·교환 ※ 요철형 대지 및 세장비 과다(1:3이상)대지 발생시 불허 3) 지형여건(지형단차, 현황측량결과 등)을 반영한 필지의 분할 4) 필지분할가능선 및 필지교환가능선에 따른 필지의 분할 5) 전면도로와의 접도여건 확보,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한 토지의 분할·교환
3. 특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동개발이 계획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의 대지의 공동개발 또는 합필을 할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구단위계획 내의 대지의 공동개발 또는 합필을 할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동개발이 계획된 경우 - 기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 - 기존 단일 필지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4. 기존 단일필지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토록 한다.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최대 개발규모	• 최대개발규모 660㎡이하 신설 - 적용구역 : 백악구역 D, E	• 신규 편입되는 백악구역 내 개발 규모 관리를 위한 최대개발 규모 신설	신설
필지 분할기준	• 최대개발규모이하 필지분할 금지 지침 삭제 - 적용구역 : 인왕구역 A, B, C	• 인왕구역 내 필지 규모 현황 및 최근 건축 동향을 반영하고, 다양한 주택유형도입 유도	변경

나. 공동개발

□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공동개발 지정	- 공동개발(지정)이 표시된 필지는 계획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하여야 함.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공동개발(지정) 변경은 종로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	(좌동)	변경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권장)이 표시된 필지는 계획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하여야 함.	(좌동)	변경

※ 부암동 382-68, 부암동 382-69번지는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동개발 지정으로 계획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함 (부암동 382-60, 부암동 382-7번지와 공동개발 권장). 세부 지침은 민간실행지침 제8조를 따름.

□ 공동개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공동개발	- 공동개발 지정 - 기정 : 72개소, 변경 : 40개소 - 공동개발 권장 - 기정 : 3개소, 변경 : 36개소	지적변화, 접도 등 필지현황,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지정·권장 계획 변경	변경

다. 필지분할·교환

□ 필지분할·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분할	292-12, 216-13, 216-6, 303-1, 305, 382-4, 382-61, 318-13, 318-14, 318-15, 318-22, 338-57, 342-7, 342-5, 362-6, 362-30, 362-30	305, 318-14, 318-15, 318-22, 342-7, 333-1, 216-6, 300	필지분할가능선이 표시된 경우 필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	(좌동)	변경
필지교환	342-17, 342-16	342-17, 342-16, 216-6, 300	필지교환가능선이 표시된 경우 필지교환가능선에 따라 교환	(좌동)	변경

□ 필지분할·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필지분할	292-12, 216-13, 303-1, 382-4, 382-61, 318-13, 338-57, 362-6, 362-30, 362-15번지 필지분할가능선 삭제 305번지 필지분할가능선 조정 216-6, 300, 333-1번지 필지분할가능선 신설	- 지목 및 소유 현황을 고려하고, 지적 변화를 반영하여 필지분할가능선 삭제 - 공동개발 지정 계획 변경에 따라 필지분할가능선 조정 - 현황 건축물을 고려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필지분할가능선 신설	변경
필지교환	216-6, 300번지 필지교환가능선 신설	현황 건축물을 고려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필지교환가능선 신설	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연번	지번	계획내용				변경사유
		면적(㎡)	기정	면적(㎡)	변경	
1	265-4	165	지정	165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265-23	93		93		
2	278-35	6	지정	6	지정	• 변경 없음.
	278-7	212		212		
3	278-8	159	지정	159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278-9	13		13		
	278-10	3		3		
4	278-18	255	지정	255	지정	• 변경 없음.
	278-20	142		142		
5	279-15	(399)	지정	-	-	• 지적변화(분필 및 지번변경)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279-16	-		366	지정	• 지적변화(분필 및 지번변경)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279-33	-	-	399		
6	216-6	(64)	지정	-	폐지	• 지적변화(분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292	(239)		-		
	293-1	26		26	지정	• 변경 없음.
	293-2	112		112		
	293-5	10	권장	10	권장	• 인접필지(맹지)와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293-5	10		10		
	292-5	-		(332)		
	216-7	-		(64)		
7	293-4	83	지정	-	폐지	• 지적변화(분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216-6	(18)		-		
	292	(15)		-		
	293-3	89	권장	89	권장	• 맹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216-13	-		7		
	292-12	-		14		
8	290-1	-	-	413	지정	• 맹지에 대해 동일 소유의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 지정
	292	-		701		
9	297-1	13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297-2	152		-		
	297-3	235		-		
10	297-4	235	지정	235	지정	• 변경 없음.
	297-5	241		241		
11	297-10	165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297-11	241		-		
12	297-13	147	지정	147	지정	• 지적변화(분필)를 반영하여 대지 면적 조정
	379-1	(168)		165		
13	296	248	지정	248	권장	• 맹지 및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70-13	3		3		

연번	지번	계획내용				변경사유
		면적(㎡)	기정	면적(㎡)	변경	
14	305	221	지정	-	폐지	• 인접필지와 지목 및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82-61	6		-		
	382-4	7		-		
	382-60	139		139	지정	• 변경없음
	382-7	33		33		
15	305	347	지정	-	폐지	• 인접필지와 지목 및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82-4	43		-		
	318-13	13		-		
16	305	305	지정	-	폐지	• 인접필지와 지목 및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18-13	60		-		
17	306-17	7	지정	7	지정	• 변경 없음.
	306-22	248		248		
18	316	149	지정	149	지정	변경 없음.
	317-7	13		13		
	319-14	7		7		
19	319-1	463	지정	463	지정	• 변경 없음.
	319-6	86		86		
20	319-13	50	지정	50	권장	• 맹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19-21	304		304		
21	319-20	20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19-10	40		-		
	319-11	268		-		
22	319-12	-	-	460	권장	• 맹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19-9	-		331		
23	322-1	(78)	지정	(78)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23	238		238		
24	322-4	221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형태 및 지번)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22-9	116		-		
	322-19	26		-		
25	322-8	493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형태 및 지번)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22-13	109		-		
	322-10	139		-		
26	322-4	-	-	245	지정	• 맹지에 대해 동일 소유의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 지정
	322-48	-		131		
27	322-20	330	지정	330	지정	• 변경 없음.
	322-23	17		17		
	322-22	(3)		(3)		
28	322-26	364	지정	364	지정	• 변경 없음.
	322-42	76		76		
	322-43	76		76		
29	322-30	185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형태 및 지번)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22-31	13		-		
	322-12	3		-		

연번	지번	계획내용				변경사유
		면적(㎡)	기정	면적(㎡)	변경	
30	322-47	-	-	65	지정	• 맹지 및 과소필지에 대해 동일 소유의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 지정
	322-30	-		174		
	322-30	-	-	174	권장	• 인접필지(맹지)와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22-27	-	-	308		
31	325-1	119	지정	119	지정	• 변경 없음.
	325-2	982		982		
32	329-1	175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29-25	33		33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지적변화(합필)와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29-2	-	-	502		
33	329-24	76	지정	76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29-8	258		258		
34	329-9	198	지정	198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29-27	34		34		
35	329-10	126	지정	126	지정	• 변경 없음.
	330-3	40		40		
36	329-12	704	지정	704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30-1	69		69		
37	332-7	165	지정	165	지정	• 변경 없음.
	332-2	99		99		
38	336-1	393	지정	393	지정	• 변경 없음.
	338-12	443		443		
39	337-1	40	지정	40	지정	• 변경 없음.
	338-6	235		235		
40	338-46	192	지정	192	지정	• 변경 없음.
	338-47	136		136		
	338-43	585		585		
41	338-13	278	지정	278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37-4	26		26		
42	345-3	2,129	지정	2,129	권장	• 맹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46-3	129		129		
43	338-11	159	지정	-	폐지	• 소유관계 및 지목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38-57	(58)		-		
44	329-23	337	지정	337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38-56	37		37		
45	359-5	169	지정	285	권장	• 맹지에 대해 지적변화(합필) 및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59-12	(93)		(93)		
	359-6	30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46	359-3	43	지정	43	지정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대지 면적 조정
	359-7	73		166		
	359-8	93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47	362-20	(1)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62-6	(643)		-		

연번	지번	계획내용				변경사유
		면적(㎡)	기정	면적(㎡)	변경	
48	362-15	(216)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62-20	(16)		-		
	362-6	(18)		-		
49	361-1	261	지정	261	권장	• 필지의 정형화를 위해 소유가 다른 인접 대지와 공동개발 권장
	362-15	(88)		94		
50	369-13	221	지정	221	지정	• 변경 없음.
	375-1	56		56		
51	369-86	26	지정	26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69-87	7		7		
	369-16	228		228		
52	369-22	288	지정	288	지정	• 변경 없음.
	375-3	17		17		
53	369-67	225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69-91	61		-		
54	369-70	238	지정	238	지정	• 변경 없음.
	369-89	93		93		
	369-90	33		33		
55	369-76	172	지정	172	지정	• 변경 없음.
	373-3	40		40		
56	369-82	53	지정	53	지정	• 변경 없음.
	369-80	291		291		
57	369-84	60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69-83	228		-		
58	376-1	7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69-18	288		-		
59	382-1	258	지정	258	권장	• 변경 없음.
	382-74	43		43		
60	382-82	7	지정	7	지정	• 변경 없음.
	382-83	69		69		
61	342-10	60	지정	60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42-9	50		50		
	342-8	46		46		
	342-7	(45)		(45)		
62	342-11	122	권장	122	권장	• 변경 없음.
	342-12	60		60		
63	342-15	46	지정	46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42-16	149		149		
64	342-3	56	지정	56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42-6	93		93		
65	342-5	(80)	지정	-	폐지	•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342-13	109		109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42-14	102		102		

연번	지번	계획내용				변경사유
		면적(㎡)	기정	면적(㎡)	변경	
66	251-14	122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251-15	26		-		
	251-50	(11)		-		
	251-51	60		-		
67	251-16	53	지정	-	폐지	• 지적변화(합필)를 반영하여 공동개발 지정 폐지
	251-17	136		-		
68	251-19	(19)	권장	(19)	폐지	• 획지계획 및 소유관계 등을 반영하여 공동개발 권장 폐지
	252	(307)		307		
69	251-17	-	-	189	권장	• 부정형 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251-19	-		103		
	251-19	-		103	지정	• 맹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지정
	251-53	-		3		
70	251-2	152	지정	152	지정	• 변경 없음.
	251-49	3		3		
71	251-4	96	지정	96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251-47	66		66		
72	254-7	446	권장	446	권장	• 변경없음.
	260-8	3		3		
73	332-19	116	지정	116	권장	• 맹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32-24	155		155		
74	332-22	215	지정	215	지정	• 변경 없음.
	332-25	89		89		
75	333-13	549	지정	549	지정	• 접도 등 건축기준 충족을 위해 필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대지를 포함하여 공동개발 지정
	333-14	331		331		
	333-1	-	-	(31)		
76	333-18	109	지정	109	권장	•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33-27	13		13		
	333-22	3		3		
77	333-10	182	지정	182	권장	• 맹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33-24	149		149		
78	333-7	93	지정	93	권장	• 맹지 및 과소필지에 대해 지적변화(분필)와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33-31	145		126		
	333-34	-	-	11		
	333-35	-	-	8		
79	333-8	198	지정	198	권장	• 맹지 및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33-32	10		10		
80	334	169	지정	169	지정	변경 없음.
	333-5	126		126		

연번	지번	계획내용				변경사유
		면적(㎡)	기정	면적(㎡)	변경	
81	379-1	(129)	부암2 특별 계획 구역	(129)	부암2 특별 계획 구역	과대필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부 2필지를 포함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379-2	40		40		
	303-1	5,402		5,402		
	303-2	-		294		
	304	-		198		
82	318-21	-	-	8	권장	맹지 및 과소필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18-15	-		366		
83	382-58	-	-	122	권장	맹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권장
	382-62	-		165		
84	261-9	3,193	부암 3-1 특별 계획 구역	-	폐지	특별계획구역 폐지 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85	260-4	-	-	23	지정	• 기개발된 동일소유 필지 중 맹지 및 과소필지에 대해 공동개발 지정
	260-5	-		36		
86	260-22	-	-	20	지정	• 기개발된 동일소유 필지 중 맹지 및 과소필지에 대해 공동개발 지정
	260-26	-		13		
87	260-1	-	-	129	지정	• 기개발된 동일소유 필지 중 맹지 및 과소필지에 대해 공동개발 지정
	260-25	-		30		
88	258-5	-	-	30	지정	• 기개발된 동일소유 필지 중 과소필지에 대해 공동개발 지정
	257-3	-		43		
89	244-17	-	-	20	지정	• 기개발된 동일소유 필지 중 과소필지에 대해 공동개발 지정
	245-2	-		483		
	245-7	-		60		
90	48-13	-	-	408	지정	• 기개발된 동일소유 필지 중 과소필지에 대해 공동개발 지정
	48-36	-		5		
91	32-1	-	-	175	지정	• 기개발된 동일소유 필지 중 맹지 및 과소필지에 대해 공동개발 지정
	29-27	-		8		
92	257-1	-	-	99	권장	• 기 개발된 동일하지 않은 필지 중 과소필지에 대해 공동개발 권장
	257-5	-		13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조서

1) 허용용도

□ 허용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허용 용도	A1 (대상지 내부)	• 단독주택 (3가구이하)	A (대상지 내부)	변경
	A2 (대상지 내부)	• 단독주택 (3가구이하)		
	B (창의문로 변)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간선가로변 도로와 접한 대지의 경계로부터 터 30m 이내 근린생활시설 입지 가능)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경
	C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 및 지구 허용용도	(좌동)	변경

※ 현진건 집터(부암동 325-1,2번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 제5호 나목의 용도(1,000㎡ 미만의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허용

□ 허용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허용용도	• 적용구역 A1, A2를 적용구역 A로 통합 - 적용구역 A1의 허용용도로 통합 - 기정: A1, A2, 변경: A	• 다양한 가족 구성원 형성 등 주민요구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단독주택으로 제한된 허용용도 A2를 허용용도 A1과 동일하게 변경	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허용 - 적용기준: 가로변에 노출된 지하층, 한옥권장구역 내 한옥 건축물 - 적용구역: 인왕구역 A	•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특성을 반영하되, 부암동 고유의 정주환경 보전을 위해 주거용도 도입이 불가능한 가로변에 노출된 지하층에서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용. • 또한 종로구 시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무게원 중심의 역사문화경관 창출을 위해 한옥권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용	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단, 근린생활시설의 허용은 법정 부설 주차장 대수 확보 및 민간부문 시행지침 중 전면공지 조성 지침 준수 전제로 함.	
	• 간선가로 변 근린생활시설 입지가능선(30m) 삭제	• 간선가로 변 근린생활시설 입지 가능선의 실효성이 미미함에 따라 계획 삭제	변경
	• 인왕구역 내 신규 편입지역을 적용구역 C로 편입	• 용도지역, 입지 등 구역 현황을 고려하여, 기정 관리구역 중 C구역으로 편입	신설

2)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각 용도지역·지구별 도입 가능한 용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불허용도로 제시된 용도의 입지는 불허함.
- 관련 법령 및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의해 입지가능한 용도로 하더라도, 체인점 형태(가맹사업)의 영업을 위한 해당 용도의 입지는 불허함.

□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불허용도	백악구역	D (대상지 내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1가구 당 전용면적 50㎡ 미만	신설
			공동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1가구 당 전용면적 50㎡ 미만	
				• 기숙사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종교집회장 • 장의사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 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 • 체육관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		
	교정 및 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				
		E (창의문로 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1가구 당 전용면적 50㎡ 미만	신설
			공동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1가구 당 전용면적 50㎡ 미만	
• 기숙사 • 아파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총포판매소 •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등 • 장의사 • 노래연습장 • 다중생활시설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판매시설	• 소매시장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창고시설	• 창고 •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불허용도	백악나지	E (창의문로 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동차 관련시설	• 세차장 • 차고 및 주차장	신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구역 전체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일반음식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하는 업종 전종 입지 불허 • 단, B·C·D·E 구역 내 바닥 면적 100㎡미만의 규모에 입점하는 경우 및 한옥권장구역 내 한옥건축 시 예외 적용				

□ 불허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불허용도	• 불허용도 D, E 신설 - 적용구역: 불허용도D(백악구역 D) : 불허용도E(백악구역 E)	• 신규 편입되는 백악구역 고유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환경 저해 용도에 대한 최소한의 불허용도 신설	신설
	• 가맹사업 및 체인사업 불허 신설 - 적용구역 : 구역 전체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특색있는 가게 유도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한 '가맹사업' 및 '체인사업' 불허 • 단, 지역생활편의를 고려하여 B·C·D·E구역 내 바닥면적 100㎡미만의 규모에 입점하는 경우와 무계원 중심의 한옥경관 창출을 위해 한옥권 장구역에서 한옥으로 건축하는 경우 예외 적용	신설

나. 건축물 밀도 결정 조서

1) 건폐율

☐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인왕구역	A (대상지 내부)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좌동)		-
		B (창의문로, 자하문로 변)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좌동)		-
		C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좌동)		-
	백악구역	-			자연경관지구	30%이하	신설
		D (대상지 내부)	-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신설
		-		자연경관지구	30%이하	신설	
		E (창의문로 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신설

※ 부암동 322-22번지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지구에 따름

☐ 건폐율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건폐율	• 건폐율 30%이하 계획 신설 - 적용구역: 인왕구역 C, 백악구역 D 중 자연경관지구 • 건폐율 60%이하 계획 신설 - 적용구역: 백악구역 D(자연경관지구 제외), 백악구역 E	• 신규 편입되는 백악구역, 인왕구역(일부)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에서 정하는 건폐율 기준에 따른 건폐율 계획 신설	신설

☐ 건폐율 완화계획 결정 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완화조건		완화계획		관련기준
건폐율 완화	자연경관지구	인왕구역	• 높이 8m(2층)이하 건축 시		40% 이하	도시계획조례 제39조 ⑧항 2.	신설
		백악구역	용도계획연계 시	• 주거용도 - 단독주택 건축 시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건축 시 각 6세대 미만	40% 이하	도시계획조례 제39조 ②항 2.	
			높이계획연계 시	• 기타용도 - 높이 8m(2층)이하 건축 시	40% 이하	도시계획조례 제39조 ②항 2.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①항 제6호에 의해 「건축법」 제55조(건폐율) 완화 가능

☐ 건폐율 완화계획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건폐율 완화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40%이하 완화계획 변경·신설	•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정비구역」(‘17.07.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9호) 내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계획을 반영하고, • 도시계획조례 제39조 ②항 2에 따라 신규 편입되는 인왕구역 내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 계획 신설	신설

2) 용적률

☐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용적률	인왕 구역	A (대상지 내부)	100%이하	(좌동)	-
		B (창의문로, 자하문로 변)	100%이하	(좌동)	-
		C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이하	(좌동)	신설 (일부)
	백악 구역	D (대상지 내부)	-	150%이하	신설
		E (창의문로 변)	-	200%이하	신설

※ 리모델링형성화구역 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①항 제6호에 의해 「건축법」 제56조(용적률) 완화 가능

※ 부암동 322-22번지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지구에 따름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용적률	• 용적률 150%이하 계획 신설 - 적용구역: 인왕구역 C 중 신규 편입지역	• 인왕구역 C 중 신규 편입되는 부분의 해당 용도지역·지구에서 정하는 용적률 기준 준용	신설 (일부)
	• 용적률 150%이하 계획 신설 - 적용구역: 백악구역 D • 용적률 200%이하 계획 신설 - 적용구역: 백악구역 E	• 신규 편입되는 백악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지구에서 정하는 용적률 기준 준용	신설

3) 높이

☐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높이	인왕 구역	A (대상지 내부)	• 2층이하로서 8m이하 ※ 전시장 용도 준수 시 최고높이 2층(10m)이하 적용 (단, 전시장 용도 외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 ※ 주거형 건축물 중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의 건축물은 최고높이 2층(10m)이하 적용 • 지형 여건상 지하층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층의 노출부분은 1개층 이하로 함		• 2층이하로서 8m이하 ※ 전시장 용도 준수 시 최고높이 2층(11m)이하 적용 (단, 전시장 용도 외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 ※ 주거형 건축물 중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의 건축물은 최고높이 2층(11m)이하 적용		변경					
		B (창의문로, 자하문로 변)										
		C (제1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 4층이하, 18m이하	최고고도지구	• 20m이하	변경
								-		자연경관지구	• 3층(12m)이하	신설
		백악 구역	D (대상지 내부)	-		최고고도지구	• 20m이하	신설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자연경관지구	• 3층(12m)이하	
	E (창의문로 변)	-		최고고도지구	• 20m이하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 지형 여건상 지하층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층의 노출부분은 1개층(4m)이하로 함 • 한옥은 (h+0.65a)m이하 (1층:h=4m, 2층:7m, a=건물폭)		신설

□ 높이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높이	• 전시장, 지붕경사 3:10 건축물 높이 2층(10m)이하 → 전시장, 지붕경사 3:10 2층(11m) 변경 (허용용도 A·B)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 제1호 범위 내 높이 기준 및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변경	변경
	• 한옥 높이 (h+0.65a)m 이하 신설	• 한옥 건축 시 적용 가능한 기준 높이 신설	신설
	• 높이 4층(18m)이하 → 20m이하 변경 - 적용구역: 인왕구역 C 중 최고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높이 기준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0호 (2014.03.27.)」 반영	변경
	• 높이 20m이하 신설 - 적용구역: 백악구역 D, E 중 최고고도지구	• 신규 편입 되는 백악구역 내 최고고도지구에 대해 최고고도지구 높이 기준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0호 (2014.03.27.)」에 따른 높이 기준 신설	신설
	• 높이 3층(12m)이하 신설 - 적용구역: 인왕구역 C · 백악구역 D 중 자연경관지구	• 신규 편입 되는 백악구역 내 자연경관지구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④항」 따른 높이 신설	신설
	• 가로변 지하층 노출 1개층 (4m)이하 변경 - 적용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과도한 절·성토로 인한 부담동 교유의 지형 및 경관 훼손 및 가로변 거대건축물 형성방지	신설

4)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표시	적용 구역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A	대상지 내부	용도	허용용도 A1		허용용도 A		변경
				허용용도 A2				
			건폐율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좌동)		
			용적률		100%이하	(좌동)		
			높이		기준높이 : 2층(8m)이하 최고높이 : 2층(10m)이하	기준높이 : 2층(8m)이하 최고높이 : 2층(11m)이하		
	B	창의 문로, 자하 문로 변	용도	허용용도 B		허용용도 B		변경
			건폐율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좌동)		
			용적률		100%이하	(좌동)		
			높이		기준높이 : 2층(8m)이하 최고높이 : 2층(10m)이하	기준높이 : 2층(8m)이하 최고높이 : 2층(11m)이하		
	C	제1종일반 주거 지역	용도	허용용도 C		(좌동)		변경
			건폐율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좌동)	
					-			
			건폐율 완화	-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 조건 준수 시 건폐율 40%이하 완화		
			용적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이하	(좌동)		
			높이	최고고도지구	4층 이하, 18m 이하	최고고도지구	20m이하	
						자연경관지구	3층(12m)이하	
	D	대상지 내부	용도	-	불허용도 D			신설
			건폐율	-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자연경관지구	30%이하		
			건폐율 완화	-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 조건 준수 시 건폐율 40%이하 완화		
			용적률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이하		
			높이	-	최고고도지구	20m이하		
					자연경관지구	3층(12m)이하		
	E	창의 문로 변	용도	-	불허용도 E			신설
			건폐율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	최고고도지구 20m이하		

- ※ 현건 집터(부암동 325-1,2번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 제5호 나목의 용도(1,000㎡ 미만의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허용
- ※ 부암동 382-68, 부암동 382-69번지는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동개발 지정으로 계획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함 (부암동 382-60, 부암동 382-7번지와 공동개발 권장). 세부 지침은 민간시행지침 제8조를 따름.
- ※ 부암동 322-22번지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지구에 따름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배치

□ 건축물 배치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 한계선	인왕 구역	창의문로변	2m	2~3m	보행공간 정비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좌동)	변경
		자하문로변	2m	3m	보행공간 정비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좌동)	변경
		서울성곽 연결부	3~5m	(좌동)	서울성곽 보호	(좌동)	-
		대상지 내부	1~4m	(좌동)	필지경계선 기준 1~4m 전면도로 중심선 기준 2~3m	(좌동)	변경
	백악 구역	창의문로변	-	2m	-	보행공간 정비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신설
		대상지내부	-	1~2m	-	보행공간 정비	신설
벽면 한계선	인왕 구역	261-9번지 문화시설	-	10m	-	정연한 가로경관 관리 필지경계선 기준 고층부 벽면한계선 10m	신설
골목 지정선	옛 길 변 (4m미만 도로)		-	현행 골목선	-	현행 골목선 기준	신설

- ※ 전면도로 폭원이 4m 미만인 옛 길, 옛 골목길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개정 시 적용의 완화 구역으로 지정 공고 후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 배치 계획 준수
- ※ 벽면한계선은 전면도로 최저점을 기준으로 15m 이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부분에 고층부 벽면한계선을 적용함.
- ※ 부암동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종로구 공고 제2019-234호) 내 리모델링 건축물 및 「서울시 건축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구역 내 건축물에 적용
-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①항 제6호에 의해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완화 가능
-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①항 제6호에 의해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금지) 완화 가능

□ 건축물 배치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건축 한계선	창의문로, 자하문로 변 건축한계선 변경 - 적용구역 : 인왕·백악구역(신규편입구역)	인왕구역 자하문로 변은 「종로구 고시 제2019-35호」에 따라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계획하여 보행공간 정비 및 가로경관 관리 백악구역 창의문로변은 지정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2m 건축한계선을 계획하여 보행공간 정비 및 가로경관 관리	변경
건축 한계선	대상지 내부에 계획된 건축한계선 변경 - 적용구역 : 인왕구역	획지 변경, 보차혼용통로 변경 등에 따른 건축한계선 구간 및 폭원 변경	변경
건축 한계선	대상지 내부에 건축한계선 신설 - 적용구역 : 백악구역	주요 도로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신설	신설
	옛 길, 급경사 구간 등 4m미만 골목길 변 건축한계선 폐지 - 적용구역 : 인왕구역 내 서울성곽 주변, 안골마을 일대	좁은 도로 폭원, 계단 등 차량접근이 어려운 4m미만의 옛 길(서울성곽 주변) 및 골목길변(안골마을 일대) 건축한계선 계획 폐지	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벽면 한계선	창의문로 변 고층부 벽면한계선 신설 - 적용구역 : 261-9번지 문화시설	창의문로 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조성 시 가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층부 벽면한계선 10m 신설	신설
골목 지정선	옛 길 변에 현황 골목선을 기준으로 골목지정선 지정	4m미만 옛 골목의 폭원, 형상, 경관 등 골목의 형태 관리를 위해 현황 골목선을 기준으로 골목지정선 지정	신설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외벽면	[규제]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반사유리, 금속, 타일 등 반사성 재질의 재료사용 금지 [규제] 외벽면의 30% 이상 페인트 마감 불허 (단, 외단열시공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검정색 및 원색계열의 도로 사용 불허)		[규제]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반사유리, 금속, 타일 등 반사성 재질의 재료사용 금지 [규제] 외벽면은 벽돌, 석재, 목재, 콘크리트 등 자재의 물성이 드러나는 재료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벽면의 30%이상 도장 등 비자재색의 마감은 불허 (단, 외단열시공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검정색 및 원색계열의 도로 사용 불허) [권장] 주차장 조성 시 투시 가능하도록 셔터면의 10% 이상 개구부 설치	
	대상지 내부	[권장] 외벽은 휴면 스케일에 맞도록 저층부 친환경소재의 외벽 마감(목재, 석재 프레임 등을 활용 권장) [규제] 건축물의 외부계단 설치 제한	대상지 내부	(좌동)
	간선 가로변	[권장] 도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 전시장은 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권장] 도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 전시장은 1층 셔터를 투시형 셔터로 사용	간선 가로변	[규제] 근린생활시설, 전시장은 도로에 면한 층 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권장] 근린생활시설, 전시장은 도로에 면한 층의 셔터를 투시형 셔터로 사용
구조	[규제] 가로경관의 연속성과 통일감 확보를 위하여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필로티 구조는 금지 [규제]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및 컨테이너 등의 구조는 제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토록 함		(좌동)	
지붕	대상지 내부 -계속-	[규제] 단독주택용지 내의 모든 건물은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의 경사지붕으로 계획 [규제] 지붕의 일부를 평지붕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면적이 전체 지붕 면적의 10분의 3이하로 계획 ※ 다만, 창의적 건축계획 수립으로 경사지붕의 설치를 제외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권장] 경사방향은 도로를 향한 방향에 직교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인접 건물과의 시각적경관적 조화를 이루도록 함	대상지 내부	[규제] 단독주택용지 내의 모든 건물은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의 경사지붕으로 계획 [규제] 지붕의 일부를 평지붕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면적이 전체 지붕 면적의 10분의 3이하로 계획 ※ 다만, 창의적 건축계획 수립, 옥상녹화,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형태 적용 등의 경우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체 지붕 면적의 10분의 3을 초과하여 평지붕을 조성할 수 있음 [권장] 경사방향은 도로를 향한 방향에 직교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인접 건물과의 시각적경관적 조화를 이루도록 함
	간선 가로변	[규제] 간선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 및 실외기, 안테나 등을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간선 가로변	[규제] 간선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 및 실외기, 안테나 등을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권장] 옥상녹화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따라 조성	[권장] 옥상녹화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유형 결정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성
울타리 옹벽 등	[권장] 울타리 :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1.2m이하 [권장] 옹벽 : 높이 3m 이상의 옹벽은 다단식재기법 적용 - 소단의 높이는 2m이하, 식재폭은 1m 이상 확보 상기사항 이외의 울타리, 옹벽 등의 벽면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 적용	[권장] 울타리 :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1.2m이하 [규제] 옹벽 : 높이 3m 이상의 옹벽은 다단식재기법 적용 - 소단의 높이는 2m이하, 식재폭은 1m 이상 확보 [권장] 울타리 또는 담장에 설치하는 주차장 셔터는 투시 가능한 셔터 설치(단, 폐쇄형 셔터 설치 시 투시 가능한 개구부를 주차장 출입구 면의 10%이상 설치) 상기사항 이외의 울타리, 옹벽 등의 벽면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 적용
기타	[권장]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0cm이하로 하여 보행자의 접근을 강화토록 함	[권장]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0cm이하로 하여 보행자의 접근을 강화토록 함 [권장] 주출입구가 도로와 면할 경우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문은 외벽선으로부터 출입문 너비 이상의 폭을 후퇴하여 설치 함
한옥	-	[규제] 한옥의 형태는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2조 제2호에 따름

□ 건축물의 색채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주조색	[권장] 주거 건축물은 편안한 이미지의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고궁갈색 (Seoul Brown) 색채를 주조로 함 [규제] 모든 건축물은 원색계열의 색채를 사용할 수 없음	(좌동)
보조색 강조색	[권장] 지붕의 색채는 외벽과 어울리는 색으로 하되 채도가 낮은 강조색을 사용하여 단독주택지 내의 통일성과 가로경관의 향상을 도모 벽돌, 화강석,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좌동)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외벽면	물성이 드러나는 재료 사용 변경 - 적용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다채로운 외벽면의 형성 유도	변경
	주차장 투시 가능한 셔터로 설치 - 적용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보행 안전확보 및 차고지 불법용도 변경 제어	변경
	투시벽, 셔터 설치 구간을 간선가로 1층에서 전면 도로에 면한 층으로 변경 - 적용구역 : 간선가로 변	가로변 노출 지하층 등 1층부 등 실제 도로 레벨에서의 개방형 가로경관 형성	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투시벽 설치 지침을 [권장]→[규제]로 변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반영	
지붕	창의적 건축계획 수립, 옥상녹화,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형태 적용 등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체 지붕 면적의 10분의 7미만으로 경사지붕을 조성할 수 있음	양호한 지역 경관 조성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전체 면적의 10분의 7미만 경사지붕 허용	변경
울타리 옹벽 등	울타리 또는 담장에 설치하는 주차장 투시 가능한 셔터로 설치 - 적용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보행 안전확보 및 차고지 불법용도 변경 제어	신설
	높이 3m 이상 옹벽의 다단식재 기법 적용 지침을 [권장]→[규제]로 변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반영	변경
기타	도로에 면한 주 출입구 후퇴 - 적용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가로에서의 현관으로의 직접적인 진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변경
한옥	한옥의 형태는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2조 제2호에 따름	한옥을 신축하거나 기존 한옥을 개보수하는 경우 적용	신설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1) 전면공지

☐ 전면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비고
전면공지 (건축 한계선 부분)	인왕구 역	- 창의문로, 자하문로변 건축한계선 : 2m - 서울성곽 연결부 건축한계선 : 3~5m - 대상지 내부 건축한계선 - 필지경계선 기준 1~4m - 전면도로 중심선 기준 2~3m	- 창의문로, 자하문로변 건축한계선 : 2~3m - 서울성곽 연결부 건축한계선 : 3~5m - 대상지 내부 건축한계선 - 필지경계선 기준 1~4m - 전면도로 중심선 기준 2~3m	변경
	백악 구역	-	- 창의문로변 건축한계선 : 2m - 대상지 내부 건축한계선 : 1~2m	신설

☐ 전면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적용 구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전면공지 (건축 한계선 부분)	인왕구 역	- 대상지 내부 전면공지 조정 - 자하문로 변 전면공지 신설(신규 편입구역) - 옛 길, 급경사 구간 등 4m미만 골목길 변 전면공지 폐지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원 조정에 따른 건축한계선 후퇴부 전면공지 계획 조정 - 건축한계선 신설·폐지에 따른 전면공지 계획 변경	변경
	백악 구역	- 창의문로 변 전면공지 신설 - 대상지 내부 전면공지 신설	건축한계선 계획에 따른 전면공지 신설	신설

2) 보차혼용통로

☐ 보차혼용통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 구역	계획내용		
		기정	변경	비고
보차혼용 통로	인왕구 역	13개소 - 차량 및 보행 진출입을 위한 부분 : 4~8m - 최소 4m 이상 - 필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한계선에 의해 계획	7개소 - 차량 및 보행 진출입을 위한 부분 : 4~8m - 최소 4m 이상 - 필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한계선에 의해 계획	변경

☐ 보차혼용통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적용 구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보차혼용 통로	인왕구 역	- 폐지 6개소 - 382-10번지 일원 : B=4m, L=56m - 332-4번지 일원 : B=4m, L=13m - 333-1번지 일원 : B=4m, L=16m - 338-37번지 일원 : B=4m, L=22m - 369-62번지 일원 : B=4m, L=117m - 303-1번지 일원 : B=4m, L=55m	- 지형, 계단 등 조성이 불가하고 맹지 접도를 위한 계획 구간 폐지 -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보차혼용통로 폐지	변경

3) 공공보행도로

☐ 공공보행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 구역	계획내용		
		기정	변경	비고
공공보행 도로	인왕 구역	• 5개소 • 이면도로간 보행동선의 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도로 지정	• 6개소 • 이면도로간 보행동선의 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도로 지정	변경

☐ 공공보행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적용 구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공공 보행 도로	인왕 구역	• 폐지 1개소 - 306-19번지 일원 : B=4m, L=15m	• 실효성 없는 공공보행도로 폐지	변경
		• 신설 2개소 - 333-1번지 일원 : 현황골목선, L=15m - 261-9번지 일원 : B=2m, L=65m	• 보행로 확보를 위해 대지 내 현황 골목 구간에 대해 공공보행도로 신설 •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창의문로와 배후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도로 신설	신설
		• 변경 1개소 - 303-1번지 일원 : B=4m, L=53m	•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 조정에 따른 공공보행도로 선형 변경	변경

4)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비고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면적 : 20% 이상 • 조경수 : 유실수 (권장) • 등록 큰나무 및 흉고 직경 20cm 이상 제자리 보존(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필지내 이식) • 등록 큰나무 및 흉고 직경 20cm 이상 큰나무 제자리보존시 조경면적 5% 완화(대지안의 조경면적 15% 적용)	(좌동)	등록 큰나무 :13종 53주

나.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 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옥상 녹화	지구 단위 계획	[규제] 옥상녹화는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유형 결정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성 [권장] 간선가로변 탐상형 건축물은 이용자의 휴게 및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녹화 조성 [권장] 옥상녹화 조성시 계단탑 및 설비 면적을 제외한 옥상면적의 50%이상 조성	[규제] 옥상녹화는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조성 가이드라인 개정」(2018)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유형 결정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성 [권장] 간선가로변 탐상형 건축물은 이용자의 휴게 및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녹화 조성 [권장] 옥상녹화 조성시 계단탑 및 설비 면적을 제외한 옥상면적의 50%이상 조성	변경
벽면 녹화	구역 전체 -계속-	[규제] 벽면녹화 조성은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에 따라 조성 [권장]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 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에 대해 덩굴성 식물, 지피식물, 초화류 위주로 녹화하는 벽면녹화 권장	[규제] 벽면녹화 조성은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 및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2.)에 따라 조성 [권장]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 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에 대해 덩굴성 식물, 지피식물, 초화류 위주로 녹화하는 벽면녹화 권장	변경

구분	적용 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녹색 주차장		[규제] 녹색주차장 조성은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라 조성 [권장] 주차장은 잔디 등의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의 설치	(좌동)	-
신재생 에너지		[권장] 신축(증축, 개보수 포함)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투자하거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	[규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설치 [권장] 신축(증축, 개보수 포함)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투자하거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 [권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변경
물재 이용 시설 (빗물 이용 시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전체	[규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관련 법률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규제] 빗물저류탱크 용량 (ton) 은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권장] 홍수방지와 물 순환 재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시의 안전성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창조를 도모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규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관련 법률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규제] 빗물저류탱크 용량 (ton) 은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규제] 물재이용시설의 종류, 설치대상, 시설기준 등 조성의 제반기준은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 등 관련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장] 홍수방지와 물 순환 재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시의 안전성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창조를 도모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변경
생태 면적률		[규제] 건축물 신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의 생태면적률 적용	[규제] 건축물 신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변경
자연 지반		-	[권장] 지하수 및 생태면적 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한 자연지반 보존	신설

□ 환경친화적 건축물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환경친화적 건축물	- 옥상녹화, 벽면녹화, 녹색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물재이용시설, 생태면적률, 자연지반 관련 내용 변경 - 적용구역 : 지구단위계획 전체	관련 법령 및 기준 제(개)정 내용 반영	변경

다.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기정	변경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인왕 구역	창의문로, 자하문로변	• 창의문로, 자하문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금지 (단, 이면 진출입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함)	• 창의문로, 자하문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금지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위치 또는 이면도로로 차량 출입)	변경
		옛 길, 골목길 (4m미만도로)	-	• 4m미만 옛길 및 골목길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출입 금지	신설
	백악 구역	창의문로	-	• 창의문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출입 금지	신설

- ※ 인왕구역의 옛 길, 골목길 변과 백악구역의 창의문로 변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계획된 대지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대상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제⑤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 ※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대상 중 공동개발로 차량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대상에서 제외, 공동개발 후에도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 ※ 설치비용 납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 ※ 주차출입구 조성 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 시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발생할 경우, 이격거리를 제외한 지점으로부터 주차출입구를 확보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4m미만 옛길 및 골목길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출입 금지 - 적용구역: 인왕구역 (옛 길, 골목길)	•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4m미만의 옛길, 옛 골목길을 대상으로 차 없는 골목 조성	신설
	• 창의문로, 자하문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금지 •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위치 또는 이면도로로 차량 출입 - 인왕구역 (창의문로, 자하문로 변) - 백악구역 (창의문로 변)	• 간선가로변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차량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중 이면도로가 없는 대지는 지정된 주차출입구로 출입 허용	신설

2) 주차장 설치 결정조서

☐ 주차장 설치 결정조서

구분	적용 구역	계획내용		
		기정	변경	비고
주차장 설치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 주차장의 설치 시 차고의 설치 건축한계선을 기준으로 대지 내에서 확보한 공간으로 함 • 기타 설치기준은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름	(좌동)	-

라. 경관에 관한 결정조서

1) 기본경관계획 등의 적용

☐ 기본경관계획 등의 적용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본경관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권장] 서울특별시 기본 및 시가지경관계획을 적용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기본 및 시가지경관계획의 해당 설계지침에 따름	[권장]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을 적용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해당 경관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따름	변경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경관형성지침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권장]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경관형성지침」 내 공공공간, 건축물 등 세부과제별 지침 및 체크리스트 준수	신설

☐ 기본 경관계획 등의 적용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본경관 계획 등의 적용	「서울특별시 기본계획(2016)」 적용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기본계획(2016)」 수립에 따라 관련 내용 변경	변경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경관형성지침 계획내용 신설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경관형성지침(2016)」 수립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신설

2) 역사문화적 건축물 장소의 보전·활용

☐ 역사문화적 건축물 장소의 보전·활용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문화재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규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전방법 및 범위 등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규제] 현진건 집터(325-1,2) 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축인·허가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보전방법 및 범위 등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신설
역사유적터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규제] 역사유적지를 포함한 대지에 건축할 경우 「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계획」을 참고하여 역사유적지 표시를 위한 설치계획 수립 [규제] 관련 절차에 따라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석설치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최등)	-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 (한옥 등 건축자산법)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권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 [권장] 서울시 건축자산은 해당 법에 따라 우수건축 자산으로 등록하고 보호·관리 [권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 특례 및 지원사항은 당해 법령에 따라 관리	신설
역사문화자원 (역사도심 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권장]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적용 [권장] 보전방법 및 범위 등은 「역사도심관리지침」(2015)에 따름	신설

☐ 역사문화적 건축물 장소의 보전·활용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문화재	문화재 보전 계획 신설	문화재 보전 활용을 위해 문화재 보전 계획 신설	신설
한옥 등 건축자산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부암동 내 건축자산의 활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내용 반영	신설
역사문화자원 (역사도심 기본계획)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에 따른 역사문화자원	부암동 내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을 위해 「역사도심기본계획」(2015) 내용 반영	신설

3)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옥외 광고물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규제]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규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내용 준수	(좌동)	-
		[권장] 상기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권장] 상기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자문박 창의예술마을 경관형성지침」 준수	변경

☐ 옥외광고물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옥외 광고물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경관형성지침」 준수(권장)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경관형성지침(2016)」 내용 반영	변경

4) 인공조명

☐ 인공조명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공통 사항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규제] 인공조명의 설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계획(2015)」 및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2015)」 준수	신설
야간 경관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권장] 간선도로변에 면한 건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 설치 [권장] 간선도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이때 조명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함. [권장]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설치	(좌동)	-
바닥 조명	지구단위계획 구역전체	-	[권장]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직사광이 시선에 닿지 않도록 조명의 방향이 건물외벽 또는 담장을 향하도록 설치 (CPTED) [권장] 조도가 강한 조명은 지양(30lux)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LED조명 설치 권장	신설
벽면 조명 (담장 또는 건축물)	지구단위계획 구역전체	-	[권장]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권장] 도로에 면한 건물 또는 담장에 조명 설치 시 가로의 경관물을 배려하여 조명의 형태, 설치방법을 고려하여 설치	신설
	신축 건축물	-	[권장] 담장 또는 건물의 신축 시, 매입형 조명 설치를 권장하며 벽면으로부터 조명시설 돌출 최소화	신설
	기존 건축물	-	[권장] 매입형 벽면조명을 설치하기 힘든 기존 건축물 또는 담장에는 돌출형 조명을 설치. 다만,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돌출부를 최소화	신설

☐ 인공조명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인공조명	인공조명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용 신설 - 적용구역 : 지구단위계획 전체	인공조명 관련 법령 및 기준 제정 내용 반영	신설
	바닥조명, 벽면조성 권장사항 신설 - 적용구역 : 지구단위계획 전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바닥 및 벽면 조명 설치 권장 신설	신설

5) 주민협정

☐ 주민협정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협정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을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운영	신설
(가칭) 00 협의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에 의한 주민공동체운영회 활동과 연계한 협의회로 협정의 제정 및 변경을 제안하며, 협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홍보, 실천, 관리, 지도의 기능을 담당 ※ 다수의 협의체 구성 가능	신설

☐ 주민협정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주민협정	주민협정 신설	주민주도의 부암동 경관관리의 실현을 위해 주민협정 사항 신설	신설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폐율 완화

☐ 건폐율 완화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완화조건		완화계획	관련기준	
건폐율 완화	자연 경관 지구	인양 구역	높이 8m(2층)이하 건축 시		40%이하	도시계획조례 제39조 ⑩항 2.	신설
건폐율 완화	자연 경관 지구	백악 구역	용도계획 연계 시	주거용도 - 단독주택 건축 시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건축 시 각 6세대 미만	40%이하	도시계획조례 제39조 ②항 2.	신설
			높이계획 연계 시	기타용도 - 높이 8m(2층)이하 건축 시	40%이하	도시계획조례 제39조 ②항 2.	

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부암2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부암2 특별계획구역	부암동 303-1번지 일원	5,564	증) 492	6,056	변경

□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역명	계획내용	
	기정	변경
도면표시번호	• 부암2 특별계획구역	(좌동)
지정목적	• 과대필지의 계획적 관리	(좌동)
위치	• 부암동 303-1, 379-1, 379-2번지	• 부암동 303-1, 303-2, 304, 379-13, 379-2번지 (세부개발계획 시 원활한 계획 실현이 어려울 경우 303-1번지와 소유가 다른 379-2, 379-13번지 제척 가능)
면적	• 5,564㎡	• 6,056㎡
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단독주택(3가구 이하)
건폐율/용적률	• 50% / 100%	(좌동)
높이	• 2층이하(시건축조례 제27조의 높이규정 적용) • 지형 여건상 지하층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층의 노출부분은 1개층 이하로 함	• 2층이하(시건축조례 제27조의 높이규정 적용) • 지형 여건상 지하층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층의 노출부분은 1개층(4m) 이하로 함
대지 내 공지	• 공공보행통로 2개소 (B=4~6m, L=85m)	• 공공보행통로 2개소(B=4~6m) (세부개발계획 시 규모 및 위치 변경 가능)
기타	- 필지분할가능성에 의한 필지분할 -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및 어린이공원(1,170㎡) 등 공용공지 조성 기부채납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완화 미적용) -구역 내 3개필지 분할 가능 • 흉고직경 20cm이상의 큰나무의 제자리 보존 (건축불가능지 필지내 이식 가능) • 지반변동은 50cm이하로 권장	• 현재의 양호한 임상 및 대지 내 수계 보전 (측량성과 및 계획안에 따라 보전 위치 결정) • 구역 내 어린이공원 조성 후(1,170㎡) 기부채납(세부개발계획 시 보전 임상 및 수계를 고려하여 시설의 위치 및 종류 변경 가능,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완화 미적용) • 흉고직경 20cm이상의 큰나무의 제자리 보존 (건축불가능지 필지내 이식 가능) • 지반변동은 50cm이하로 권장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부암2 특별계획 구역	•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5,564㎡ → 6,056㎡)	• 소유가 동일한 맹지 2개소(492㎡)를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	변경
	• 공공보행통로 변경	• 인접지역과의 연결을 위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및 규모를 조정하되, 세부개발계획 시 변경 가능하도록 함	변경
	• 필지분할가능선 삭제 • 기부채납 지침 유지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변경 가능)	• 최초 결정 이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단독주택지로서의 계획 실현이 어려워 기존의 필지분할 가능선 삭제 • 어린이공원(1,170㎡)은 최초결정 당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부여된 공공시설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지 연혁을 고려하여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세부개발계획 시 현재의 양호한 임상과 수계를 고려하고, 상황에 따라 동일 면적으로 시설의 종류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변경
	• 현재의 양호한 임상 및 대지 내 수계 보전	• 구역 내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세부개발계획 시 임상과 수계를 고려하도록 함	신설

나. 부암3-1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부암3-1 특별계획구역	부암동 261-9번지	3,193	감) 3,193	-	문화시설 결정

□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역명	계획내용	
	기정	변경
도면표시번호	• 부암3-1 특별계획구역	폐지 (문화시설 결정)
지정목적	• 과대필지의 계획적 관리	
도시관리계획	• 기 결정사항에 따름	
위치	• 부암동 261-9번지	
면적	• 3,193㎡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간선가로변 30m이내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2층이하 - 단독주택 지붕경사 3:10 이상인 건축물은 2층(10m)이하 - 전시장(주거용도와 복합 시 제외) 용도의 건축물은 2층(10m)이하	

구역명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타	• 구역 내 3개필지 분할 가능 • 구역 내 공공용지(공공보행도로 등) 대지면적의 15% 제공 • 흉고 직경 20cm 이상의 큰나무 제자리 보존 (필지 내 이식 가능)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부암3 특별계획 구역	폐지(문화시설 결정)	•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평창아트밸리조성 기본계획(2014)」 연계하여 부암동의 예술문화거점으로 조성 유도 • 소유주의 개발에 대한 요구와 추진계획이 있으나,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문화시설로 용도를 지정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전제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 소유주 사전협의 진행 완료	폐지

⑤ 적용의 완화에 관한 결정

가. 「건축법」에 의한 적용의 완화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적용함.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1항 제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제1항 제1호에 의한 적용의 완화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적용의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	옛 골목길 일대	골목지정선 준수 시 또는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대지 중 골목지정선 계획에 준하게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도로) 완화	-
	옛 골목길 일대	골목지정선 준수 시 또는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대지 중 골목지정선 계획에 준하게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	-
	옛 골목길 일대	골목지정선 준수 시 또는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대지 중 골목지정선 계획에 준하게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완화	-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1항 제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제1항 제1호에 의한 적용의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일이 아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공고일 이후 적용함.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1항 제6호에 의한 적용의 완화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적용의 완화 (건축법 제6조)	부암동 성곽마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종로구 부암동 리모델링활성화계획(종로구 공고 제2019-234호, 2019.02.22.)」에 따라 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기준 완화(적용의 완화) 적용	-

⑥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가.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권한 : 구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및 별표4(권한위임 사무) 제4호 등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르며,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 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함.

☐ 영 제25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 안의 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
3. 수중, 조경시설물 설치계획의 변경
4. 통로의 성격·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전용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5. 공동개발 지정·권장 사항의 변경 (신설, 폐지를 포함)
6.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신설, 폐지를 포함)
7. 장애인 편의시설 배치기준 완화
8. 기존건축물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 지침 완화 적용 여부
9.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 시 지침 적용 여부
10. 해당 구역별 평균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미달하여 변경하는 경우
11. 해당 구역별 최대개발규모의 1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12.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
13. 특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시설의 종류 및 위치 변경

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관한 결정

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234호(‘19.2.22.)」에 의해 지정된 「부암동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건축기준완화 및 완화비용 적용기준 및 운영방안을 정함
- 본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 결정하는 리모델링 건축완화 및 완화 비율의 적용은 본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축물에 한해 적용함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 지침

구분	완화근거	계획내용	비고
부암동 성곽마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완화기준 요소를 적용한 건물에 한하여 기존 연면적의 최대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면적 증가 가능	대지변 허용범위 이내에서 수평, 수직 증축 가능

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기준 완화사항

□ 건축기준 완화사항

구분	건축법	적용기준	완화사항	비고
대지안의 조경	제42조	적용기준 완화	미적용	-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3조	적용기준 완화	미적용	-
건축선의 지정	제46조	한양도성 주변 및 옛 길 특성보호 2층이하 기존건축물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	-
건축물의 건폐율	제55조	적용기준 완화	현행법령 초과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이내, 수평 증축시 현행법령 이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	-
건축물의 용적률	제56조	기존 연면적 + (기존 연면적 × 적용완화 비율)	기존 연면적의 30% 범위 이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	-
대지안의 공지	제58조	인접대지 소유주와 사전협의를 통해 동의서 작성시 2층이하 기존건축물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범위 결정	-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0조	기존 높이 기준 + (법정 기준높이 × 적용완화 비율)	미적용	-
공동주택의 일조확보	제61조 제2항	기존 높이 기준 + (법정 기준 높이 × 적용완화 비율)	미적용	-

□ 인센티브적용 및 배점항목 (최대30%)

구분	완화범위	운영	적용지침	완화비율
정책	최대 10%	의무	창의문로3길 주변 건축물 : 담장 정비 개량 및 녹화 등 경관 개선	10%
		권장	옛 길 및 기존 골목길 변 담장 등 개선지침 준수 시	5%
		권장	CPTED 지침 중 방범시설 관련지침 준수 시	5%
		권장	CPTED 지침 중 야간조명 관련지침 준수 시	5%
외관	최대 15%	권장	색채·재료 건축물의 색채 및 재료 지침 준수 시	5%

구분	완화범위	운영	적용지침		완화비율
		권장	출입구	출입구 지침 준수 시	5%
		권장	부착시설물	부착물 세부항목별 지침 준수 시	5%
		권장	옹벽·담장	옹벽 및 담장 지침 준수 시	5%
		권장	구조안전점검	기존 옹벽 및 축대 설치 건축물 : 구조안전점검서 제출 시	5%
내진	최대 10%	의무	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적용: 구조기술사 구조안전 확인서		10%
에너지 절감	최대 10%	권장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 교체 시		5%
		권장	외기에 면한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 시		5%
		권장	콘덴싱 보일러 등 고효율 보일러 교체 시		2%
		권장	LED 조명 교체 시		2%
		권장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2%
		권장	태양광 태양열 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시		2%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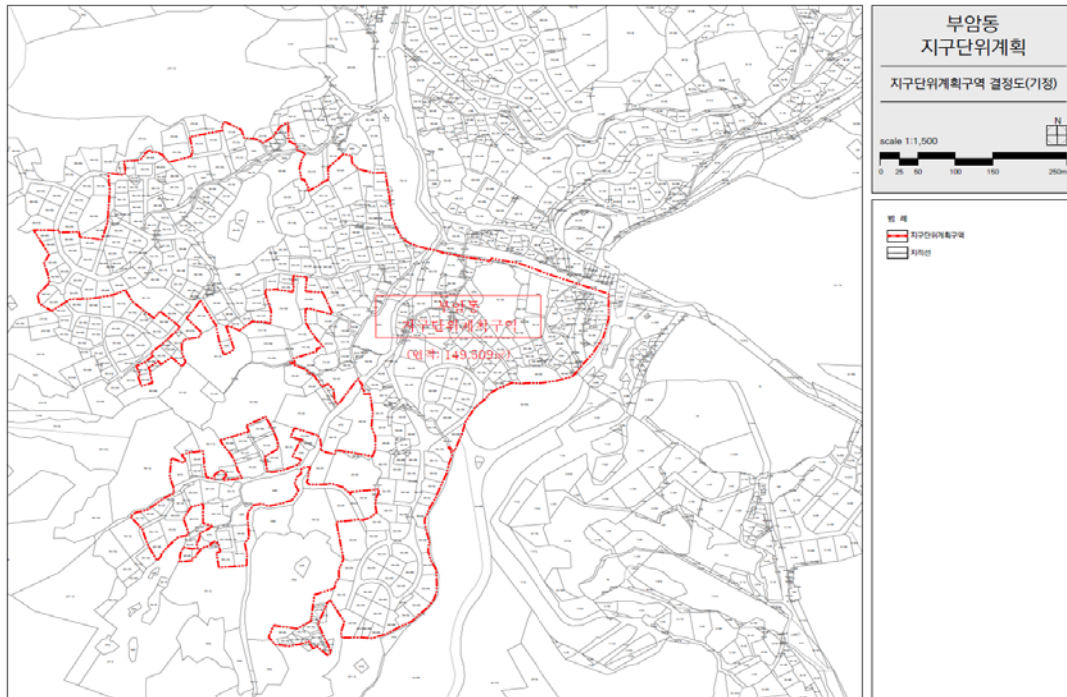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V.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종로구 건축과(☎02-2148-2812)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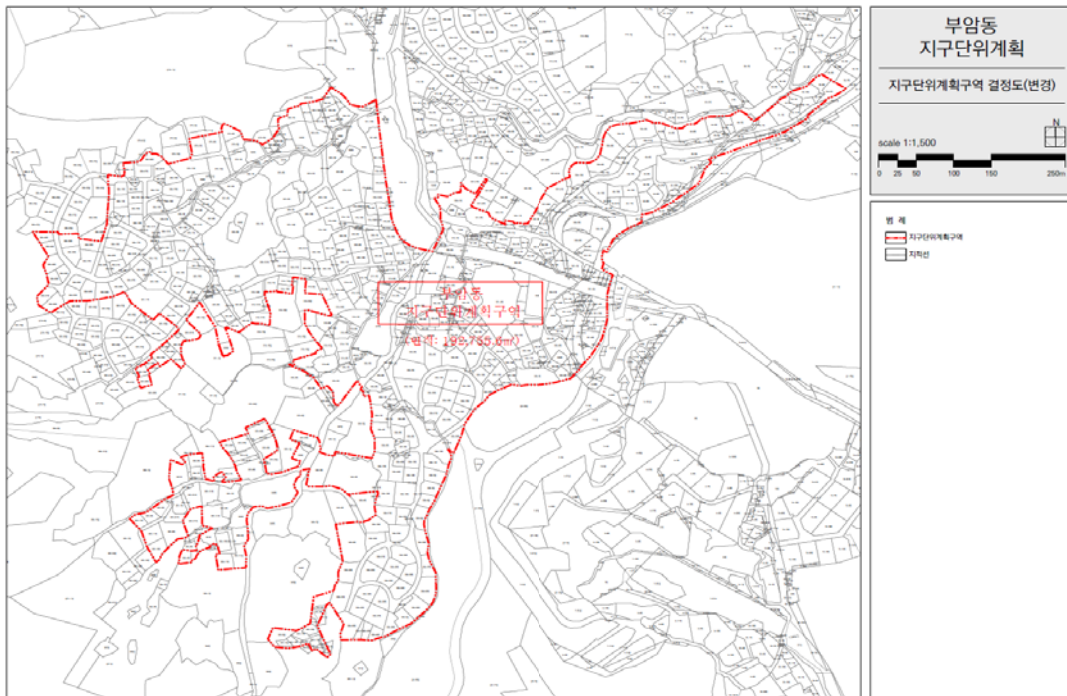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n.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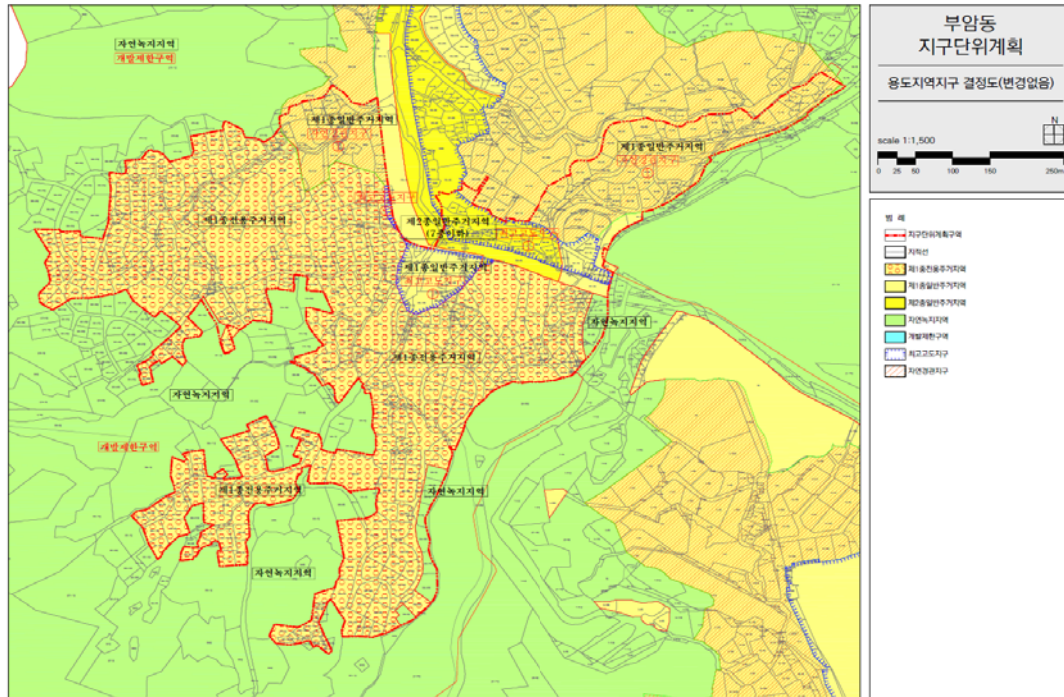
□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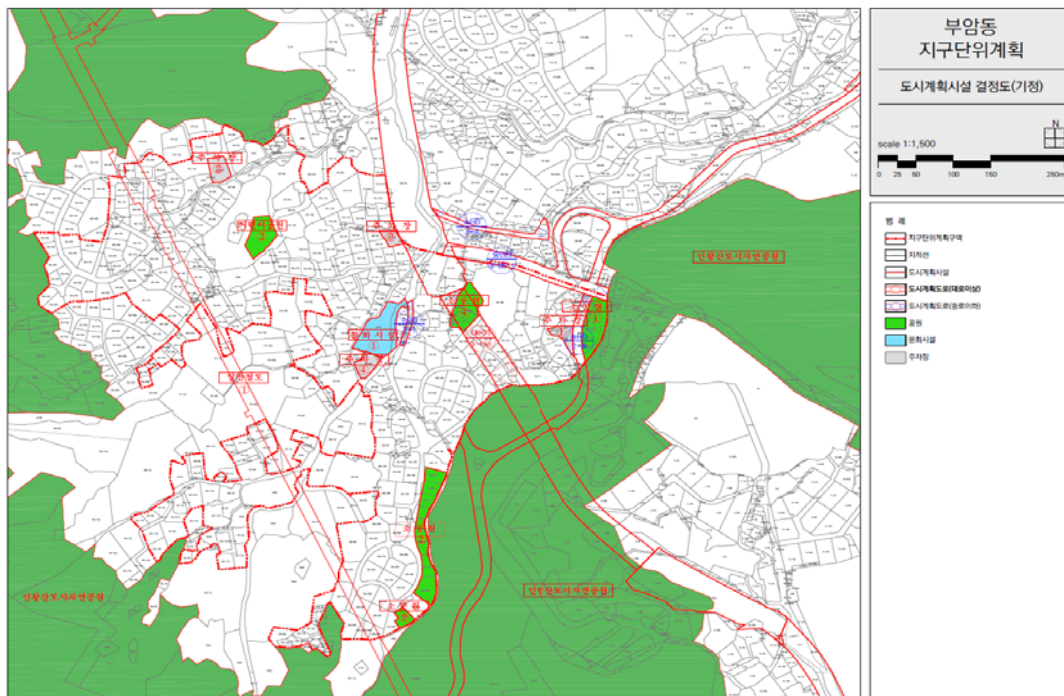
□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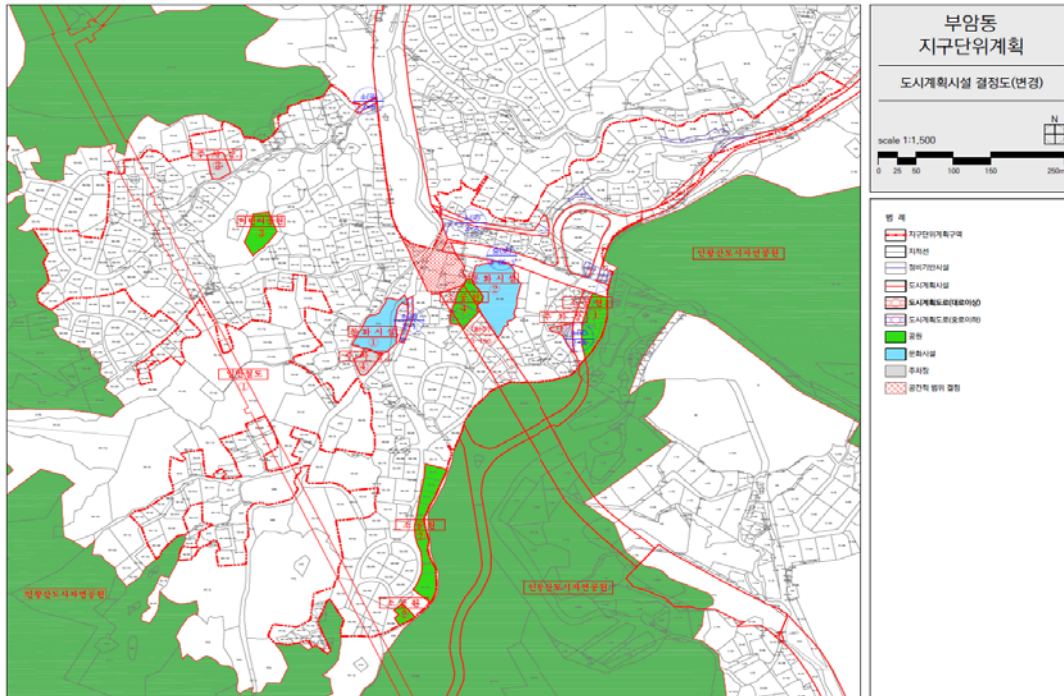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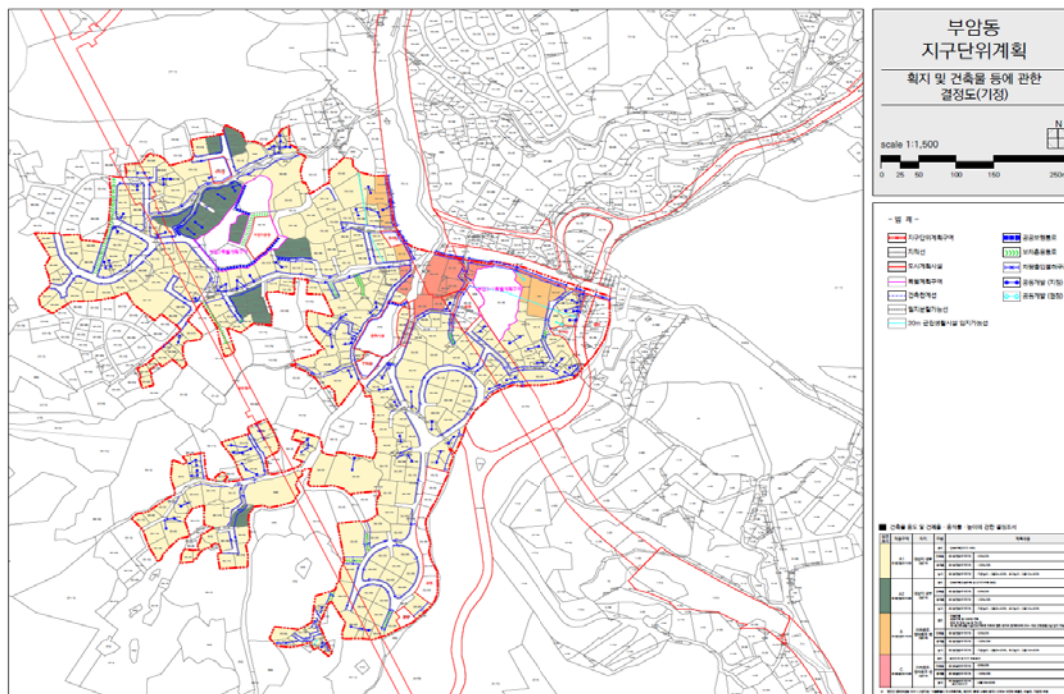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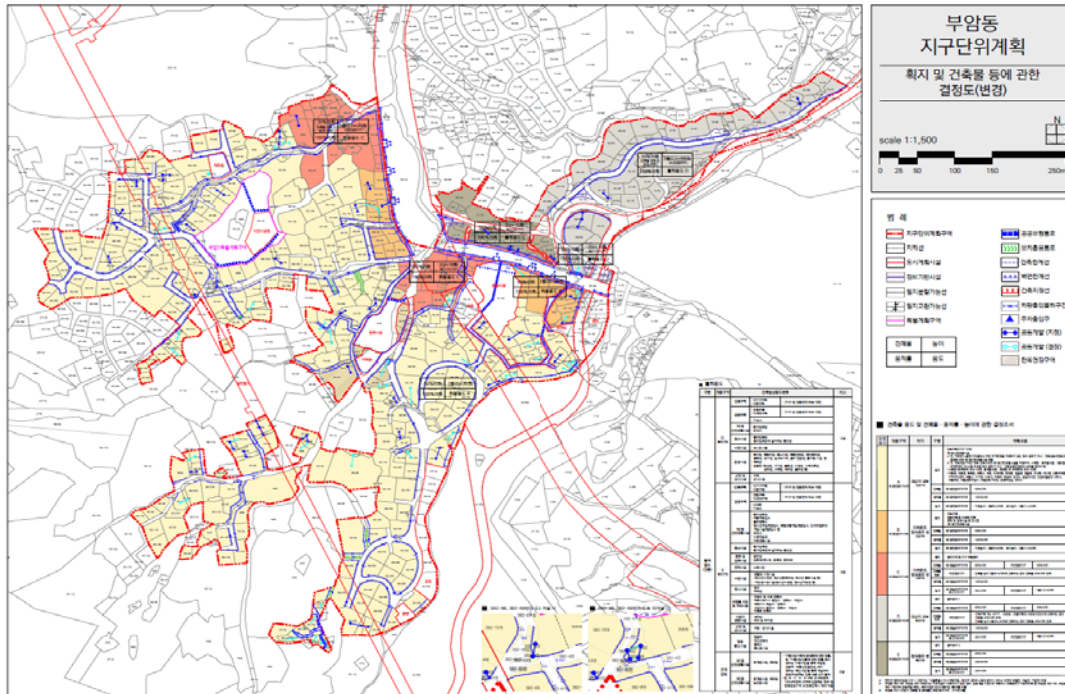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31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 공인 등록

- 공인등록 사유 :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 최초 사용일자 : 2021년 06월 10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인	3.6cm × 3.6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39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1.6.3. ~ 2021.6.17.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디케이 종합건설(주) (박경근)	건축공사업 01-3630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에이동 1211호	시정명령/지시불응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법 제81조제9 호	영업정지 1개월 (2021.6.18.~ 2021.7.17.)	법 제82조제 1항제5호
2	쥬이공 (조건구)	토목건축 공사업 01-0477	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 10, 8층 에스16호				
3	코리아 종합건설(주) (장국현)	건축공사업 13-023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 713, 714호				
4	쥬효찬건설 (윤점례, 방주일)	건축공사업 01-1799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2길 5, 301호			영업정지 2개월 (2021.6.18.~ 2021.8.17.)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24호(1974.9.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6-80호(2016.3.31.)로 실시계획 고시된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열람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98-32 ~ 구로동 693-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변경없음)

- 도로확장(왕복4,5차로→6차로), L=1.11km
 - 광복교 확장(L=67.249m, B=27.85~36.7m)
 - 안양교 철거 및 신설(L=275m, B=27.85~36.7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서울특별시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 예정일 : (당초) 2019년 9월 30일 → (변경) 2021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조서

사. 열람일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2133-8084), 도시기반시설본부(☎ 3708-8666)

<붙임>

○ 토지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변경없음〉											
당초	구로동	683-15	전	46	46	한 국	경기시흥군서면 광명6리 27-27				
변경	구로동	683-15	전	46	46	한 국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890-33(교로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55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1. 6. 3. ~ 2021. 6. 17(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so2020@seoul.go.kr
 - 팩스: 02-768-8897
 -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1. 6. 18 . ~ 2020. 6. 30. (10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2021년 3월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 장소	위반일시
1	1078830105680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7 12:10
2	1078830105681	이사불명	2021-05-07 14:42	630629-*****	장*길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25	역	2021-03-07 14:44
3	1078830105682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8 10:34
4	1078830105683	수취인불명	2021-05-07 14:51	481228-*****	이*희	경기도 하남시 덕풍남로 11	열차내	2021-03-08 10:40
5	1078830105684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8 10:47
6	1078830105686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8 11:33
7	1078830105777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18 13:44
8	1078830105778	기타	2021-05-13 11:10	590205-*****	권*철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5-1(신길동)	열차내	2021-03-18 14:18
9	1078830105782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9 10:48
10	1078830105783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9 11:04
11	1078830105780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18 15:14
12	1078830105883	기타	2021-05-13 11:10	690813-*****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9길 19	열차내	2021-03-29 11:14
13	1078830105885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29 11:56
14	1078830105886	기타	2021-05-13 10:19	611013-*****	이*근	서울시도봉구도봉로152가길121층(도봉동)	열차내	2021-03-29 13:46
15	1078830105884	수취인불명	2021-05-07 14:51	481228-*****	이*희	경기도 하남시 덕풍남로 11	열차내	2021-03-29 11:46
16	1078830105887	수취인불명	2021-05-07 14:51	481228-*****	이*희	경기도 하남시 덕풍남로 11	열차내	2021-03-29 14:50
17	1078830105889	기타	2021-05-07 13:09	470327-*****	김*두	서울시관악구대학18길48-10(신림동)	열차내	2021-03-29 22:37
18	1078830105786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19 12:02
19	1078830105787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19 12:52
20	1078830105788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19 13:04
21	1078830105789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9 13:50
22	1078830105791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19 14:30
23	1078830105792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19 14:46
24	1078830105793	폐문부재	2021-05-13 09:10	690510-*****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1-03-20 08:49
25	1078830105795	수취거절	2021-05-07 13:12	481109-*****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1-03-20 09:43
26	1078830105796	수취인불명	2021-05-07 14:51	481228-*****	이*희	경기도 하남시 덕풍남로 11	열차내	2021-03-20 10:01
27	1078830105797	기타	2021-05-13 10:19	520717-*****	서*범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2길 81	열차	2021-03-20 10:57
28	1078830105900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31 10:33
29	1078830105901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31 10:38
30	1078830105902	기타	2021-05-13 11:10	590205-*****	권*철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5-1(신길동)	열차내	2021-03-31 11:24
31	1078830105903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31 11:32
32	1078830105904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31 11:42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33	1078830105688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09 11:06
34	1078830105693	기타	2021-05-07 13:09	470327-*****	김*두	서울시관악구대학18길48-10(신림동)	열차내	2021-03-09 19:00
35	1078830105695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0 10:44
36	1078830105696	수취거절	2021-05-07 13:12	481109-*****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1-03-10 11:15
37	1078830105799	수취인불명	2021-05-06 11:08	751018-*****	정*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35 (가리봉동)	열차	2021-03-20 11:15
38	1078830105800	수취인불명	2021-05-07 14:51	481228-*****	이*희	경기도 하남시 덕풍남로 11	열차내	2021-03-20 11:21
39	1078830105801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20 12:21
40	1078830105802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22 10:22
41	1078830105803	이사불명	2021-05-07 13:15	621026-*****	김*주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145길11-9(신림동)	역사내	2021-03-22 10:35
42	1078830105906	기타	2021-05-13 10:55	751113-*****	연*성	서울시용산구서빙고로91가길16(주성동)	역	2021-03-31 16:19
43	1078830105699	기타	2021-05-13 10:19	611013-*****	이*근	서울시도봉구도봉로152가길121층(도봉동)	열차내	2021-03-10 12:56
44	1078830105703	기타	2021-05-13 11:10	690813-*****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9길 19	열차내	2021-03-11 10:50
45	1078830105704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1 10:50
46	1078830105806	기타	2021-05-13 11:10	740415-*****	장*기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3	열차내	2021-03-22 11:00
47	1078830105809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22 13:55
48	1078830105807	기타	2021-05-13 11:10	740415-*****	장*기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3	열차내	2021-03-22 12:41
49	1078830105808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22 13:17
50	1078830105810	이사불명	2021-05-07 13:15	621026-*****	김*주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145길11-9(신림동)	역사내	2021-03-22 14:00
51	1078830105811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23 10:15
52	1078830105812	기타	2021-05-13 11:10	740415-*****	장*기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3	열차내	2021-03-23 10:25
53	1078830105708	수취인불명	2021-05-07 14:51	481228-*****	이*희	경기도 하남시 덕풍남로 11	열차내	2021-03-11 11:58
54	1078830105709	기타	2021-05-13 11:10	590205-*****	권*철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5-1(신길동)	열차내	2021-03-11 14:29
55	1078830105814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23 10:45
56	1078830105816	기타	2021-05-13 11:10	690813-*****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9길 19	열차내	2021-03-23 11:18
57	1078830105817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23 11:20
58	1078830105622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02 12:50
59	1078830105713	기타	2021-05-13 10:20	681001-*****	곽*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로 96-1	열차	2021-03-12 16:49
60	1078830105715	폐문부재	2021-05-13 09:10	690510-*****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1-03-13 10:17
61	1078830105716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13 10:36
62	1078830105717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3 10:58
63	1078830105718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3 11:08
64	1078830105821	수취인불명	2021-05-07 14:51	481228-*****	이*희	경기도 하남시 덕풍남로 11	열차내	2021-03-23 12:39
65	1078830105827	기타	2021-05-13 11:10	560920-*****	김*연	서울시성동구용담21길3-4(용담동)	열차	2021-03-24 09:40
66	1078830105626	수취인불명	2021-05-06 11:33	551002-*****	박*임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열차내	2021-03-03 10:47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67	1078830105627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3 10:47
68	1078830105616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1 11:26
69	1078830105617	기타	2021-05-13 11:10	690813-*****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9길 19	열차내	2021-03-02 10:31
70	1078830105618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2 10:35
71	1078830105620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2 11:15
72	1078830105621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02 11:44
73	1078830105625	기타	2021-05-13 10:55	751113-*****	연*성	서울시용산구서빙고로91가길16(주성동)	역사내	2021-03-03 10:30
74	1078830105714	기타	2021-05-17 10:54	560225-*****	김*식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68길 36 109동 403호(등촌주공 1	열차내	2021-03-12 17:40
75	1078830105629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03 11:10
76	1078830105631	기타	2021-05-13 11:10	590205-*****	권*철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5-1(신길동)	열차내	2021-03-03 11:51
77	1078830105721	기타	2021-05-13 10:19	520717-*****	서*범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2길 81	열차	2021-03-13 12:55
78	1078830105723	기타	2021-05-13 10:20	681001-*****	곽*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로 96-1	열차내	2021-03-13 13:18
79	1078830105726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5 10:29
80	1078830105727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15 11:10
81	1078830105829	기타	2021-05-13 10:19	520717-*****	서*범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2길 81	열차	2021-03-24 10:24
82	1078830105830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24 11:25
83	1078830105831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	2021-03-24 11:25
84	1078830105832	기타	2021-05-13 11:10	740415-*****	장*기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3	열차내	2021-03-24 11:34
85	1078830105835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24 13:38
86	1078830105636	기타	2021-05-07 13:09	470327-*****	김*두	서울시관악구대학18길48-10(신림동)	열차내	2021-03-03 13:08
87	1078830105637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3 13:54
88	1078830105638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03 14:20
89	1078830105639	기타	2021-05-13 11:10	590205-*****	권*철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5-1(신길동)	열차내	2021-03-03 14:53
90	1078830105733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5 13:33
91	1078830105735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15 14:22
92	1078830105736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15 14:45
93	1078830105838	기타	2021-05-13 11:10	560920-*****	김*연	서울시성동구용담21길3-4(용담동)	열차	2021-03-25 09:54
94	1078830105839	기타	2021-05-13 10:19	520717-*****	서*범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2길 81	열차	2021-03-25 10:14
95	1078830105842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25 10:33
96	1078830105642	수취인불명	2021-05-06 11:33	551002-*****	박*임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열차내	2021-03-04 10:21
97	1078830105643	이사불명	2021-05-07 13:15	621026-*****	김*주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145길11-9(신림동)	열차내	2021-03-04 10:36
98	1078830105645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4 10:41
99	1078830105737	폐문부재	2021-05-13 06:38	650616-*****	이*권	서울시관악구년향10길24	역사내	2021-03-15 23:40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00	1078830105739	기타	2021-05-13 10:19	520717-*****	서*범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2길 81	열차	2021-03-16 10:31
101	1078830105737	폐문부재	2021-05-13 06:38	650616-*****	이*권	서울시관악구년향10길24	역사내	2021-03-15 23:40
102	1078830105739	기타	2021-05-13 10:19	520717-*****	서*범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2길 81	열차	2021-03-16 10:31
103	1078830105742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6 11:27
104	1078830105743	기타	2021-05-13 11:10	690813-*****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9길 19	열차내	2021-03-16 11:31
105	1078830105744	수취인불명	2021-05-07 14:51	481228-*****	이*희	경기도 하남시 덕풍남로 11	열차내	2021-03-16 11:38
106	1078830105845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25 10:57
107	1078830105846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25 11:15
108	1078830105849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25 11:33
109	1078830105850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25 11:50
110	1078830105851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25 12:17
111	1078830105848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04 11:25
112	1078830105849	수취인불명	2021-05-06 11:33	551002-*****	박*임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열차내	2021-03-04 12:43
113	1078830105852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4 14:06
114	1078830105853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04 14:35
115	1078830105854	기타	2021-05-13 11:10	590205-*****	권*철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5-1(신길동)	열차	2021-03-04 15:11
116	1078830105855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05 11:11
117	1078830105746	기타	2021-05-13 11:10	740415-*****	장*기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3	열차내	2021-03-16 12:33
118	1078830105747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6 13:18
119	1078830105748	수취거절	2021-05-07 13:12	481109-*****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1-03-16 13:24
120	1078830105749	기타	2021-05-13 10:19	520717-*****	서*범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2길 81	열차	2021-03-17 10:14
121	1078830105751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7 10:45
122	1078830105853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25 14:11
123	1078830105855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26 11:34
124	1078830105858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26 12:07
125	1078830105859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26 12:07
126	1078830105857	수취거절	2021-05-07 13:12	481109-*****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1-03-05 12:39
127	1078830105859	기타	2021-05-13 10:19	520717-*****	서*범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2길 81	열차	2021-03-06 10:15
128	1078830105860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06 10:29
129	1078830105861	이사불명	2021-05-07 16:19	671008-*****	최*석	경기도수원시팔달구동말로25번지48-9	열차	2021-03-06 10:41
130	1078830105862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6 11:01
131	1078830105863	기타	2021-05-13 11:10	690813-*****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9길 19	열차내	2021-03-06 11:02
132	1078830105753	이사불명	2021-05-07 13:15	621026-*****	김*주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145길11-9(신림동)	역	2021-03-17 11:00
133	1078830105754	수취인불명	2021-05-07 14:51	481228-*****	이*희	경기도 하남시 덕풍남로 11	열차내	2021-03-17 11:16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34	1078830105755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7 11:24
135	1078830105756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17 11:26
136	1078830105757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17 11:39
137	1078830105758	기타	2021-05-13 11:10	590205-*****	권*철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5-1(신길동)	열차	2021-03-17 11:45
138	1078830105759	기타	2021-05-13 11:10	590205-*****	권*철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5-1(신길동)	열차	2021-03-17 12:30
139	1078830105861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26 12:59
140	1078830105863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26 13:19
141	1078830105664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06 11:05
142	1078830105666	기타	2021-05-13 11:10	690813-*****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9길 19	열차내	2021-03-06 11:26
143	1078830105667	기타	2021-05-12 09:00	691115-*****	최*규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36가길20(홍제동)	역	2021-03-06 11:30
144	1078830105669	폐문부재	2021-05-13 06:38	750926-*****	박*환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45길 5-8	역	2021-03-06 12:09
145	1078830105762	기타	2021-05-13 10:55	751113-*****	연*성	서울시용산구서빙고로91가길16(주성동)	역	2021-03-17 15:02
146	1078830105763	기타	2021-05-13 11:10	740415-*****	장*기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3	열차내	2021-03-18 09:44
147	1078830105765	폐문부재	2021-05-10 13:26	530415-*****	김*직	경기도광명시소하로55404동1501호	열차내	2021-03-18 10:26
148	1078830105766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18 10:33
149	1078830105768	기타	2021-05-13 10:19	520717-*****	서*범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2길 81	열차	2021-03-18 10:46
150	1078830105868	수취인불명	2021-05-07 14:51	481228-*****	이*희	경기도 하남시 덕풍남로 11	열차내	2021-03-27 10:27
151	1078830105869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27 11:10
152	1078830105870	기타	2021-05-13 11:10	560920-*****	김*연	서울시성동구용담21길3-4(용담동)	열차	2021-03-27 11:36
153	1078830105871	기타	2021-05-12 09:07	661030-*****	김*기	서울시성북구월곡로8길3(중암동)	열차	2021-03-27 11:44
154	1078830105872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27 12:05
155	1078830105873	폐문부재	2021-05-13 13:2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내	2021-03-27 12:47
156	1078830105874	기타	2021-05-13 10:19	520717-*****	서*범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2길 81	열차	2021-03-27 13:00
157	1078830105671	수취인불명	2021-05-06 11:33	551002-*****	박*임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열차	2021-03-06 13:15
158	1078830105672	폐문부재	2021-05-12 15:00	560202-*****	최*숙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48	열차내	2021-03-06 15:49
159	1078830105673	기타	2021-05-12 09:09	481124-*****	박*철	서울중랑구동일로123길98-16	열차내	2021-03-06 18:41
160	1078830105674	수취거절	2021-05-07 13:12	481109-*****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1-03-07 10:51
161	1078830105676	수취거절	2021-05-07 13:12	481109-*****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1-03-07 11:11
162	1078830105677	기타	2021-05-13 09:10	440615-*****	김*옥	서울시중랑구용마산로115길15(망우동)	열차	2021-03-07 11:41
163	1078830105678	기타	2021-05-12 09:07	661030-*****	김*기	서울시성북구월곡로8길3(중암동)	열차	2021-03-07 11:51
164	1078830105769	기타	2021-05-13 11:10	690813-*****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9길 19	열차내	2021-03-18 10:58
165	1078830105771	기타	2021-05-13 11:10	590205-*****	권*철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5-1(신길동)	열차내	2021-03-18 11:05
166	1078830105773	기타	2021-05-13 11:10	740415-*****	장*기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3	열차내	2021-03-18 11:30
167	1078830105774	기타	2021-05-13 11:10	740415-*****	장*기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72길13	열차내	2021-03-18 11:47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68	1078830105877	기타	2021-05-07 13:09	470327-*****	김*두	서울시관악구대학18길48-10(신림동)	열차내	2021-03-27 13:30
169	1078830105879	기타	2021-05-12 09:07	661030-*****	김*기	서울시성북구월곡로8길3(종암동)	열차	2021-03-27 15:17
170	1078830105880	기타	2021-05-13 10:19	611013-*****	이*근	서울시도봉구도봉로152가길121층(도봉동)	열차내	2021-03-27 20:28
171	1078830105881	수취거절	2021-05-07 13:12	481109-*****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1-03-28 11:25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61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전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전기공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전기공사업 등록취소)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제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전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6.03. ~ 2021.06.17. (15일간)
3. 공고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및 장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쥬그린아이씨티 (전남-01328)	정*욱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23	2021.06.18.(금) 14:00 녹색에너지과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받은 후, 미보완)	행정처분 사전통지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4.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2호

5. 청문 시 유의사항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64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1.6. 3.~2021. 6. 17.(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납세번호	차종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가산금	주차요금	소유자	주소	우편번호	반송사유	납부기한
1	20211948	16구9582	0000473392142 0120210525000 028	크루즈 2.0 디젤	화랑대역	147:43	2021-04-28	20:16	2021-05-06	23:59	212,700	0	212,700	노무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85, 611호(장안동, 장안현대벤처빌)	02625	수취인불명	공고기간내
2	20211982	09조8904	0000473392142 0120210525000 065	머스탱	마포유수지역	164:54	2021-05-01	03:05	2021-05-07	23:59	435,300	0	435,300	김태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안길 33, 301호(도화동)	04171	폐문부재	공고기간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99호(2021.02.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통일로우회도로(중로1-A) 건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열람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110-28 ~ 갈현동 산12-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통일로우회도로(중로1-A호선)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 규모

- 도로신설(왕복4차로), L=1,460m, B=17~38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조서참조

사. 열람일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단지설계부 ☎ 032-890-5385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 02-2133-8084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은평구 진관동	산101-15	임	11,207	912	에스에이치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은평 도시 개발 사업 구역내
2	은평구 진관동	산110-28	임	5,250	4,309	에스에이치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3	은평구 진관동	산110-26	임	694	694	에스에이치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4	은평구 진관동	산101-14	임	2,777	115	에스에이치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5	은평구 진관동	산110-25	임	694	694	에스에이치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6	은평구 진관동	산110-24	임	2,975	1342	에스에이치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7	은평구 진관동	산110-27	임	6,744	165	에스에이치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8	은평구 진관동	산110-21	임	198	198	에스에이치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9	은평구 진관동	산110-20	임	198	198	에스에이치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10	은평구 진관동	산110-23	임	2,083	857	에스에이치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합계					9,484						

※ 수용·사용 필지는 은평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평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지적정리 후 토지소유권 이관 예정 (SH공사 → 서울시)

- 편입토지 조서(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은평구 갈현동)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지 번 별 소 유 자		소 유 자 별 관 계 인			위치(STA)	입체적도로구역 지정범위(평균해수면기준 (~)(m)까지)	지반고 [최고(m) ~최저(m)]	심도 [최고(m) ~최저(m)]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 관계					
1	산12-2	임	40,019	2,282	박장수	일본국 아이치켄 기요스시 니시호리에 2287				서울방향 0+560~0+740	57.27 ~ 35.96	164.77 ~135.00	107.50 ~78.33	구역외
				2,521	(주)국진양행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80-15				고양방향 0+560~0+740	57.27 ~ 35.96	174.26 ~138.05	116.99 ~81.38	구역외
				60						피난연결통로 0+593	56.53 ~ 36.13	138.93	82.40	구역외
	소계		40,019	4,863										
2	산12-1	임	102,052	7,105	김은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헤밀리아파트 306-902	공	서울특별시 (은평출장소)	압류	서울방향 0+740~1+280	59.98 ~ 36.87	189.27 ~130.60	131.40 ~71.62	구역외
				6,883	김희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헤밀리아파트 306-902				고양방향 0+740~1+280	59.98 ~ 36.87	198.82 ~141.95	141.15 ~82.97	구역외
				231	박영희	서울 강남구 삼성동 22 상아아파트 5-601				피난연결통로 0+800	57.57 ~ 37.17	185.76	128.19	구역외
					서다영	미합중국 뉴저지주 07920 베스킹 릿지 험슨로드 55				피난연결통로 1+000	58.57 ~ 38.17	148.27	89.70	구역외
					서은영	서울 강남구 삼성동 22 상아아파트 5-601				피난연결통로 1+200	59.58 ~ 39.18	142.42	82.84	구역외
					서장석	미합중국 뉴저지주 07920 베스킹 릿지 험슨로드 55								
					서재덕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86								
					서재익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86								
					서재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9-4 상아아파트 2동 807호								
					서재화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86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지 번 별 소 유 자		소 유 자 별 관 계 인			위치(STA)	입체적도로구역 지정범위(평균해수면기준 (~)~(m)까지)	지반고 [최고(m) ~최저(m)]	심도 [최고(m) ~최저(m)]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서재훈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2-4								
					서재희	고양군 지도면 토당리 새인빌라 에이동 204호								
					서재희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힐밀리아파트 306-902								
					서준석	서울 강남구 삼성동 22 상아아파트 5-601								
					서진석	미합중국 뉴저지주 07920 베스킹 릿지 현승로드 55								
					서희석	서울 강남구 삼성동 19-4 상아아파트 3-501								
					서희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9-4 상아아파트 3-501								
					함정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2-4								
	소계		102,052	14,219										
3	산5-1	임	43,921	4,821	사단법인아시아 복음선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325-11				서울방향 1+280~1+640	61.79 ~ 39.58	167.16 ~123.83	107.18 ~62.14	구역외
				2,930	사단법인한국기 독교특수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52(삼전동)				고양방향 1+280~1+600	61.59 ~ 39.58	168.90 ~114.42	108.92 ~52.93	구역외
				196	재단법인한국그 리스도의교회유 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6길 29, 5층(연건동,환원빌딩)				피난연결통로 1+392	60.54 ~ 40.14	137.93	77.39	구역외
										피난연결통로 1+580	61.49 ~ 41.09	125.94	64.45	구역외
	소계		43,921	7,947										
계			3필지	27,029										

- 편입토지 조서(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은평구 진관동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위치(STA)	입체적도로구역 지정범위(평균해수면기 준()~()m까지)	지반고 [최고(m) ~최저(m)]	심도 [최고(m) ~최저(m)]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 관계					
1	산58	임	280,469	2,079	김광석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 125-4				고양방향 1+480~1+660	61.89 ~ 40.58	145.59 ~114.42	84.61 ~52.93	구역외
					김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길 64(이태원동)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68 현대토포스 701호								
					김영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한강대우트럼프월드3차 101동 1703호								
					김정석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 125-4								
					박재숙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 125-4								
	소계		280,469	2,079										
2	산58-1	임	298	40	최한수	서울 노원구 월계동 775 대우아파트 101-201				고양방향 1+620	61.69 ~ 41.29	122.06	60.37	구역외
	소계		298	40										
3	산 110-17	임	10,774	1,448	에스에이치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서울방향 1+640~1+740	63.29 ~ 41.39	125.61 ~105.57	63.82 ~42.58	구역내 (근린공원7, 수도공급시설중 복)
				1,175						고양방향 1+640~1+740	62.29 ~ 41.39	126.00 ~110.63	64.11 ~48.44	구역내 (근린공원7 중복)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위치(STA)	입체적으로구역 지정범위(평균해수면기 준()~()m까지)	지반고 [최고(m) ~최저(m)]	심도 [최고(m) ~최저(m)]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 관계					
	소계		10,774	2,623										
4	산 110-27	임	6,744	1,304	에스에이치 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서울방향 1+740~1+840	63.79 ~ 41.89	121.15 ~96.95	57.86 ~33.16	구역내 (근린공원7 중복)
				1,000						고양방향 1+740~1+820	62.69 ~ 41.89	123.81 ~109.59	61.52 ~46.90	구역내 (근린공원7 중복)
				42						피난연결통로 1+743	62.30 ~ 41.90	119.48	57.18	구역내 (근린공원7 중복)
	소계		6,744	2,346										
5	산 101-15	임	11,207	64	에스에이치 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고양방향 1+820	62.69 ~ 42.29	109.59	46.90	구역내 (근린공원7 중복)
	소계		11,207	64										
6	산 110-24	임	2,975	645	에스에이치 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서울방향 1+800~1+860	63.89 ~ 42.19	107.48 ~89.40	43.89 ~25.51	구역내 (근린공원7 중복)
				613						고양방향 1+820~1+880	62.99 ~ 42.29	109.59 ~87.60	46.90 ~24.61	구역내 (근린공원7 중복)
	소계		2,975	1,258										
7	산 110-28	임	5,250	27	에스에이치 공사	강남구 개포동 14-5				고양방향 1+880	62.99 ~ 42.59	87.60	24.61	구역내 (근린공원7 중복)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위치(STA)	입체적도로구역 지정범위(평균해수면기 준()~()m까지)	지반고 [최고(m) ~최저(m)]	심도 [최고(m) ~최저(m)]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 관계					
	소계		5,250	27										
계			7필지	8,4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67호

『2021년도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공고

서울시 물산업의 혁신기술 발굴 및 실증화 지원을 위한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1. 추진목적 및 배경

- 1) 물재생센터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 2) 물재생시설을 R&D 및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물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지원사항

1) 지원규모 및 기간

- (1)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총15억원
- (2) 지원기간 : 7월 협약일로부터 12.31.까지

2) 지원대상 및 내용

- (1) 지원대상 : 서울시 물재생센터를 R&D 및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원하며 물재생센터에 적용 가능한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연구)
- (2) 사업구분

항 목	R&D 기획 사업	실증화 사업
사업내용	·기술개발 기초 아이디어 실험 지원 ·제품 도면 설계 및 기술 이론정립 등	·시제품단계 기술/제품 Pilot Test 지원 (Pilot 시설 제작 및 운영비용 지원 등)
지원대상	·서울 소재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 서류 접수 시 소재지 기준이며, 지점·연구소 등이 서울 소재인 경우도 인정	
지원기간	·' 21. 7. ~ ' 21.12. ※ 예산은 ' 21.12.까지 집행 완료, 실증 시설 이용은 협의에 의하여 연장 가능	
지원규모	·기업 당 최대 1억원/년	·기업 당 최대 3억원/년
	※ 사업 구분 없이 평가 최저 점수 통과 시 지정공모 우선 선정 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업체 선정	
지원내용	·연구 비용(실험비, 하수 원수 제공 등) ·필요 시 공동·임시사무실 대여 가능 ※ 지원 사업비 내 편성	·실증 비용(시설비, 하수 원수 제공 등) ·필요 시 공동·임시 사무실 및 Pilot 공간대 여 가능(부지 점용 허가 등) ※ 지원 사업비 내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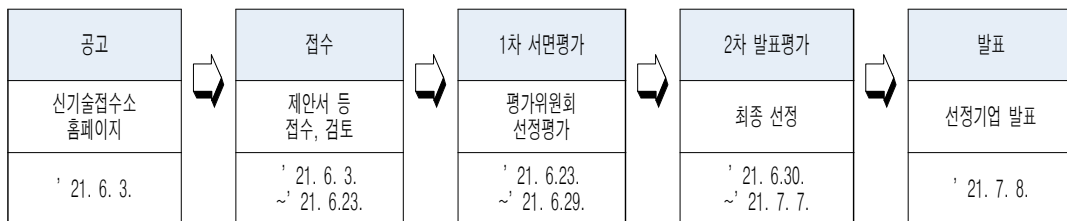
※ R&D 기획 사업에 참가한 기업 중 우수 기업은 ' 22년 사업 참가 시 가산점 부여
※ 사업비 내 철거/원상복구 비용 포함하여야 함

(3) 지원내용

- 지정 공모 - 실증화 사업 3건
 1. 물재생센터 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전기로 절감 방안)
 2. 물재생센터 내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3. 물재생센터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
- 자유 공모 - 지정공모 외 물재생 분야 R&D 기획 및 실증화 사업 관련

3. 추진일정

1) 추진절차 ※접수 현황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차 서면평가 통과한 기업에 한해 2차 발표평가 일정 세부 조율 및 통보
 ※ 선정 결과는 신기술접수소 게시 및 개별 통보

4. 참가자격

- 1) 서울 소재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 서류 접수 시 소재지 기준이며, 지점·연구소 등이 서울 소재인 경우도 인정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등

※ 지원 제외 대상

- 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제외
- ② 유사 정책자금 중복 수혜업체, 기 상용화된 기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 추진 중 발견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를 진행
- ③ 신청된 사업의 사업화 형태가 부실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외

5. 접수기간 및 방법

- 1) 접 수 : ' 21. 6. 3.(목)부터 ' 21. 6. 23.(수) 18:00 까지
- 2) 접 수 처 : 「신기술접수소」 (www.seoul-tech.com)
- 3) 등록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업체소개서,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등 각 1부.
 - (자격별 필수)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신청기관의 재무상태 현황(최근 3년간 재무제표 확인원, 국세청)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특허 출원 증빙자료
 - (추가) 지점·연구소가 서울 소재인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기타(특허, 논문, 보고서, 시험성적서, 특허 자료 등)

4) 신청방법 : 기본사항을 온라인으로 등록한 후,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업로드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신기술접수소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 진행
 - ◆ 회원가입 방법
 -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http://www.seoul-tech.com>)에서 기업 및 개인회원 가입
- ② 2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양식을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 ③ 3단계 : 접수 완료 확인
 - 3단계 완료 후 마이페이지 → 접수내역 → 진행상황 확인

※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며,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6. 기타사항

- (1) 최종 결과 발표 전 사무실 현장 점검(자본금, 인력 등 확인)
- (2) 제안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전산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하며 등록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특허 등 기재사항 허위 작성 및 증빙 서류 불충분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3) 실증수행 가능여부 조회를 위해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자의 신용상태, 재무구조 등에 따라 최종 실증수행 탈락 가능
- (4)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5)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평가 및 사업수행 포기 시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 (6) 발표평가 이후의 과정 및 제출서류는 선정 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
- (7)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지침에 따르며,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 가능
- (8) 공고문 상의 내용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
- (9) 선정기업 협약 체결 시 시지원금 100%, 사업 기간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7. 문의처

- 서울기술연구원 기술혁신센터
 (☎ 02-6910-9803, ✉ innotech@sit.re.kr)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물산업육성팀
 (☎ 02-2133-4382, ✉ seul0917@seoul.go.kr)

붙임3**제출서식****서식3****2000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 5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최근 5년간 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다른 용도 사용, 법령위반, 거짓 신청, 사업 임의중지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신 청 현 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공익활동 증빙서 등

서식4

업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 00. 1. 10. : 000 창립 ◦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시비보조(%), 사업수익(%), 기타(%)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서식5

20〇〇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자부담률 천원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홍보비	천원 (%)	사 업 진행비	천원 (%)	활동비 (천원 %)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담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사업명 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식비		·
		간담회비(다과비)		·
		물품구입비		·
		임차비		·
		기타		·
	활동비	사무용품비		·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사업명 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회의참석비		·
		단순인건비		·
	홍보비	홍보비		·
		인쇄비		·
	사업진행비	식비		·
		간담회비(다과비)		·
		물품구입비		·
		기타		·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활동비	특근매식비		.
		사무용품비		.
		재료비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text{단가(원)} \times \text{수량(명, 부, 회 등)} = \text{○○○천원}$
-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 제로페이 사용계획(예시)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제로페이 사용 목표액					
제로페이 사용비율					

※ 예산액은 '5.사업비 구성'의 총 사업비와 동일하게 작성

-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계획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 (예시) 해당/해당없음
 - 사업자 유형 : (예시)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로 사후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계획
 - 환급예상액 :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부가가치세 환급 예정액					

- 처리계획 : (예시) 사업비 정산 시 집행액에서 공제,
(예시) 사업비 정산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예정

6.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7.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7

민간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 화 번 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용 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를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서식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9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1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및 납부계획			비 고
		금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납부예정일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〇〇회계연도)

1]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〇〇〇)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진 계획	추진 실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③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④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⑤ 개선 및 건의사항

○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〇〇회계연도)

①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② 보조금 집행현황

①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〇〇	1.1 12:00	계				
		〇〇				
		〇〇				
〇〇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②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③ 자부담 집행현황

①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②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④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 등 기재

⑤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

(단위 : 원)

납부금액	납부 예정일	납부 지연(예상)시 사유 및 조치계획	비고

※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후 반납 고지한 즉시 납부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내 반납 조치

⑥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 ① 정산보고서 1부
-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 ③ 영수증(원본) 1부
-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별첨1

사업비 산정 기준

가.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 사업비 : 연구 및 실증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비목 및 세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비목 구분은 인건비, 재료비, 설치시공비, 진행비로 하며, 세목은 각 비목 별로 사업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부가가치세, 건물공사비(단, 실증시설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등은 제외), 기존시설 철거비, 내부직원 인건비, 자체보유 장비 사용료 등은 반영 불가하며, 자부담 및 현물로도 반영 불가하다.(가설건축물 등 대여비는 가능)

2) 측정분석에 소요되는 전극류, 초자류, 시약류 등 소모품 및 소모성 부품 등은 재료비에 포함 가능하나, 내용연수가 있는 실험장비 구입비로는 사용 불가하다.

※ 자체 보유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 분석 및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비의 사용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 및 시약 등은 재료비로 반영 가능(전체 장비 가액은 인정 불가)

3) 서울기술연구원에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일부 책정

4)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

나. 비목별 세부 내용

가)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내부직원을 제외한 본 사업을 위해 사업기간 내 현장관리 임시인력 및 사업보조인력 등 신규채용에 한해서 지급을 원칙

① 세부내역에 업무 수행내용 및 단가(적용기준 포함), 사용기간 등을 명시

② 단가는 주관기업 내규 규정에 따르되 기존 인력의 인건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임시 및 보조인력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시간당 10,702원 / 월 환산액 2,236,720원

나) 재료비 : 실증시설 제작 원자재, 부품, 시약 등 소요비용을 말하며,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단위별로 개략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규격 / 단가 × 수량)

다) 설치시공비 : 현장 시공비, 장비비, 시공인력 노무비 등을 말하며 품목 단위별로 작성한다. (단가 × 수량)

라) 진행비 : 시험분석비, 출장비, 실증시설 가동 전기료 및 통신료 등 공공요금, 보고서 인쇄비, 보증보험료 등을 말한다. (단가 × 수량(횟수))

① 측정비용은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사업당 1~3회, 수질 등 법정기준항목에 한함)을 제외한 자체 분석비용 및 외부 공인시험기관 의뢰비용을 반영

② 보고서 인쇄비, 보증보험료 등은 총 1,000,000원 ~ 1,500,000원 이내로 산정

③ 기타 사업수행 중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기재

④ 출장비는 관내 지역(동일 시·군·구) 20,000원/인/일, 관외 지역 40,000원/인/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⑤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업, 피보험자는 서울시가 되며 보험가입금은 지원금액, 기간은 협약서의 계약기간으로 함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첨2

사업비 관리 및 집행

가.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 ②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인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 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허용 가능

나.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①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반드시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 철저
-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②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사용내역 일치

다.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① 시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 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라. 사업비 집행 절차

(지출품의 - 지출계획 내부결제) → (지출결의 -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 - 체크카드 결제/무통장 입금(계좌이체)) → (사업비 정산 - 증빙서류 정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마.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①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항목 신설은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변경 관련 내용 》

-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비목, 세목 신설 포함) 사전에 시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 ※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행한 경우에 시장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 ▶ 다만, 유사항목(세목) 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이거나 비목 간 10% 이내의 금액조정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집행 가능(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

바.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① 지방보조사업비는 사업종료 시기 내에 완료 및 집행
- ② 정산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사.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①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②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아. 집행내역은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자부담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 작성

- 지출일, 항목, 내역, 지출액, 지급처, 지출번호, 지급방법, '00.00.00 check카드 계좌입
- 내부 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 내부양식에 따라 항목별로 지출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 부여

자.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는 원본 첨부 원칙, 자부담 지출은 사본제출 가능(원본대조필 날인)

차.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 편철

별첨3**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안내 문구 등은 삭제하여 제출
-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년 사업비는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집행액, 집행 잔액 및 예금이자 등은 반납
- 집행 시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 회계서류는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존
-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전산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하며 등록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특허 등 기재사항 허위 작성 및 증빙 서류 불충분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실증수행 가능여부 조화를 위해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자의 신용상태, 재무구조 등에 따라 최종 실증수행 탈락 가능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평가 및 사업수행 포기 시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 발표평가 이후의 과정 및 제출서류는 선정 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
- 사업비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 가능
- 공고문 상의 내용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 예정
- 선정기업 협약 체결 시 시지원금 100%, 사업 기간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별첨4

정산 구비 서류

○ 예시

구분	구비서류	
인건비	· 지출품의서 / 지출결의서 · 지급내역서 · 계좌이체 확인증 · 통장 사본	· 원천징수 영수증 · 근무일지 · 근로(고용) 계약서 사본(원본대조 필)
출장비	· 지출품의서 / 지출결의서 · 지급내역서 · 계좌이체 확인증 · 통장 사본	· 출장결과 보고서 (출장자, 출장일시/장소, 출장목적, 내용 등) · 원천징수 영수증(건당 125,000원 이상인 경우)
재료비 등	· 지출품의서 /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영수증(매출전표) / 세금 계산서 + 계좌이체 확인증	· 견적서 / 계약 서류 · 납품 사진 ·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계좌이체인 경우)
전기료, 보증보험료	· 지출품의서 / 지출결의서 · 납부 확인증 / 계좌이체 확인증	· 고지서 납부 영수증(사본, 원본대조 필) · 보증보험료 영수증(사본, 원본대조 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70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처분 현황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다즈종합 건축사사무소	영업정지 3개월 (2021.6.1~20 21.8.31)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등록기준을 미달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나, 보완기한(2016.06.18일)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 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71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처분 현황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동광지오 엔지니어링	영업정지 3개월 (2021.6.1~20 21.8.31)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등록기준을 미달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나, 보완기한(2018.11.14일)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 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72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처분 현황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주)건축사사무소 지오디자인	영업정지 3개월 (2021.6.1~20 21.8.31)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등록기준을 미달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나, 보완기한(2016.11.18일)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 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73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처분 현황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주)천마이앤씨	영업정지 3개월 (2021.6.1~20 21.8.31)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등록기준을 미달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나, 보완기한(2019.01.18일)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 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7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유)탑모터스 등 864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1. 6. 3 ~ `21. 6. 18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1. 6. 3 ~ 2021. 6. 18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50%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6, 팩스번호 : 02-2133-4904
 -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 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공시송달(사전통지서)명단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	91모0580	(유)탐모터스(상품용)	2021-04-27 14:00	광주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	91모0580	(유)탐모터스(상품용)	2021-04-27 14:02	광주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	강원31아1021	(자)대성택시	2021-04-26 17:26	강원도 영월군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	49구4984	(주)골든벨기획	2021-04-26 14:23	대구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	67머3713	(주)기원아이.시	2021-04-21 09:48	전라남도 순천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	27루0755	(주)꿈미디어	2021-04-28 14:4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	122호2791	(주)나우리스소프트	2021-04-15 17:32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	67호7316	(주)농협네트웍스	2021-04-26 17:52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	85나0180	(주)다온종합배관	2021-04-26 07:06	경기도 용인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0	32버4071	(주)대동플랜트	2021-04-26 07:44	경상남도 김해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	32버4071	(주)대동플랜트	2021-04-27 07:27	경상남도 김해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	140하8601	(주)대명이앤지	2021-04-05 12:24	경기도 용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전용차로위반	50,000
13	11노2923	(주)대아	2021-04-28 09:29	경기도 파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4	46마7067	(주)더씨클라이트브루잉	2021-04-09 19:15	서울특별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5	89머1088	(주)도깨비미디어	2021-04-26 15:49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6	46소8418	(주)도림엘앤씨	2021-04-21 14:22	경기도 성남시	성신여대입구역~한성대입구역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	경기72사8230	(주)동백관광	2021-04-23 17:56	경기도 안산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60,000
18	128하4972	(주)로지시	2021-04-15 17:1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	80우0715	(주)로페로테일러	2021-04-22 14:2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	80우0715	(주)로페로테일러	2021-04-22 14:23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	44호1019	(주)마이루시	2021-04-19 09:04	인천광역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2	128하6430	(주)마이포에트리	2021-04-12 08:1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3	경기88아1058	(주)범양물류	2021-04-23 19:11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	52하0901	(주)부도라	2021-04-13 17:18	부산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	37무6511	(주)비아아트	2021-04-26 18:48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26	17도0855	(주)삼성라디칼	2021-04-08 17:5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7	68여5751	(주)새한	2021-04-27 18:15	대전광역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	58라8199	(주)스타인	2021-04-15 20:36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9	58라9555	(주)썬화환	2021-04-22 13:33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	전용차로위반	50,000
30	36더7676	(주)썬앤오투	2021-04-23 19:10	경기도 가평군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1	31러4787	(주)썬앤엔시	2021-04-21 10:0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2	18하5628	(주)아이디헬스케어그룹	2021-04-12 20:23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3	20하8543	(주)아이엔트카	2021-04-27 18:08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34	83도1929	(주)아이엠네트웍스그룹	2021-04-28 04:43	서울특별시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35	32나2413	(주)알제이디	2021-04-28 09:3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	86나3634	(주)양지종합주류	2021-04-28 20:09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	288주8226	(주)어반로프트	2021-04-23 17:34	경기도 평택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	160호2479	(주)에스디씨아이티	2021-04-19 20:50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	70하3402	(주)에스에스오토랜드	2021-04-26 10:5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60,000
40	112도6403	(주)에프앤코퍼레이션	2021-04-27 09:25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	57우8628	(주)연합이앤씨	2021-04-09 18:40	경기도 남양주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2	83다6104	(주)예광테크	2021-04-21 19:08	경기도 하남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3	42누0449	(주)오로니트	2021-04-26 09: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4	63부0574	(주)오맥스	2021-04-22 13:43	경기도 부천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	101호9875	(주)와이렌트카	2021-04-28 13:1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6	63하7766	(주)와이앤리소스	2021-04-13 18:24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7	35고0422	(주)우교	2021-04-28 20: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8	29호8979	(주)우리렌트카	2021-04-22 20:46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9	34오2483	(주)우일다이캐스팅	2021-04-22 14:20	경기도 김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0	48가0799	(주)우주트레이딩	2021-04-12 08:14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1	255무1319	(주)우전전기	2021-04-21 19:18	경기도 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	51오3285	(주)위스포츠	2021-04-22 17:43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3	51오3285	(주)위스포츠	2021-04-21 08:59	서울특별시	태릉~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54	03다0193	(주)유더블유디	2021-04-26 18:09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5	92라7826	(주)유아이케이	2021-04-23 17:28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6	53하0737	(주)이미인	2021-04-08 15:37	경기도 화성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7	63라1541	(주)일아삼사	2021-04-28 11:08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8	97보2950	(주)잠실세계로마트	2021-04-23 20: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9	92무1580	(주)잠실세계로마트	2021-04-21 15:19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0	서울86바6003	(주)제이앤로지스	2021-04-24 09:48	서울특별시	종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1	28주5127	(주)제이와이소프트	2021-04-27 12:17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2	129구3802	(주)제일기획	2021-04-13 08: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3	63호7041	(주)제트원골프	2021-04-13 15:21	서울특별시	논현역~ 신사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4	경기92아7581	(주)창일운수	2021-04-24 09:26	경기도 연천군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60,000
65	88도4015	(주)천자운수	2021-04-23 11:01	경기도 고양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전용차로위반	60,000
66	52하6077	(주)케이렌트카경기광주 지점	2021-04-23 09:47	경기도 광주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7	경기94자1440	(주)케이엠로지스	2021-04-23 07:43	경기도 안양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8	87마6109	(주)코리아종합물류	2021-04-27 09:46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69	07노5798	(주)큰손엔터테인먼트	2021-04-09 09:5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0	57호8311	(주)팔공삼푸드	2021-04-13 18:33	경기도 성남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	58라3787	(주)페렌벨	2021-04-16 18:06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2	313로9975	(주)퓨리던	2021-04-22 18:4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3	59조6651	(주)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2021-04-14 19:3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4	59조6651	(주)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2021-04-22 09:3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5	53하7948	(주)한살림사업연합	2021-04-13 17:56	경기도 안성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6	153하4621	(주)한살림사업연합	2021-04-27 08:10	경기도 안성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7	153하4621	(주)한살림사업연합	2021-04-19 08:34	경기도 안성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8	15하5383	(주)한양엔트카	2021-04-23 12:23	전라남도 순천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9	35로0367	(주)효성마케팅	2021-04-27 20:46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0	153호3355	(주)휴어스에스	2021-04-15 14:0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1	153호3355	(주)휴어스에스	2021-04-15 14:3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2	29호2373	광일렌트카(주)	2021-04-24 12:58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83	286무4653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프라이스상품등록세계지원본	2021-04-28 17:3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4	286무4653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프라이스상품등록세계지원본	2021-04-26 18:4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5	12저0458	농업회사법인영원한주식회사	2021-04-05 15:15	충청북도 청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6	128호1718	농협홍삼	2021-04-08 10:04	서울특별시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7	경기95자7174	다보운수(주)	2021-04-21 07:56	경기도 여주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8	81도6680	대웅산업주식회사	2021-04-23 08:4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9	74라3742	대한적십자사	2021-04-27 18:5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60,000
90	166하3079	더앤리드주식회사	2021-04-20 07:36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1	02조0813	동방파오씨주식회사	2021-04-28 13:18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92	서울87아5752	동아통운주식회사	2021-04-27 17:5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3	서울87아5752	동아통운주식회사	2021-04-21 19:14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4	08서6711	력서리라인주식회사	2021-04-23 17:26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5	85머0378	력키디자인(주)	2021-04-21 20:0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6	53하5415	롯데렌탈(주)	2021-04-28 11:58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7	63호4486	롯데렌탈(주)	2021-04-21 16:54	인천광역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98	01하0768	롯데렌탈(주)	2021-04-21 19:18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9	108로9241	롯데캐피탈(주)	2021-04-27 09:17	부산광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0	05도0783	리플러스인간연구소주식회사	2021-04-26 23:46	서울특별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01	42호3882	매치포인트주식회사	2021-04-09 08:36	경기도 성남시	육사체육관~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02	14나2002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1-04-27 19:25	부산광역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62버0123	메리츠캐피탈(주)	2021-04-27 11:26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62버0123	메리츠캐피탈(주)	2021-04-27 11:22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5	09어7575	메리츠캐피탈(주)	2021-04-22 17:48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47어5522	메리츠캐피탈(주)	2021-04-27 17:30	인천광역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7	29버5908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2021-04-22 19:56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29버5908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2021-04-28 14:01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29버5908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2021-04-28 14:00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29버5908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2021-04-22 19:58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1	65호4619	메타빌드주식회사	2021-04-14 18:45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2	09하0137	물레클라디바이시	2021-04-19 08:54	서울특별시	삼성교~삼성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13	서울87아5336	무림운수주식회사	2021-04-22 07:5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114	경기99바5168	미래카운수(주)	2021-04-28 13:36	경기도 군포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60,000
115	경기89자1404	명천물류(주)	2021-04-28 08:52	경기도 안성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62모7467	법무법인(유한)세종	2021-04-28 18:54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7	80고8983	비오비협동조합	2021-04-23 16:57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80고8983	비오비협동조합	2021-04-23 16:5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9	38도7919	삼성전자(주)	2021-04-27 19:03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15오6061	삼성전자(주)	2021-04-23 15:12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63하2338	삼성합동화물(주)	2021-04-08 12:34	경기도 용인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79모1109	서울경찰청장	2021-04-23 09:45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전용차로위반	60,000
123	80무8519	서울구로지역자활센터	2021-04-27 07:53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24	14라0620	성실개발주식회사	2021-04-22 12:53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빌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25	166하9982	소중한산업보건연구소(주)	2021-04-20 08:5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30하0231	씨엔에이치프리미어렌탈(주)	2021-04-21 16:43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7	64하7066	씨티이엔씨(주)	2021-04-14 13:32	대전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153하6743	에스지씨솔루션(주)	2021-04-09 07:32	서울특별시	내곡IC~염곡지하차도	전용차로위반	50,000
129	72호2597	에스케이텔레콤(주)	2021-04-16 14:41	서울특별시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60,000
130	72호2597	에스케이텔레콤(주)	2021-04-27 13:06	서울특별시	수색동 수색역	전용차로위반	60,000
131	서울양천차5701	에이렌탈서비스(주)	2021-04-28 12:30	경기도 김포시	종각역~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132	252서9082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	2021-04-27 18:56	대구광역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33	61노4277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	2021-04-26 17:23	대구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89구9900	엘지시	2021-04-28 08:28	서울특별시	삼각지역~숙대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82가1292	여의도우체국	2021-04-22 08:58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	전용차로위반	50,000
136	68모0102	영동레저산업(주)	2021-04-25 15: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37	서울34아5233	영성교통(주)	2021-04-25 19:13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26호8989	영일기업(주)	2021-04-26 14:43	경상북도 경산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9	20머0277	영재개발(주)	2021-04-22 07:57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경기88사1302	영진특수운송주식회사	2021-04-28 08:24	경기도 여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55누8334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2021-04-27 20:0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372모3870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2021-04-28 08:57	대구광역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372모3870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2021-04-22 08:13	대구광역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전용차로위반	50,000
144	342무1349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2021-04-22 11:38	대구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142거4121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2021-04-23 17:03	대구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46	서울34사7910	용정운수(주)	2021-04-23 20:35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서울34사8723	우남교통(주)	2021-04-26 11:5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48	서울34사8720	우남교통(주)	2021-04-22 19:09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39호0306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2021-04-08 14:05	광주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50	62부8991	유경이앤피주식회사	2021-04-26 18:52	경기도 김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81루1579	유한회사태경	2021-04-26 09:54	경기도 파주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02호9484	은혜교회	2021-04-20 17:32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3	02호9484	은혜교회	2021-04-12 17:33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84무3068	이동유통주식회사	2021-04-27 18:45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서울33아3371	주식회사광일통운	2021-04-28 14:56	서울특별시	군자교교차로~군자역(능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서울33아3371	주식회사광일통운	2021-04-26 07:3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서울33아3322	주식회사광일통운	2021-04-23 08:16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서울37바1498	주식회사광일통운	2021-04-23 08:11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60고3501	주식회사구월	2021-04-22 08:39	경기도 하남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82조7312	주식회사다솔푸드	2021-04-21 19: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260두6290	주식회사대원건설	2021-04-21 10:2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2	182부4525	주식회사대호씨앤씨	2021-04-27 18:17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28구9669	주식회사디제이디앤씨	2021-04-23 19:3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64	103하8281	주식회사디지비캐피탈	2021-04-26 17:12	대구광역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103호8763	주식회사디지비캐피탈	2021-04-23 08:18	대구광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47우4691	주식회사리쥬	2021-04-27 09:39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67	83너2535	주식회사모리트	2021-04-21 18:01	경기도 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95수7747	주식회사무한이앤아이	2021-04-22 09:3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69	11로2220	주식회사미건씨앤디	2021-04-28 19:17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70	74모5407	주식회사미디어월드	2021-04-22 15: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갯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60,000
171	396고1417	주식회사미리애프앤씨	2021-04-13 17:4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66머9728	주식회사메토벤하우제	2021-04-21 20:04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73	90다8032	주식회사보광기획	2021-04-23 08:39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45라4965	주식회사보명	2021-04-23 16: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5	81루1211	주식회사본에피소드	2021-04-28 17:43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경기91아6711	주식회사부릉로지스틱스	2021-04-22 13:12	경기도 부천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63호1559	주식회사비즈모델	2021-04-12 08:17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 애코팜센터~육사야구장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27나6134	주식회사세라산업	2021-04-23 07:4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27나6134	주식회사세라산업	2021-04-21 08:1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27나6134	주식회사세라산업	2021-04-26 08:0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06나6899	주식회사세영피앤이	2021-04-28 18:28	인천광역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2	62아0790	주식회사셀피알	2021-04-28 18:0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3	01누9610	주식회사솔로몬애드컴	2021-04-26 09:48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24소5869	주식회사산안오토리스	2021-04-22 13:33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지하 758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49호3140	주식회사신유렌터카	2021-04-28 18:14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86	19마3515	주식회사산화휴먼세티	2021-04-14 08:18	서울특별시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7	44하0712	주식회사쏘카	2021-04-28 18:23	경기도 군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44하4496	주식회사쏘카	2021-04-28 20:45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65호3550	주식회사쏘카	2021-04-22 19:24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0	104하7636	주식회사쏘카	2021-04-22 19: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91	62라0931	주식회사아라인베스토리	2021-04-28 15:31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49구3010	주식회사아픽스	2021-04-27 10:45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93	104하2597	주식회사에이	2021-04-12 20:17	경기도 평택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104하2597	주식회사에이	2021-04-12 20:13	경기도 평택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263루8281	주식회사에이치에스니트 컴퍼니	2021-04-26 08:57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6	서울노원자7821	주식회사엘	2021-04-21 12:11	경기도 고양시	망우사거리~상봉역방향	전용차로위반	40,000
197	55주4536	주식회사엠앤디	2021-04-28 20:08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8	33거4199	주식회사영일코퍼레이션	2021-04-20 17:23	경기도 부천시	석촌역~잠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99	56누7182	주식회사오토플랫	2021-04-21 19:1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경기부천카0313	주식회사웍스	2021-04-21 12:34	경기도 부천시	종각역~종로3가	전용차로위반	40,000
201	22보8899	주식회사위즈모바일	2021-04-15 17:07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248마4925	주식회사유다인건설	2021-04-27 09:2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111보2836	주식회사유엔아이투	2021-04-26 19:2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04	서울15가8026	주식회사유진레미콘컴프 카	2021-04-27 16:3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60,000
205	서울15가8026	주식회사유진레미콘컴프 카	2021-04-27 16:37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60,000
206	67호6431	주식회사이스트헬스케어	2021-04-08 08:5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58라2290	주식회사잼팩토리	2021-04-15 08:42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208	84루2482	주식회사주영유통	2021-04-27 17:36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9	145허8300	주식회사지원방송	2021-04-13 11:4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0	경기32바2562	주식회사전흥운수	2021-04-28 19:31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19버0370	주식회사코조한	2021-04-28 20:02	경기도 하남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62덕5068	주식회사큐월드	2021-04-27 03:29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13	110구2218	주식회사크린아이글로벌	2021-04-27 08:41	서울특별시	한남IC~잠원IC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44호9908	주식회사포텍시	2021-04-12 10:40	대구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5	112수3387	주식회사프라임파트너스	2021-04-05 22:12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16	81어7934	주식회사필머스엔터테인먼트	2021-04-27 11:3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33오0164	주식회사삿하우스	2021-04-28 20:0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18	21하4186	주식회사하나은행	2021-04-08 18:5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51하8867	주식회사하이브	2021-04-06 18:16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11나2084	주식회사한성케이로지스	2021-04-26 20:0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48하9596	주식회사한솔케미칼	2021-04-12 07:07	경기도 이천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31하0340	주식회사흥인기업	2021-04-16 20:50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104호5149	지역난방안전주식회사	2021-04-20 14:44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12모7678	집덕주식회사	2021-04-23 09:14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57호7339	존슨콘트롤인터내셔널코리아주식회사	2021-04-08 14: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6	01하0233	주)도도람푸드	2021-04-13 18:28	경기도 성남시	회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27	63모7391	주)와이유엔	2021-01-27 1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8	56부8044	주)지앤주	2021-02-01 14:35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40머0746	주식회사골프코리아	2021-04-22 18:38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30호2728	쿠도커뮤니케이션(주)	2021-04-15 08:05	서울특별시	남태령~사당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31	10호0770	크로스핏영등포구청(이익업)	2021-04-14 18:0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32	145호2701	클로버컴퍼니주식회사	2021-04-11 1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티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서울80바8873	하나종합물류(주)	2021-04-23 16:5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60,000
234	46하3025	학교법인중앙총신학원	2021-04-12 20:05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162허8923	한국미쓰비시	2021-04-08 19:36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서울86바2250	현대글로비스(주)	2021-04-21 08: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37	128노8521	현대자동차주식회사	2021-04-21 07:3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38	172나7186	현대자동차주식회사	2021-04-26 19: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9	53부3720	현대캐피탈(주)	2021-04-21 19: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40	56내9032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7 08:21	경상남도 창원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69조7311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3 19:14	경상남도 창원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02나6413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3 19:43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10마8784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6 09:20	인천광역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244	01누8530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8 11:07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60너0794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5 14:22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31하5560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3 17: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47	159조2082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3 14: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24하1675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3 19: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150하7555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1 14: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53서6671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7 18: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1	61하0548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2 17: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52	24하1675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5 13: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24하1675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3 18: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24하1675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3 18: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24하1675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3 20: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326수5624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8 08: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57	150호6898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7 18: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교위 삼성역~종합운동장	전용차로위반	50,000
258	182호3484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8 09: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	전용차로위반	50,000
259	182호7427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8 14: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150하2247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7 18: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61	182하5196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1 19: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62	55하1295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7 09: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3	174수4152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4 16: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4	47하9337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8 13: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5	174수4152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4 16: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6	178하1929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8 07: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7	182하4087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7 12: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8	182호5042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1 2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69	32우7011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6 14: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70	182하4087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7 12: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1	178호5705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6 17: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72	182하5235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8 19: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73	374가6551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6 20: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74	182하4087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7 1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5	28호6080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7 18: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76	53호2391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1-04-23 18: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77	서울동대문하8358	A**	2021-04-22 13:06	서울특별시	종각역~종로3가역	전용차로위반	40,000
278	27라7034	A**	2021-04-27 17:45	경기도 평택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79	38고6532	A**	2021-04-20 08:01	서울특별시	신설동역~동묘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80	67주4562	B**	2021-04-25 09:17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1	18거8194	B**	2021-04-26 17:5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282	39조3108	C**	2021-04-23 07:52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3	34수8102	C**	2021-04-21 16:07	경기도 김포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4	07누3944	C**	2021-04-27 15: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85	67오8334	D**	2021-04-27 07:4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86	180도8915	D**	2021-04-23 19:09	경기도 평택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87	82루1029	D**	2021-04-22 11:18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88	82루1029	D**	2021-04-26 08:29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89	82루1029	D**	2021-04-27 09:12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90	82루1029	D**	2021-04-28 10:44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91	50라8041	G**	2021-04-21 13:0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92	12부6694	G**	2021-04-26 20:44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93	142라8414	H**	2021-04-28 20:52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94	06허0105	J**	2021-04-16 22:00	경기도 부천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95	19모1127	J**	2021-04-26 18:4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96	24다2566	J**	2021-04-26 15:29	경기도 부천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297	66거8672	J**	2021-04-27 17:53	경기도 부천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8	12더9103	K**	2021-04-25 11:47	충청남도 논산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99	52서7400	K**	2021-04-22 15:39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0	166허1481	K**	2021-04-20 18:1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1	73누6099	L**	2021-04-24 17:38	서울특별시	시흥IC~구로교	전용차로위반	60,000
302	24주3380	L**	2021-04-22 18:2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3	34거6646	L**	2021-04-21 16:57	경기도 부천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4	65라4916	L**	2021-04-26 11: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05	57루5065	M**	2021-04-28 21:22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06	75더4255	N**	2021-04-23 18:02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60,000
307	101호1539	P**	2021-04-15 16:39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8	101호1539	P**	2021-04-15 16:37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9	37허0404	P**	2021-04-20 07:3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10	49거8369	Q**	2021-04-26 17:03	경기도 화성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1	356루9804	S**	2021-04-08 17:44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2	52노1332	S**	2021-04-26 20:30	경기도 평택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3	37더5367	S**	2021-04-23 16:50	경기도 평택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4	15소5321	T**	2021-04-23 16:13	충청남도 아산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5	15소5321	T**	2021-04-23 13:44	충청남도 아산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6	107로7466	T**	2021-04-24 17:52	인천광역시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17	20호5677	U**	2021-04-13 17:1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8	20호5677	U**	2021-04-13 17:12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319	63구3892	Y**	2021-04-22 17:36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20	53더1829	Z**	2021-04-24 23:17	경기도 부천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21	51마7922	감**	2021-04-28 14:23	경기도 김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22	30누6313	강**	2021-04-27 19:29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23	43도8054	강**	2021-04-25 00:28	인천광역시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24	326버4560	강**	2021-04-27 19:2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25	15여6901	강**	2021-04-28 08:57	인천광역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326	48너1436	강**	2021-04-21 09:44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27	09더2648	강**	2021-04-21 13:54	경기도 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28	64무6723	강**	2021-04-21 20:5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29	57머7012	강**	2021-04-26 09:47	경기도 구리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30	02주4604	강**	2021-04-26 12:43	서울특별시	서울대입구역~낙성대역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31	10오9618	강**	2021-04-28 18:38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2	서울중자9455	강**	2021-04-22 12:21	서울특별시	종로76-2,종각역~종로2가방면	전용차로위반	40,000
333	30머1966	강**	2021-04-23 17:54	전라북도 군산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34	18누0692	강**	2021-04-23 09:43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35	308거1563	강**	2021-04-23 19:22	대전광역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36	135너9385	강**	2021-04-23 13:43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37	135너9385	강**	2021-04-23 12:30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38	106마3377	고**	2021-04-27 16:27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9	서울31자6585	고**	2021-04-26 12:04	인천광역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40	08서7479	고**	2021-04-22 19:30	강원도 춘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41	서울31아8063	고**	2021-04-28 17:22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42	159소6670	고**	2021-04-21 15:28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3	159소6670	고**	2021-04-21 15:31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4	서울마포차5751	공**	2021-04-21 12:34	서울특별시	종각역~종로3가	전용차로위반	40,000
345	52오1934	곽**	2021-04-23 10:28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46	30호8916	곽**	2021-04-12 15:59	전라북도 군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47	101호1356	구**	2021-04-17 15:55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8	101호1356	구**	2021-04-17 15:52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9	101호1356	구**	2021-04-17 18:36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50	35머3516	구**	2021-04-22 21:46	서울특별시	수색동 수색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51	87무7992	구**	2021-04-26 07:53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52	48다0567	구**	2021-04-24 11:44	경기도 성남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53	서울32자4552	국**	2021-04-23 19:3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54	06다9588	권**	2021-04-27 07:39	경기도 오산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355	38도9309	권**	2021-04-23 15:14	경상북도 경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6	63하3402	권**	2021-04-06 10:55	인천광역시	을지로1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57	12라0163	권**	2021-04-23 18:40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58	45무1540	권**	2021-04-21 08:16	전라북도 전주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359	서울중카1856	권**	2021-04-28 12:24	서울특별시	종각역~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360	47나7622	권**	2021-04-23 19:41	경기도 하남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61	156다4157	권**	2021-04-28 17:28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2	11어9292	권**	2021-04-09 17:43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63	07라0171	금**	2021-04-22 09:29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4	58라0660	기**	2021-04-28 19:5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5	37나9571	기**	2021-04-24 20:06	경기도 안산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366	32고2981	김**	2021-04-27 19:22	경기도 남양주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67	16부7035	김**	2021-04-27 19:20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68	372우1213	김**	2021-04-21 19:1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69	12다0693	김**	2021-04-28 18:57	경기도 시흥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0	서울노원자7847	김**	2021-04-22 14:42	서울특별시	온곡초교입구교차로~상계역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371	64부1897	김**	2021-04-26 19:4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화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72	서울88자1205	김**	2021-04-21 07:10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73	17저2373	김**	2021-04-22 18:54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374	68도1755	김**	2021-04-21 19:47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75	33모2629	김**	2021-04-26 17:49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6	80버5719	김**	2021-04-28 09:2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77	19조0623	김**	2021-04-23 10:01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8	51머8647	김**	2021-04-28 09:28	충청북도 제천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79	49도0302	김**	2021-04-22 12:0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80	14수7051	김**	2021-04-27 18:59	경기도 안산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81	81구2709	김**	2021-04-28 07:1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82	24라5904	김**	2021-04-21 13:0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83	75저7166	김**	2021-04-22 18: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60,000
384	10버8254	김**	2021-04-22 13:15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385	14구1873	김**	2021-04-22 18:47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86	41호1308	김**	2021-04-12 15:28	경기도 안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87	94나0376	김**	2021-04-27 17:3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388	17두5536	김**	2021-04-26 11:2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389	서울88자2733	김**	2021-04-22 11: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90	69하0278	김**	2021-04-20 19:03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91	27아5876	김**	2021-04-26 18:44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92	348수9646	김**	2021-04-22 21:07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93	170하5922	김**	2021-04-14 14:22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전용차로위반	50,000
394	50거7003	김**	2021-04-22 20: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95	66소0944	김**	2021-04-22 12: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96	16마1259	김**	2021-04-23 20:2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7	53주7208	김**	2021-04-12 20:35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98	395서1743	김**	2021-04-23 09:07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99	49나6937	김**	2021-04-23 08:01	경상북도 칠곡군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0	49나6937	김**	2021-04-22 08:01	경상북도 칠곡군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1	49나6937	김**	2021-04-28 07:42	경상북도 칠곡군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2	49나6937	김**	2021-04-27 07:10	경상북도 칠곡군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3	서울종로아8308	김**	2021-04-28 12:28	서울특별시	종각역~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404	80마9487	김**	2021-04-27 15:4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5	23마0815	김**	2021-04-21 20:04	경기도 안산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06	93가5112	김**	2021-04-26 14:41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07	29라5326	김**	2021-04-22 10:52	세종특별자치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08	65나9616	김**	2021-04-25 11:16	인천광역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09	69다4221	김**	2021-04-24 10:37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0	63버3320	김**	2021-04-28 20:25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1	42라2550	김**	2021-04-21 17:18	경기도 부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12	49오4008	김**	2021-04-23 20:35	전라북도 전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13	11고8645	김**	2021-04-21 09:06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14	32라6997	김**	2021-04-23 19:59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5	168호9644	김**	2021-04-27 07:35	강원도 원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16	19조8679	김**	2021-04-27 18:28	경기도 시흥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17	26도9856	김**	2021-04-21 14:10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18	서울성북하3622	김**	2021-04-27 16:09	서울특별시	종각역~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419	서울32자3536	김**	2021-04-27 20:39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20	58나5110	김**	2021-04-21 18:2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21	46로5932	김**	2021-04-26 20:03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22	02가4647	김**	2021-04-22 19:1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423	68두8040	김**	2021-04-23 07:39	인천광역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24	61우8521	김**	2021-04-22 18:58	경기도 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25	85아6328	김**	2021-04-23 09:37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426	24나0296	김**	2021-04-23 20:0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427	67도5349	김**	2021-04-27 20:30	경기도 여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28	03도1657	김**	2021-04-21 12:12	경기도 남양주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29	12호1171	김**	2021-04-09 20:18	경기도 의정부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0	17모5715	김**	2021-04-22 18:26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31	57루9582	김**	2021-04-27 14:59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32	58누9069	김**	2021-04-23 17:30	경기도 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33	65더9994	김**	2021-04-21 10:30	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교차로~상암교	전용차로위반	50,000
434	53다8171	김**	2021-04-21 09: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35	340주6616	김**	2021-04-13 18:13	충청남도 예산군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36	14오3171	김**	2021-04-26 09:26	대구광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37	87거8064	김**	2021-04-26 09:07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8	78무4552	김**	2021-04-24 18:12	서울특별시	상봉동 중랑역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60,000
439	45저0599	김**	2021-04-23 09:4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0	345다2424	김**	2021-04-26 17:43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1	서울86자3888	김**	2021-04-26 19:25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2	서울83자8985	김**	2021-04-23 09:4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3	149라2209	김**	2021-04-26 17:29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44	서울동대문파5390	김**	2021-04-28 12:56	서울특별시	종각역~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445	서울32사4435	김**	2021-04-24 21:16	경기도 의정부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446	04라5746	김**	2021-04-23 18:55	경기도 고양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7	56거6481	김**	2021-04-26 18:20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48	08구8478	김**	2021-04-21 17:57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49	65하5188	김**	2021-04-13 20:34	경기도 시흥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0	42보8413	김**	2021-04-26 09:01	경기도 용인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51	251라6102	김**	2021-04-27 08:42	서울특별시	삼각지역~숙대역	전용차로위반	50,000
452	15가2940	김**	2021-04-21 23:14	경기도 양주시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53	55구1681	김**	2021-04-21 17:49	세종특별자치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4	55구1681	김**	2021-04-21 17:52	세종특별자치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5	40로6445	김**	2021-04-23 12:13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56	80수9179	김**	2021-04-27 07:40	경기도 남양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57	96누5224	김**	2021-04-21 20:37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58	81오8159	김**	2021-04-26 18:49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59	서울32사6671	김**	2021-04-28 15:19	서울특별시	논현역~ 신사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0	36우1144	김**	2021-04-27 18:56	경상남도 양산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61	13서8756	김**	2021-04-22 19:49	경기도 부천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462	1209157	김**	2021-04-28 02:23	강원도 정선군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63	26더4630	김**	2021-04-21 18:27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64	48마9415	김**	2021-04-22 08:33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65	128호7017	김**	2021-04-12 09:1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6	서울32자3041	김**	2021-04-23 19:40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67	175부9375	김**	2021-04-27 09:21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68	10소5204	김**	2021-04-23 11:51	경기도 의왕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69	12거9806	김**	2021-04-21 07:28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70	166허7326	김**	2021-04-16 20:06	경기도 평택시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471	23소3186	김**	2021-04-21 13:5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72	345루2596	김**	2021-04-26 17:51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73	59너7157	김**	2021-04-27 07:4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74	15고0638	김**	2021-04-22 17:45	경기도 광주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475	59두1347	나**	2021-04-28 18:23	전라북도 전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76	서울89자3672	나**	2021-04-22 07:2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77	32마0599	남**	2021-04-21 18:04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78	13주5055	남**	2021-04-27 07:59	경기도 성남시	학여울역~휘문고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479	서울31아2878	남**	2021-04-24 18:13	경기도 포천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480	서울31바9366	남**	2021-04-26 17:50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81	73고2243	남**	2021-04-23 15: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60,000
482	서울88바9052	노**	2021-04-23 09:0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83	174가9154	노**	2021-04-28 19:57	경기도 광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84	서울32아4681	명**	2021-04-28 20:47	경기도 고양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5	55모8505	모**	2021-04-27 18:07	전라남도 무안군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86	39가3500	문**	2021-04-27 12:58	서울특별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487	52우1258	문**	2021-04-26 20:21	경기도 양주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88	45라7080	문**	2021-04-24 16:49	서울특별시	상봉동 중랑역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89	05라0324	문**	2021-04-25 16:21	서울특별시	양재IC~서초IC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90	166허5304	민**	2021-04-13 14:2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91	56너9551	박**	2021-04-28 17:20	경기도 용인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92	143조1257	박**	2021-04-27 18:11	인천광역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93	170더4142	박**	2021-04-27 17:23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94	13나6910	박**	2021-04-21 20:40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95	12가6817	박**	2021-04-27 12:33	충청남도 천안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96	87가7779	박**	2021-04-26 09:33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497	43버7092	박**	2021-04-23 09:06	충청북도 옥천군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98	서울31바6506	박**	2021-04-28 20:36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99	28버4706	박**	2021-04-22 09:16	충청북도 청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00	49다1697	박**	2021-04-26 12:43	경기도 김포시	여의도침례교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01	59러0310	박**	2021-04-27 19:12	경기도 의정부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02	67거5712	박**	2021-04-28 07:55	충청남도 천안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03	21조0755	박**	2021-04-27 07:36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04	경기고양나9926	박**	2021-04-21 13:26	경기도 고양시	종각역~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505	264버9309	박**	2021-04-23 11:16	광주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06	11부3793	박**	2021-04-21 19:36	인천광역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07	25투6806	박**	2021-04-23 18:50	경상북도 포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08	51고4039	박**	2021-04-22 20:09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09	52서6001	박**	2021-04-28 08:12	전라북도 부안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전용차로위반	50,000
510	03마6242	박**	2021-04-21 20:33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11	35소0652	박**	2021-04-26 12:08	경기도 광명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12	46하5873	박**	2021-04-07 18:15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3	146호6668	박**	2021-04-16 13:56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4	146호6668	박**	2021-04-24 13:22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5	146호6668	박**	2021-04-25 14:2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6	146호6668	박**	2021-04-17 13:3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7	146호6668	박**	2021-04-17 13:30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8	146호6668	박**	2021-04-18 13:2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9	146호6668	박**	2021-04-18 13:2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20	146호6668	박**	2021-04-18 13:25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21	146호6668	박**	2021-04-11 18:57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22	20소7891	박**	2021-04-22 17:24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23	37주8225	박**	2021-04-24 12:14	인천광역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524	47로0238	박**	2021-04-28 17:47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25	서울31자1756	박**	2021-04-23 19:26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26	60여4003	박**	2021-04-26 18:36	경기도 남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27	33도5236	박**	2021-04-22 17:49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8	255너4382	박**	2021-04-28 20:49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29	69보4262	박**	2021-04-22 15:4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30	167허5245	박**	2021-04-14 17:26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1	14허8253	박**	2021-04-16 20:2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32	66오1821	박**	2021-04-23 08:54	경기도 용인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533	15라0754	방**	2021-04-27 09:28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34	25다8425	방**	2021-04-21 19:49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35	서울서대문자2565	배**	2021-04-22 16:44	서울특별시	종각역~종로3가역	전용차로위반	40,000
536	43조9820	배**	2021-04-27 19:36	경기도 김포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37	40조4641	배**	2021-04-23 16:31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8	22노3970	배**	2021-04-23 20:32	경기도 고양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9	242조5961	배**	2021-04-26 10:4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40	47마7697	백**	2021-04-26 08:36	인천광역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41	19라5803	백**	2021-04-18 17:08	서울특별시	중화동 메디렌스 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542	66하6575	백**	2021-04-14 18:20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43	58고3574	백**	2021-04-27 13:0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44	16부7428	백**	2021-04-26 17:48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45	서울31사1740	백**	2021-04-27 20:39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46	03바8152	변**	2021-04-23 20:17	강원도 인제군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47	88부0864	변**	2021-04-22 20:14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48	서울06하7480	변**	2021-04-22 09:26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60,000
549	08주6186	서**	2021-04-23 09:2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50	69하0469	서**	2021-04-08 18:47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1	서울중하5078	서**	2021-04-21 12:43	경기도 부천시	종각~종로3가 KT플라자앞	전용차로위반	40,000
552	43보3591	서**	2021-04-28 11:15	경기도 고양시	연희IC~연세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53	17누5983	서**	2021-04-26 11:50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54	서울87자7006	성**	2021-04-26 09:3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55	69노4010	성**	2021-04-26 19:48	서울특별시	논현역~ 신사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56	01라7463	손**	2021-04-26 18:3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57	서울중차6594	손**	2021-04-28 12:30	서울특별시	종각~종로3가	전용차로위반	40,000
558	28거2811	손**	2021-04-22 17:24	전라남도 순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59	288우6108	손**	2021-04-23 09:51	서울특별시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560	40다6349	손**	2021-04-23 17:40	인천광역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61	43너6988	손**	2021-04-22 12:23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62	96더8083	송**	2021-04-26 15:4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63	서울성동하8421	송**	2021-04-22 12:35	서울특별시	종각역~종로3가역	전용차로위반	40,000
564	서울성동하8421	송**	2021-04-22 12:37	서울특별시	종각~종로2가 다이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65	28거7117	송**	2021-04-21 16:22	대구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66	28거7117	송**	2021-04-26 17:20	대구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67	05소0221	송**	2021-04-28 20:30	경상남도 함안군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568	38두3049	송**	2021-04-22 18:39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69	24고7917	송**	2021-04-24 13:08	울산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70	45머3459	송**	2021-04-23 16:43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71	36다0305	송**	2021-04-22 18:53	서울특별시	강남대로 양재시	전용차로위반	50,000
572	02나5110	송**	2021-04-22 19:1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73	12누4558	송**	2021-04-23 20:09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74	61누5709	송**	2021-04-26 13:06	전라남도 무안군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75	45루6861	송**	2021-04-26 19:2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76	62두7718	신**	2021-04-21 07:30	서울특별시	화랑대사거리~태릉	전용차로위반	50,000
577	07나0126	신**	2021-04-22 20:19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78	63고0629	신**	2021-04-21 20:4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79	29저7351	신**	2021-04-22 19:1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80	16저9271	신**	2021-04-28 20:19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81	서울35바2134	신**	2021-04-28 20:28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82	24머6956	신**	2021-04-28 17:55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83	92라8050	신**	2021-04-23 09:42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84	31수4273	신**	2021-04-23 17:25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585	54서1598	심**	2021-04-23 08:49	경기도 안성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86	61거1158	심**	2021-04-28 20:33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87	27여5282	심**	2021-04-23 19:06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88	19허7586	안**	2021-04-21 09:06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89	서울종로아6625	안**	2021-04-26 12:31	경기도 안양시	종각역~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590	92저4924	안**	2021-04-22 18:22	경기도 남양주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91	34주1930	안**	2021-04-25 09:37	경기도 안양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592	80서8176	안**	2021-04-26 17:12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93	60더2627	안**	2021-04-23 18:32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4	76서0204	안**	2021-04-23 14:02	충청남도 당진시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60,000
595	22마7747	안**	2021-04-22 20:49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96	42나5981	양**	2021-04-22 19:06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97	106보3486	양**	2021-04-28 08:07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98	85여0335	양**	2021-04-28 18:14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9	85오0630	양**	2021-04-27 18:26	경기도 부천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0	20호5653	양**	2021-04-14 12:00	경기도 남양주시	상봉동 중랑역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01	136우0629	양**	2021-04-28 10:50	경기도 고양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02	12서4947	엄**	2021-04-22 14:26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03	46보1535	엄**	2021-04-21 18:25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604	85머0912	여**	2021-04-21 20:14	경기도 광주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05	42부0488	염**	2021-04-23 1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06	18우6788	오**	2021-04-21 09:43	경기도 양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607	90노9708	오**	2021-04-28 17:2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8	90노9708	오**	2021-04-26 17:1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9	377나4539	오**	2021-01-29 13:31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10	46도3612	오**	2021-04-21 19:50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11	41라5324	오**	2021-04-21 18:43	경기도 양주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12	46주8542	오**	2021-04-22 19:15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13	60고0993	오**	2021-04-24 15:44	서울특별시	종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14	56조3818	오**	2021-04-21 17:4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15	21누5051	오**	2021-04-27 18:08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16	61저9475	오**	2021-04-23 09:20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17	167허3757	오**	2021-04-15 19:28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18	101호9876	왕**	2021-04-09 16:11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19	21아5244	우**	2021-04-22 18:00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20	48거8084	우**	2021-04-27 18:4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21	59무8388	원**	2021-04-24 11:39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 구파발~고양시	전용차로위반	50,000
622	서울31아2122	위**	2021-04-26 16:47	서울특별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623	27조2493	위**	2021-04-23 17:07	경상남도 사천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4	258소7289	유**	2021-04-25 11:02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25	62가2137	유**	2021-04-27 20:36	충청남도 천안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26	85조5277	유**	2021-04-26 19:59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27	152소9957	유**	2021-04-22 18:4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28	80마5782	유**	2021-04-28 17:29	경기도 수원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29	10저2234	유**	2021-04-26 17:40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30	54라3808	유**	2021-04-23 07:36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31	서울용산차3281	유**	2021-04-26 12:29	서울특별시	종각역~종로3가방향 다이소앞	전용차로위반	40,000
632	04모0719	유**	2021-04-26 10:35	경기도 하남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33	238두4619	유**	2021-04-28 17:28	인천광역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34	48우0596	유**	2021-04-21 20:47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35	42보1423	유**	2021-04-28 10:05	경상북도 영천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36	60주0403	윤**	2021-04-21 13:3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37	86로7328	윤**	2021-04-28 19:0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638	48조0274	윤**	2021-04-23 19:36	경기도 양평군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39	07우0526	윤**	2021-04-15 07:07	서울특별시	공릉역~대릉입구역	전용차로위반	50,000
640	05고0464	윤**	2021-04-26 17:55	경상남도 창원시	회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41	57루3412	윤**	2021-04-24 22:32	경기도 수원시	방배동 남대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642	서울32바6557	윤**	2021-04-28 07:30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43	80가6145	윤**	2021-04-23 11:36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44	82소5726	윤**	2021-04-21 20:1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45	141부9159	윤**	2021-04-23 09: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46	05누5272	윤**	2021-04-21 16:40	경기도 용인시	잠원동 잠원현대해밀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47	51라3759	윤**	2021-04-21 14:41	경기도 하남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48	48하5688	윤**	2021-04-15 17:3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49	53오5603	윤**	2021-04-27 07:30	충청북도 증평군	어린이병원~염곡IC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50	321거8051	이**	2021-04-26 16:13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1	35부0137	이**	2021-04-22 20:46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2	35부0137	이**	2021-04-22 20:42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3	233저2799	이**	2021-04-21 17:11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54	89바8919	이**	2021-04-26 09:43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655	43고8242	이**	2021-04-21 19:36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56	서울32자1494	이**	2021-04-27 17:47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57	306가8926	이**	2021-04-27 08:55	경기도 구리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58	30수7945	이**	2021-04-26 09:0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59	65하4199	이**	2021-04-20 11:12	광주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60	63오0225	이**	2021-04-22 07:59	서울특별시	학여울역~휘문고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661	11구0736	이**	2021-04-23 13:57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62	299오7963	이**	2021-04-25 11:15	경기도 안산시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63	63저9022	이**	2021-04-23 14:53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64	서울32아4887	이**	2021-04-28 18:4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65	39노1133	이**	2021-04-21 10:0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66	서울31바6291	이**	2021-04-27 08:32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67	32여1492	이**	2021-04-23 12:52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68	03조9765	이**	2021-04-26 18:3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69	29우6297	이**	2021-04-27 08:3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70	53부5095	이**	2021-04-21 18:41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71	01하0866	이**	2021-04-12 20:38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72	62누2883	이**	2021-04-23 18:03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73	34여6187	이**	2021-04-23 10:28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674	34아6187	이**	2021-04-21 10:14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675	84러4057	이**	2021-04-23 10:37	서울특별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0-15	전용차로위반	50,000
676	서울31아5930	이**	2021-04-22 09:24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77	92주5058	이**	2021-04-26 17:56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78	51호8283	이**	2021-04-20 09:01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79	서울91자2696	이**	2021-04-23 17:49	서울특별시	태릉~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680	34라5600	이**	2021-04-22 20: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81	46마1259	이**	2021-04-26 14:31	대구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82	46마1259	이**	2021-04-26 19:38	대구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83	62루7134	이**	2021-04-28 16:54	서울특별시	아차산역(어린이대공원후문) ~아차산역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684	81저9516	이**	2021-04-24 13:31	경기도 부천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85	07서2003	이**	2021-04-22 17:11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86	21조8561	이**	2021-04-22 09:3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87	83우5463	이**	2021-04-23 08:48	경기도 의정부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88	20루7236	이**	2021-04-21 19:07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89	51소6583	이**	2021-04-23 17:3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90	55저4871	이**	2021-04-27 18:5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691	54모2367	이**	2021-04-26 20:27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92	81다6731	이**	2021-04-28 09:09	경상북도 경산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693	20두2904	이**	2021-04-26 18:5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94	82두3107	이**	2021-04-28 17:45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95	43누4657	이**	2021-04-26 17:57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96	15부3032	이**	2021-04-28 15:49	경기도 파주시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97	89라5361	이**	2021-04-28 08:1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98	89라5361	이**	2021-04-22 08:5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99	42무1007	이**	2021-04-22 07:58	충청북도 청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00	43노9041	이**	2021-04-26 18:0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01	경기의정 부바4869	이**	2021-04-28 12:12	강원도 태백시	종각~종로3가	전용차로위반	40,000
702	26모2967	이**	2021-04-22 09:31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3	52부7519	이**	2021-04-28 18:55	경기도 평택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04	15다3178	이**	2021-04-23 19:10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05	48라6582	이**	2021-04-28 16:28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06	69라7813	이**	2021-04-28 19:1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07	23루1758	이**	2021-04-27 19:00	서울특별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0-15	전용차로위반	50,000
708	26러6105	이**	2021-04-27 19:44	충청남도 예산군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709	01모3618	이**	2021-04-27 11:40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0	41조1855	이**	2021-04-22 09:3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711	04주2546	이**	2021-04-22 18:19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12	322너4330	이**	2021-04-26 19:00	경기도 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13	73부3982	이**	2021-04-23 19:50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60,000
714	335노1012	이**	2021-04-21 19:58	경기도 하남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5	335노1012	이**	2021-04-27 19:28	경기도 하남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6	335노1012	이**	2021-04-26 19:29	경기도 하남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7	83뉴7864	이**	2021-04-28 08:45	인천광역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18	서울31아7701	이**	2021-04-23 15:55	서울특별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719	93나6863	이**	2021-04-27 19:2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20	63조6458	이**	2021-04-26 17:55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21	16가3392	이**	2021-04-28 11:33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22	16가3392	이**	2021-04-28 20:42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23	54서9378	이**	2021-04-26 18:1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24	157호1803	이**	2021-03-31 11:05	대구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25	37주7434	이**	2021-04-21 14:04	인천광역시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26	11부1598	이**	2021-04-28 17:43	경기도 김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27	07구1195	이**	2021-04-26 19:2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8	143버3855	이**	2021-04-28 09:4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9	110라2972	이**	2021-04-24 20:1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30	07로0721	이**	2021-04-28 13:17	충청남도 천안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31	313서6652	이**	2021-04-27 19:3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32	서울동대문파7595	이**	2021-04-23 12:24	서울특별시	종각~종로3가 젊음의거리앞	전용차로위반	40,000
733	28터8778	이**	2021-04-28 17:41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34	29라5682	이**	2021-04-22 18:38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5	115주1860	이**	2021-04-27 15:4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36	02수0446	이**	2021-04-22 18:01	경기도 고양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37	02보3600	이**	2021-04-21 11:58	경기도 안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38	278구6200	이**	2021-04-21 17:53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39	54모8732	임**	2021-04-23 14:43	경기도 광주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40	42도4727	임**	2021-04-23 07:16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41	서울32사5560	임**	2021-04-22 21:21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742	11오4386	임**	2021-04-26 17:30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43	07터3265	임**	2021-04-22 07:37	경기도 안산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44	20투2931	임**	2021-04-21 18: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45	20하9031	임**	2021-03-26 18:20	경기도 광주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746	서울32사7335	임**	2021-04-22 17:36	서울특별시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전용차로위반	50,000
747	서울31아5398	임**	2021-04-22 15:49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2-2	전용차로위반	50,000
748	52오7917	임**	2021-04-23 19:1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49	서울32아5042	장**	2021-04-23 08: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50	서울중차1142	장**	2021-04-26 12:24	서울특별시	종각역~종로3가역	전용차로위반	40,000
751	61모7145	장**	2021-04-22 20:44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52	05우3758	장**	2021-04-22 15:56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753	13서8126	장**	2021-04-27 12:15	경기도 부천시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754	50누3607	장**	2021-04-26 12:29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55	68수4260	장**	2021-04-23 17:55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56	27머7585	장**	2021-04-21 20:16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57	63주6114	장**	2021-04-28 00:48	서울특별시	잠원동 잠원현대힐리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758	41오4426	장**	2021-04-27 18:36	경기도 하남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59	08저3554	장**	2021-04-22 15:02	경기도 부천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60	87머0162	장**	2021-04-21 09:1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61	58로5346	장**	2021-04-24 17:46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2	31주7508	전**	2021-04-28 18:32	경기도 평택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63	68로6125	전**	2021-04-27 08:37	서울특별시	한남IC~잠원IC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64	20머1849	전**	2021-04-28 11:1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65	90서3544	전**	2021-04-23 09:48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66	25더9630	전**	2021-04-28 19:04	경기도 가평군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67	59우2842	정**	2021-04-25 11:4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8	57노3157	정**	2021-04-26 08: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69	58저0558	정**	2021-04-26 17:38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70	27나3286	정**	2021-04-23 10:37	경기도 시흥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71	68무2616	정**	2021-04-27 17:56	서울특별시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772	97구4566	정**	2021-04-22 08:12	경기도 안산시	화랑로 육사야구장~화랑대역방면	전용차로위반	50,000
773	108마8031	정**	2021-04-28 08:46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74	서울32사6027	정**	2021-04-22 18:1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75	28우3430	정**	2021-04-23 17:19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76	13누6066	정**	2021-04-23 08:42	충청북도 단양군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77	252저6843	정**	2021-04-22 17:41	경기도 파주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78	271조9152	정**	2021-04-27 20:21	경기도 남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79	16도5223	조**	2021-04-23 20:28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80	11누4820	조**	2021-04-21 17:33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781	서울31바6856	조**	2021-04-24 21:32	경기도 의정부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782	97다0652	조**	2021-04-23 12:29	경기도 화성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55	전용차로위반	50,000
783	43우5977	조**	2021-04-27 09:42	경기도 남양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84	22로5533	조**	2021-04-23 10:45	서울특별시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216	전용차로위반	50,000
785	90라0370	조**	2021-04-27 17:25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86	24루5092	조**	2021-04-26 19:38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87	320보9266	조**	2021-04-21 09:2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88	41라1516	조**	2021-04-27 17:06	경기도 안성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89	서울31바2566	조**	2021-04-27 07:59	경기도 하남시	학여울역~휘문고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790	56도1121	조**	2021-04-27 14:26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91	59호9807	주**	2021-04-12 19:03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92	340모3063	주**	2021-04-23 19:3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93	서울동대문하1033	주**	2021-04-28 12:22	서울특별시	종각~종로3가	전용차로위반	40,000
794	90서9924	지**	2021-04-22 18:46	충청남도 보령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95	53하5799	지**	2021-04-06 18:06	충청북도 제천시	삼성교위, 삼성역~종합운동장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96	48하8985	진**	2021-04-08 09:01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97	서울32자5197	채**	2021-04-23 19:52	서울특별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798	350바5352	최**	2021-04-21 09:47	충청북도 청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99	서울83자1165	최**	2021-04-22 09:1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00	145호5411	최**	2021-04-09 20:04	경기도 의정부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01	44호0397	최**	2021-04-19 08:48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에코팜센터~담터지하차도	전용차로위반	50,000
802	02구3784	최**	2021-04-28 11:53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03	90두3873	최**	2021-04-22 08:58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	전용차로위반	50,000
804	58소7832	최**	2021-04-27 14: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05	64노2942	최**	2021-04-27 19:3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06	325누9007	최**	2021-04-23 09:4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07	31라4718	최**	2021-04-27 19:12	경상남도 창원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08	46아2366	최**	2021-04-22 20:07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09	33호5211	최**	2021-04-13 19:40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10	62고7501	최**	2021-04-27 10:55	충청남도 서천군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1	55부4449	최**	2021-04-26 12:12	서울특별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8	전용차로위반	25,000
812	123구2254	최**	2021-04-27 17:54	경기도 안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13	15아9591	최**	2021-04-21 09:1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14	06오1636	최**	2021-04-26 20:3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15	34라7869	최**	2021-04-21 17:37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816	15나0149	최**	2021-04-23 17:01	경기도 김포시	압구정로대오역~성수대교	전용차로위반	50,000
817	35가1278	최**	2021-04-23 12:36	서울특별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전용차로위반	50,000
818	87라0814	최**	2021-04-28 08:47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19	64소0608	최**	2021-04-28 18:3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20	50나0475	최**	2021-04-23 18:50	경기도 용인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4-2	전용차로위반	50,000
821	84구8156	추**	2021-04-28 17:19	경기도 포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22	50주7526	파**	2021-04-27 08:0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23	42우0837	필**	2021-04-22 18:49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24	14조1102	하**	2021-04-27 20:29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25	42더0720	하**	2021-04-26 14:2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26	55다6116	하**	2021-04-27 19:51	경기도 구리시	서울 강북구 번동 148-510	전용차로위반	50,000
827	59조2011	한**	2021-04-26 18:12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28	162허8782	한**	2021-04-20 18:37	인천광역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29	01라6957	한**	2021-04-22 20:3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30	20조7494	한**	2021-04-26 18:12	울산광역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31	67가1485	한**	2021-04-27 16:58	서울특별시	학여울역~휘문고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832	160소5195	한**	2021-04-21 17:37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33	97수7481	함**	2021-04-23 08:1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34	20여8972	함**	2021-04-28 18:36	경기도 평택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35	48라5453	허**	2021-04-26 18: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36	67두5311	허**	2021-04-23 18:4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37	58서5937	허**	2021-04-23 15:58	경기도 광주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38	58서5937	허**	2021-04-23 15:54	경기도 광주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39	162허9576	허**	2021-04-12 17:57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840	368수1550	허**	2021-04-26 19:32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41	22누6467	허**	2021-04-28 18:22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42	57나7712	현**	2021-04-21 11:57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43	72나2337	홍**	2021-04-27 10:42	세종특별자치시	대림삼거리~기상청입구교차 로	전용차로위반	60,000
844	153호7782	홍**	2021-04-20 09:28	경기도 평택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45	69오6700	홍**	2021-04-22 17:13	서울특별시	압구정역~성수대교남단교차 로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46	81더6421	홍**	2021-04-21 08:01	경기도 남양주시	육사 야구장~화랑대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47	서울31자5320	홍**	2021-04-27 20:47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48	91도6152	홍**	2021-04-26 17:49	인천광역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49	167루7604	홍**	2021-04-22 19:44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50	09주1458	홍**	2021-04-26 09:47	충청남도 천안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51	49서0772	홍**	2021-04-22 20:16	경기도 성남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852	49서0772	홍**	2021-04-21 19:42	경기도 성남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53	41누4258	홍**	2021-04-23 19:41	경기도 광주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854	14모4405	황**	2021-04-21 19:40	경상북도 포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55	86마4828	황**	2021-04-22 14: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56	104호6833	황**	2021-04-15 09:4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57	31노8228	황**	2021-04-26 08:53	전라남도 완도군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8	85다4652	황**	2021-04-25 18:07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59	11수9992	황**	2021-04-28 19:09	경기도 남양주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60	165라9429	황**	2021-04-27 16:3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61	165라9429	황**	2021-04-27 16:26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62	85노7202	황**	2021-04-28 09:3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63	22누7462	황**	2021-04-21 09:2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64	376서5028	황**	2021-04-27 19:47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87호

신정 도시개발구역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02호(2012. 11. 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2호, 제2017-481호, 제2020-273호, 제2020-611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신정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신정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 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 대표자의 성명: 사장 직무대행 황 상 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대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1) 사업시행지의 면적 : 33,788.6㎡
 - 2)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계		33,788.6	100.0
주거용지	소 계	20,067.0	59.4
	공동주택용지	20,067.0	59.4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8,624.6	25.6
	도 로	4,323.0	12.8
	공 원	3,907.1	11.6
	주차장	208.3	0.6
	공공공지	186.2	0.6
기타시설 용 지	소 계	5,097.0	15.0
	임대주택용지	3,530.9	10.4
	문화복합시설용지	1,566.1	4.6

5. 준공일자 : 2021년 6월 3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은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전화:02-2133-4647)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94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 열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열람명칭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 열람 공고
2. 열람기간 : 2021. 6. 3. ~ 2021. 6. 17.(15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주거정비정책팀)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유태운 주무관)
○ 이메일 주소 : ytyhjh99@seoul.go.kr
※ 이메일 제출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송신 후 유선(☎2133-7206, 7207, 7193, 7204)으로 접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열람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 내용
○ 변경사유 :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본 보고서’와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상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6. 변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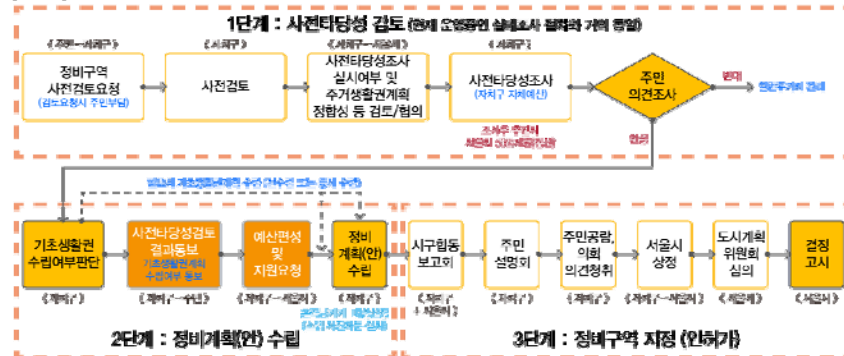
구 분	변경(신설)
- 본보고서 -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	(본보고서 145쪽 1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에 따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기준인 주거정비지수와 구역지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본보고서’ 및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의 관련된 내용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변경된 내용에 따른 관련 내용의 변경 사항이 관계 법령·조례 등과 상충되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 변경 고시된 내용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운용한다.
- 본보고서 -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 및 -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 제3절 정비사업의 운영	- 다 음 - • (주거정비지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거정비지수 및 대상지 선정기준 중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기준은 폐지하되, 주거정비지수는 필요시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별도 세부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신규 구역지정 절차)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공공성이 확보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획* 제도를 도입하며, 기존의 사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내용과 약식 기초생활권 계획**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한다. 공공기획과 정비계획(안) 수립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구역지정기간 단축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전타당성조사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실시하는 주민의견조사는 폐지한다. - 자치구의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절차는 생략하되, 공공기획시 검토하는 약식 기초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한다. - 정비계획(안) 수립 후 실시하는 시·구 합동보고회는 폐지한다. * 공공기획 : 정비계획 수립 전에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성남갑야파트 개선, 지역 특화디자인 및 지형순응형 단지계획 유도 등) ※ ‘공공기획’은 구역 규모, 현황 등을 고려, 시장이 별도방침으로 공공기획 제외 또는 간소화 대상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획을 통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약식 기초생활권계획 : 주거생활권계획의 정합성 검토,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한 생활기반시설, 커뮤니티, 생활가로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 • (주민동의율) 사업 초기에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시 주민동의율은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며,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의 주민동의 기준(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은 유지한다. • (시행일) 고시일로부터 시행 • (경과조치) - 금회 변경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절차 및 주민동의율 등 변동내용에 대한

구 분	변경(신설)																																														
	적용은, 이미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종전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2단계) 이전인 사전타당성검토 단계(1단계)에 해당하는 구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구역 주민이 원할 경우 종전의 구역지정 절차로 적용이 가능하며, 주민간 이견이 있을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 조율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 사전타당성검토 단계(1단계)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추진하려는 경우, · 주민의견조사가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안) 수립단계의 주민동의 기준(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을 확보하면 되고 · 주민의견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은 주민의견 조사(동의 50% 이상, 반대 25% 미만) 확인 절차 생략을 위해서 변경된 동의 내용에 따라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를 30% 이상을 확보한 후 변경된 절차 등에 따라 진행한다.																																														
	(본보고서 186쪽) [기정] 표 5-15. 주거정비지수 적용기준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정비구역 지정기준</th><th>지정요건</th></tr><tr><td rowspan="3">대상지 선정 기준</td><td>주민동의</td><td>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td><td rowspan="3">필수 충족</td></tr><tr><td>구역면적</td><td>면적 10,000㎡ 이상</td></tr><tr><td>노후도</td><td>동수의 2/3이상, 연면적 60%이상</td></tr><tr><td rowspan="5">주거정비 지수</td><td>주민동의</td><td>토지등소유자의 2/3~4/5 토지면적의 1/2~4/5</td><td rowspan="5">기준 점수 이상 충족 필요</td></tr><tr><td>노후도</td><td>동수 2/3~4/5 연면적 60%~4/5</td></tr><tr><td>도로연장률</td><td>6m이상 도로연장률 25%~75%</td></tr><tr><td>세대밀도</td><td>세대밀도 150~250</td></tr><tr><td>거주자 분포</td><td>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td></tr><tr><td rowspan="10">심의 제출 자료</td><td rowspan="3">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td><td>거주형태</td><td>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td><td rowspan="10">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td></tr><tr><td>주민 생활수준</td><td>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td></tr><tr><td>거주자 의향 조사 기준</td><td>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td></tr><tr><td rowspan="3">지역 특성</td><td>장소적 특성</td><td>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td></tr><tr><td>주변입지 특성</td><td>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td></tr><tr><td>일반특성</td><td>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td></tr><tr><td colspan="2">신축건물비율</td><td>10년 이하 건축물</td></tr><tr><td colspan="2">자가평가자료</td><td>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td></tr></table> [변경] 표 5-15. 대상지 선정기준 등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지정요건	대상지 선정 기준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필수 충족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연면적 60%이상	주거정비 지수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4/5 토지면적의 1/2~4/5	기준 점수 이상 충족 필요	노후도	동수 2/3~4/5 연면적 60%~4/5	도로연장률	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세대밀도	세대밀도 150~250	거주자 분포	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심의 제출 자료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거주형태	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주민 생활수준	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거주자 의향 조사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지역 특성	장소적 특성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주변입지 특성	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일반특성	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신축건물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지정요건																																												
대상지 선정 기준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필수 충족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연면적 60%이상																																													
주거정비 지수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4/5 토지면적의 1/2~4/5	기준 점수 이상 충족 필요																																												
	노후도	동수 2/3~4/5 연면적 60%~4/5																																													
	도로연장률	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세대밀도	세대밀도 150~250																																													
	거주자 분포	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심의 제출 자료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거주형태	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주민 생활수준	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거주자 의향 조사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지역 특성	장소적 특성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주변입지 특성	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일반특성	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신축건물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구 분	변경(신설)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대상지 선정 기준	주인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정비구역 우선 순위 평가 지표	주인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4/5 토지면적의 1/2~4/5
		노후도	동수 2/3~4/5 면적 2/3~4/5
		도로연장률	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세대밀도	세대밀도 150~250
	참고 자료	거주자 분포	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거주형태	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주민 생활수준	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거주자 의향 조사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장소적 특성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주변입지 특성	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일반특성	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신축건물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지정요건
			필수 충족
			(필요시)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필요시)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103쪽)

[기정]



구 분	변경(신설)
	[변경] <pre> graph LR subgraph Stage1 [1단계: 사전검토] A[정비구역 사전검토요청 (주민동의30%) 주인-자차구] --> B[사전검토 자차구] end subgraph Stage2 [2단계: 정비계획안 수립] B --> C[공공기획+ 정비계획안수립 (약식기초생활권 계획) 서울시-자차구] end subgraph Stage3 [3단계: 정비구역 지정인허가] D[주민 설명회 자차구] --> E[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자차구] --> F[서울시 상정 자차구-서울시] --> G[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서울시] --> H[결정고시 서울시] end C --> D </pre> ※ ‘공공기획’은 구역 규모, 현황 등을 고려, 시장이 별도방침으로 공공기획 제외 또는 간소화 대상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획을 통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붙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열람에 따른 의견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핸드폰)	
거주지 주소			
의견			
제출일	2021년 월 일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1-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삼청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1940. 3. 1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4호(1996. 2. 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삼청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88호(2020. 6. 29.)」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1-568호(2021.05.13.)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1년 6월 3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3번지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2) 명 칭 : 도시계획시설(삼청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면적 : 1,936.2㎡

라. 변경사유 : 물건조서 누락분 반영 및 준공예정일 변경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사.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1.12.31.까지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5.06.28.까지

아. 고시방법 : 종로구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청 공원녹지과(☎02-2148-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삼청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경 전)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계			1,936.2	1,936.2						
1	삼청동 1-3	대	327.6	327.6	김태영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19길15 목련타운아파트 108동 1402호				
2	삼청동 1-6	대	1,438	1,438	윤경규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22-6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자	
					윤정택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22-6				
					오채연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22-6				
3	계동 1-38	도로	170.6	170.6	학교법인 고려중앙 학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1-2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삼청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경 전)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측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삼청동 1-3	무허가 시멘트 벽돌조	본건물 1층	-	98.6	주거	김태영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19길15 목련타운아파트 108동 1402호				
			본건물 2층	-	68.5	주거						
			부속	-	50.4	차고						
		수목	계수나무	H15.0*B50		1주						
			감나무	H12.0*B25		2주						
			단풍나무	H4.0*B17		1주						
			느릅나무	H10.0*B28		1주						
			배롱나무	H2.0*B10		1주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측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오죽나무	H1.2		40주						
2	삼청동 1-6	일반 건축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	부속	413.22	6.5	창고	오재연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22-6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자	
			본건물 1층		122.6	주거						
			본건물 1층		106.4	주거						
			본건물 1층		51.6	주거						
			부속		9.2	창고						
		정자	목조	-	-	1동						
		차고지	철골	-	-	1동						
		컨테이너		-	-	1동						
		수목	비슬나무	H25.0*B80		1주						
			전나무	H2.0*B7		1주						
			소나무	H12.0*B15		1주						
			적단풍	H5.0*B20		1주						
			향나무			1주						
			배롱나무	H3.0*B10		5주						
			배나무			1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삼청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경 후)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계			1,936.2	1,936.2							
1	삼청동 1-3	대	327.6	327.6	김태영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19길15 목련타운아파트 108동 1402호				
2	삼청동 1-6	대	1,438	1,438	윤정규	2/5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22-6				
					윤정택	2/5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22-6				
					오재연	1/5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22-6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자	
3	계동 1-38	도로	170.6	170.6	학교법인 고려중앙 학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삼청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경 후)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측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삼청동 1-3	무허가 시멘트 벽돌조	본건물 1층	-	98.6	갤러리	김태영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19길15 목련타운아파트 108동 1402호	이지원	서울시 종로구 평창길 38	임차인	
			본건물 2층	-	68.5	갤러리						
			본건물 지층	-	15.5	창고						
			부속	-	50.4	차고						
		담장	석재, 유리 1m(h)* 32.8m (길이)	1식								
			시멘트조 1.8m(h)* 31.6m (길이)	1식								
		대문	철제 (1.8m* 3.1m)	1식								
			철제 (2.8m* 2.7m)	1식								
			철제 (1.8m* 3.0m)	1식								
			목재 (1.8m* 4.9m)	1식								
		수목	계수나무	H15.0*B50		1주						
			감나무	H12.0*B25		2주						
			단풍나무	H4.0*B17		1주						
			느릅나무	H10.0*B28		1주						
			배롱나무	H2.0*B10		1주						
			오죽나무	H1.2		40주						
2	삼청동 1-6	건축물	부속	413.22	6.5	창고	오재연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22-6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자	
			본건물 1층		122.6	주거						
			본건물 1층		106.4	주거						
			본건물 1층		51.6	주거						
			부속		9.2	창고						
		정자	목조	-	-	1동						
		차고지	철골	-	-	1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측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컨테이너		-	-	1동						
		담장	시멘트조 1.4m(h)* 37m (길이)	1식								
			시멘트조 1.0m(h)* 31m (길이)	1식								
		대문	철제 (1.8m* 6.8m)	1식								
		수목	느릅나무	H15.0*B90		1주						
			전나무	H2.0*B7		1주						
			살구나무	H2.5*B8		1주						
			매화나무	H2.0*B10		2주						
			은행나무	H5.0*B15		1주						
			헛개나무	H2.5*B8		1주						
			처진개벚나무	H4.0*R30		1주						
			박태기	H2.0*B7		1주						
			홍단풍	H3.0*B28		1주						
			청단풍	H2.0*B5		2주						
			청단풍	H2.5*B10		1주						
			청단풍	H3.0*B14		1주						
			불두화	H2.0*W2.0		2주						
			사철나무	H2.0*W2.0		2주						
			백송	H6.0*R25		2주						
			향나무	H3.0*B36		1주						
			배롱나무	H3.0*B10		5주						
			배나무			1주						

◆ 성북구고시 제2021-100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4-255호(2004.8.10.)로 조성계획 결정 및 성북구고시 제2019-100호(2019.6.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성북구 정릉동 산87-1번지 일대 북한산도시자연 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9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북한산도시자연공원조성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의 규모 : 109㎡

○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마. 시설관리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9. 6. 20. ~ 2021. 6. 19.

○ 변 경 : 2019. 6. 20. ~ 2022. 6. 19.

사.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붙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정릉동 799	답	109	109	성북구 보국문로**길 **	배**				

물 건 조 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 종류 및 내용	
1	정릉동 799 정릉동 산1-153	건 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세멘조,판넬 (분건물)	-	170	주거, 사찰	성북구 보국문로**길 **	배**				신발생무허가

◆ 성북구고시 제2021-101호

도시계획시설(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739호(1963.12.21.)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412호(2019.12.12.)호 조성계획 결정 및 성북구고시 제2019-117호(2019.7.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성북구고시 제2019-131호(2019.8.8.)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성북동 산25-1번지일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3-1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의 규모 : 13,784㎡

○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마. 시설관리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9. 7. 18. ~ 2021. 7. 17.

○ 변 경 : 2019. 7. 18. ~ 2024. 7. 17.

사. 수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변경없음) : 따로붙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산23-12	임야	2,346	2,346	중구 서소문동 ***-**	학교법인 ****				
2	성북동 산23-13	임야	1,170	1,170	성북구 대사관로 ***	이**				
3	성북동 산23-6	임야	1,330	1,330	중구 서소문동 ***-**	학교법인 ****				
4	성북동 산23-9	임야	804	804	중구 서소문동 ***-**	학교법인 ****				
5	성북동 산23-15	임야	768	768	중구 서소문동 ***-**	학교법인 ****				
6	성북동 산23-14	임야	572	572	중구 서소문동 ***-**	학교법인 ****				
					성북구 성북동 ***-**	김**				
7	성북동 351-1	대	479	479	영등포구 대림동 ****-** **빌딩 *층	강**				
					성북구 성북동 ***-**	강**				

토 지 조 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8	성북동 226-99	임야	813	8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	주**				
9	성북동 226-101	임야	178	1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	주**				
10	성북동 226-88	임야	1,309	1,309	성북동 ***-***	최**				
					성북동 ***-***	한**				
11	성북동 226-97	임야	1,005	1,005	성북동 ***-***	최**				
					성북동 ***-***	한**				
12	성북동 226-93	임야	1,322	1,322	용산구 청파동1가 ***-***	박**				
					강남구 청담동 ** *동 ****호	이**				

토 지 조 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3	성북동 226-321	임야	458	458	용산구 청파동1가 **-*	신**				
14	성북동 226-322	임야	86	86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 ***동 ****호	정**				
					성북구 성북동 ***-*	나**				
					영등포구 양평동5가 ** ***동 ***호	홍**				
					인천시부평구 안남로 *** ***동 ***호	김**				
15	성북동 226-106	임야	1,144		강북구 수유동 ***-*	백**				

물 건 조 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산23-3	건 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세멘조 (지층)	-	209	주거	성북구 대사관로***	이**				신발생무허가
			세멘조 (1층)	-	140	영업(카페)						
			세멘조 (2층)	-	99	영업(카페)						
			세멘조 (3층)	-	14	주거						
			조립식	-	6	창고						
			조립식	-	8	창고						
			천막	-	19	창고						
			컨테이너	-	108	창고(6개)						
2	성북동 226-97 성북동 226-88	건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세멘조	-	82	주거		미상				신발생무허가
			세멘조	-	2	창고						
			목조	-	5	창고						
			장독대	-	11	장독대						
			목조	-	13	창고						
			목조	-	6	창고						

◆ 성북구고시 제2021-99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총독부고시 제1940-208호(1940.3.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결정(변경) 및 성북구고시 제2019-99호(2019.6.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성북구고시 제2019-130호(2019.8.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성북구 안암동5가 산1-55일대 개운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산1-55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개운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의 규모 : 32,090㎡

○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마 시설관리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9. 6. 13. ~ 2021. 6. 12.

○ 변 경 : 2019. 6. 13. ~ 2024. 6. 12.

사.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따로붙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개운산근린공원 조성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안암동5가	산1-55	임야	4,513	4,5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학교법인 *****				
2	안암동5가	산1-93	임야	12,664	12,66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학교법인 *****				
3	안암동5가	산1-95	임야	14,777	14,77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학교법인 *****				
4	안암동5가	산1-96	임야	136	1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학교법인 *****				

◆ 노원구고시 제2021-83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8호(2018. 4. 19.)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9-42호(2019. 3. 2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9-97호(2019. 8. 22)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16호(2021. 2. 4.)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사업명 :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5번지 외 29필지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가.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
 - 나. 사업명칭 :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
3. 사업면적 및 규모 (면적변경)
 - 가. 사업면적
 - 체육시설 : (당초) 34,760㎡ → (변경) 34,807㎡ (증 47㎡)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변경후		
상계동 132-1	구거	1,517	증 47	1,564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유자 변경없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및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경미한 면적 변경 (지구계 변경없음)

- 도 로 : 806㎡ (변경없음)
- 나. 시설종류
 - 실외체육시설(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도로
 - 주차장, 관리동, 여가녹지공간 등
- 4. 사업 시행자 : 노원구청장(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변경없음)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2019.3.28.(실시계획 인가일) ~ 2022.2.28.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변경없음)
- 7. 고시방법 : 서울시보, 노원구보 게재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 8.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문화체육과(☎02-2116-062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변경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35,566	증) 47	35,613	100.0	-
체육시설	34,760	증) 47	34,807	97.7	-
축구장	6,045	-	6,045	17.0	-
야구장	8,482	-	8,482	23.8	-
테니스장	1,740	-	1,740	4.9	-
관리시설	-	-	-	-	축구장 하부 198㎡
주차장	2,009	-	2,009	5.6	-
녹지용지	16,484	증) 47	16,531	46.4	-
도로	806	-	806	2.3	-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구로구고시 제2021-121호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72호(2004.11.20.)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로구 천왕도시개발구역 내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녹지)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구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가. 기 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지번명)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녹지	경관녹지	구로구 오류동 산39-33일원	2,843.3	서울시고시 제2005-420호 (2005.12.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	8.5	국지 도로	109	오류동 산39-53	오류동 산39-107	일반도 로	서울시고시 제2011-352호 (2011.12.1.)	

나. 변 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지번명)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녹지	경관녹지	천왕동 282-5번지	2,843.3	감)37.8	2,805.5	서울시고시 제2005-420호 (2005.12.29.)	기존위치 오류동 산39-33일 원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3	8.5	국지 도로	109	오류동 산39-53	오류동 산39-107	일반도 로	서울시고시 제2011-352호 (2011.12.1.)	면적일부 증가 (37.8㎡)

2)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	• 시설변경 녹지(경관녹지1) → 도로(소로) • 면적변경 2,843.3㎡ → 2,805.5㎡(감 37.8㎡)	• 대상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주민보행)로 관리되고 있어 녹지 조성 시 통행단절 등 인근 주민 불편이 예상됨 • 대상지는 세장형 형태의 경관녹지로 향후 녹지로 조성한다 하여도 녹지의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어려움에 따라 일부 경관녹지를 도로로 변경 후 법상 적합한 보행자 전용도로로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통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3.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28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포털(<https://urban.e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고시 제2021-107호

**영등포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5호(2013.09.05.)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으로 결정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일대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 도심 내 녹지를 확보하고 주변 공간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게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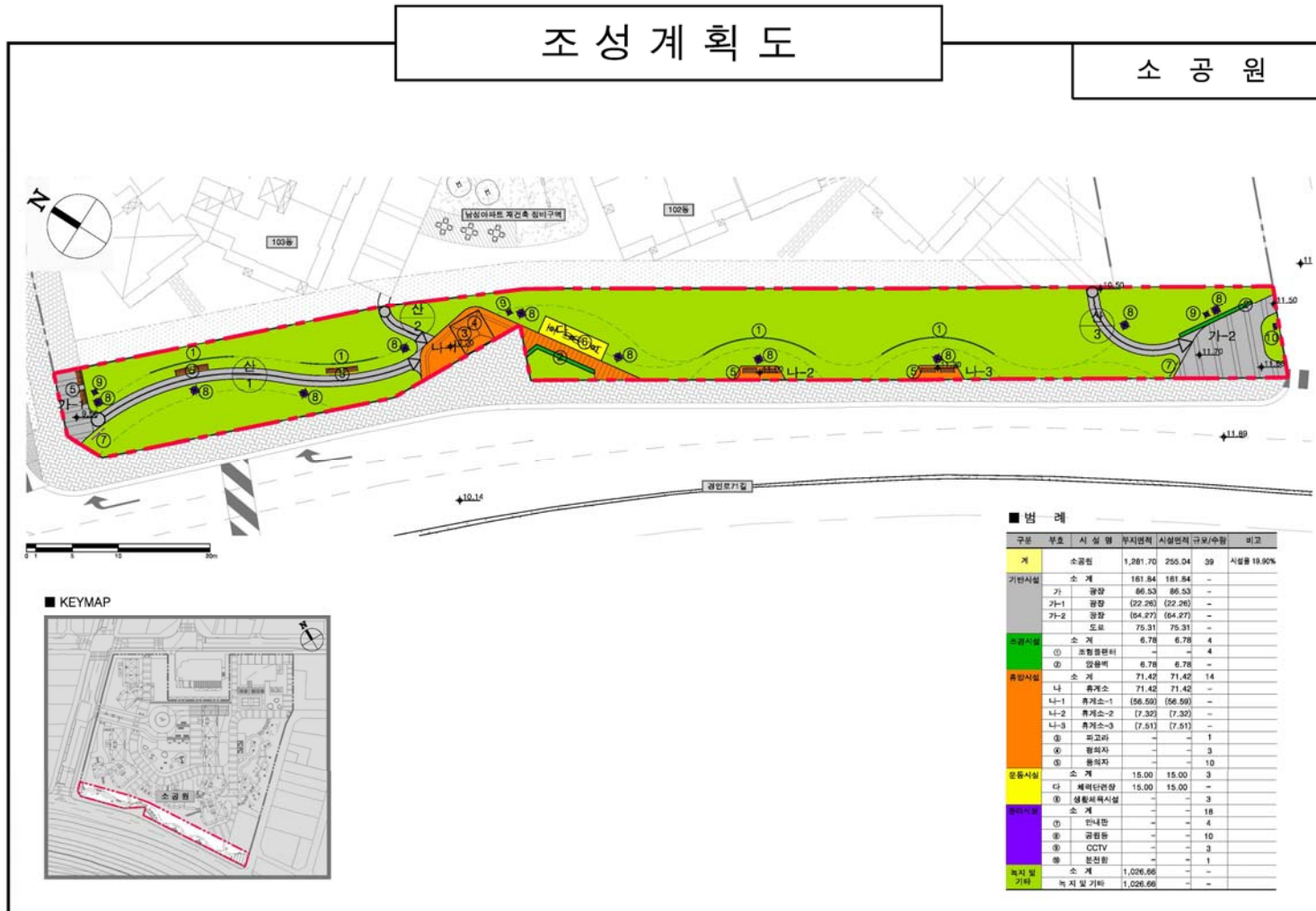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일대

다. 면 적 : 1,281.70㎡

라.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열람 장소 : 영등포구 푸른도시과(☎02-2670-3761)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소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최초결정)

1. 총괄표(위치: 영등포구 문래동 2가 35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281.70	255.04				39	
공 원 시 설	소 계	255.04	255.04			39	
	기 반 시 설	소계	161.84	161.84		—	
		광장	86.53	86.53			
		도로	75.31	75.31		—	
	조경시설		6.78	6.78		4	
	휴양시설		71.42	71.42		14	
	운동시설		15.00	15.00		3	
	관리시설		—	—		18	
	녹 지 및 기 타	1,026.66	—			—	
	시 설 율 (법정 20%)	$(255.04\text{㎡} \div 1,281.70\text{㎡}) \times 100 = 19.90\%$					
	건 폐 율 (법정 5%)	$(0.0\text{㎡} \div 0.0\text{㎡}) \times 100 = 0.0\%$					

2.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1,281.70	255.04					39	
기 반 시 설	계			161.84	161.84					—	
	광 장		부지내	86.53	86.53					—	
	도 로		〃	75.31	75.31					—	
조 경 시 설	계			6.78	6.78					4	
	조형플랜터	①	부지내	—	—					(4)	
	앉음벽	②	〃	6.78	6.78					—	
휴 양 시 설	계			71.42	71.42					14	
	휴게소	가	부지내	71.42	71.42					—	
	파고라	③	〃	—	—					(1)	
	평의자	④	〃	—	—					(3)	
	등의자	⑤	〃	—	—					(10)	
운 동 시 설	계			15.00	15.00					3	
	체력단련장	나	부지내	15.00	15.00					—	
	생활체육시설	⑥	〃	—	—					(3)	
관 리 시 설	계			—	—					18	
	안내판	⑦	부지내	—	—					(4)	
	공원등	⑧	〃	—	—					(10)	
	CCTV	⑨	〃	—	—					(3)	
	분전함	⑩	〃	—	—					(1)	
녹지 및 기타시설				1,026.66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59.7	75.31	산책로	-	-	
신설	산책로	3	1	1.2	37.4	46.34	산책로	가-1 광장	나-1 휴게소	
신설	산책로	3	2	1.2	6.7	8.64	산책로	남성아파트 인접경계	나-1 휴게소	
신설	산책로	3	3	1.2	15.6	20.33	산책로	남성아파트 인접경계	가-2 광장	

◆ 동작구고시 제2021-1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상도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현황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		100	사당1동 443-2	사당1동 316-42	일반도로	-	서울시 54 (1973.04.30)	현황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선형 일부 변경 (도로면적 변경 : 535㎡→540㎡)
변경	소로	3		6		100	사당1동 443-2	사당1동 316-4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6		400	사당4동 252	사당3동 220-102	일반도로	-	서울시 54 (1973.04.30)	현황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선형 일부 변경 (도로면적 변경 : 2,586㎡→2,631㎡)
변경	소로	3		6		400	사당4동 252	사당3동 220-10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6		310	사당2동 708-659	사당2동 128-10	일반도로	-	서울시 54 (1973.04.30)	현황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선형 일부 변경 (도로면적 변경 : 1,464㎡→1,466㎡)
변경	소로	3		6		310	사당2동 708-659	사당2동 128-1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6		59	상도4동 214-104	상도4동 214-291	일반도로	-	서울시 52 (1974.05.03)	현황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선형 일부 변경 (도로면적 변경 : 275㎡→270㎡)
변경	소로	3		6		59	상도4동 214-104	상도4동 214-291	일반도로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	소로3	· 선형 일부 변경	· 한국국토정보공사 현황측량 성과 반영

3. 관계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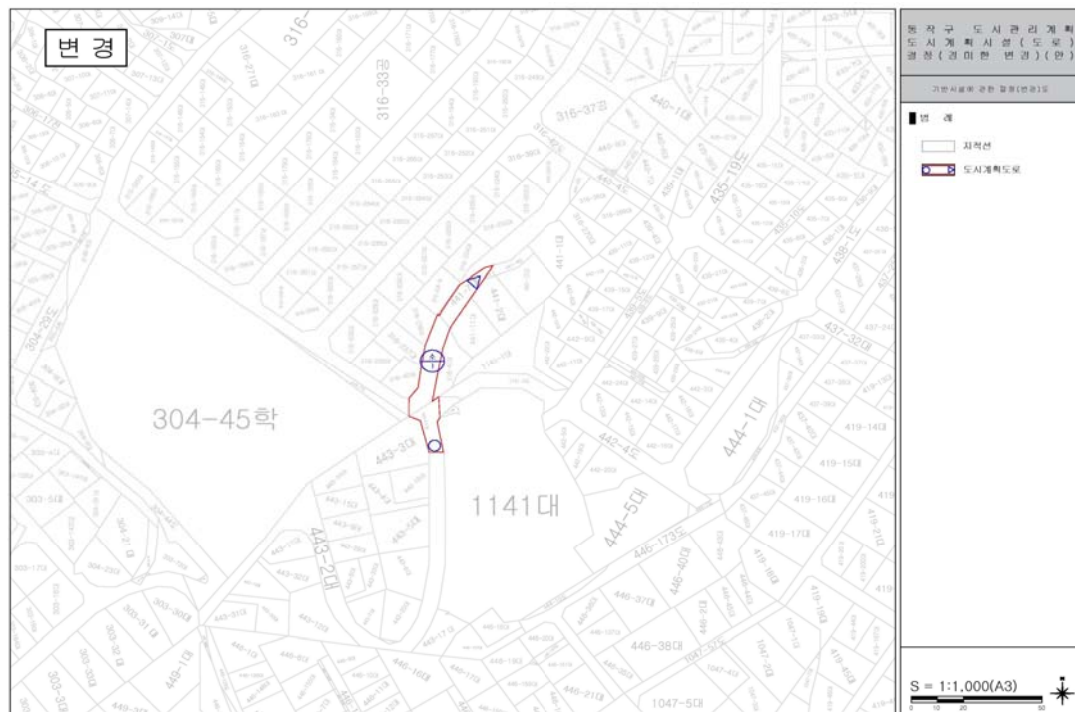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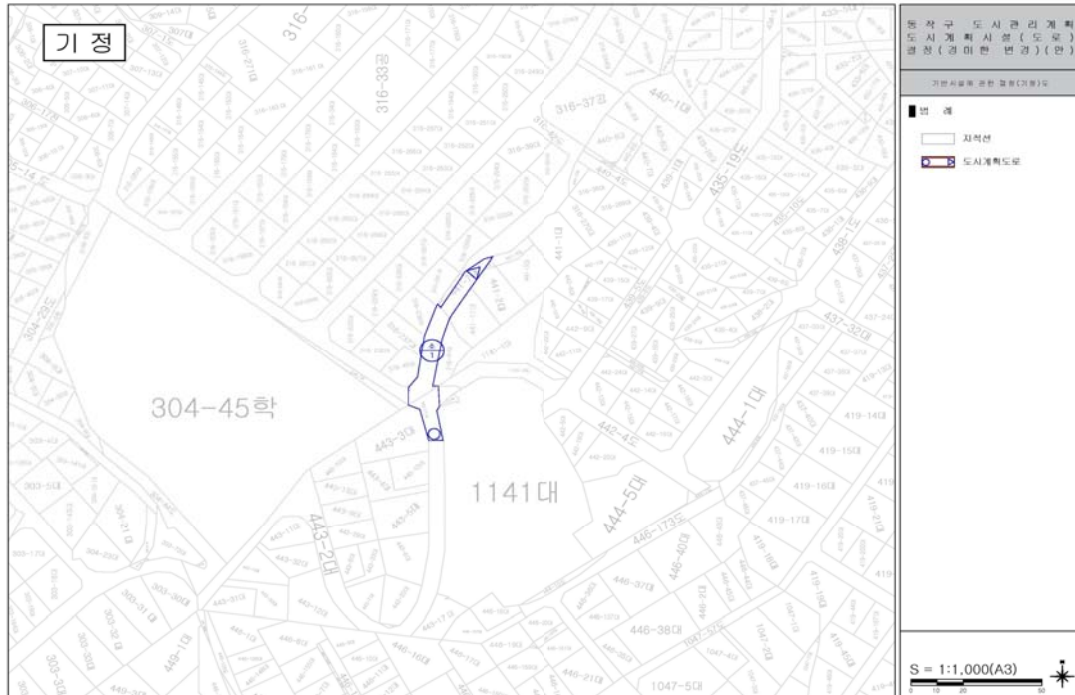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630), 도로관리과(☎820-990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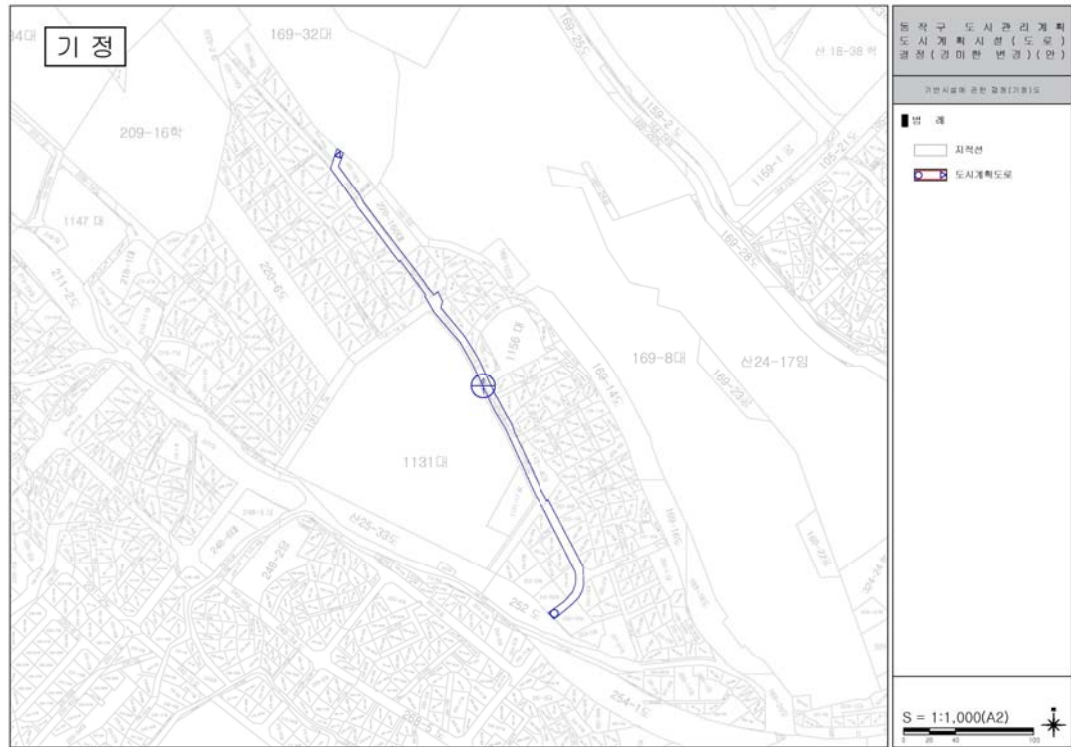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사당1동 443-2 ~ 사당1동 31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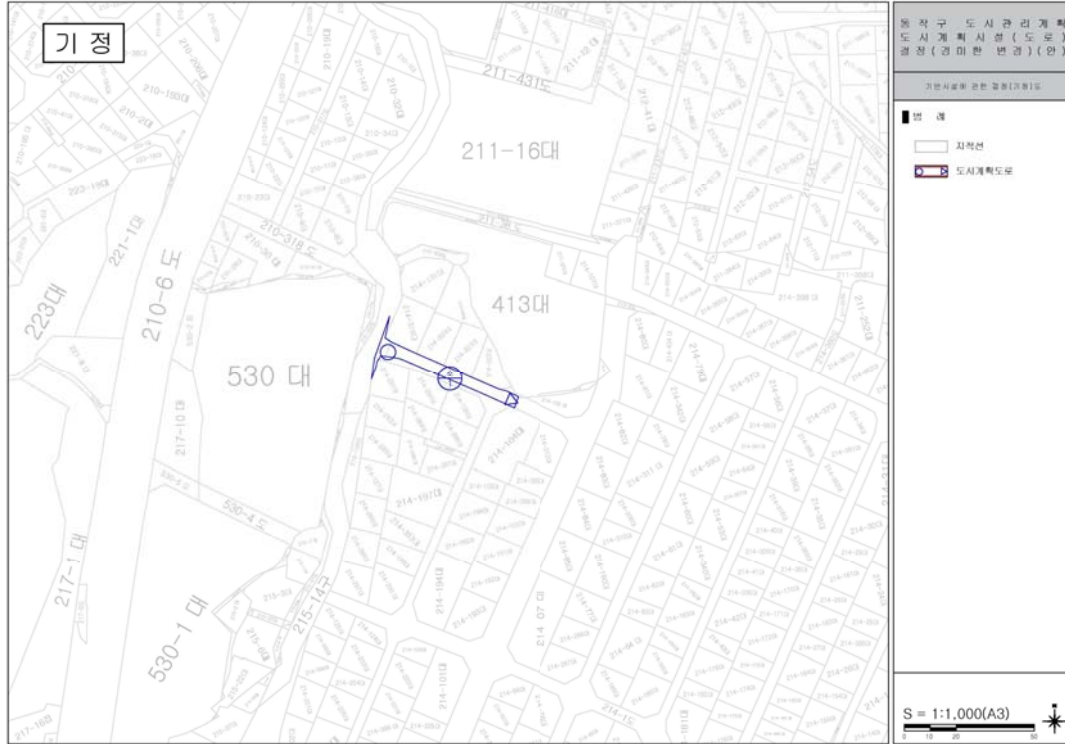
2. 사당4동 252 ~ 사당3동 220-102



3. 사당2동 708-659 ~ 사당2동 128-10



4. 상도4동 214-104 ~ 상도4동 214-291



◆ 동작구고시 제2021-11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2호(2021. 1. 7.)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 결정(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73호(2021. 4. 1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된 『생활SOC·행복주택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5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3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고시 취지

- 건축물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한 물건 및 영업권 조서 변경

나. 실시계획 작성 내용(변경없음)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38, 485-5, 485-6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상도동 생활SOC·행복주택 복합화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258㎡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4,980㎡
 - 용 도 : (B1~2F)수영장, (1~2F)주차장, (3F)경로당, (4~8F)행복주택
 - ※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2024.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기정]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도동	485-5	대	187.4	187.4	성0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5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수용
2	상도동	438	대	631.7	631.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사용
3	상도동	485-6	주차장	439.7	439.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사용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도동	485-5	건물	철근 콘크리트 연와조	477.6	성0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5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수용
2	상도동	438	건물	철근 콘크리트	387.8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사용
3	상도동	485-6	주차장	주차장	439.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사용

영업권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세부구분	상호명	영업권의 종류	영업자 성명	영업자 주소	비고
1	상도동 485-5	지상1층	꿀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김0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5, 1층	
2	상도동 485-5	지상1층	행정사사무소 해냄	사무소	김0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5, 1층	
3	상도동 485-5	지상2층	코스콤넷(주)	유통업	김0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2층	

[변경]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도동	485-5	대	187.4	187.4	성0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5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수용
2	상도동	438	대	631.7	631.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사용
3	상도동	485-6	주차장	439.7	439.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사용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도동	485-5	근린생활시설 지1층	철근 콘크리트	82.08	성0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5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수용					
			근린생활시설 1층		69.50											
			주차장 및 통로 1층		36.96											
			근린생활시설 2층		114.50											
			주택 3층	연와조	104.20							김0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5, 1층			
			주택 4층		93.90											
			옥탑층		16.60											
			창고	샌드위치 패널	6.70											
			계		524.44											
2	상도동	438	사회복지시설 1층	철근 콘크리트	181.68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사용					
			사회복지시설2 층		206.16											
			계		387.84											
3	상도동	485-6	주차장	주차장	439.70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사용					

영업권 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세부구분	상호명	영업권의 종류	영업자 성명	영업자 주소	비고
1	상도동 485-5	지상1층	꿀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김0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5, 1층	
2	상도동 485-5	지상1층	행정사사무소 해냄	사무소	김0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5, 1층	
3	상도동 485-5	지상2층	코스콤넷(주)	도·소매 서비스	신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 2층	
4	상도동 485-5	지상2층	리유포퍼레이션(주)	도·소매 서비스	김0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 2층	

◆ 송파구고시 제2021-98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3차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송 파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방이동 36-9번지 외 1필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주민제안(도로확폭,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 축소 등)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534.2)	-	858,791 (534.2)	서고제397호 (' 84.7.4.)	

※ ()는 사업부지 면적임

I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Ⅰ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65	6 (6)	국지 도로	250	방이동 36-10	방이동 37-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변경	소로	3	65	6~7 (7)	국지 도로	250 (28.6)	방이동 36-10	방이동 37-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 폭원, 연장의 ()는 사업부지 내 사항임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65	소로 3-65	●폭원 : 6~7m (사업부지 : 6m→7m)	●방이동 36-9,10 신축으로 기부채납에 의한 1m 도로 확폭

■ 공공시설등 제공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도로(사업부지)		30.2㎡	● 사업부지 동측 도로 1m 기부채납
건축물 (사업부지 외)	위치	방이동 39번지 지상2층 206호	● 사업부지 외 공공기여 사항
	토지지분	10.2㎡	● 등기지분×(공공시설등 제공 부지가액/원화받는 부지가액) = 14.2㎡×(23,660,000원÷32,960,000원)
	연면적	117.92㎡	● 전용면적 : 73.98㎡
	건축공사단가	2,800,000원/㎡	●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2017) - 공공업무사무소 500㎡미만 적용 (※사업부지 외 39번지 건축물 건축허가년도: 2018년)
	건축비(설치비용)	330,176,000원	● 연면적 × 건축공사단가 = 117.92㎡ × 2,800,000원/㎡
	부지가액	32,960,000원/㎡	● 사업대상지 평균공시지가 2배 기준 : 16,480,000원/㎡ × 2 = 32,960,000원/㎡
	환산부지면적	10.0㎡	● 건축비÷원화받는 부지가액=330,176,000원÷32,960,000원/㎡
	총 제공면적	20.2㎡	● 토지지분 + 환산부지면적
합 계		50.4㎡	● 총 기부채납면적 : 50.4㎡ (사업부지(도로) 30.2㎡, 사업부지 외(건축물) 20.2㎡)

※ 상기 내역은 방이동 36-9 외 1필지 개발시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0, 서울시)」에 의거 산정되었음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C7-7	방이동 36-9, -10	534.2	504.0	공동개발 지정	-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 도로 기부채납(감 30.2㎡)

※ 도로 1m(30.2㎡) 기부채납 제외, 향후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배치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방이지역: 1~5m 〈사업부지〉 - 10m도로변: 2m - 6m도로변: 2m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방이지역: 1~5m 〈사업부지〉 - 10m도로변: 2m - 6m도로변: 1m	결정도 참조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 방이지역: 1~5m 〈사업부지〉 - 10m도로변(보도형): 2m - 6m도로변(차도형): 2m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 방이지역: 1~5m 〈사업부지〉 - 10m도로변(보도형): 2m - 6m도로변(차도형): 1m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사업부지 6m도로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폭 원 1m 축소	•지구단위계획 기준(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개발기준)에 의한 연접도로(6m도로변) 1m 확폭 및 이에 따른 건축선·전면공지 폭원 축소 (선형변경 없음)

③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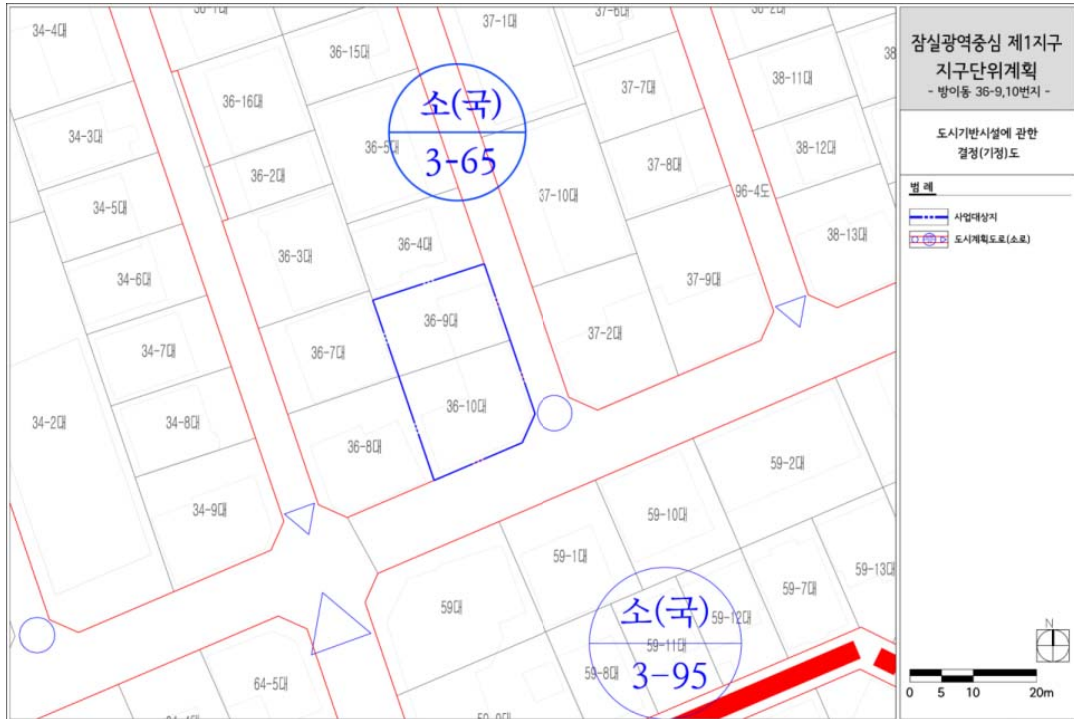
■ 권장사항

- 부설주차장은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현재 주차대수 이상 유지할 것
- 볼라드는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라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할 것
- 아래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검토
 - 근생2,3층 이용자의 주차장 입출고 동선을 줄일 수 있는 계획 검토
 - 1층 근생 출입구 통로 우회 모서리 부분은 출입구의 시인성과 개방감을 고려하여 라운드 처리하는 방안 검토
 - 서쪽 대지경계선상의 조경식재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조성 검토 및 접근이 어려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의 위치 재검토
 - 지상1층 장애인주차장의 기둥으로 인한 주차 시 불편 사항이 없도록 검토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측량,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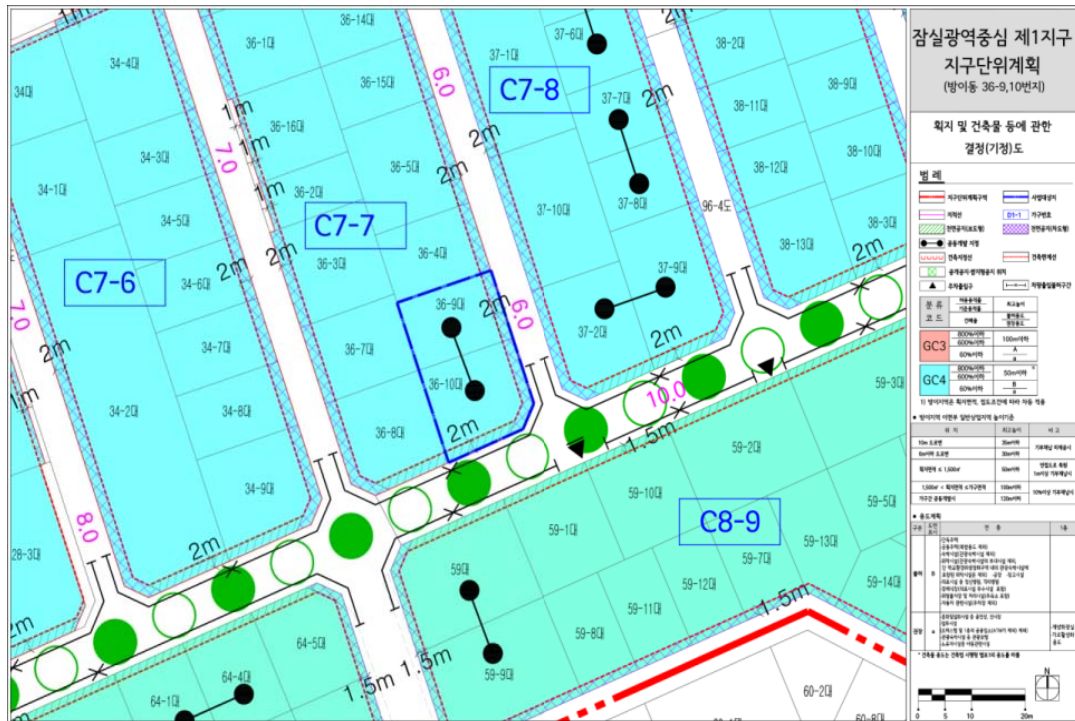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1-644호

평창동 113-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13-1번지 일대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의제 처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종로구청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 다음 날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84)
3. 열람 내용 :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제 되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평창동 113-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평창동 113-1번지 일원	-	증) 8,122.0	8,122.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평창동 113-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8,122㎡)	• 공동주택 건립 및 합리적 토지이용유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거지역	계	8,122.0	-	8,122.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8,122.0	-	8,122.0	100.0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구기·평창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20m 이하	480,290 (8,122.0)	'93.4.26 (서고 제122호)	지표면(건축법령 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 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 탑은 제외)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행정동	지 번		
신 설	획 지	①	평창동	66-3, 66-4, 66-6, 66-55, 66-77, 66-78, 66-95, 66-174, 66-189, 66-190, 66-191, 66-192, 66-193, 66-194, 66-195, 113-1, 113-9, 114-19, 114-20, 114-22, 577-5, 577-6, 577-18, 577-19, 577-20	8,12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 및 접회시설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관람장 제외)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용도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적률	기준 • 170% 이하	
		허용 • 190% 이하	
		상한 • 197.42%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주방향은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권장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경계로부터 6m • 도로변 및 그 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 ~ 4m	결정도 참 조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	• 평창문화로변 1개소	결정도 참조

2)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도로변 건축한계선 후퇴 구간	결정도 참조
공공보행통로	• 폭 3m 이상으로 조성	결정도 참조

(5) 공공기여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시설 등 설치계획	• 위 치 : 평창동 113-1번지 일원 • 내 용 : 대상지 건축과 연계하여 공공시설등 건축물 건립한 후 기부채납 • 도입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기부채납 대상기관 및 운영주체 : 종로구 • 건립 위치 : 지하 1층 • 면 적 : 전용면적 282㎡ 이상	-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은 절차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6.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방문, Fax 02-2148-5828, 이메일 bhw1998@mail.jongn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용산구공고 제2021-67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29호(2010.7.10.) 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154호(2019.10.17)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10호(2020.1.16.) 로 실시계획 고시한 ‘새꿈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8-1번지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사업
- 명칭 : 새꿈어린이공원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공원 조성 1,828㎡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3.12.31일까지

바. 관계도서 비치 : 용산구청 공원녹지과(☎02-2199-76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공고 제2021-6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7-20호(2017.3.2.)로 결정되고 광진구고시 제2020-44호(2020.5.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군자역 1,2번 출입구와 중곡동 649-6호 건축물 간 지하보도신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사업

나. 사업의 개요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명칭	총 사업 규모	비고
군자역1,2번 출입구와 중곡동 649-6호 건축물 간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중 지하보도 신설공사	40.95㎡	

다. 사업시행자 : (주)삼원특수지 대표 이연옥[광진구 천호대로 549(지타워 10,11,12층)]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5.1.~2년 이내

마. 공사완료일 : 2021. 4. 20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재산으로 무상 귀속됨

아. 기타 문의사항 및 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7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성북구공고 제2021-806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7-108호(2017.08.03.)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된 【성북동 113-21 외 9필지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동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 하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합니다.
2.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241-2605)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시행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성북동 113-21 외 9필지	681㎡	2017-08-03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7-108호)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성북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마.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바. 열람개요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성북구청 7층 문화체육과 (☎ 02-2241-2605)

사. 관계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도서)를 열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 의견서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토 지 조 서

사 업 시 행 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 업 의 명 칭 :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113-21	대	36	36	정*숙	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				
2	성북구 성북동 113-22	대	122	122	장*자	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 (사망 전 최후주소)	용문동 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95	근저당권	사망
3	성북구 성북동 113-24	대	60	60	한*순	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	신한은행 (성북동지점)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	근저당권	
4	성북구 성북동 113-25	대	33	33	한*연	서울 노원구 상계로 31길 **				
5	성북구 성북동 113-26	대	76	76	오*훈	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				
6	성북구 성북동 113-27	대	102	102	권*정	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	국민은행 (삼선교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권	
7	성북구 성북동 113-74	대	53	53	홍*령	불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 성북구 보문로168	압류	세무2과
8	성북구 성북동 113-72	대	142	142	백*설 (1/2)	서울 성북구 성북로19길 **	하나은행 (정충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오*희 (1/2)	서울 성북구 성북로19길 **				
9	성북구 성북동 113-60	대	56	56	김*빈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251-*** **동 **호				
10	성북구 성북동 113-61	대	1	1	이*용	불명				

물 건 조 서

사 업 시 행 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 업 의 명 칭 :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113-21	건물	시멘트블록조 스테트즘 단층주택 76㎡	건물 76	주택	김*현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길 ***호				
2	성북구 성북동 113-22	건물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및 시멘트블록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89㎡	건물 77 창고 8 창고 4	주택	장*자	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 (사망 전 최후주소)	용문동 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95	근저당권	사망
3	성북구 성북동 113-24	건물	목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0㎡	건물 60	주택	하*철	경기 부천시 작동로21길 **	신한은행 (성북동지점)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	근저당권	
4	성북구 성북동 113-25	건물	목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2㎡	건물 57 보일러실 5	주택	한*연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				
5	성북구 성북동 113-26	건물	시멘트조 단층주택 101㎡	건물 99 창고 2	주택	오*훈	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				
6	성북구 성북동 113-27	건물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29㎡	건물 125 보일러실 4	주택	권*정	서울 성북구 성북로 21길 ***	국민은행 (삼선교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권	
7	성북구 성북동 113-72	건물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 및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122㎡	주택 120 창고 2	주택	나*균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95 **동 **호	하나은행 (장충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 도봉구공고 제2021-790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 의거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자,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의견청취 공고하니 부지사용 계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도 봉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내용

가. 공원명 : 초안산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37-61

다. 지 목 : 임

라. 부지사용계약 면적 : 134㎡

2. 부지사용 계약예정일 : 2021.6.28.

3. 부지사용 계약기간 : 2021.7.1. ~ 2024.6.3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도봉구 마들로 656번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공고 제2021-8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1. 서울시고시 제185호(1973.1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19-136호(2019.10.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고시 된 『창5동 270-2 ~ 269-4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작성고시	사업기간
창5동 270-2 ~ 269-4 도로개설공사	창5동 270-2 ~ 269-4 간	폭 : 10m 연장 : 117m	도봉구고시 제2019-136호 (2019.10.24.)	2019.10.24. ~ 2021.06.03.

붙임 : 위치도

◆ 서대문구공고 제2021-788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2호(2010.12.1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2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0호(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7호(2013.10.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0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3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03.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7호(2017-12.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람 ·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 대 문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 2021. 06. 03. ~ 2021. 06. 18.(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 나. 공람장소 : 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330-8278) 및
홍제 1, 3동 주민센터
- 다. 공람사유 :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 라. 공람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마. 기타사항
-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및 팩스(02 330-8278 도시계획과), 우편으로 송부가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공람기간 내 날인된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함을 안내드립니다. 끝.

- I. 홍제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없음)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 결정 (변경없음)

- 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도로 (변경)

■ 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7	35~40	주간선 도로	3,600 (760)	서대문 광장 (홍제동158-33)	홍제동 (홍은동52-3)	일반 도로	-	'62.12.8 (건고제177호)	통일로
변경	대로	1	7	35~40	주간선 도로	3,600 (760)	서대문 광장 (홍제동158-33)	홍제동 (홍은동52-3)	일반 도로	-	'62.12.8 (건고제177호)	일부선형변 경
기정	대로	3	17	25	보조 간선도로	2,620 (95)	연희동 (홍은동271-16)	홍은동 226-2	일반 도로	-	'36.12.26 (총고제722호)	연희로
기정	대로	3	58	30~40	보조 간선도로	7680 (200)	성북구 (홍은동48-233)	홍은동 (홍은동217-27)	일반 도로	-	'36.12.26 (총고제722호)	세검정로
기정	대로	3	187	25	주간선 도로	(340)	-	-	-	-	-	내부 순환도로
신설	중로	2	1	9~15	특수도로	233	홍제동294-46	홍제동161-1	지하도로 (지하층 연결로)	-	-	중복결정 (대로1-7, 중로1-15, 소로2-24, 소로2-)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232	대로 1-7	홍제동260-13	일반 도로	-	'10.5.20 (서고제188호)	-
기정	중로	2	(8)	18	집산 도로	75	홍제동260-13	홍제동266-105	일반 도로	-	'10.5.20 (서고제188호)	-
기정	중로	2	95	15	집산 도로	690 (95)	대로 1-7	홍제교 (홍제동217-27)	일반 도로	-	'70.9.1 (건고제424호)	-
기정	중로	2	481	10~15	국지 도로	548 (145)	홍제동266-295	홍제동161-12	일반 도로	-	-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460 (100)	대로 1-7	홍제동308-222 (홍제동308-249)	일반 도로	-	'74.8.1 (서고제106호)	-
기정	중로	3	(3)	9~12	집산 도로	89	소로2-(1)	중로2-95	일반 도로	-	'02.6.19 (서고제222호)	-
기정	소로	1	1	10~12	국지 도로	513 (7)	홍제동270-39 (홍제동234-4)	홍제동 372-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59 (29)	대로1-7	중로3-(3)	일반 도로	-	'02.6.19 (서고제222호)	-
기정	소로	2	6	8	집산 도로	392 (108)	홍제동173-29	홍제동318-17 (홍제동315-42)	일반 도로	-	'74.8.1 (서고제106호)	-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45	홍제동330-117	홍제동330-16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05	홍제동330-117	홍제동330-11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00	홍제동330-89	홍제동330-7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35	홍제동330-238	홍제동330-24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80	대로 1-7	홍제동330-33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25	8	국지 도로	80	대로 1-7	홍제동330-22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5	소로 2-(1)	홍제동326-14	일반 도로	-	'14.12.18 (서고제430호)	-
기정	소로	3	(2)	4~6	국지 도로	41	중로 2-95	대로 1-7	일반 도로	-	'14.12.18 (서고제430호)	-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254	홍제동174-19	홍제동136-14	일반 도로	-	'74.8.1 (서고제106호)	-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165	홍제동300-9	홍제동249-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245	홍제동330-169	홍제동330-249	일반 도로	-	'74.8.1 (서고제106호)	-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42 (50)	홍제동315-21	홍제동167-24 (홍제동315-58)	일반 도로	-	'83.2.24 (서고제105호)	-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364 (18)	홍제동306-8	홍제동312-16 (홍제동314-11)	일반 도로	-	'74.8.1 (서고제106호)	-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262	홍제동167-29	홍제동158-7	일반 도로	-	'83.2.24 (서고제105호)	-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20	홍제동158-33	홍제동158-12	일반 도로	-	'83.2.24 (서고제105호)	-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09 (65)	홍제동161-14	홍제동136-3 (홍제동176-15)	일반 도로	-	'74.8.1 (서고제106호)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48	홍제동157-89	홍제동158-42	일반 도로	-	'83.2.24 (서고제105호)	-
기정	소로	3	22	5	국지 도로	77	홍제동304-87	홍제동305-4	일반 도로	-	'02.6.19 (서고제222호)	-
기정	소로	3	23	4	국지 도로	83	홍제동174-7	홍제동176-2	일반 도로	-	'02.6.19 (서고제222호)	-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25	홍제동306-4	홍제동306-12	일반 도로	-	'02.6.19 (서고제222호)	-
기정	소로	3	25	3	특수 도로	108	소로 2-24	소로 2-20	보행자 우선도로	-	-	-
기정	소로	3	26	3	특수 도로	80	소로2-(1)	소로2-24	보행자 우선도로	-	-	-
기정	소로	3	27	3	특수 도로	99	소로 2-25	소로 2-24	보행자 우선도로	-	-	-
기정	소로	3	28	3~4	특수 도로	99	소로 2-24	소로 2-25	보행자 우선도로	-	-	-
기정	소로	3	29	3~4	특수 도로	23	소로 2-25	홍제동330-234	보행자 우선도로	-	-	-
기정	소로	3	30	3~4	특수 도로	16	대로 1-7	소로 3-2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1	4	국지 도로	53	홍제동174-26	홍제동174-49	일반 도로	-	-	-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기종점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대로1-7	대로1-7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신설 지하도로와 중복결정	홍제역과 연계한 지하공공보도 설치를 위해 일부구간 도로 확폭
-	종로2-1	- 지하도로 신설 - 폭원 : 9~15m - 연장 : 233m	홍제역과 연계한 지하공공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

나. 주차장 (변경없음)

다. 고속철도 (변경없음)

라. 고속철도 정차장 (변경없음)

- 2) 공공문화시설 결정 (변경없음)
- 3) 보건위생시설 결정 (변경없음)
- 4) 방재시설 결정 (변경없음)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5.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1) 건축물 용도 결정 (변경없음)

- 6.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1) 건폐율 결정 (변경없음)
 - 2) 건축물 밀도(용적률) 결정 (변경없음)
 - 3) 인센티브 운영계획 결정 (변경없음)
 - 4) 건축물 밀도(최고높이) (변경없음)

- 7.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1) 건축물의 배치 결정 (변경없음)
 - 2) 건축물의 형태·색채 결정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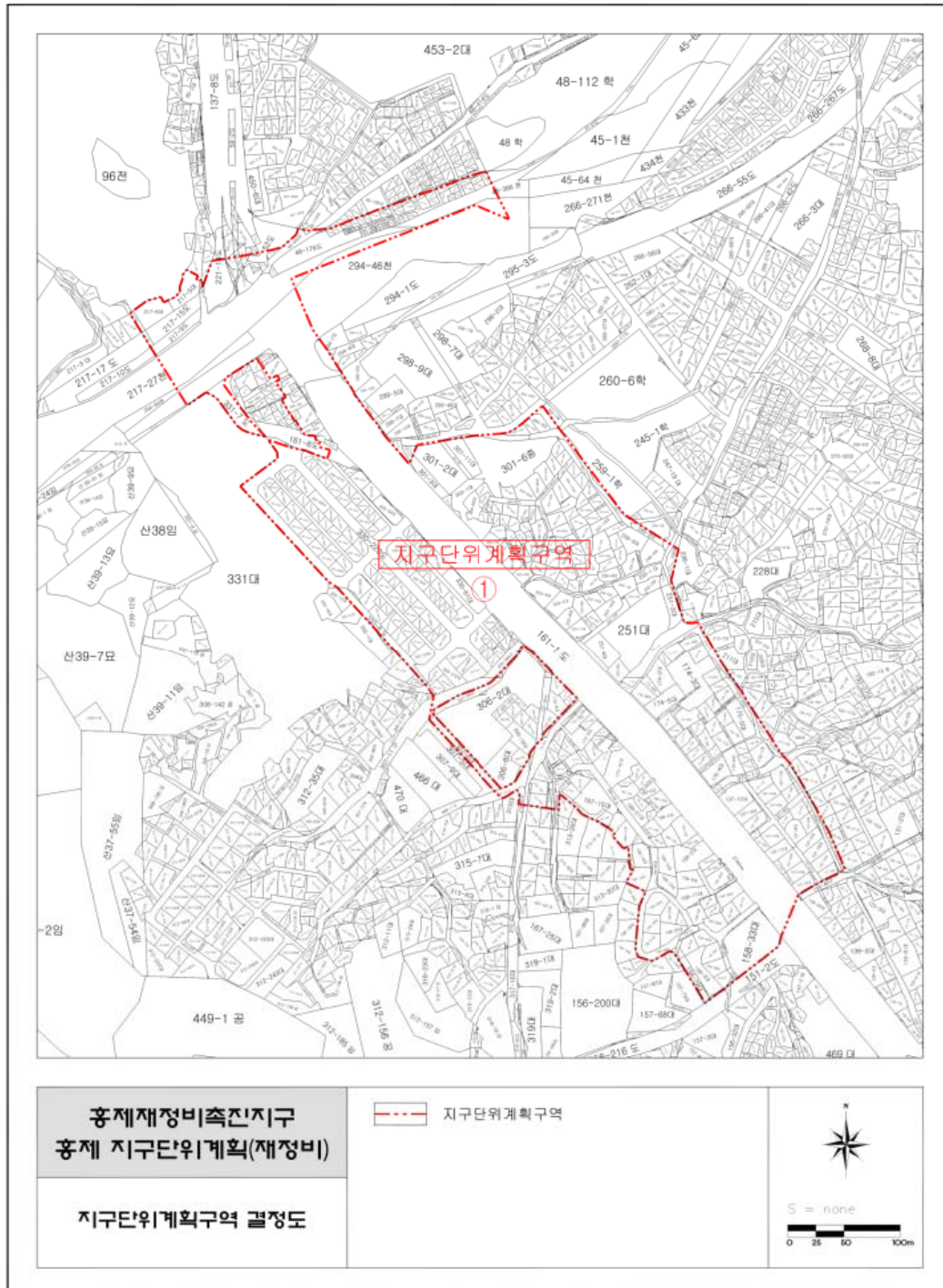
- 8.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 (변경없음)

- 9. 차량 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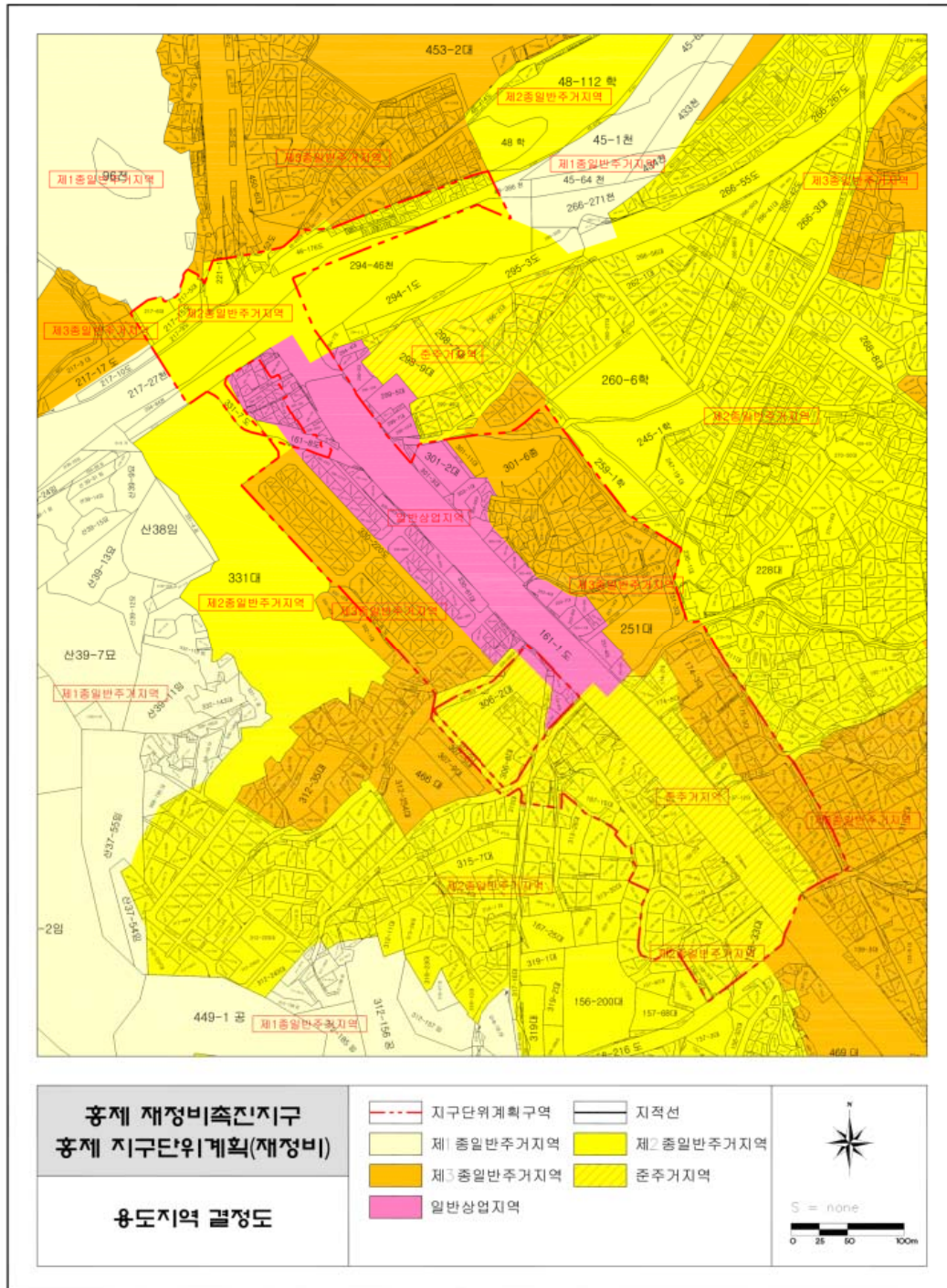
- 10.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1)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계획 (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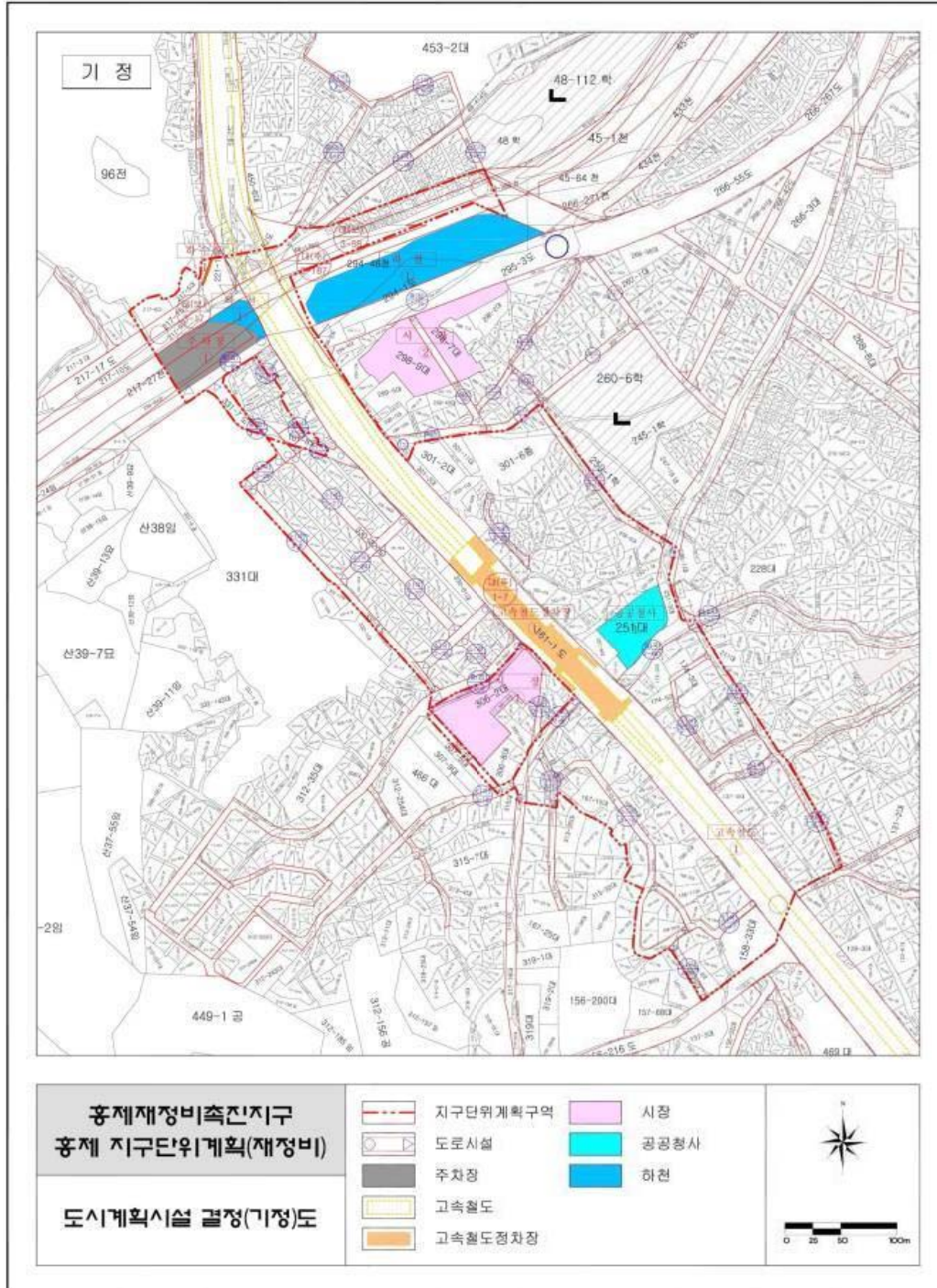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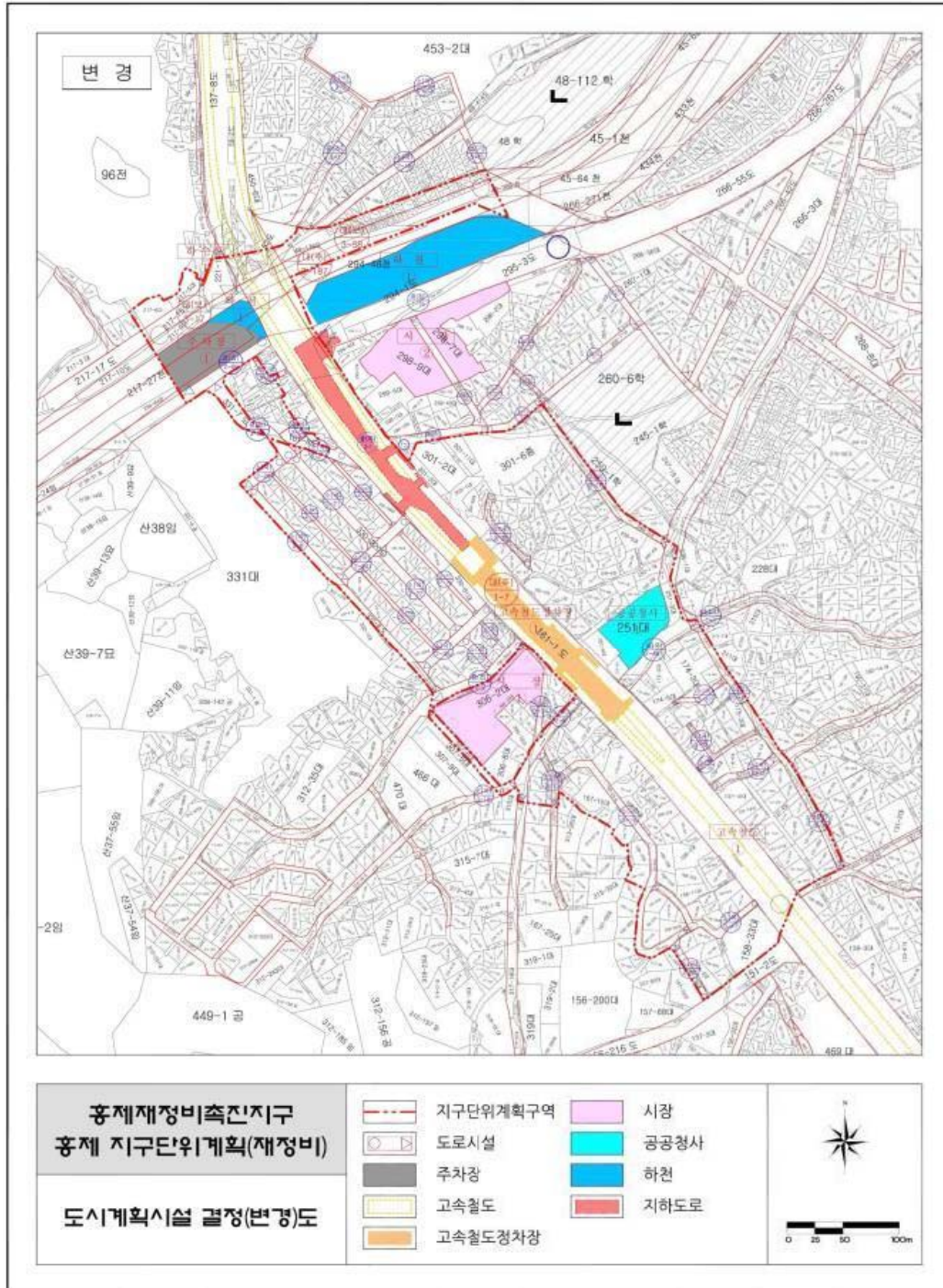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공람의견서

사업명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공람기간	2021. 06. 03 ~ 2021. 06. 18 (15일간)			
대 상 물건지	건물			
	토지			
의 견 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내 용

제출일 :

◆ 금천구공고 제2021-833호

금나래중앙공원 조성계획 변경 열람 공고

서울시고시 제2013-271호(2013.8.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금천구고시 제2013-43호(2013.10.31)로 도시관리계획 조성계획 최초 결정되고, 금천구고시 제2016-59호(2016.8.9)로 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금나래중앙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금 천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금나래중앙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일대
3. 면 적 : 16,331.30㎡
4. 주요시설 변경내용
 - 기반시설(도로) : 2,540.56㎡ ⇒ 2,774.60㎡(증 234.04㎡)
 - 기반시설(광장) : 2,074.69㎡ ⇒ 1,505.83㎡(감 568.86㎡)
 - 조경시설 : 54.98㎡ ⇒ 106.99㎡(스탠드 증 52.01㎡)
 - 휴양시설 : 191.06㎡ ⇒ 275.07㎡(휴게실 증 84.01㎡)
 - 운동시설 : 46.00㎡ ⇒ 0㎡(체력단련장 감 46.00㎡)
 - 교양시설 : 2,254.65㎡ ⇒ 3,426.67㎡(미술관 증 1,172.02㎡)
 - 편익시설 : 395.91㎡ ⇒ 1,082.97㎡(주차장 증 687.06㎡)
 - 녹지 및 기타 : 8,735.47㎡ ⇒ 7,121.18㎡(감 1,614.29㎡)
5. 열람기간 : 2021. 6. 3. ~ 2021. 6. 17.(14일간)
6. 열람장소 : 금천구청 공원녹지과(☎2627-1653)
7. 관련도서 : 별첨(금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8.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나래 중앙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6,331.30	7,595.83	3	2,414.65	7,264.65	94	16,331.30	9,210.12		2,156.02	7,610.93	94	
기 반 시 설	소 계	4,615.25	4,615.25				-	4,280.43	4,280.43				-	(감)334.82㎡
	도 로	2,540.56	2,540.56				-	2,774.60	2,774.60				-	(증)234.04㎡
	광 장	2,074.69	2,074.69				-	1,505.83	1,505.83				-	(감)568.86㎡
조 경 시 설		54.98	54.98				-	106.99	106.99				-	(증)52.01㎡
휴 양 시 설		191.06	191.06				39	275.07	275.07				35	(증)84.01㎡ (감)공작물:4개소
운 동 시 설		46.00	46.00				6	-	-				-	(폐지)46.00㎡ (폐지)공작물:6개소
교 양 시 설		2,254.65	2,254.65	2	2,254.65	7,104.65	-	3,426.67	3,426.67		1,996.67	7,451.58	-	(증)1,172.02㎡
편 익 시 설		395.91	395.91		159.35	159.35	2	1,082.97	1,082.97		159.35	159.34	4	(증)687.06㎡ (증)공작물:2개소
관 리 시 설		37.99	37.99				47	37.99	37.99				55	(증)공작물:8개소
녹지 및 기타		8,735.47	-				-	7,121.18	-				-	(감)1,614.29㎡
건 폐 율 (법정 14.79%)		(2,414.65 / 16,331.30) × 100 = 14.79%					(2,156.02 / 16,331.30) × 100 = 13.20%					도시공원위원회 결정사항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6,331.30	7,595.86			2,414.00	7,264.00	94			16,331.30	9,210.12			2,156.02	7,610.93	94	
기 반 시 설	소 계			4,615.25	4,615.25								4,280.43	4,280.43						
	도 로		전지역	2,540.56	2,540.56							전지역	2,774.60	2,774.60						(증)234.04㎡
	광 장	가-1		883.49	883.49						가-1		630.53	630.53						(감)252.96㎡
		가-2		427.18	427.18						가-2		427.18	427.18						
		가-3		264.00	264.00						가-3		264.00	264.00						
		가-4		82.55	82.55						가-4		82.55	82.55						
		가-5		101.57	101.57						가-5		101.57	101.57						
		가-6		110.50	110.50														(폐지)110.50㎡	
		가-7		205.40	205.40														(폐지)205.40㎡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소 계			54.98	54.98								106.99	106.99						(증)52.01㎡
	폰드	나-1		42.00	42.00						나-1		42.00	42.00						
		나-2		12.98	12.98						나-2		12.98	12.98						
	스탠드										나-3		52.01	52.01						(신설)52.01㎡
휴양시설	소 계			191.06	191.06				39			275.07	275.07					43	(증)84.01㎡	
	휴게소	다-1		71.06	71.06						다-1		71.06	71.06						
		다-2		16.00	16.00						다-2		16.00	16.00						
		다-3		16.00	16.00						다-3		16.00	16.00						
		다-4		16.00	16.00						다-4		16.00	16.00						
											다-6		52.05	52.05						(신설)52.05㎡
											다-7		11.68	11.68						(신설)11.68㎡
											다-8		8.14	8.14						(신설)8.14㎡
											다-9		12.14	12.14						(신설)12.14㎡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데크	다-5		72.00	72.00						다-5		72.00	72.00						
	파고라	①	전지역						2	①	전지역								2	
	앉음벽	②	전지역						28	②	전지역								30	(증)공작물:2개소
	등의자	③	전지역						9	③	전지역								3	(감)공작물:6개소
오리농시설	소계			46.00	46.00				6											(폐지)46.00㎡ (폐지)공작물:6개소
	체력 단련장	라	라	46.00	46.00															(폐지)46.00㎡
	크로스 컨트리	④	라						1											(폐지)공작물:1개소
	롤링 웨이트	⑤	라						1											(폐지)공작물:1개소
	트윈 워밍암	⑥	라						1											(폐지)공작물:1개소
	체어 웨이트	⑦	라						1											(폐지)공작물:1개소
	트윈 트위스트	⑧	라						1											(폐지)공작물:1개소
	좌식 사이클	⑨	라						1											(폐지)공작물:1개소
교양시설	소계			2,254.65	2,254.65			2,254.65	7,104.65				3,426.67	3,426.67			1,996.67	7,451.58		(증)1,172.02㎡
	커뮤니티 센터	마-1		104.65	104.65			104.65	104.65		마-1		104.65	104.65			104.65	104.65		건폐율 1.48%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미술관	마-2		2,150.00	2,150.00			2,150.00	7,000.00		마-2		3,322.02	3,322.02			1,892.02	7,346.93		건폐율 13.16%
편의시설	소 계			395.90	395.90			159.35	159.35	2			1,082.97	1,082.97			159.35	159.35	4	(증)687.07㎡
	화장실 /관리실	바-1		159.35	159.35			159.35	159.35		바-1		159.35	159.35			159.35	159.35		
	계단	바-2		11.39	11.39															(폐지)11.39㎡
		바-3		4.05	4.05															(폐지)4.05㎡
		바-4		4.03	4.03															(폐지)4.03㎡
												바-5		17.86	17.86					(신설)17.86㎡
	자전거 보관대	㉑								1	㉑								3	(증)공작물:2개소
	음수대	㉒		3.59	3.59					1	㉒		3.59	3.59					1	
	주차장 입구	사		213.50	213.50						사		374.53	374.53						(증) 161.03㎡
	주차장										아		527.64	527.64						(신설) 527.64㎡
관리시설	소 계			37.99	37.99					47			37.99	37.99					55	
	공원등									34									34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CCTV									4										4	
	폴리			37.99	37.99					9			37.99	37.99						9	
	블라드																			8	(증)공작물:8개소
녹지 및 기타	소 계			8,735.47									7,121.18								(감)1,614.29㎡
	녹지 및 기타			8,735.47									7,121.18								

◆ 서초구공고 제2021-972호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재열람공고
(양재동 224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4일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다. 도시기반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마.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사.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4번지	-	증)9,782.6	9,782.6	

- 마.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2155-6787), 양재2동 주민센터(☎ 2155-7905)
4. 관련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5. 기타사항: 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된 사항임
6.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방문, Fax 2155-6819, 이메일 so0124@seoch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초구공고 제2021-98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00-62호(2000.10.2.)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구룡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27	6	국지도로	15	소3-64	양재동 298	
변경	소로	3	327	6	국지도로	15	소3-64	양재동 298	하부 주차장 중복결정

2) 주차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양재동 301-6	998.5	-	998.5	00.10. 2.	
변경	주차장	양재동 301-6, 298-11, 298	998.5	증)1,577	2,575.5		주차장 중복결정 (도로 90㎡, 어린이공원 1,487㎡)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공원명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버들공원	어린이공원	양재동 298	1,487	-	1,487	88.12.31.	
변경	버들공원	어린이공원	양재동 298	1,487	-	1,487		하부 주차장 중복결정

2.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94), 양재2동 주민센터(☎2155-7905)

4.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5.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방문, 이메일 ka000@seocho.go.kr) 할 수 있습니다.

◆ 강동구공고 제2021-1212호

허브체험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을 위한 열람공고(추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호(2021.1.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최초 지정 및 결정된 강동구 둔촌동 575-3번지 허브체험공원 조성계획(최초)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 열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1-783호) 하였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의거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 열람공고 합니다.

※ 기 열람공고: 일간지 2개소, 구보 게재 / 열람공고일자 2021. 4. 7.

2021년 6월 3일

강 동 구 청 장

1.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575-3번지(허브체험공원)
2. 면 적: 3,454㎡
3. 공원조성계획(안): 불임참조
4.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강동구 푸른도시과(☎02-3425-6443)
7.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브체험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및 조성계획도(최초) 각 1부. 끝.

허브체험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동구 둔촌동 575-3번지)

구 분		신 설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454.0	1,982.0	2	52.58	52.58	9	
기 본 시 설	소 계	517.0	517.0					
	도 로	350.0	350.0					
	광 장	167.0	167.0					
조경시설								
휴양시설		106.0	106.0				8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1,128.0	1,128.0					
편익시설		231.0	231.0	2	52.58	52.58	1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1,472.0						
시 설 율 (법정 기준 없음)		(1,982.0㎡ / 3,454.0㎡) × 100% = 57.38%						
건 폐 율 (법정 20%)		(52.58㎡ / 3,454.0㎡) × 100% = 1.52%						

2.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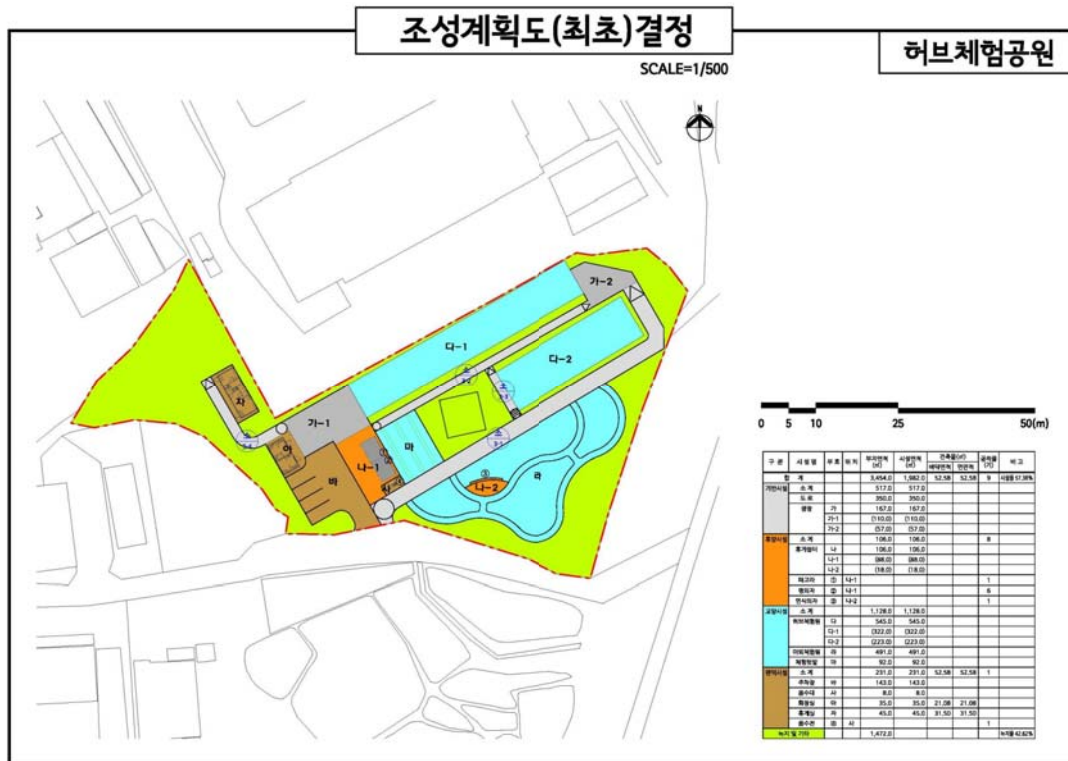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신 설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3,454.0	1,982.0		2	52.58	52.58	9
기 본 시 설	소 계			517.0	517.0					
	도 로			350.0	350.0					
	광 장	가		167.0	167.0					
		가-1	둔촌동 575-3	(110.0)	(110.0)					
		가-2	둔촌동 575-3	(57.0)	(57.0)					

구분	시설명	신 설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 계			106.0	106.0					8	
	휴게쉼터	나		106.0	106.0						
		나-1	둔촌동 575-3	(88.0)	(88.0)						
		나-2	둔촌동 575-3	(18.0)	(18.0)						
	파고라	①	나-1							1	
	평의자	②	나-1							6	
	연식의자	③	나-2							1	
교양 시설	소 계			1,128.0	1,128.0						
	허브체험 원	다		545.0	545.0						
		다-1	둔촌동 575-3	(322.0)	(322.0)						
		다-2	둔촌동 575-3	(223.0)	(223.0)						
	야외체험 원	라	둔촌동 575-3	491.0	491.0						
	체험텃밭	마	둔촌동 575-3	92.0	92.0						
편의 시설	소 계			231.0	231.0		2	52.58	52.58	1	
	주차장	바	둔촌동 575-3	143.0	143.0						
	음수대	사	둔촌동 575-3	8.0	8.0						
	화장실	아	둔촌동 575-3	35.0	35.0	철골조	1	21.08	21.08		
	휴게실	자	둔촌동 575-3	45.0	45.0	철골조	1	31.50	31.50		
	음수전	④	사							1	
녹지 및 기타				1,472.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최초	합 계				152.5	350.0				
최초	소로	소 계				152.5	350.0			
최초	소로	3	1	3.0	73.5	220.5	진입로	공원입구	광장(가-2)	
최초	소로	3	2	1.5	46.0	69.0	연결로	휴게쉼터(나-1)	광장(가-2)	
최초	소로	3	3	1.5	11.0	16.5	연결로	소3-1	소3-2	
최초	소로	3	4	2.0	22.0	44.0	연결로	광장(가-1)	휴게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1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계 내 한강 (양화대교)	선박 2척	정밀안전점검	2021.06.01.~ 2021.06.05.	2021. 5. 2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1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서울시계 내 한강 (아라뱃길~잠실대교)	선박 3척	중량물 운송	2021.05.30. ~ 2021.06.01.	2021. 5. 2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1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신호개발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가양대교 북단	선박 2척	공사 대기 수상 정박	2021.06.01.~ 2021.06.30.	2021. 5. 2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1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 내 한강 (잠실수중보)	선박 1척	보수·보강 공사	2021.05.31.~ 2022.06.22.	2021. 5. 2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서울시계 내 한강 (성산대교)	선박 3척	성능개선공사	2021.05.31.~ 2021.12.31.	2021. 5. 2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1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190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가양대교 북단	선박 33척	공사 대기 수상 정박	2021.06.01.~ 2021.06.30.	2021. 5. 2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1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47, 10동 309호	서울시계 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마포구 망원동)	선박 2척	유선장 및 통합레포츠 센터 설치	2021.05.23.~ 2021.08.22.	2021. 5. 2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1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강남 수상레저 (대표 유덕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11길 16, 202호(수유동)	서울시계 내 한강 (강남구 압구정로 11길 37-30 한강)	수상레저 기구 11대 (동력선5, 무동력6)	수상레저사업	2021.06.01.~ 2021.11.30.	2021. 5. 2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163호**

하 천 점 용 허 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주)시크릿 대표: 유희훈
3. 점용자의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
4.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 및 수상레저사업
5. 점 용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
6. 점 용 면 적 :
 - ① 유선장 및 수상레저활동장 5,297㎡(직접1,795㎡, 간접3,502㎡)
 - ② 상하수도 관로 211㎡
 - ③ 장애인 진출입로 152㎡
 - ④ 선박(유선사업) 2척
7. 점 용 기 간 : 2021. 05. 28. ~ 2021. 12. 31.(7월 4일)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8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311-1번지 일원(게이트볼장 일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91-1번지 일원(테니스장 일원)
 - 면 적 : 일시 140㎡(70㎡+7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
 - 내 역 : 일시점용 140㎡[(B= 7m, L= 10m, H= 2.4m)×2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1.05.26.~2021.06.25.(점용기간과 동일)

정 정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49호

제3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모집 정정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 및 시민에게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평소 건축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장

1. 시상인원 : 16작 (대상 1작, 최우수상 2작, 우수상 10작, 녹색건축상 3작)
 - ※ 응모작품 수, 작품수준 등 심사결과(심사위원회)에 따라 시상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수상자 발표
 - 2021. 8월 중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saf.kr>) 게시
3. 시상내용
 - 건축가 및 건축명장 : 「서울특별시 건축상」 상장 수여
 - 건축주 :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 수여(건축주, 건축가, 시공자명 기재)
4. 수상자(건축가) 특전
 - 수상작 전시회 개최로 건축가의 위상을 높이는 등 대 시민 홍보
 - * 대상 수상자는 차기 서울건축문화제 행사 시 ‘올해의 건축가 특별전’ 개최 지원
 - 건축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선정 시 우대
 -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라 건축사징계위원회 회부 시 경감 자료로 활용
(경감범위 : 업무정지기간 1/2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름)
 -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 (서울특별시 발주 공사에 한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및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에 따라 설계 용역비 1억 미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용역
5. 시상 및 작품전시
 - 시 상 식 : 2021. 9. 8.(수)
 - 작품전시 : 2021. 9. 8.(수) ~ 9.22.(수)
 - ※ 제13회 서울건축문화제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공모대상(작품공모)

부 문	공 모 대 상
일반	최근 3년 이내('18.07.16. ~ '21.07.15.) 사용승인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 '06.7.이전)에 한함
녹색	상기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인증기관·등급 표기된 인증서 제출)
건축 명장	당해연도 건축상 공모된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의 시공업체 또는 현장대리인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7. 공모방식

- 자(自)천(8항 작품공모신청 참조) 및 타(他)천

【타(他)천 방법】

- 추천기간 : 2021. 5. 20.(목) ~ 6. 30.(수)
- 추천 받은 작품의 설계자에게 응모 여부 확인 후 (승낙)응모한 작품에 대하여만 심사 진행
-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 또는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saf.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작품공모신청

- 공모기간 : 2021. 5. 20.(목) ~ 7. 16.(금)
- 접수기간 : 2021. 7. 15.(목), 16.(금) 10:00 ~ 17:00 (우편접수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 (우)04514 「서울시 건축상」 담당자 앞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및 건축물대장 포함), 작품설명서 1부,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녹색건축인증서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각1부(인증취득건축물)
 - ▶ 작품자료 1부 - A3 사이즈의 출력물 (10매 이내)
 - ▶ 작품USB 1부 - 신청서, 동의서, 작품설명서 및 작품자료
- * 구체적인 기준은 ‘ 참고자료 ’ 응모작품 제출기준’ 참고

9. 기타사항

- 기존의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은 제외함
- 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을 수여할 수 없음 (접수는 가능)
- 수상자는 대표설계자 1인으로 한정함

- 설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사)새건축사협회의 등 기타 건축 관련 단체에서 응모자의 설계자로 인정, 추천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대표 설계자로 인정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작품심사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성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1차 서류심사
(수상예정작 13작품 이내 선정), 2차 현장심사(현장실사, 대상 1작품, 최우수상 2작품, 건축명장 선정)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 예정임
- 1차 심사결과 선정된 수상예정작에 대하여 「건축상 심사위원회」 심사와 별개로 시민투표(인터넷)를 통해 특별상인 ‘시민공감 특별상’을 시상 예정임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saf.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담당 : 설정임, 전화 : 2133-7103)로 문의

참고자료

응모작품 제출기준

1. 서울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 또는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s://www.saf.kr>)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1부,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및 녹색건축인증서(의무대상인 경우) 작품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작품자료는 표지, 개념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작품사진(5컷 이상) 등을 A3 사이즈 10매 내로 출력(단면인쇄, 좌철 제본) 하여 제출
(일반·녹색건축 부문 중복 응모작은 녹색건축과 관련한 계획개념, 노력요소 등을 표현하여 함께 편철)
3. 작품설명서 및 작품자료 등에는 설계자 인적사항 기재 불가
[작품자료 표지는 흰색바탕에 작품명(검정색, 50포인트, 굴림체 굵게)만 중앙에 표기]
4. 제1항과 제2항의 내용 파일을 USB에 담아서 제출
(작품자료 파일형식은 JPG 또는 PDF파일, 해상도는 300dpi로 제출)
5. 작품설명서에는 건축개요, 작품배경, 계획개념, 작가의 변 등에 대한 소개를 기재
(녹색건축 부문의 경우 녹색건축과 관련한 설계자의 의도 등을 구체화 하여 표현)
6. 수상작의 설계자는 전시를 위한 패널 및 모형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규격, 형식은 추후 통보 예정)
7. 제출된 패널 및 모형은 전시종료 당일 10:00~18:00에 반출하여야 하며 미 반출 시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작품보관에 대해 일체 책임 지지 않음

서식 1

제39회 서울시 건축상 작품공모 신청서

건축물명 (작품명)			
구 분	☐ 일 반 ☐ 리모델링 ☐ 녹색건축 ※ 중복체크 가능		
대지위치	새주소 : 구주소 :	대지면적	
지역·지구		주용도	
건축물규모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설계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00구-00호
	연락처	T. , HP.	
	성 명	생년월일	
건축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HP.	
시공사 / 관계전문가	회사명		
	현장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안내	1. 수집·이용목적 - 설계자 인적정보 확인 - 제13회 서울건축문화제(SAF) 운영관련 이용(공지사항 안내, 홍보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13회 서울건축문화제(SAF) 운영기간 동안 보유, 이후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동의 (동의 시, ☐ 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설계자 1인이 신청하되 건축주의 확인(서명 또는 인)후 신청

첨부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건축물대장 사본 또는 건축물(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2021. . .

신청인(대표설계자) : _____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2

작 품 설 명 서

(작품명:)

- ▶ 건축개요, 작품배경, 계획개념, 작가의 변, 녹색건축 설계개념(녹색건축 부문에 한함) 등
- ※ 1~2매(부족한 경우 별지 1매 추가) 기술,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 양식변경 불가

【작품설명 요약】

- ※ 응모작품에 대한 핵심 단어(Keyword)를 3개 이내로 적을 것(필수)

서식 3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응모자(저작권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연 락 처 :

저 작 물

- 공모명 : 제3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제13회 서울건축문화제)
- 저작물 : 작품 설명서, 작품자료 (사진, 도면 등)

상기 저작권자 본인은 「제3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과 관련 작품 출품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2.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최/주관기관(서울특별시)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은 수상일로부터 무기한으로 하고, 저작권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수상작의 경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건축자산 데이터베이스(AURUM)에 등재 예정

2021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제3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응모작품 추천 안내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에게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공모방식을 다각화하여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건축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기존 자(自)천 방식과 함께 타(他)천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평소 건축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추천분야

부 문	추 천 대 상
일반	최근 3년 이내('18.07.16. ~ '21.07.15.) 사용승인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 '06.7.이전)에 한함
녹색	상기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인증기관·등급 표기된 인증서 제출)

2. 추천방법

- 추 천 : 자치구, 건축관련 단체, 개인
- 추천기간 : 2021. 5. 20.(목) ~ 6. 30.(수)
- 제출서류 : 추천서 1부(추천작품 위치, 사진, 추천사유 등 기재)
- 제출방법 : 전자우편 office@saf.kr 또는 서울건축문화제 웹사이트(<http://saf.kr>)
(`21.6.30. 24:00까지)
- ※ 추천 받은 작품의 설계자에게 응모 여부 확인 후 (승낙)응모한 작품에 대하여만 심사 진행

3. 시상 및 작품전시

- 시 상 식 : 2021. 9. 8.(수)
- 시상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상」 상장 수여
- 작품전시 : 2021. 9. 8.(수) ~ 9.22.(수) *제13회 서울건축문화제기간

4. 기타사항

- 기존의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은 제외함
- 추천서식은 서울시(<http://citybuild.seoul.go.kr/>) 또는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saf.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향후 심사는 설계자가 승낙하여 건축상 작품응모 한 경우에만 진행됨
- '제3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 모집 정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1549호)' 참고
- 그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설정임 주무관, 2133-7103)로 문의

붙임 : 추천서(서식) 1부.

제39회 서울시 건축상 응모작품 추천서

*건축물명 (위 치)				
구 분	☐ 신 축 ☐ 리모델링 ☐ 녹색건축 ※ 중복체크 가능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규모	연면적			주용도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설계자	사무소명			성 명
	연락처	T. , HP.		
건축주	성 명	(연락처:)		
*추천사유				

※ 작성 가능한 정보는 모두 작성 부탁드립니다.

첨부: 추천 작품(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1부.

2021. . .

추천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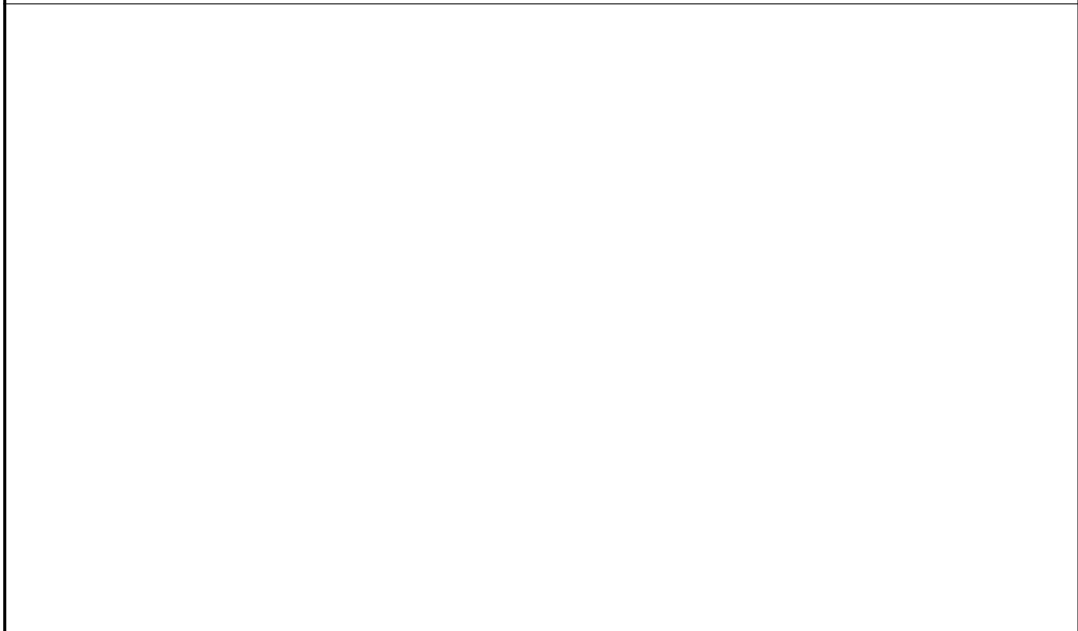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추 천 작 품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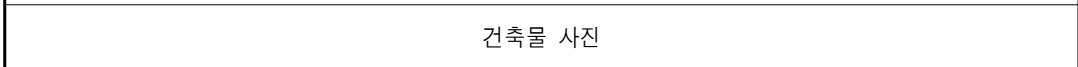
[작품명 (대지위치):]



위 치 도



건축물 사진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